

육상경기규칙

(IAAF/KAAF 규칙)

2018 ~ 2019

대한육상연맹

표기내용

1. IAAF의 각 회원연맹은 그 국내경기대회에서는 IAAF 경기규칙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본 연맹의 경기규칙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IAAF 경기규칙에 준거한다.
2. 각 장 끝의 결번은 장차 보충되는 경기규칙을 위하여 비워 놓은 것이다.
3. 본 경기규칙의 개수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당해연도의 1월 24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칙중의 표기에 대하여

[주-IAAF] : IAAF 규칙으로 국제경기대회에 적용하는 규칙이며, 국내경기대회에서도 적용하는 규칙임.

[비고] : IAAF 규칙으로 국제경기대회에 적용하는 규칙이나, 국내경기대회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칙임.

[주] : 국내경기대회에서만 적용하는 규칙임.

|| : 짝수페이지에는 왼쪽에, 홀수페이지에는 오른쪽에 두 줄로 표기한 내용은 개수정 또는 신설된 규칙임.

* 파란색으로 표기된 내용은 경기규칙에 대한 해석과 실행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본 경기규칙은 IAAF 경기규칙과 KAAF 경기규칙(2018-2019)의 개정판으로 본 연맹에서는 2018년 1월 24일부터 적용키로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과 경기규칙 내용 중 오자나 탈자 혹은 이의가 있으시면 본 연맹 경기위원회(간사 김정식부장, 02-414-3032)로 연락바랍니다.

목 차

용어 정의	2
국제육상경기대회	8
의무규칙	20
기술규칙	26
제1장 임원	28
제2장 경기대회 일반규칙	65
제3장 트랙경기	91
제4장 필드경기	142
A. 수직도약경기	154
B. 수평도약경기	172
C. 투척경기	181
제5장 혼성경기	218
제6장 실내경기	223
제7장 경보경기	236
제8장 로드레이스	244
제9장 크로스컨트리, 산악 및 트레일 레이스	250
제10장 세계기록과 한국기록	258

경기장 및 용기구 규칙

1. 공인 육상경기장 시설과 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코스 규칙 ...	286
2. 육상경기장 용기구 및 장비 검정규칙	299
3.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	302
4. 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코스 공인에 관한 세칙	322
5. 합성포장재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	325
6. 육상경기장에 관한 자료	341

용 어 정 의

(Definitions)

용어 정의(Definitions)

대륙(Area)

6개의 대륙육상연맹 중의 어느 한 연맹에 가맹된 모든 국가 및 영토로 구성되는 지리적 지역.

대륙연맹(Area Association)

IAAF 헌장에 분류된 회원연맹은 6개 대륙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그 대륙의 육상경기의 진흥육성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IAAF의 대륙연맹(예, 아시아육상연맹, AAA).

선수대리인(Athletes' Representative)

IAAF 선수대리인규정에 준하여 정식으로 선수 대리인으로 공인 되어 등록된 사람.

선수대리인규정(Athletes' Representative Regulations)

IAAF 집행이사회에서 수시로 가결되는 IAAF 선수대리인규정.

선수지원요원(Athletes Support Personnel)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선수의 국가연맹이 고용 하거나 협력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선수대리인, 특약대리인, 팀임원, 임원, 의무원, 준의무원, 부모 또는 기타 모든 관계요원.

육상경기(Athletics)

트랙과 필드경기, 로드러닝, 경보경기, 크로스컨트리러닝, 산악러닝 및 트레일러닝.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로잔(Lausanne, 스위스)에 있는 독립적인 중재 기구.

||

시민(Citizen)

어느 국가의 법률상의 시민권 또는 영토의 경우에는 영토 모국의 법률상의 시민권 및 적용되는 법률에 준한 그 영토의 적절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

시민권(Citizenship)

어느 국가의 법률상의 시민권 또는 영토의 경우에는 영토 모국의 법률상의 시민권 및 적용되는 법률에 준한 그 영토의 적절한 합법적 신분.

클럽(Club)

회원연맹 규칙에 준해서 회원연맹에 직접적 또는 해당기관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선수 단체 또는 클럽.

분과위원회(Commission)

IAAF 헌장 조항에 따라 IAAF 집행이사회가 선임한 분과위원회.

헌장(Constitution)

IAAF 헌장.

집행이사회(Council)

IAAF 집행이사회.

국가(Country)

국제법 및 국제 통치 기관들에게 독립된 국가로 인정된 세계의 자치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리적 지역.

국제육상연맹(IAAF)

국제육상연맹.

국제경기대회(International Competitions)

- 다음에 속하거나 해당하는 경기대회를 국제경기대회라 한다.
- 세계육상경기시리즈대회에 속하는 경기대회,
 - 올림픽경기대회의 육상 프로그램에 속하는 경기대회,
 - 기타 IAAF가 주관하거나 IAAF를 대신해서 개최되는 경기대회,
 - 기타 본 규칙과 규정에 준하여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

국제초청경기대회(International Invitation Meeting)

대회주최측의 초청에 의하여 2개국 이상의 회원연맹에 등록 된 선수들이 참가하는 육상경기대회.

국제수준선수(International - Level Athlete)

도핑검사대상자명부(Registered Testing Pool)에 등록 되어 있는 선수 또는 도핑방지규칙에 정의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연맹(Member)

IAAF에 가맹되어 있는 육상경기의 국가통할 단체.

회원연맹 자격(Membership)

IAAF의 회원이 되는 자격.

국가연맹(National Federation)

본 규칙에 준하여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요원이 직접 또는 클럽이나 회원연맹에 가맹된 기타 단체를 통하여 등록되어 있는 IAAF의 회원연맹.

중립선수(Neutral Athlete)

선수참가자격 규칙 제22조 1항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IAAF 집행이사회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경기대회에 개인적 수준에서 특별히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IAAF에서 요하는 참가자격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선수를 말한다. IAAF 규칙 및 규정 내 선수에게 해당하는 조항들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중립선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중립선수의 특정 국제대회 참가에 관련하여 선수가 고용되었거나 협업하는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선수대리인, 특약대리인, 팀임원, 임원, 의무원 또는 준의무원, 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들은 모두 본 규칙의 목적 하에 선수지원요원이라 칭한다.

규정(Regulations)

IAAF 집행이사회에서 수시로 가결되는 IAAF의 규정.

거주지(Residence)

거주지는 관계 당국에 등록된 선수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장소나 소재지.

규칙(Rules)

- IAAF의 (경기규칙을 포함한) 규칙,
- 구) 윤리강령, 청렴행위강령, IAAF 총회절차규칙,
- 기타 IAAF 헌장에 따라 수시로 승인되는 기타 규칙.

기술규칙(Technical Rules)

IAAF 경기규칙에 포함된 육상경기의 기술규칙을 설명하는 규칙.

영토(Territory)

국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스포츠를 통제할 수 있는 자치정부의 면모를 갖추고 IAAF가 인정하는 지리적 영토 또는 지역.

세계육상경기시리즈대회(World Athletics Series, WAS)

IAAF의 2년 또는 4년 주기 공식경기대회 프로그램에 있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주1-IAAF] 위의 정의는 도핑방지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동일한 용어(예 : 국제경기대회)를 제외하고, 모든 규칙에 적용된다. 즉, 도핑방지규칙을 제외한 모든 규칙에 적용되는 용어(예 : 국제경기대회)를 말한다.

[주2-IAAF] 규칙에 명시된 남성에 관한 모든 참고사항은 여성에도 동일하게 포함되며, 단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복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3-IAAF] (기존 IAAF 출판물 “심판장” 에 있던) 파란색으로 표기된 내용은 경기규칙에 대한 해석과 실행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주4-IAAF] 2017년 IAAF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IAAF 경기규칙 2018~2019년판의 개정부분(편집상의 수정을 제외하고)은 문장의 가쪽(여백)에 세로로 두줄(II)을 그었으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2018년 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국 제 육 상 경 기 대 회

(International Competitions)

국제육상경기대회(International Competitions)

제1조

국제육상경기대회

1. 국제육상경기대회는 다음과 같다.

- (a) (i) 세계육상경기시리즈대회에 포함된 경기대회
- (ii) 올림픽대회의 육상경기 프로그램
- (b) IAAF가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일 대륙의 참가 선수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대륙, 지역 또는 그룹대회의 육상경기프로그램
- (c) 참가 선수가 단일 대륙에 국한되지 않은 지역 또는 그룹 육상경기선수권대회
- (d) 회원연맹이나 대륙 또는 이들의 연합을 대표한 서로 다른 대륙의 팀들 간의 대항 경기대회
- (e) 집행이사회가 승인하고 IAAF가 범세계적 기구의 일부분으로 분류하는 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 및 기타 경기대회
- (f) 단일 대륙연맹이 주최한 대륙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대륙 내의 육상경기대회
- (g) 참가 선수가 단일 대륙에 국한된 대륙, 지역 또는 그룹 대회의 육상경기 프로그램 및 지역 또는 그룹 육상경기선수권대회
- (h) U18과 U20 범주에 해당하는 경기대회를 제외한, 동일 대륙 내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연맹이나 이들의 연합을 대표한 팀들 간의 대항경기대회
- (i) 규칙 제1조 1항(e)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 및 기타 경기대회. 즉, 참가료, 상금 및/또는 현금이외의 상품가치의 총액이 USD 50,000달러, 또는 한 종목의 총액이 USD 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기대회.
- (j) 규칙 제1조 1항 (c)에 규정되어있는 대회와 유사한 대륙 육상경기 프로그램.

2. 본 규칙은 다음 조항에 적용된다.

- (a) 선수참가자격 관련 규칙, 분쟁을 관장하는 규칙, 그리고 기술규칙은 모든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적용된다. IAAF가 승인한 기타 국제 조직단체는 그들의 권한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선수자격을 엄격히 제한해도 좋다.
- (b) 도핑방지규칙은 모든 국제경기대회(특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에 적용되는데, IOC 또는 IAAF가 인정하는 기타 국제 기구가 도핑방지를 목적으로 그들의 규칙에 의거하여 대회(예, 올림픽대회)에서 도핑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도핑방지규칙이) 해당되는 선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 (c) 광고 규칙(제8조)은 규칙 제1조 1항 (a)(i), (c), (d), 및 (e)에 기재된 모든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적용된다. 대륙연맹은 규칙 제1조 1항 (f), (g), (h), (i) 및 (j)에 명시된 국제육상경기대회에 IAAF 광고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륙 연맹 고유의 광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표할 수 있다.
- (d) 규칙 제2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그 적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적용된다.

제2조

육상경기대회 개최 승인

1. IAAF는 대륙연맹과 협력하여 범세계적인 경기대회 체계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IAAF는 중복되는 대회 개최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IAAF 주최의 경기일정과 해당 대륙연맹의 경기 일정을 조정한다. 모든 국제경기대회는 규칙 제2조에 준하여 IAAF 또는 대륙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경기대회를 시리즈/투어 또는 리그대회로 연합 또는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적 또는 계약적 조건을 포함한 IAAF 또는 해당 대륙연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륙연맹이 본 규칙 조항에 준하여 국제 경기대회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지 못할 경우, IAAF는 이를 중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2. IAAF만이 올림픽대회의 육상경기대회와 세계육상경기 시리즈대회에 포함된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IAAF는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홀수년도에 개최한다.
4. 대륙연맹은 대륙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대륙내에 다른 기타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IAAF의 승인이 필요한 육상경기대회

5. (a) 규칙 제1조 1항 (b), (c), (d) 및 (e)에 명시된 모든 국제육상 경기대회는 IAAF의 승인이 필요하다.
(b) 국제육상경기를 주최하는 국가나 영토의 회원연맹은 대회가 개최되기 12개월 이전이나 또는 IAAF가 정한 다른 기한 내에 대회 승인신청서를 IAAF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륙연맹의 승인이 필요한 육상경기대회

6. (a) 규칙 제1조 1항 (g), (h), (i), 및 (j)에 기재된 모든 국제육상경기 대회는 대륙연맹의 승인이 필요하다.
참가료, 상금 및/또는 현금이외의 상품가치의 총액이 USD 250,000달러 또는 한 종목의 총액이 USD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초청경기대회의 경우, 대륙연맹이 해당 대회의 개최일에 관하여 IAAF와 협의 후 승인되어야 한다.
- (b) 국제육상경기를 주최하는 국가나 영토의 회원연맹은 대회가 개최되기 12개월 이전이나 또는 대륙연맹이 정한 다른 기한 내에 해당 대륙연맹에게 대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연맹이 승인한 육상경기대회

7. 회원연맹은 국내육상경기대회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규칙 제4조 2항과 제4조 3항에 위배되지 않는 외국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만약 외국 선수가 참가한다면 이러한 국내육상경기대회의 모든 선수의 참가료, 상금 및/또는 현금이외의 상품가치의 총액이 USD 50,000달러 또는 한 종목의 총액이 USD 8,0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IAAF, 대회를 주최하는 회원연맹, 또는 선수가 소속된 국가연맹의 규칙에 따라 참가자격을 상실한 선수는 어떠한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

제3조

국제육상경기대회 운영 관리규정

1. 집행이사회는 규칙에 따라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운영을 관리하고 선수, 선수대리인, 대회주최측 및 여러 회원연맹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2. IAAF와 대륙연맹은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적용되는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IAAF 또는 대륙연맹의 대회 개최 승인을 요하는 모든 국제육상경기대회에 1인이나 그 이상의 대표를 선정하여 참관시킬 수 있다. IAAF나 대륙연맹의 요청에 의해, 대표는 해당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AAF나 대륙연맹에 (규칙 및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조

국제육상경기대회 참가 조건

1.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선수만이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a) 회원연맹에 등록된 클럽의 회원; 또는
 - (b) 회원연맹에 등록된 개인선수; 또는
 - (c) 회원연맹의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 선수; 또는
 - (d) IAAF 집행이사회로부터 해당 국제경기대회에 중립선수로서 참가할 수 있는 특별참가자격을 부여받고, IAAF 집행이사회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선수; 그리고
 - (e) IAAF가 도핑검사를 책임지는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IAAF 선수동의서 양식에 (수시로 개정되는) IAAF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항 그리고 IAAF 또는 회원연맹과 연관되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판소나 기관에 회부하지 않고 본 규칙에만 따른 중재에

합의하겠다는 사항을 동의하고 서명한 선수이어야 한다.

2. 회원연맹은 외국의 국가 또는 영토에서 개최되는 국제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회원연맹의 선수나 클럽이 회원연맹의 서면 승인 없이 참가할 수 없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육상경기를 주최하는 회원연맹은 대회참가자격과 참가 허가 증명서가 없는 어떠한 외국의 선수나 클럽도 대회참가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회원연맹은 IAAF에 이러한 모든 승인 요건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칙의 준수를 돕기 위하여, IAAF는 각 회원연맹의 승인 요건 목록을 IAAF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본 규칙은 중립선수(Neutral Athletes)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한 국가연맹에 소속된 선수는 자신이 속한 국가연맹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원연맹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소속 국가연맹에 상기와 같은 사전승인 요구조항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 또한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나 영토의 국가연맹은 선수가 본래 소속된 국가연맹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나라 또는 영토에서 개최되는 경기대회의 참가선수 명단에 그 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본 규칙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나 영토의 국가연맹은 본래 선수가 속한 국가연맹에 서면상의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본래의 국가연맹은 그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나 영토의 국가연맹에게 보내야 한다. 이러한 의사전달은 양쪽 모두의 수령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으로서, 수령 확인 기능이 있는 전자우편은 부합되므로 인정된다. 만약, 선수가 본래 소속된 국가연맹의 답변서가 30일 이내의 기간에 접수되지 않으면, 요구서에 대한 선수자격 인가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본 규칙에 따른 허가요청에 관하여 부정적인 회답(부정적 회답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이 있을 경우에는,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영토의 국가연맹은 그 결정에 대하여 IAAF에 상소할 수 있다. IAAF는 이 규칙에

따른 상소 제기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고 IAAF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본 규칙이 준수되기 위하여, IAAF는 각 국가연맹의 허가요구서 목록을 IAAF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주-IAAF] 규칙 제4조 3항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이 되는 선수에게 적용된다. 본 규칙은 어느 국가나 영토의 시민이 아닌 선수 또는 정치적 망명자 또는 중립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회원연맹을 대표할 자격 (Eligibility to Represent a Member)

1.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는 규칙 제5조에서 명시하는 자격 조건들을 충족하고, 그 회원연맹이 대표하는 국가나 영토의 시민인 선수만이 해당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2. 규칙 제1조 (a), (b), (c), (f) 또는 (g)에 규정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선수는 제1조 (a), (b), (c), (f) 또는 (g)에 규정된 국제경기대회에 하나의 회원연맹을 대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이는 선수 또는 그의 부모나 조부모가 회원연맹이 대표하는 국가(또는 영토)에서 태어남으로써 선수가 해당 국가(또는 영토)의 시민권을 소지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규칙 제5조 4항에 준하여,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이미 하나의 회원연맹을 대표한 선수는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다른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없다.
4.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이미 하나의 회원연맹을 대표한 선수는 오직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규칙 제 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서 (별도의 사항이 없는 한 즉시 효력으로) 또 다른 회원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 (a) 회원연맹의 국가 또는 영토가 이미 회원연맹이거나 회원연맹이 될 다른 국가나 영토에 합병(合併)된 경우;
 - (b) 만약 회원연맹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선수가 조약의 비준에 의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새롭게 탄생된 국가의 시민이 되며, 그 국가가 회원연맹이 되는 경우;
 - (c) 만약 회원연맹의 영토에 국가 올림픽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선수가 소속 영토의 모국(母國)을 대표하여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가 올림픽 대회에서 소속 영토의 모국을 대표하는 행위가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또는 (g)에 명시된 다른 국제경기대회에서 선수가 소속 영토의 회원연맹을 대표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선수참가자격 규칙 제21조 2항에 따라, 참가 선수의 자격은 항상 선수가 소속된 회원연맹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규칙 제5조에 따른 선수의 자격 여부 입증의 책임은 해당 회원연맹과 선수에게 있다. 회원연맹은 선수의 자격을 증명하는 유효하고/진본인 문서와 필요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IAAF에 제시해야만 한다. IAAF가 요청한다면, 회원연맹은 이 규칙에 따라 선수의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
6. 본 규칙은 중립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6조

선수에 대한 지불

육상경기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스포츠이며,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선수는 모든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인해 또는, 육상경기 참가와 관련한 기타의 상업적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한 이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선수대리인

1. 선수들은 그들의 육상경기 프로그램 협상 및 이러한 유형의 다른 기타 사안들을 위해 선수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선수들 스스로 그들의 육상경기 프로그램을 협상 할 수도 있다.
2. 연말 기준으로 표준 경기대회 종목에서 IAAF 30위 명단에 등록된 선수는 그 다음 해에 선수대리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3. 회원연맹은 합리적으로 선수대리인을 공인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 각 회원연맹은 소속 선수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선수대리인과 자국 또는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대리인, 또는 자국 국적을 가진 선수대리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4. IAAF 집행이사회는 이 제도에 대한 회원연맹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선수대리인 관리에 관한 규정집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선수대리인 규정은 선수대리인을 관리하는 각 회원연맹의 규정에 포함될 필수요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각 회원연맹은 IAAF 회원연맹 자격 조건으로써, 선수와 대리인 간의 모든 협약은 본 규칙과 선수대리인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회원연맹의 헌장(Constitution)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선수대리인은 정직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IAAF 선수대리인 규정에 따라 시행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선수대리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7. 각 회원연맹은 회원연맹이 공인하거나 승인한 선수대리인 명단을 IAAF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IAAF는 공인된 선수대리인 명단을 공식적으로 매년 발행하여야 한다.
8. 규칙 및 규정에 따르지 않는 선수나 선수대리인은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국제경기대회기간 중 광고 및 전시

1. IAAF 규칙 제1조2항 (c)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국제경기대회에서 홍보성 광고 및 전시는 모든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허용된다.
2. 본 규칙에 준해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전시되는 홍보물 및 기타 자료의 광고 방법 및 형태에 대해서는 집행이사회가 이에 대한 세부 규칙을 수시로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a) 본 규칙에 준해서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상업적 또는 자선사업적 광고만이 허용된다.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정치적 목적이나 압력단체의 이익 촉진과 관련된 모든 광고는 금지한다.
 - (b) IAAF의 판단에 의해 대회의 품위를 잃게 하거나, 혼란케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광고물은 전시를 금지한다. 광고물이 부분적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TV카메라의 시야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모든 광고물은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c) 담배 제품의 광고는 금지된다. 또한, 집행이사회가 특별히 허용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류의 광고를 금지한다.
3. 집행이사회는 본 규칙에 의한 규정을 항시 개정할 수 있다.

의 무 규 칙

(Medical Rules)

의무규칙(Medical Rules)

제50조

IAAF 의무 조직 (IAAF Medical Organisation)

1.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 또는 기구는 본 의무 규칙에 따라 IAAF의 대표로서 주요 역할을 한다 :

- (a) 보건과학 분과위원회
- (b) 의무 총무

보건과학 분과위원회(The Health and Science Commission)

2. 보건과학 분과위원회는 IAAF 헌장 조항 제7조 11항 (h)에 따라 IAAF 집행이사회의 분과로서 임명되며, 모든 의무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IAAF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3. 보건과학 분과위원회는 보통 연초에 최소 연 1회 소집되어, 이전 12개월간 IAAF의 의무 활동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향후 1년간의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보건과학 분과위원회는 1년동안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의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상의한다.
4. 본 의무규칙에 준하여 보건과학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정 과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닌다 :
 - (a) 관계된 IAAF 담당부서를 보조하여 육상경기의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에 대한 정책 및 공식성명 수립;
 - (b) 육상경기에 적용되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모든 육상경기 규정에 대한 조언을 집행이사회에 제공;
 - (c) 국제경기대회의 의무 서비스 조직 및 편성에 대한 권고를 하며;
 - (d) 대중참여행사(mass events)에서 육상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IAAF 관계부서에 제안;
 - (e) 육상경기에서 대두되는 특정한 스포츠의학 사안들을 검토하고 IAAF 관계부서에 이에 따른 권고 및 제안;

- (f) 요청될 시 스포츠의학과 관련된 IAAF 세미나에 참가; ||
- (g) 육상경기와 관련된 스포츠의학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의무전문가들에게 제공;
- (h) 육상경기 선수와 선수지원요원들의 스포츠의학 사안들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의료 관련 교육자료를 출간한다.
- 5. 보건과학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적절한 판단에 따라 상기 세부업무들을 소규모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더욱 심도 있고 전문적인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의무 총무 (The Medical Manager)

- 6. 의무 총무는 보건과학 부서 내에 의학적인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닌다 : ||
 - (a) 본 의무 규칙에 따라 보건과학 분과위원회(또는 임무를 위임받은 소규모 분과위원회)에 부여되는 다양한 임무의 협조; ||
 - (b) 보건과학 분과위원회에서 공표한 정책, 성명, 권고 또는 지침 이행에 대한 감독; ||
 - (c) 도핑방지규칙 및 규정에 따라 치료목적사용면책의 행정 관리; ||
 - (d) 규정에 따라 선수 자격에 대한 결정; 그리고
 - (e) IAAF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속성의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 7. 의무총무는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건과학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의무총무는 최소 1년에 1회 보건과학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더욱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 ||
- 8. 본 의무 규칙에 따라 보건과학 부서에서 처리되는 의학적 정보는 엄격한 기밀성을 유지하며 관계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

제51조 **선수 (Athletes)**

1. 선수들은 본인의 신체적 건강과 의학적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선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함으로써 IAAF (및 해당 회원연맹, 책임자,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또는 대리인 등)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선수의 국제경기대회 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상 및 상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제52조 **회원연맹 (Member Federations)**

- ||
1. 회원연맹은 규칙 제51조의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소속 선수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엘리트 수준의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적합한 상태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각 회원연맹은 내부적 또는 외부적 기관을 통하여 선수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여해야 한다. 회원연맹이 규칙 제1조 1항(a) 및 제1조 1항(f)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시키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IAAF 의무 지침서에 따라 경기 전 건강 검진(PPME)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3. 각 회원연맹은 규칙 제1조 1항(a) 및 제1조 1항(f)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의학적 관리를 위해 최소 1명의 팀 닥터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3조 **국제경기대회 의무 및 안전 서비스** **(Medical/Safety Services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1. 국제경기대회의 주최측은 대회기간 동안 적합한 의무 서비스와 안전/보안 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요구되는 의무 및 안전/보안 대책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경기대회의 규모 및 특성, 참가하는 선수 인원수와 범위, 지원 인원수 및 관중의 규모, 해당 국가의 보건 수준 및 기후, 고도 등의 환경 조건 등. ||
2. 보건과학 분과위원회는 대회주최측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적합한 의무 서비스 및 안전/보안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를 발행하고 최신화 시킨다. ||
3. 특정 범주의 종목들(예 : 로드레이스 및 경보경기 등)에 대해서는 본 의무 규칙에 따라 특정한 의무 및 안전 대책이 요구될 수 있다.
4. 국제경기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의무 서비스 및 안전 대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
 - (a) 경기대회 장소 및 선수 숙박 장소에서 선수 및 등록된 임원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보건 서비스;
 - (b) 주 경기대회 장소에서 선수, 임원, 자원봉사자, 미디어 관계자 및 관중에 대한 응급처치 및 구급체제의 확보;
 - (c) 안전 감시;
 - (d) 긴급 및 후송 대책 협조; 그리고
 - (e) 적합한 특수 의료 서비스 협조.
5. 규칙 제1조 1항(a)에 속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주최측은 1명의 의무 책임자를 임명하며, 그는 경기 대회기간 중 의료 서비스 및 안전에 대한 준비 및 협조를 해야 한다. 의무총무는 모든 의무 및 안전 사안에 대해서 IAAF와 대회주최측 간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한다. ||
6. IAAF는 규칙 제1조 1항(a)에 속하는 국제경기대회에 1명의 의무대표를 임명하여 규칙 제113조에 따라 경기대회 장소에 의료 검진, 치료 및 응급 치료를 위한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와 선수들이 숙박하는 장소의 의무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 술 규 칙

(Technical Rules)

기 술 규 칙 (Technical Rules)

제100조 총칙(General)

규칙 제1조 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에 따라 개최되며, 이는 모든 대회요강, 광고문, 프로그램 및 인쇄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올림픽대회를 제외한 모든 경기대회는 IAAF 기술규칙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선수에게 실제 명시된 IAAF 규칙보다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하는 규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경기방법을 결정한다.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대중참여(mass participation) 경기에 있어서는, 본 규칙은 오직 시상 또는 상금수여를 위해 등급이 결정되는 엘리트 등급이나 기타 정의된 등급(예 : 연령그룹)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회(또는 레이스) 주최측은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기타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면 (특히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주-IAAF] IAAF 회원연맹(Members)은 자국내에서 개최하는 육상경기대회 운영에 IAAF 규칙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주]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공인 경기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하 본 연맹)의 기술규칙에 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회요강과 프로그램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본 규칙이 이미 규칙의 엄격한 적용에 변형을 주는 것이지만, 이에 더 나아가 대회주최측은 특정한 선수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형식의 경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필드

종목에서 시기 수나 시기 허용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단 규칙에 명시된 것 이상의 시기 수나 시기 허용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중참여 러닝 및 경보 종목에 있어서는 본 규칙은 오직 경기의 엘리트적 요소 또는 대회주최측이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지정한 기타 다른 측면에만 완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유에는 예를 들면 주요한 시상과 상금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레이스를 운영하는 주최측은 다양한 그룹에 해당하는 규칙과 절차를 참가자들에게 배포하는 정보 상에 강조하여야 하며, 이에는 특히 레이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한 안전 고려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통통제가 되어 봉쇄된 코스에서 달리는 (규칙 제144조 3항이 적용되는 엘리트 선수나 기타 분류/범주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제외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더 느리게 달리는 참가자들에게는 코스가 교통통제를 받지 않는 시점에 동일한 장비를 쓰지 말도록 권유 또는 금지시키는 것이다.

제1장 임원(Officials)

제110조

국제임원(International Officials)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 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 (a) 조직대표
- (b) 기술대표
- (c) 의무대표
- || (d) 도핑방지대표
- (e) 국제기술임원
- (f) 국제경보경기심판원
- (g) 국제로드코스 계측원
- (h) 국제스타터
- (i) 국제사진판정심판원
- (j) 상소심판원단

각 항목에 임명되는 임원 수와 그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는 적용되는 IAAF(또는 대륙연맹AAA) 기술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와 (e)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IAAF가 광고분과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광고분과위원 임명은 규칙 제1조 1항 (c), (f) 및 (j)에 명시된 경기대회의 경우 해당 대륙연맹이, 규칙 제1조 1항 (b)에 명시된 경기대회는 해당 기관이, 그리고 규칙 제1조 1항 (d), (h) 및 (i)에 명시된 경기대회는 해당 IAAF 회원연맹이 결정 한다.

[주1-IAAF] 국제임원은 다른 임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임원복장 또는 기장(記章)을 착용해야한다.

[주2-IAAF] 위의 (c)부터 (j)까지의 국제임원은 적용되는 IAAF 정책에 따라 IAAF 레벨과 대륙 레벨로 분류될 수 있다.

본 규칙 또는 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IAAF 또는 대륙연맹에 의하여 임명된 각 임원의 여행비용과 숙박비용은 대회조직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준하여 임원 개개인에게 지불해야한다.

제111조

조직대표(Organisational Delegates)

조직대표는 항상 대회주최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IAAF(또는 대륙연맹이나 관련단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또한 필요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회원연맹 및 대회주최측의 임무와 재정적 책임에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한다. 조직대표는 기술대표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2조

기술대표(Technical Delegates)

기술대표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대회주최측과 연계하여 경기운영에 관련된 모든 기술적 준비가 IAAF 기술규칙 및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1일 경기대회(one day meetings)를 제외하고 기술대표는 ||

- (a) 경기일정표와 참가기준기록 제안서가 해당 대회주최측에 제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b) 경기에 사용될 용구의 목록 및 선수들이 자신의 용구 또는 제공되는 용구를 사용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승인한다.
- (c) 경기대회 전에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회원연맹에게 대회 기술규정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배포한다.
- (d) 육상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준비에 책임을 다한다.
- (e) 참가신청을 관리하며 기술적 이유 또는 규칙 제146조 1항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기술적인 사안 이외의 이유로 참가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IAAF 또는 해당 대륙연맹

또는 관련된 단체의 재정(裁定)을 받아야 한다)

- (f) 필드경기의 자격라운드 통과 기준기록과 트랙경기의 자격라운드 설정의 기준을 결정한다.
- (g) 모든 종목의 조편성과 추첨이 규칙과 기타 적용되는 기술규정에 준하여 시행되도록 하고, 모든 스타트리스트를 승인한다.
- (h) 요청이 있을 시, 기술회의 의장직을 맡으며 기술임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 (i) 경기대회 준비에 대한 서면보고가 경기대회 전에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고, 대회 종료 후 향후 대회를 위한 건의사항을 포함한 (대회실행) 결과보고가 제출되도록 한다.

1일 경기대회(one day meeting)에 임명된 기술대표는 대회주최측에 모든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며, (대회실행) 결과보고가 반드시 제출되도록 한다.

IAAF 기술대표 지침서(Technical Delegates Guidelines)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있으며,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주] 국내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소속지도자 또는 주최 측의 관계자는 기술대표로 선임될 수 없다.

제113조

의무대표(Medical Delegate)

의무대표는 :

- (a) 모든 의료적 사항에 대한 최종적 권한을 갖는다.
- (b) 의료적 진단, 치료 및 응급조치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경기 장소, 훈련 장소 및 준비운동장소에 갖추어져 있는지, 선수들의 숙박 장소에서 의료적 처치가 제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c) 규칙 제142조 4항에 준하여 진찰을 하고 진단서를 제공한다.
- (d) 경기대회 전에 선수의 경기참가를 철회시키거나, 경기 중 선수의 즉시적인 퇴장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주1-IAAF] 상기 (c)와 (d)항의 권한은 의무대표가 (또는 의무대표가 없는 경우) 대회주최측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인원은 전장이 식별할 수 있는 완장, 조끼 또는 기타 유사한 의류를 착용해야 한다.
- [주2-IAAF] 상기 (d)항에 따라 참가가 철회되거나 퇴장당한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결과에 DNS 또는 DNF를 표기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시에 불응하는 선수는 해당 종목에서 실격당한다.
- [주3-IAAF] 규칙 제113조 (d)에 따라 필드경기에서 참가가 철회되거나 퇴장을 당한 선수가 시기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결과에 DNS로 표기한다. 그러나 선수가 시기를 이행했으면 그 시기의 결과는 유효하게 되며 경기결과에도 분류해서 표기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시에 불응하는 선수는 해당 종목에서 실격당하며 이후 해당 종목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주4-IAAF] 규칙 제113조 (d)에 따라 혼성경기에서 참가가 철회되거나 퇴장을 당한 선수가 (혼성경기) 첫 번째 종목에도 스타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기결과에 DNS로 표기한다. 그러나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 스타트를 시도했었다면, 규칙 제200조 10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지시에 불응하는 선수는 해당 종목에서 실격당하며 이후 해당 종목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IAAF, 대회 관련 단체 및 대회주최측에게는 육상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 고려사항이다.

특히 의무대표(또는 의무대표나 대회주최측에서 지정한 인원)는 필요한 경우 선수의 경기참가를 의료적인 사유에 따라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무대표의 역할에 존경받고 자격있는 전문가를 배정하는 것은 이러한 핵심적인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의무대표나 의무대표를 대리하는 의사의 권한은 모든 종목에 적용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무대표(또는 의무대표를 대리할 수

있도록 인가된 담당 인원), 기술대표, 그리고 경기본부장 간에는 특히 스타트리스트, 경기결과, 경기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기 (c) 와 (d) 조항에 해당되는 임무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와 절차를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114조

도핑방지대표(Anti-Doping Delegate)

도핑방지대표는 대회주최측과 협력하여 도핑검사 시행을 위한 적절한 시설이 제공되도록 확인한다. 도핑방지대표는 도핑검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제115조

국제기술임원(ITOs) 및 국가기술임원(NIOs)

1. 기술대표는 사전에 관련 기관에 의해 ITO 주임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된 국제기술임원(이하 ITO)중에서 한 명의 ITO 주임을 임명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ITO 주임은 기술대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각 종목마다 적어도 한 명의 ITO를 임명하여야 한다. 각 ITO는 본인이 배정된 종목의 심판장이 된다.

[주] 본 연맹 및 전국연맹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에는 원칙적으로 NIO를 임명한다. NIO는 대회총무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며, IAAF의 ITO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2. 크로스컨트리, 로드러닝, 산악러닝 및 트레일러닝 대회에 임명된 ITO들은 대회주최측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신에게 할당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경기 현장에 있어야 한다. ITO들은 경기대회의 진행이 IAAF 규칙과 적용되는 규정, 그리고 기술대표가 내린 관련 결정 사항들과 완벽하게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ITO는 본인이 배정된 종목의 심판장이 된다.

IAAF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AAF ITO 지침서에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제116조

국제경보경기심판원(International Race Walking Judges) 및 국가경보경기심판원(National Race Walking Judges)

규칙 제1조 1항 (a)에 명시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임명되는 경보경기심판원은 IAAF 레벨의 국제경보경기심판원이어야 한다.

[주-IAAF] 규칙 제1조 1항(b), (c), (e), (f), (g) 및 (j)에 명시된 경기대회에 임명된 경보경기심판원은 IAAF 레벨 또는 대륙레벨의 국제경보경기심판원이어야 한다.

[주] 국가경보경기심판원(NRWJ)은 본 연맹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경기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본 연맹이 주최, 공동주최하는 경기 대회에서는 국가경보경기심판원(NRWJ) 또는 본 연맹이 임명한 경보경기심판원이어야 한다.

제117조

국제로드코스 계측원(International Road Course Measurer)

IAAF 규칙 제1조 1항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경기장 외에서 개최되는 로드 종목의 코스를 검증하기 위하여 1명의 국제로드코스계측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명된 로드코스계측원은 IAAF/AIMS 국제로드코스계측원 명부 (A급 또는 B급)에 등록된 계측원이어야 한다.

코스는 대회 전에 적절한 기간을 두고 미리 계측되어야 한다. 계측원은 코스를 점검하고, 해당 코스가 IAAF 로드레이스 규칙 (제240조 2항, 3항, 230조 11항 및 동항 [주-IAAF]를 참조)에 부합한다면 이를 인증한다. 또한, 세계신기록이 수립될 시에는 코스가 규칙 제260조 20-21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측원은 코스 준비와 관련해 대회주최측과 협력하고, 경기에서 선수들이 달리는 코스가 실제로 계측되고 공인된 코스와 동일한 코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진행을 관찰한다. 계측원은 기술대표에게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제118조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

(International Starter and International Photo Finish Judge)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장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경기대회와 국내경기대회에서 IAAF, 해당 대륙연맹 또는 담당기관은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을 임명한다.

|| 국제스타터는 기술대표가 할당한 경기종목의 스타트 업무(및 기타 임무)를 수행하며, 스타트정보장치의 작동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은 모든 사진판정관련 업무를 감독하며 사진판정심판원주임직을 수행한다.

|| IAAF 스타트 지침서와 IAAF 사진판독지침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며,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경기대회에서 사진판정심판원주임 역할을 하고, ITO들은 심판장 역할을 하는 반면, 국제스타터(IS)와 스타트 팀원 간에는 분명한 역할 구분이 있다. 국제스타터가 자신이 배정받은 레이스에서 스타터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모두 수행하지만, 그러한 경우든 기타 시점에선 스타트 심판장의 판단이나 결정을 기각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제119조

상소심판원단(Jury of Appeal)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와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일반적으로 3명, 5명 또는 7명으로 구성된 상소심판원단을 임명하여야 한다. 상소심판원 중 1명은 상소심판위원장이 되고, 다른 1명은 간사(Secretary)가 된다.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소심판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규칙 제230조와 관련된 상소가 있을 경우에는 상소심판원 중 적어도 1명이 IAAF(또는 대륙)레벨 경보경기심판원이어야 한다.

상소심판원은 자신이 속한 회원연맹의 등록선수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건과 관련된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상소심판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상소심판원이 이미 물러나지 않았을 경우, 심사에서의 탈퇴를 요청해야 한다. IAAF 또는 관련 단체는 상소에 참여할 수 없는 상소심판원을 대체할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 상소심판원을 임명해야 한다.

대회주최측이 올바른 경기진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기대회에서도 상기와 같은 상소심판원단을 임명한다.

상소심판원단의 주 임무는 규칙 제146조에 명시된 모든 상소와 대회 진행 과정에서 야기되어 회부된 문제를 처리하고 재결(裁決)하는 것이다.

제120조

경기대회임원(Officials of the Competition)

경기대회의 주최측은 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회원연맹 규칙에 해당하는 모든 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또한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인 경우, 관련된 단체의 규칙과 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아래에 제시된 임원은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할 임원이다. 그러나 대회주최측은 이를 경기대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운영임원 (Management Officials)

- 경기본부장(Competition Director) (제121조)
- 대회총무(Meeting Manager) 및 보조원 약간명 (제122조)
- 국가기술임원(NTO) : 2~5명 (트랙1, 도약1, 투척1, 경보1, 로드1)
- 기술총무(Technical Manager) 및 보조원 약간명 (제123조)
- 대회연출총무(Event Presentation Manager) (제124조)
- 상소심판원단 : 3 ~ 7명

경기임원 (Competition Officials)

- 소집실심판장
- 트랙경기심판장
- 필드경기심판장
 - 도약경기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투척경기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혼성경기심판장
- 경기장 외 종목 심판장
 - 경보경기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로드레이스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비디오판정 심판장
- 트랙경기심판원주임 및 심판원 약간명 (126조)
- 필드경기심판원주임 및 심판원 약간명 (126조)
 - 도약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국내대회시)
 - 투척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국내대회시)
- 혼성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로드레이스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 (국내대회시)
- 트랙경보경기심판원주임 및 보조원 약간명 및 심판원 5명 (230조)
- 로드경보경기심판원주임 및 보조원 약간명 및 심판원 8명 (230조)
- 기록원 계시판 운영원 등을 포함한 기타 경보경기임원 약간명 (230조)
- 감찰원주임 및 감찰원 약간명 (127조)
- 계시원주임 및 계시원 약간명 (128조)
- 사진판정심판원주임 및 보조원 약간명 (128조, 165조)
- 자동무선계시장치심판원주임 및 보조원 약간명 (128조, 165조)
- 스타트코디네이터, 스타터 및 리콜러 약간명 (129조)
- 스타터 보조원 약간명 (130조)
- 주회기록원주임 주임 및 기록원 약간명 (131조)
- 기록정보처리원 및 보조원 약간명 (132조)
- TIC 총무 및 보조원 약간명 (132.5조)
- 장내사령 주임 및 장내사령 약간명 (133조)

- 풍속측정원 약간명 (134조)
- 과학계측심판원주임 및 보조원 약간명 (135조)
- 소집실심판원주임 및 소집실 심판원 약간명 (136조)
- 광고위원 (137조)

기타임원 (Additional Officials)

- 아나운서
- 통 계 원
- 의사
- 선수, 임원 및 보도계 간사 약간명
- 선수계, 임원계, 보도계, 도핑검사계, 시설용기구계, 시상계, 조편성계, 서무계 및 보조원(각 약간명)

심판장과 심판원주임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복장 또는 기장(記章)을 착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조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임원 및 기타관계자들로 인해 경기장이 혼잡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1] 전국연맹(중고, 대학, 실업)이 주최, 주관하는 경기대회에서는 국가기술임원(NIO, National Technical Officials)을 임명하여 국제육상연맹의 ITO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단, 경기대회의 소속지도자 또는 주최, 주관측의 관계자는 국가기술임원 (NIO)으로 선임할 수 없다.

[주2]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스타터, 장내사령 및 의사는 뚜렷이 구별되는 완장 또는 기장을 착용한다.

[주3] 기타 임원은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운영임원에 포함시킨다.

경기임원에게 요구되는 임무가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하루 또는 연속적으로 며칠동안 진행되는 경기대회에서 하루에 장시간 경기가 진행되는 일정일 경우 경기임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수의 경기임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른 한편,

불필요한 인원에 의해 경기장이 붐비고 방해받지 않도록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는 많은 경기대회에서 현장 경기임원이 수행하던 과업이 테크놀로지(기술이나 기계)로 대체되고 있고, 논리적으로 예비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임원 선정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주(註)

육상경기의 심판장과 경기임원들은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육상경기장은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 투척된 무겁고 빠른 용구는 그 비행경로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든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트랙이나 도움닫기 주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 양방이 다칠 수 있다. 도약 종목에서는 선수가 예상치 못하거나 의도치 않은 형태로 착지를 할 수 있다. 기후나 기타 환경 조건들도 육상경기의 안전에 잠정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육상경기장 안이나 경기장소 근처 또는 훈련장소에서 부상(또는 때때로 치명적인 상해)을 입은 선수, 임원, 사진사 및 기타 인원들의 사례들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예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임원들은 항상 육상경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경기임원들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역할 외에도, 육상경기장이 더욱 안전하도록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모든 임원들은 경기장 내에 있을 시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나 상황을 목격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개입해야 한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기술규칙의 엄격한 준수보다 더욱 중요하다. 드문 경우지만, (안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에는 안전에 대한 고려가 선행해야 한다.

제121조

경기본부장(Competition Director)

경기본부장은 기술대표와 협의하여 경기 운영안을 계획하고, 기술 대표와 함께 이 계획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고 경기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대회 참가자간의 상호 작용(interaction)을 감독하며, 통신장치를 통해 모든 주요 임원들과 연락을 취한다.

제122조

대회 총무(Meeting Manager)

대회총무는 경기대회의 올바른 진행에 책임을 진다. 모든 임원들의 임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대리인을 임명하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원의 임무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임명된 장내사령과 협조하여, 오직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주-IAAF] 4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대회나 2일 이상 개최하는 대회에서는 대회총무를 보조할 수 있는 약간명의 대회총무보조원을 임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 국내경기대회에서는 대회규모에 따라 총무원을 두며, 대회총무의 임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한다. (예, 총무원, 관리사무 총무원)

대회총무는 경기본부장의 지휘 하에 기술대표의 지침과 결정을 준수하면서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낸다. 대회총무는 스타디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는 대회에 임명된 임원의 전체 명단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른 총무, 심판장, 심판원 주임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러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일부 심판원들이 전체 경기일정 내내 심판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대회총무는 필요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임원 명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임원이 배정받은 역할에 위치해 있더라도 대회총무는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임원을 대체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판원과 보조원들이 자신의 해당 경기 종목이 종료되거나 이후 관련 과업을 완수하면 즉각적으로 경기장소를 퇴장하게끔 해야 한다.

제123조 기술총무(Technical Manager)

기술총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장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a) 트랙, 필드경기의 도움닫기주로, 서클, 원호, 낙하구역각도(투척 경기)와 착지장소, 그 외에 모든 장비와 용구가 IAAF 규칙에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
- (b) 기술대표가 승인한 경기대회의 기술적, 조직적 계획에 따른 장비와 용구의 설치와 철거에 대한 책임.
- (c) 기술대표가 승인한 경기대회의 기술적, 조직적 계획에 따라 경기대회 장소의 기술적인 구조가 완비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
- (d) 규칙 제187조 2항에 준하여 경기대회에 사용 허가된 개인 투척용구에 대한 검사 및 표기에 대한 책임.
- (e) 규칙 제148조 1항에 따라서 경기대회 개시 전에 필요한 증명서의 존재유무에 대한 인지 또는 수령 확인에 대한 책임.

[주] 기술총무는 시설용기구계를 관할하며, 시설용기구계는 각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정비하여 해당경기 시작전에 배치하고 경기 종료 후에 회수한다.

기술총무는 경기본부장 또는 대회총무의 지휘 하에 역할을 하나 경험이 많고 능숙한 기술총무는 (경기본부장 또는 대회총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없이 자신의 역할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총무는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만약 심판장이나 필드경기 심판원

주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장소를 변경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반드시 대회총무에게 알리고, 대회총무는 기술총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심판장이 경기장소 변경(180조 20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회총무를 통해 기술총무에게 필요한 조치가 전달되도록 한다. 그러나 풍속이나 풍향이 경기장소 변경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본부장이 (또는 국제대회의 경우 기술대표가) 경기 중 사용될 경기용구 목록을 승인하고 나면 기술총무는 해당되는 용구들을 준비하고 주문하고 수령한다. 기술총무와 기술총무팀은 주의 깊게 (허용된 개인용구와 함께) 용구의 중량과 치수가 규칙에 부합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기술총무는 또한 새로운 기록이 수립되었을 시에 260조 17항 (d)가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준수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투척 용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대회주최측에 제공되는 용기구 범위와 해당 제조업체 정보에 대한 규칙 조항이 2017년부로 삭제되고, IAAF 공인시스템 관련 문서 상으로 이전되었다. 기술총무는 새로운 장비를 공급업체들로부터 받을 때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하나 경기대회 사용을 위해 제출된 용구가 이 지침의 용기구 범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 중량이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제124조

대회연출 총무(Event Presentation Manager)

대회연출 총무는 경기본부장과 함께 대회의 연출 준비를 계획하고, 조직대표 또는 기술대표와 협력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대회연출 총무는 경기본부장 및 해당 대표들과 함께 관련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계획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대회연출 팀원들과 상호 연락하기 위한 통신장치를 통해 팀원들 간의 소통을 감독하여야 한다.

대회연출 총무는 방송과 기타 가용한 기술(technology)장비를 통해 대중이 각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정보(스타트리스트, 구간통과기록 및 최종경기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각 종목의 공식결과 정보(순위, 시간, 높이, 거리 및 점수)는 입수되는 대로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규칙 제1조 1항 (a)에 준하여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IAAF가 영어 및 불어 아나운서를 임명한다.

대회연출 총무는 경기장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연출 측면에서 기획, 주도, 협조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에 있는 관중에게 이들을 통합된 쇼로 보여주어야 하는 임무도 있다. 이러한 연출의 최종 목표는 관중을 위한 정보력이 있고, 재미있으며(entertaining), 활기차고 매력적인 쇼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팀과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회연출총무(EPM)는 아나운서, 스코어보드 및 비디오보드 담당자, 음향 및 영상 기술자, 시상계 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팎에서 대회연출 관련 역할들을 담당하는 대회연출 직원의 활동을 조율하는 담당을 한다.

거의 모든 경기대회에서 아나운서는 필수적인 인력이다. 아나운서는 대회연출 총무(가 있는 경우) 또는 경기본부장 근처에 있거나 직접 연락이 되도록 하여 경기대회의 흐름을 적절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나운서에 대한 지침서는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제125조 심판장(Referees)

1. 소집실, 트랙경기, 필드경기, 혼성경기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개최되는 러닝 종목 및 경보경기 종목별로 적절하게 1명(또는 그 이상)의 심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1명(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판정심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스타트를 감독하기 위해

임명된 트랙경기심판장이 스타트심판장의 역할을 한다.

비디오판정심판장은 비디오판독실에서 근무하며 다른 심판장들과 상의하고 소통한다.

충분한 경기임원이 확보되어 레이스에 한 명 이상의 심판장이 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명은 스타트 심판장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이러한 경우에 스타트 심판장은 스타트와 관련하여 심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트랙 심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거나 그의 지시를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직 한 명의 심판장만이 특정 경기대회의 레이스를 모두 감독하도록 임명된 상황이라면, 그 심판장은 스타트 구역에 배치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며, 그는 (최소한 크라우치 스타트가 진행되는 종목에서라도) 각 스타트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목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AAF에서 승인한 스타트정보장치를 사용하면 이러한 절차를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IAAF 스타트정보장치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스타트 절차 (100m, 100/110mH, 200m의 경우) 이후 심판장이 피니시 라인 쪽에 위치할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장이 순위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우에 (스타터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스타트 코디네이터를 스타트 심판장 역할을 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2. 심판장은 경기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항의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과 본 규칙(또는 기타 적용되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기 도중(준비운동장, 소집실 및 경기 후 시상식까지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심판장은 심판원이나 감찰원으로서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나, 자신의 관찰을 토대로 규칙에 따라 처리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심판원의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주-IAAF] 본 규칙과 기타 적용되는 규정(광고 규정을 포함)의 목적을

위해, 시상식은 모든 관련 활동(사진촬영, 우승 후 트랙을 한 바퀴 도는 빅토리 랩, 관중과의 교류 등)이 완료되면 끝나게 된다.

심판장이 실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판원이나 감찰원의 보고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심판장은 항상 스스로의 관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상기 [주-IAAF]는 해당 종목을 담당하는 심판장이 그 종목의 시상식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활동들을 모두 포함해서 담당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시상식이 다른 장소나 다른 세션에서 진행되게 되면, 상식적으로 기존 심판장이 행사를 감독·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다른 심판장이 대체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트랙경기과 경기장 외 종목의 심판장은 이의가 제기된 순위에 대해서 심판원이 순위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만 순위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경보경기심판원주임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할권도 없다. 해당 트랙경기심판장은 IAAF가 승인한 스타트정보장치에 표시되는 명백한 부정스타트의 상황을 제외하고, 스타트팀이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스타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심판장이 어떠한 이유로도 장치가 제공한 정보가 확실히 부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제외다.
4. 해당 심판장은 모든 최종경기결과를 점검하고, 이의가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고, 과학계측심판원주임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와 협조하여 신기록의 계측을 감독하여야 한다. 해당 심판장은 각 종목의 경기가 끝나는 즉시 경기결과 기록카드를 점검하고 서명한 후, 기록정보처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5. 심판장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 또는 규칙 제144조, 제162조 5항, 제163조 14항, 163조 15항 (c), 180조 5항, 180조 19항, 230조 7항 (d), 230조 10항 (h), 240조 8항 (h)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경고를 주거나 경기에서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경고는 노란색 카드로, 퇴장은 붉은색 카드를 보여서 선수에게 알린다. 경고와 퇴장은 경기결과 기록카드에 기입하고, 이 사항을 기록정보처리원과 다른 심판장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징계 관련 상황의 경우, 소집실 심판장이 준비운동장에서 경기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술규칙 적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 종목과 관련된 심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당되는 심판장은 가능할 시 경기본부장과 상의 후 경기에 참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기 장소(또는 준비운동장, 소집실, 코치석 등 경기와 관련있는 장소)에서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선수에게 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조력을 제공하는 인원이 파악되면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주1-IAAF] 상황이 정당할 때, 심판장은 선수를 경고 없이 퇴장시킬 수 있다. (규칙 제144조 2항의 [주1AAFI]를 참조)

[주2-IAAF] 경기장 외 종목의 심판장은 가능하다면 (예 : 규칙 제144조, 제230조 10항 또는 제240조 8항) 선수에게 먼저 경고를 준 이후에 실격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심판장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규칙 제146조를 적용한다.

[주3-IAAF] 본 규칙에 의해 선수를 경기대회에서 퇴장시킬 때, 만약 심판장이 선수에게 노란색 카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심판장은 두 번째로 노란색 카드를 보여준 다음 바로 붉은색 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주4-IAAF] 만약 심판장이 이미 부과된 노란색 카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 노란색 카드를 보여준다면, 이 사실이 인지되는 순간 바로 붉은색 카드와 동일한 결과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관련 심판장은 신속하게 선수 또는 그의 팀에게 퇴장 조치를 알려야한다.

카드를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기록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가지 핵심적인 지침 사항을 제시한다 :

- (1) 노란색과 붉은색 카드는 모두 징계의 수단(125조 5항 및 145조 2항 등 참고) 또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예 : 레이스에서 심각하고 명백하고 의도적인 방해하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기술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로써 부과될 수 있다.
 - (2) 일반적으로 노란색 카드 제시 후에 붉은색 카드를 제시하나, 특별히 질이 나쁘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선수에게는 즉각적으로 붉은색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선수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상소심판원단에게 상소할 기회가 주어진다.
 - (3) 또한 노란색 카드를 보여주기에 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44조 2항의 [주-IAAF]는 144조 3항 (a)에서 명시하는 레이스에서 페이스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붉은색 카드 제시가 허용됨을 설명한다.
 - (4) 심판장이 노란색 카드를 제시했는데 선수가 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응했을 때에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어서 바로 붉은색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선수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히 다른 두 개의 시간대에 발생해야만 한다는 전제는 없다.
 - (5) [주3-IAAF]의 경우 심판장이 선수가 경기 중 이미 한 번의 노란색 카드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붉은색 카드를 제시하는 상황이면, 심판장은 먼저 (두 번째) 노란색 카드를 보여준 후 붉은색 카드를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장이 두 번째 노란색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붉은색 카드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6) 심판장이 사전에 선수가 노란색 카드를 한 번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란색 카드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이 인지되는 즉시 선수를 즉각적으로 실격시키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심판장이 선수에게 직접 실격을 통고하거나 해당 팀을 통해 실격을 알리게 된다.
6. 심판장은 (즉시 또는 항의를 고려할 때)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결정이 적용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개 그러한 결정에 대한 재고는 해당 종목의 시상식이나 또는 상소심판위원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본 규칙은 심판장이 상소심판위원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6조 9항)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심판장이 자신의 관찰에 따라 즉시적으로 내린 결정이나 선수의 항의를 고려하는 과정에 내린 결정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옵션은 특히 새로운 증거가 신속하게 제시되어 상소심판위원단에게 상소가 제기되는 복잡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고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제한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 해당 심판장의 판단으로 어떤 경기대회에서 어느 종목 또는 그 일부가 재경기를 요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심판장은 경기결과 또는 경기 일부의 결과를 무효로 선언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당일(當日)이나 또는 다른 날에 재경기를 진행한다. (146조 4항, 163조 2항 참조)

||

심판장과 상소심판위원단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이스를 완료하지 않은 선수는 다음 라운드 진출이나 재경기가 허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신체장애를 가진 선수가 대회에서 본 규칙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되는 심판장은 신체장애를 가진 선수가 동일한 종목에서 경기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어떠한 이점도 받지 않는 선에서 관련규칙(규칙 제144조 3항은 제외)의 변경과 적용을 허용하고 해당 선수의 참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심판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제는 상소 심판위원단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주-IAAF] 이 규칙은 특정경기 대회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시각장애 선수의 가이드 러너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규칙은 보행이 가능한 신체장애 선수들이 비장애 선수들과 함께 육상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팔 절단 수술을 받은 선수는 크라우치 스타트를 하는 동안 두 손을 지면에 대어야하는 162조 3항을 엄격히 준수할 수가 없다. 이 규칙은 스타트 심판장이 규칙의 해석에 따라 선수가 절단되고 남은 팔의 부분을 지면에 닿게 하거나 스타트라인 뒤 지면에 목재 블록이나 이와 유사한 물체를 두어 선수의 팔의 부분을 올려 놓을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팔이 완전히 절단되어 지면과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할 수 없는 선수의 경우 팔과 지면의 접촉 없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특정한 경기대회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칙이 가이드 러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심판장들이 본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144조의 항목들(특히 착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테크놀로지나 기기의 사용 - 인공기관(의족 등)이나 기타 조력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144조 3항 (c), (d) 참조)이 위반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선수와 비장애 선수가 같은 종목에서 같은 시간에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 규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경우 (규칙에 따라서 또는 심판장이 125조 8항에 대한 충분한 규칙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선수의 경기결과와는 별도로 작성되거나 또는 (동일한) 경기결과에 표기되어야 한다.(132조 3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선수명단과 스타트리스트, 경기결과에는 참가하는 장애선수의 IPC 분류등급을 항상 표기해주는 것이 유용하다.

제126조 심판원(Judges)

총 칙(General)

1. 트랙경기심판원주임과 필드경기종목별 심판원주임은 각 종목 심판원의 업무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대회주최측이 사전에 심판원에게 임무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기 각 주임이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2. 심판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재고할 수 있다.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정 결정을 심판장이나 상소심판원단에서 내릴 경우에는 해당 심판원들은 모든 관련 정보를 심판장이나 상소심판원단이 참조하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트랙경기 및 로드경기(Track Events and Road Events)

3. 심판원들은 트랙 또는 로드코스의 같은 쪽에 위치하여 선수의 피니시 순위를 판정한다. 심판원이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심판장에게 의뢰하여 판정을 구한다.

[주-IAAF] 심판원들은 피니시 라인에서 최소한 5m 떨어진 연장선상에 위치하여 피니시 라인을 잘 볼 수 있도록 계단식 스탠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필드경기(Field Events)

4. 심판원은 모든 필드경기에서 선수의 각 시기를 판정하고 기록하며, 유효한 시기는 계측한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 크로스바를 높일 때, 특히 신기록이 시도될 때는 정확한 계측을 하여야 한다. 최소 2명의 심판원이 모든 시기의 기록을 관리하고 각 시기의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해당 심판원은 유효시기는 흰색 깃발을, 무효시기는 붉은색 깃발을 들어 표시한다.

심판원은 보통 규칙 위반이 발생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수의 시기를 유효한 것으로 결정하고 흰색 깃발을 든다. 그러나 필드 종목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비디오판정 심판장이 임명되고 심판원이 의심이 들 경우에는 현장 심판장과 함께 비디오판정심판장의 자문을 듣기 전까지 깃발을 드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착지 흔적을 보존하거나 유효시기로 판정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기를 계속해야 한다. 대안적으로, 심판원이 확실히 의심이 들 경우에는 붉은색 깃발을 들고, 착지 흔적을 보존시키거나 시기를 계속한 후, 비디오판정심판장의 조언을 듣도록 한다.

필드경기 종목에서는 흰색 깃발과 붉은색 깃발 한 세트만 사용하여 시기의 유효성 선언에 있어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도약 종목에서는 깃발 한 세트 이상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평도약종목 경기에서 풍속을 나타낼 수 있는 스코어보드나 없는 경우에는 붉은색 깃발 외에 별도로 풍속초과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장비 등)를 구비해야 한다.

투척경기 종목에서는 :

- (a) 서클에 있는 심판원들이 깃발을 드는 심판원에게 무효 시기가 일어났음을 알릴 때에는 깃발 외 다른 형태(예: 작은 붉은색 카드)를 손에 들어 알리는 방법을 권장한다.
- (b) 경기용구가 섹터 라인 위에나 바깥에 착지하게 되는 경우에 깃발과 다른 형태의 신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예 : 심판원이 지면과 평행하게 팔을 들어보이는 방식 등)
- (c) 창 던지기의 경우 쇄로 된 창이 두부가 창의 다른 부분보다 먼저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 깃발과는 다른 형태의 신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예 : 심판원의 자유로운 손이 지면을 향해 펴는 동작)

제127조

감찰원(러닝 및 경보경기 종목)

(Umpires-Running and Race Walking Events)

1. 감찰원은 심판장의 보조원이므로 최종 판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
2. 감찰원은 심판장이 지정한 지점에서 경기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규칙 제230조 2항을 제외한) 규칙 불이행 또는 위반을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심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규칙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란색 깃발을 들거나 기술대표가 승인한 다른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해당 심판장에게 알려야 한다.
4. 릴레이레이스의 테이크오버존을 감찰하기 위해 충분한 인원의 감찰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주1-IAAF]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레인에서 달렸거나 릴레이 테이크오버가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감찰원은 즉시 위반행동이 일어난 트랙 지점에 적절한 물체로 표시하거나 서면상 혹은 전자적 수단에 유사한 표시를 해야 한다.

[주2-IAAF] 감찰원은 선수(또는 릴레이레이스일 경우는 팀)가 레이스를 피니시하지 않아도 규칙위반 사항을 심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감찰원주임은 (120조) 트랙 심판장의 보조 역할을 하며, 각 감찰원의 위치를 알리고, 감찰원들의 임무수행과 보고사항을 조율한다. 다양한 트랙경기 종목에 있어서 각 감찰원(감찰원 수에 따라)이 위치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표는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표는 하나의 참고 옵션임을 인지해야 하며, 필요한 감찰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대회총무가 트랙 심판장과 의 상의를 통해 경기대회의 수준, 엔트리 수 및 가용한 경기임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규칙 위반 표시(Indication)

관행적으로 합성트랙에서 실시되는 종목에서는 감찰원들에게 접촉성

테이프를 제공하여 규칙 위반이 발생하는 지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현재 규칙에서는 (상기 [주1-IAAF] 참조) 이러한 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중요한 점은 규칙 위반에 대한 보고를 특정한 방식으로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감찰원들은 선수나 팀이 레이스를 완주하지 않았다고 해도 규칙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을 항상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8조

계시원, 사진판정심판원 및 자동무선계시장치심판원 (Timekeepers, Photo Finish Judges and Transponder Timing Judges)

1. 수동계시를 할 경우, 계시원은 참가선수의 인원수에 따라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임명하여야 하며, 이중 1명이 계시원주임이 된다. 계시원주임은 계시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배정한다.
완전자동사진판독장치 또는 자동무선계시장치가 사용될 때, 이 계시원들은 예비계시원(Back-up Timekeepers)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계시원, 사진판정심판원 및 자동무선계시심판원은 규칙 제165조(계시 및 사진판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3. 완전자동계시 및 사진판독장치가 사용될 때에는 사진판정심판원 주임과 적절한 수의 보조원들을 임명하여야 한다.
4. 자동무선계시장치가 사용될 때에는 자동무선계시심판원주임과 적절한 수의 보조원들을 임명하여야 한다.

수동계시 지침서는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129조

스타트 코디네이터, 스타터 및 리콜러 (Start Coordinator, Starters and Recalls)

1. 스타트 코디네이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스타트팀 심판원에게 임무를 배정한다.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와 대륙선수권대회, 및 대륙종합경기대회(Games)의 경우, 기술대표가 국제 스타터에게 배정할 종목을 결정한다.
 - (b) 스타트팀 심판원이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감독한다.
 - (c) 경기본부장에게 스타트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스타터에게 스타트 절차 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완료된 것을 알린다.
(예 : 계시원, 심판원, 사진판정심판원주임, 자동무선계시원주임 및 풍속측정원이 준비 완료되었다는 뜻).
 - (d) 계시장치업체 기술담당원과 심판원간의 교섭 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 (e) 반응시간 및/또는 부정스타트 파형영상(波形 影像, waveform images)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포함한 스타트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한다.
 - (f) 제162조 8항 또는 제200조 8항 (c)의 규칙에 따른 결정 이후, 제162조 9항에 명시된 규칙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다.

스타트팀원들은 모두 규칙과 그 해석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스타트팀은 규칙을 적용할 시에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으로써 경기 진행에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스타트팀원들은 다른 팀원들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특히 스타터와 스타트 심판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스타터는 ‘제자리에’ 상태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 레이스를 보조하기 위해 스타트정보장치가 사용될 경우에는 ||

|| 규칙 제162조 6항을 적용한다.

스타터(그리고 리콜러)의 주된 역할/책임은 모든 선수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스타터는 스타트 동작 중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특히 계단식 스타트를 할 경우에는 각 개별 레인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선수들에게 스타터의 구령과 스타트 및 리콜 신호가 동시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IAAF] 스타터는 모든 선수들을 좁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크라우치 스타트(crouch starts)를
사용하는 경기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스타트 신호총
또는 승인된 스타트 신호장치가 작동되기 전에 차려
자세에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규칙상 모든 스타트 신호장치를
'신호총(gun)'이라고 한다.). 계단식 스타트로 진행하는
레이스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스타터는
자신과 각 선수간의 거리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서도록
한다. 그러나 스타터가 이러한 위치에 설 수 없는 경우
에는, 스타트 신호총을 그 지점에 설치하고 전기접촉으로
발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스타터의 구령은 모든 선수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스타터가 선수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스피커 장치가 없는 상황일 때는
소리 지르듯이 구령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스타터를 보조하기 위하여 1명 또는 그 이상의 리콜러를 배치한다.
[주-IAAF] 200m, 400m, 400mH, 4×100mR, 4×200mR, 메들리 릴레이
및 4×400mR에서는 최소 2명의 리콜러를 배치한다.

5. 각 리콜러는 자신이 담당한 선수를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6. 스타터 또는/그리고 각 리콜러는 규칙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신호기를 발사하여 레이스를 리콜하여야 한다. 스타트가 리콜되거나 중지된 후 리콜러가 관찰한 사실을 스타터에게 보고하여 스타터로 하여금 어떤 선수에게 경고 또는 실격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규칙 제162조 7항 및 제162조 10항 참조)
7. 규칙 제162조 7-8항, 200조 8항(c)에 규정된 경고와 실격은 스타터만이 결정할 수 있다. (제125조 3항 참조)

본 규칙과 규칙 제162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규칙 제125조 3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스타트와 심판장 모두가 스타트에 대한 책임이 있고 스타트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리콜러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며, 스타트를 리콜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단독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신의 관찰내용을 스타터에게 보고해야 한다.

IAAF 스타트 지침서는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130조 스타터 보조원(Starter's Assistants)

1. 스타터 보조원은 선수가 정해진 조(組) 또는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지와 선수표를 바르게 착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 스타터 보조원은 각 선수를 스타트라인 후방 약 3m지점의 집합선(계단식으로 스타트하는 레이스에서는 각 스타트라인의 후방에 집합)에 정해진 선수의 레인이나 위치에 집합시킨다. 집합이 완료되면 준비완료상황을 스타터에게 알린다. 스타트를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스타터 보조원이 다시 선수들을 집합선에 집합시킨다.
3. 스타터 보조원은 릴레이레이스의 제1주자에게 배부할 배턴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4. 스타터가 선수들에게 “제자리에”를 명했을 때 스타터 보조원은 규칙 제162조 3항과 4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 부정스타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타터 보조원은 규칙 제162조 9항에 준하여 진행한다.

[주] 스타터 보조원은 스타트라인 옆쪽에서 선수가 잘 보이는 장소에 위치한다.

제131조 주회 기록원(Lap Scorers)

1. 주회 기록원은 15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에서 모든 선수의 완료한 주회를 기록한다. 특히 5000m이상 레이스와 경보경기에서는 심판장 감독하에 약간명의 주회기록원을 배치하고 주회 기록카드를 배부 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선수의 각 주회의 시간을 기록하도록 한다 (시간은 공식계시원이 주회 기록원에게 통보한 대로 기록한다). 이러한 체계가 사용될 경우, 1명의 주회기록원은 4명 이하의 선수에 대하여 주회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경보경기는 6명이하). 수동주회기록 대신, 각 선수가 착용한 자동무선 계시장치(transponder)를 포함한 전산 주회기록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주회 기록원 1명은 피니시 라인부근에서 잔여 주회 수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관리한다. 잔여 주회 표시는 선두주자가 피니시 직선주로에 진입했을 때 바뀐다. 또한, 이 표시를 적절한 시기에 수동으로 한 바퀴 차이가 났거나 한 바퀴 차이가 날 선수에게 보여준다. 마지막 1주회는 일반적으로 종을 올려서 각 선수에게 알려준다.
[주] 800m 레이스에도 최종회에 종을 올린다.

주회기록원 지침서는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132조

기록정보처리원(Competition Secretary) 및 기술정보센터(Technical Information Centre)

1. 기록정보처리원은 심판장, 계시원주임 또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 또는 자동무선계시심판원주임 및 풍속측정원이 제공한 각 종목의 전체 경기결과기록을 모두 수집하여야 한다. 기록정보처리원은 즉시 그 자료를 아나운서에게 전달하고, 경기결과를 기록한 후 경기결과 기록카드를 경기본부장에게 전달한다.
전산경기결과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각 필드경기장에 있는 전산기록원이 각 종목의 전체 경기결과가 전산에 입력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랙경기 결과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의 지시하에 입력한다. 아나운서와 경기본부장은 컴퓨터를 통해서 경기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선수들이 각기 다른 규격/사양(투척용구 무게 또는 허들 높이 등)으로 경기를 하는 종목에서는 해당 규격/사양이 기록에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각 분류에 따라 별도의 기록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규칙 제1조 1항 (a) 외의 경기대회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선수의 동시참가를 허용할 경우에는 경기결과를 별도로 기재하고,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등급도 표시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으며 경기하는 경우 예. 가이드 러너(guide runner)

(b) 규칙 제144조 3항(d)에서 공인하지 않은 기계적 조력을 사용하는 선수

4. 스타트리스트 및 경기결과표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와 기호를 사용한다.

경기불참 - DNS

|| 중도기권 - DNF (러닝 또는 경보경기)

유효시기 기록 없음 - NM

|| 실격 - DQ (뒤에 해당되는 규칙 조항 표기)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 유효시기 - "O"

필드 종목에서 무효시기 - "X"

필드 종목에서 시기패스 - "—"

|| 필드 경기나 혼성경기에서 경기 퇴장 - r

트랙 종목에서 순위로 통과 - Q

트랙 종목에서 기록으로 통과 - q

필드 종목에서 기준기록 달성으로 통과 - Q

필드 종목에서 기준기록 미달로 통과 - q

심판장에 의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 - qR

상소심판원단에 의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 - qJ

무릎 굽혀짐 (경보) - >

두 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짐 (경보) - ~

노란색 카드 - YC

두 번째 노란색 카드 - YRC

붉은색 카드 - RC

|| 선수가 규칙 위반으로 실격을 당했을 때에는, 공식결과기록표에 위반이 적용된 규칙 조항이 참조내용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선수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실격을 당했을 때에는, 공식결과기록표에 그러한 실격의 사유가 표기되어야 한다.

규칙 제132조 2항·4항은 스타트리스트와 경기결과표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용어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2015년부터 설계된 것이다. 규칙 제132조 2항과 3항은 top level 이하의 많은 경기대회(일부 top level 대회)에서 자주 서로 다른 연령과 장애 등급의 선수들이 같은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상황들을 고려한 것이다. 본 규칙은 이러한 상황들이 수용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규칙이며, 이에 최소 선수 수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 260조 1항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경기결과가 공개/표시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실적이 규칙의 위반 또는 (행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결과에 실격의 사유가 항상 표기되어야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DQ 표시 옆에 항상 어떠한 규칙에 준하여 선수가 실격 당하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기술정보센터(TIC, Technical Information Centre)는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및 (g)에 명시된 경기대회에 설치하고, 2일 이상 개최되는 다른 대회에도 권장된다. TIC의 주요 기능은 경기에 관련된 기술적 사안과 기타 사안에 대하여 각 팀 대표단, 대회주최측, 기술대표, 대회운영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주] 경기결과 기록카드는 본 연맹의 지정카드를 사용한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TIC(기술정보센터)는 경기대회의 수준 높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TIC 총무(Manager)는 규칙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특정 경기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TIC 운영시간은 경기대회 시간과 경기 전후 다양한 그룹간의 (특히 팀대표단과 대회주최측 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큰 대회들은 TIC의 분과(예 : Sport Information Desk 등)를 선수촌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SID와 TIC 간에 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TIC와 SID 운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TIC 매니저에게는 (교대 임무를 할

수 있는) 다수의 보조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기술규칙에 TIC의 임무들이 일부 명시되어 있지만 (예 : 132조, 146조 3항, 146조 7항 등), 기타 임무들은 각 대회와 팀 핸드북과 같은 대회관련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133조 **장내사령(Marshal)**

장내사령은 경기장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경기임원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출입 허가를 받은 기타 관계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장내사령의 역할은 경기 직전 및 경기 진행 시간 동안 경기장소 입장을 규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본부장이 고안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하며, 더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회총무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 장내사령은 :

- (a) 선수, 임원, 현장 자원봉사자, 서비스 직원, 인가된 언론 사진기자 및 TV 인원 등의 경기장 입장을 통제한다. 각 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인원의 수는 사전에 협의되며, 이러한 인원들은 반드시 특수표를 착용해야 한다.
- (b) 선수들이 경기 종료 후 경기장을 떠나는 지점(보통 큰 대회에서 선수들이 믹스존이나 경기후구역으로 들어서는)을 통제한다.
- (c) 항상 관중과 TV의 경기장소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보장한다.

장내사령은 대회총무에게 항상 답할 수 있어야 하며, 대회총무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장내사령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장내사령과 장내사령의 팀(보조원)을 돕기 위해서 경기장소 입장이 허용된 선수 외의 인원들은 항상 특수표, AD 카드 또는 확연히 구별되는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제134조

풍속 측정원(Wind Gauge Operator)

풍속 측정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경기종목의 달리는 방향의 풍속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 및 서명한 후 기록정보처리원에게 전달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풍속 측정원, 기술총무 또는 사진판정심판원이 풍속측정계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러한 설치규칙(163조 10항, 184조 11항 참조)에 준하여 올바르게 진행/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심판장의 역할이다.

특히 트랙 경기에 있어서는 풍속측정계 운영이 원격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풍속측정계가 거의 항상 사진판독 및 경기결과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서 풍속측정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며, 풍속측정원의 임무는 예를 들면 사진판정팀원이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5조

과학계측심판원(Measurement Judge(Scientific))

전자 또는 비디오 거리계측기 또는 기타 과학계측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1명의 계측심판원주임과 1명 또는 그 이상의 보조원을 임명한다.

경기시작 전, 과학계측심판원은 관련 기술자들을 만나고 장비 사용법을 익힌다.

각 종목 경기 전, 과학계측심판원은 제조업체 및 장비 측정 실험실에서 제시한 기술적 필요사항들을 고려하여 계측장치의 설치장소 선정을 감독한다.

계측장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의 경기전후에 다수의 심판원과 함께 심판장의 감독 하에 일련의 계측결과가 공인된 강철제 줄자를 사용하여 계측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발급된 양식에 서명한 후 그 양식을 경기결과 기록카드에 첨부한다.

과학계측심판원은 경기 중에 계측장비 작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심판장에게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사진판독장치나 자동무선계시장치를 사용할 때와 유사하게 전자 또는 비디오 거리계측기를 사용할 때에는 한 명의 담당 심판원 주임이 배정된다. 비디오 거리계측기가 가동 중일 경우에는 (현장에 완전전자 거리계측이 사용되는 경우보다) 담당 심판원 주임이 경기진행 기간 동안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경기 심판원들과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는 심판원들 간 적절한 소통 체계(통신장치 등)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여 각각의 계측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고 수평도약종목에서는 비디오 판독 이미지가 확인되기 전에 착지 마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디오판독이 올바르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하는 인원이 계측심판원주임이든 다른 심판원이든, 담당 경기임원은 현재 계측되는 시기가 이전 시기의 것이 아니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6조

소집실 심판원(Call Room Judges)

소집실심판원주임은

- (a) 경기본부장과 함께 소집실 일정표를 준비하고 공표한다. 이에는 최소한 각 종목에 해당하는 각 소집실의 첫 번째 및 최종 입장 시간이 표기되고, (마지막) 소집실에서 경기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표기되어야 한다.
- (b) 소집실에서 소집을 마친 선수가 경기 시작시간에 맞춰 경기장소에 준비된 상태로 위치할 수 있도록 준비운동장(warm-up area)에서 경기장으로의 이동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소집실 심판원은 선수들이 소속 국가의 관리기관이 공인한 국가 또는 클럽 유니폼을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중립선수(Neutral Athletes)의 경우 IAAF에서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며, 선수의

선수표 부착상태 및 (선수표 번호의) 참가선수 명단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경기화, 스파이크 수와 규격, 의복 및 선수 가방에 부착된 광고가 IAAF/KAAF 규칙과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지 않은 물건을 경기장 내로 소지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기타 발생하는 미해결 사항과 문제를 소집심판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비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선수의 소속국가 통합단체(국가연맹)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가 또는 클럽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43조 참조)

잘 계획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소집실은 경기대회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소집실의 수용인원이 최대인 시점에 소집실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몇 개의 소집실 (또는 각 소집실 내 다수의 섹션들)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경기임원들과의 소통체계를 보장하고, 워업장소에서 선수들이 소집을 언제해야 하는가를 통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고려사항은 경기대회의 종류, 소집실내 검사하는 항목의 수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학교간 대항 대회들에서는 유니폼 상의 광고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은 아닌 반면, 트랙 지면의 보호를 위해 스파이크 길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계획 단계에서 (소집실에서) 어떠한 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사전에 선수들과 팀에 통고하여 경기 직전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집실 심판원들은 선수들이 올바른 조, 레이스 또는 그룹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소집실 일정표(Call Room Schedule)에 따라 적시에 경기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소집실 일정표는 각 경기일의 시작 전에 선수 및 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제137조

광고위원(Advertising Commissioner)

임명된 광고위원은 현행 IAAF/KAAF 광고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하고 감독하며, 소집심판장과 함께 소집실에서 발생하는 광고에 관한 미해결 사항 또는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제2장 경기대회 일반규칙(General Competition Rules)

제140조

육상경기 시설(The Athletics Facility)

트랙 및 필드경기는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의 지침과 KAAF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단단하고 균일한 표면의 육상경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실외 경기대회는 현재 유효한 IAAF 1급 육상경기시설 공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설에서만 개최하여야 한다. 상기 시설이 있다면 IAAF 규칙 제1조 1항 (b)-(j)에 명시된 실외 경기대회도 이 시설에서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 (b)-(j)에 명시된 실외경기대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IAAF 2급 육상경기시설 공인증이 필요하다.

[주1-IAAF]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는 트랙계측과 마킹에 대한 상세한 도면을 포함하여 트랙과 필드 시설의 계획과 건설에 필요한 상세하고 명확한 세부설명이 실려 있다. 이는 IAAF 사무국을 통해 입수하거나 IAAF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2-IAAF] 공인체계절차(Certification System Procedures)와 공인신청 및 시설계측보고서의 현 표준 서식은 IAAF 사무국을 통해 입수하거나 IAAF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주3-IAAF] 로드경보경기, 로드러닝 또는 크로스컨트리, 산악, 트레일 코스에 대해서는 규칙 제230조 11항, 제240조 2-3항, 제250조 1~3항, 제251조 1항 및 제252조 1항을 참조

[주4-IAAF] 실내육상경기시설에 대해서는 규칙 제211조를 참조

제141조

연령 및 성별 분류(Age and Sex Categories)

연령 그룹

1. 본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경기대회는 다음과 같은 연령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 U-18 남·여 : 경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만 16세 또는 17세가 되는 선수
- U-20 남·여 : 경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만 18세 또는 19세가 되는 선수
- 마스터 남·여 : 만35세 생일에 도달한 선수

[주1-IAAF] 마스터즈경기대회에 대한 기타 모든 사안은 IAAF와 WMA가 승인한 IAAF/WMA 핸드북을 준용한다.

[주2-IAAF] IAAF 경기대회 참가자격은 참가 최소 연령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기술규정에 의거한다.

2. 선수가 위에 정의된 연령그룹에 해당할 경우, 그 선수는 해당 연령그룹 경기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고 대회 규정에 준하는 유효한 여권 또는 다른 종류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연령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주-IAAF] 규칙 제141조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규칙 제22조 2항을 참조

141조 1항이 특정한 방식으로 연령그룹을 규명하지만, 실제로 각 경기대회에서 어떠한 연령그룹이 적용되는지와 상기 [주2-IAAF]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더 어린 연령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해당 대회의 기술규정에서 명시하는 바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성별 분류

3. 본 규칙에 준하여 진행되는 경기대회는 남자, 여자, 그리고 일반(universal) 등급으로 구분된다. 남녀 혼합 경기가 경기장 밖에서 운영되거나 규칙 제147조에 명시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진행될 때는,

경기결과는 남자 등급과 여자 등급으로 구분되어 공표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 하나의 일반(universal) 종목이나 일반(universal) 경기대회가 운영될 때는 단일 등급의 결과만 공표하여야 한다.

4. 법에 따라 남성으로 인정되는 선수는 남자 (또는 일반) 경기대회 참가자격이 있으며, 본 규칙과 규정에 준하여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5. 법에 따라 여성으로 인정되는 선수는 여자 (또는 일반) 경기대회 참가자격이 있으며, 본 규칙과 규정에 준하여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6. IAAF 집행이사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해서 여자경기 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승인해야 한다.
 - (a)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 선수
 - (b) 남성호르몬 과다(Hyperandrogen)를 보유한 여자 선수.
 적용되는 해당 규정을 불이행하거나 이행 거부하는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주-IAAF] 규칙 제141조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규칙 제22조 2항을 참조

[주] 본 연맹이 인정하는 연령 그룹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남·여 : 13세 이하 재학생
- 중 학 교 남·여 : 16세 이하 재학생
- 고등학교 남·여 : 19세 이하 재학생
- 마스터 남·여 : 만 35세 생일에 도달한 선수

일반(universal) 경기대회는 남자와 여자가 경기결과의 구분 등급 없이 함께 참가하는 종목들을 포함한다. 이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팀에 속하여 참가하는 릴레이나 팀 종목도 포함된다.

제142조 참가신청(Entries)

1. IAAF/KAAF 규칙에 따라 개최되는 경기대회 참가는 IAAF/ KAAF 참가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선수들에게만 제한된다.
2. 선수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은 규칙 제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선수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술대표에게 제기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선수자격은 인정된다 (규칙 제146조 1항 참조).

동시참가신청(Simultaneous Entries)

3. 선수가 동시에 트랙과 필드경기의 2종목에 참가하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2종목 이상의 필드경기에 참가할 경우, 해당 심판장은 선수가 하나의 시기라운드에서 1회 또는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각 시기에 있어서 경기대회 시작 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자신의 시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선수가 특정 시기에 나타나지 않아 그 시기에 허용된 시간이 경과되면 그 시기는 패스한 것으로 간주한다.
|| [주-IAAF] 필드경기에서, 심판장은 선수가 최종 라운드에서 시기를 순서에 맞지 않게 이행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 이전 라운드 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 혼성경기에서는
|| 어느 시기 라운드에서든 순서 변동을 허용할 수 있다.

상기 [주-IAAF]는 다른 종목과의 충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라운드(시기의 라운드 수와 관계없이)에서 선수가 시기 순서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최종 라운드에서 선수가 경기장소에 있지 않고 사전에 자신이 시기를 패스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시기 허용시간은 주어진 시간대로 진행될 것이며 만약 선수가 시기 허용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시기를 패스한 것으로 기록한다. [또한 180조 18항의 어떠한

시기의 라운드에서도 대체 시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보통 시기 순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내용도 참고

경기참가 불이행(Failure to Participate)

4.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선수는 릴레이레이스를 포함한 그 이후의 모든 종목(동시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경기 종목을 포함하여)에서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a) 최종참가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
[주IAAF] 경기참가 최종참가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b) 어느 종목의 자격라운드를 통과한 선수가 그 다음 라운드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

(c) 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은 경우. 이 사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심판장이 내릴 것이며 관련사항을 공식 경기결과 기록에 남겨야 한다.

[주IAAF] 규칙 제142조 4항 (c)에서 예견된 상황은 혼성경기의 개별종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선수가 이전의 라운드에 참가 후 또는 참가 최종참가확인을 한 후 경기 참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규칙 제113조에 따라 임명된 의무 대표 또는 의료 대표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대회주최측의 의료 임원이 선수를 진단하여 발급한 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타당한 근거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있는 다른 종목(혼성경기의 개별종목은 제외)에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정당한 이유(예 : 공식적인 교통 수단의 문제와 같은 선수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한 요소들)는 경기본부장(국제경기대회에서는 기술 대표)의 확인 후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당 심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후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가 성실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경기결과에 “DNF 규칙 142조 4항 (c)”를 표기하여 이에 대한 참고내용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심판장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발생한 항의에 대해 상소심판원단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선수나 그를 대표하는 인원이 제시하는 경기참가 철회나 경기 불참에 대한 사유도 고려해야 한다. 상기 규칙은 의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소집 불이행(Failure to Report to the Call Room(s))

5. 제142조 4항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와 관련하여, 공표된 소집실 시간표에 따른 시간에 해당 종목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소집실에 소집 시간에 위치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참가로부터 제외(제138조 참고)되어야 하며, 경기결과표에는 DNS로 표기한다.

해당되는 심판장은 이에 대한 결정(또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선수에게 항의 중 경기참가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반드시 해당되는 내용을 공식결과에 참고로 표기해야 한다.

기타 정당한 이유(예 : 공식적인 교통 수단의 문제나 공표된 소집실 시간표의 오류 등과 같이 선수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한 요소들)는 경기본부장(국제경기대회에서는 심판장)의 확인 후 받아들여지게 되면 선수의 경기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제143조

경기의복, 경기화 및 선수표(Clothing, Shoes and Athlete bibs)

경기의복(Clothing)

1. 선수는 모든 경기에서 청결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된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의복은 젖어도 속이 비치지 않는 옷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수는 심판원의 시각을 방해하는 의복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선수의 경기복 상의는 앞과 뒤의 색이 동일해야 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및 (g)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

및 규칙 제1조 1항 (d)와 (h) 하에 회원연맹을 대표하는 경우에 선수들은 소속국가의 기관이 공인한 획일적인 의복을 착용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또한, 제1조 1항 (a), (b), (c), (f) 및 (g)에 명시한 경기대회에서 중립선수들은 IAAF가 승인한 획일적인 의복을 착용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시상식과 “영예의 랩(lap of honour)”을 할 때도 적용된다.

[주-IAAF] 대회의 관련단체는 해당대회 규정에 경기복 상의 전면과 후면의 색깔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할 수도 있다.

[주] 국내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소속단체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시상식과 “영예의 랩(lap of honour)”을 할 때에도 적용된다. 릴레이레이스에서 각 팀 선수들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기화(Shoes)

2. 선수는 맨발로 경기에 참가하거나 한쪽 또는 양쪽 발에 경기화를 신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화를 신는 목적은 발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며 지면을 힘차게 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선수에게 어떤 부당한 조력이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경기화가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육상경기의 보편성 정신에 입각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경기화는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선수)이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1-IAAF] 본 규칙의 일반적 원칙에 준하여 특정 선수의 발에 맞도록 제작된 경기화는 허용된다

[주2-IAAF] 경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종류의 경기화가 본 규칙이나 그 정신에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가 IAAF에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IAAF에서는 해당 경기화를 조사하고 규칙에 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경기화 종류의 (경기 중)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스파이크 수(Number of Spikes)

- 경기화의 밑창과 뒷굽은 최대 11개 이내의 스파이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스파이크 수가 11개 이내라면 몇 개라도 상관없으나 스파이크 위치는 11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스파이크 규격(Dimensions of Spikes)

- 밑창이나 뒷굽에서 돌출된 스파이크 길이는 9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높이뛰기와 창던지기 경기에서는 12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스파이크는 끝에서부터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한 변이 4mm인 정사각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만약 트랙제조사 또는 경기장 운영측에서 더 낮은 허용한도(최대치)를 지시하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IAAF] 지면은 본 규칙이 허용하는 스파이크(규격)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밑창과 뒷굽(The Sole and the Heel)

- 밑창 밑/또는 뒷굽에는 골이나 융기물, 톱니모양, 돌기물이 있더라도 무방하나, 이러한 모양들은 밑창의 재료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높이뛰기와 멀리뛰기에서는 밑창두께가 13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뛰기에서 뒷굽은 19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타 다른 종목에서의 밑창 밑/또는 뒷굽의 두께에 제한이 없다.

[주-IAAF] 밑창과 뒷굽의 두께는, 위에서 언급된 특징과 어떤 종류나 형태의 안쪽 밑창을 포함해서, 안쪽 상단과 바깥쪽 하단 사이의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경기화 삽입물과 부착물(Inserts and Additions to the Shoe)

- 선수는 경기화의 안팎을 막론하고, 밑창의 두께가 상기 5항에서 명시한 허용한도(최대치)를 초과하여 밑창 두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전향에서 명시한 경기화의 종류로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떠한

이익이라도 줄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선수표(Athlete Bibs)

7. 경기 중, 모든 선수는 2개의 선수표를 가슴과 등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단, 도약 종목에서는 가슴이나 등 중 어느 한쪽에만 선수표를 부착하여도 된다. 어떠한 또는 모든 표기 번호 대신 선수 이름이나 기타 적절한 표식도 허용된다. 만약 번호를 사용한다면 스타트리스트 또는 프로그램에 기재된 선수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경기 중에 트레이닝복을 입는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트레이닝복에도 선수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상기 명시된 선수표 그리고/또는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선수는 어떠한 경기에도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9. 선수표는 배포된 형태로 부착하여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자르거나 접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장거리 레이스의 경우, 공기 유통을 위해 선수표에 구멍을 뚫어도 좋으나 이로 인해 선수표의 글자나 숫자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10. 사진판독장치가 사용되는 경기대회의 대회주최측은 선수의 경기복 하의 또는 하반신의 측면에 접착성 형태의 번호표(추가 번호표식)를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11. 만약 선수가 본 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준수하지 않으며, 그리고;
 - (a) 규칙 준수를 요구하는 해당 심판장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 (b) 경기대회에 참가 한다면,
 그 선수는 실격되어야 한다.

143조 11항은 규칙 제143조가 불이행 되었을 시의 제재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해당 경기임원들은 선수가 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독려해야 하며, 규칙 불이행에 따른 결과 또한 충고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선수가 경기 중에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경기임원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실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스타터보조원과 감찰원(트랙과 경기장 외 감찰원 모두), 그리고 필드경기 심판원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어떠한 규칙 위반 사항도 해당 심판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144조

선수에 대한 조력(Assistance to Athletes)

의료진단 및 조력(Medical Examination and Assistance)

1. 경기장소 내에서는 대회주최측이 임명하고 식별할 수 있는 완장, 조끼 또는 유사한 의류를 입은 공식 의무요원이 진단/치료 그리고/또는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경기장소 밖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위해 의무대표 또는 기술대표가 승인한 의료팀원이 진단/치료 그리고/또는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의료적 개입이 경기대회의 진행 또는 지정된 순서에 따른 선수의 시기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 경기대회 직전이나, 선수가 소집실을 떠난 이후, 또는 경기 중에 이러한 서비스 또는 조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조력으로 간주된다.

[주-IAAF] 보통 물리적인 장애물로 구분되는 경기구역은 본 규칙의 목적 하에 경기가 진행되고 해당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인가된 참가선수와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구분된다.

2. 심판장은 경기 진행 중 경기장소 내에서 조력을 주거나 받는 선수(제163조 14-15항, 230조 10항, 240조 8항 포함)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향후의 반복행위가 적발될 시 그 경기종목에서 실격된다는 주의를 구두로 통보한다.

[주-IAAF] 규칙 제144조 3항(a)에 해당 되는 상황일 경우, 경고 없이 실격이 부과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조력 (Assistance not Allowed)

3.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은 조력으로 인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a) 동일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또는 한바퀴 뒤쳐졌거나 뒤쳐지려는 선수에 의해, 또는 (규칙 제144조 4항(d)에서 허용하는 기술장비 제외) 어떠한 기술적인 장치로 경기 중에 페이스 도움을 받는 경우.
- (b) 비디오 녹화기, 라디오, CD, 무선송신기, 휴대전화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경기장내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 (c) 규칙 제143조를 준수하는 경기화를 제외하고, 규칙에서 명시하거나 허용하는 장치의 사용을 통해서 얻은 수 없는 이득을 획득하게 하는 기술이나 장치의 사용
- (d) 선수가 모든 가능성/증거를 고려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기계적 조력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보다 자신에게 전체적인 (경기상의) 경쟁적 이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기계적 조력도 허용되지 않는다.
- (e) 경기임원이 자신의 현재 (경기대회상) 임무와는 관련이 없거나 요구되지 않는 임무임에도 제공하는 조언이나 기타 지원 (예 : 지도 조언, 수평도약에서 실격을 알려주는 경우를 제외한 도약 종목에서의 발구름 지점을 알려주는 행위, 레이스에서 시간 또는 거리 차이를 알려주는 행위, 등등).
- (f) 선수가 레이스에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 주는 경우만 제외하고) 달리는 방향으로의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조력을 받는 경우

허용되는 조력 (Assistance Allowed)

4.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은 조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허용된다.

- (a) 선수와 경기장소 밖에 있는 코치와의 대화.
이런 소통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각 필드경기가 실시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스탠드의 자리를 『코치석』으로 확보해 놓는다.

[주-IAAF] 규칙 제230조 10항과 제240조 8항에 명시된 내용에

- || 준하는 코치나 기타 관계자도 선수와 대화할 수 있다.
- (b) 규칙 제144조 1항에 준하여 이미 경기장소에 들어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거나 또는 계속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진단/처치 및/또는 물리치료
- || (c) 보호 및/또는 의료상의 목적을 위한 개인 보호물(예 : 밴드, 테이프,
벨트, 지지대, 손목쿨러(wrist cooler), 호흡보조용품 등).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 대표와 함께 특정 상황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다. (규칙 제187조 4.5항 참조)
- (d) 심박수 측정기, 속도·거리 모니터, 스트라이드 센서 또는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휴대하는 유사한 장치. 이러한 장치가 기타
관계자와의 통신수단으로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된다.
- (e) 필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그를 대신해 누군가가 경기장소
밖에서 기록한 자신의 이전 시기(들)의 화면을 보는 것 (규칙
제144조 1항 주 참조). 재현 장치 또는 이 장치로 촬영한
화면을 경기장소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 || (f) 공식공급소(official stations) 또는 해당 심판장이 승인한 기타
시기에 선수에게 제공하는 모자, 장갑, 신발 및 기타 의류
물품

육상경기가 운영되는 방식, 코치의 역할 존중, 혁신과 새로운 제품의
운영 등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 제144조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변경을
거쳐왔다. IAAF에서는 육상 행사와 경기대회 동안 발생한 포편적인
현상이 되는 새로운 제품과 동향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본 규칙에 대한 변경은 선수들의 경기참가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고
선수/코치와 경기임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규칙의 조항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동시에 경기대회가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44조 3항(e)는 경기임원들이 자신이 배정받은 역할을 넘어서 선수들에
대한 조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이에는 예를 들어

도약경기에서 경기임원이 선수의 발구름시 접촉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단, 수평도약 종목에서 파울이 났을 때 선수의 발이 접촉(파울)한 지점을 알려주는 것만 예외가 된다.

제145조

실격의 결과(Effect of Disqualification)

기술규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실격 (125조 5항 및 162조 5항 제외)

1.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62조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기술규칙 위반으로 그 경기에서 실격되었을 경우, 그 경기종목의 동일 라운드에서 실격될 때까지 수립된 어떠한 기록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경기종목의 이전 라운드에서 수립된 기록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실격은 그 경기대회에서 선수가 그 이후의 종목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시키지는 않는다.

규칙 제125조 5항 (및 162조 5항)에 따라 발생한 실격

2. 만약 선수가 규칙 제125조 5항에 따라 퇴장 당하게 되면, 그 선수는 해당 종목에서 실격된다. 만약 선수의 두 번째 경고가 다른 종목에서 발생하였다면, 선수는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종목에서만 실격된다. 이러한 경우, 그 경기종목의 동일 라운드에서 실격될 때까지 수립된 어떠한 기록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경기종목의 이전 라운드나 이전 다른 종목에서의 기록 및 이전 혼성경기의 개별종목에서 수립된 기록은 인정된다.
3. 만약 선수의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기본부장이 선수에 대한 추가적 징계를 고려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

항의 및 상소(Protests and Appeals)

1.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자격에 대한 항의는 반드시 대회 시작 전에 해당 경기연맹 또는 참가소속단체가 문서로써 대회총무에게 제기해야 한다. 대회총무가 결정을 내린 후, 상소심판원단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의한 문제가 대회 시작 전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선수는 일단 ‘항의중’의 상태에서 경기참가가 허용되고 그 문제를 본 연맹 경기위원회에 회부한다.

|| [비고] 국제경기대회에서는 기술대표에게 제기해야하고 항의 중의 선수문제는 관련 단체에게 회부한다

2. 경기결과 또는 경기진행에 관한 항의는 해당 종목의 경기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 30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회주최측은 모든 결과의 발표시각을 정확하게 기록해 둘 책임이 있다.
3. 모든 항의는 선수 자신이나 선수대리인, 또는 팀을 대표하는 임원이 심판장에게 구두로 제기하여야 하며,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 또는 팀은 만약 그들이 항의(또는 그 이후의 상소)와 관련된 종목의 동일라운드 (또는 팀의 점수에 영향이 미치는 경기에 참가하고 있을 경우)에서 경기하고 있을 경우에만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장은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공식 비디오녹화기(VIR)로 촬영된 비디오 영상과 사진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활용가능한 증거물 또는 기타 활용가능한 비디오 증거물을 참고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직접 항의에 대한 판정을 내리거나 또는 상소심판원단에게 이를 회부할 수 있다. 항의 제기자는 심판장이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도 상소심판원단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심판장에게 직접 항의 제기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술정보센터 (국내경기대회에서는 대회총무)를 통해 심판장에게 항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4. 트랙경기에서는
 - (a) 선수가 부정스타트 판정에 대하여 즉시 구두로 항의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트랙경기심판장이 (부정스타트 여부)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자신의 재량으로 선수가 ‘항의 중’의 상태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트랙경기심판장이 어떠한 이유로 IAAF가 승인한 스타트정보장치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치에 의해 탐지된 부정스타트에 대해 항의 중인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항의는 스타터가 부정스타트를 리콜하지 못한 경우나 규칙 제162조 5항에 따라 스타트를 중단하지 못한 경우에 근거할 수도 있다. 항의는 오직 레이스를 끝낸 선수 자신 또는 그 선수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만약 그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부정스타트를 했다고 인정되거나 스타트가 중단되었어야 하는 행위를 한 선수, 그리고 규칙 제162조 5항, 7항, 8항 또는 제200조 8항(c)에 따라 경고나 실격의 대상이 되는 선수는 경고를 받거나 실격된다. 경고나 실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심판장은 해당 경기 또는 경기의 일부를 무효로 선언할 권리와 타당하다고 판단할 시 재경기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주-IAAF] 스타트정보장치의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제146조 4항 (b)와 관련된 항의와 상소의 권리는 적용된다.

- (c) 만약 레이스 종료 후, 선수가 부정스타트에 의해 부적절하게 퇴장(실격)당한 경우에 대한 항의나 상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선수에게는 혼자서 해당 종목 경기에 참가하여 시간을 기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심판장이나 상소심판원단이 특수한 상황(예 : 다음 라운드 전까지 시간이나 레이스 시간 부족 등)에 따라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어떠한 선수도 모든 라운드에 참가하지 않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는 없다.

[주-IAAF] 심판장이나 상소심판원단은 기타 상황에 있어서도

||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3조 2항 참조)

부정스타트에 대한 선수의 즉각적인 구두 항의에 대해서 심판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모든 가능한 정보를 검토하고 오직 선수의 항의가 유효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에만 ‘항의 중’ 경기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경기종료 직후, 심판장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사항은 상소심판원단에게 상소될 수 있다. 그러나 선수의 부정스타트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스타트정보장치에 의해 감지된 것이라면 심판장은 선수가 항의 중 경기참가를 진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각적인 관찰에 따라 선수가 부정스타트를 행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선수의 항의를 허용해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이다.

본 규칙은 스타터가 부정스타트를 리콜하는 것에 실패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터가 올바르게 스타트를 ‘중단’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심판장은 특정 상황에 연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반드시 레이스(또는 그 일부)가 재경기를 치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자면, 마라톤에서 리콜되지 않은 부정스타트의 대상이 되는 선수가 피니시를 했다고 해서 재경기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 아마도 단거리 종목에서는 리콜되지 않은 부정스타트를 한 선수가 스타트 자체와 다른 선수들의 이후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일 것이다.

반면에 예를 들어 자격라운드에서나 혼성경기의 한 레이스에서 부정스타트를 리콜하지 못하거나 스타트를 취소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해당되는 선수들에게만 재경기를 부여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 하에 진행할 지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

146조 4항 (c)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스타트 신고를 받고 레이스에서 퇴장당한 선수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5. 필드경기에서, 선수가 무효시기 판정에 대해 즉시 구두항의를 할 경우, 해당 경기의 심판장은 판정이 불확실하다고 의심이 들 경우 모든 관련된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시기를 계측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무효시기 결정에 대한 항의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을 경우,

- (a) 참가선수가 8명을 초과한 수평필드경기 시기의 첫 3회 라운드 중에 발생하였고, 그 항의 또는 그 후의 상소가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 선수가 시기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b) 만약 항의 또는 그 후의 상소가 인정될 경우에만 선수가 더 높은 높이를 시도할 수 있는 수직필드경기의 경우,

해당 경기의 심판장이 (무효시기 결정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관련된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항의를 제기한 선수가 “항의중” 경기를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심판장이, 특히 자신의 관찰 또는 비디오판정심판장의 조언을 통해, 심판원들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할 경우에는 선수의 “항의 중” 경기참가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즉각적인 구두항의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대한 계측 지시 여부를 고려할 때에 심판장은 :

- (a) 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계측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멀리뛰기에서 해당 선수의 시기에서 점토판에 분명한 흔적이 남은 경우나 투척 종목에서 투척 용구가 분명히 섹터 밖에 착지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b) 만약 무효시기 결정이 불확실하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경기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당 시기에 대한 계측을 지시한다.

본 규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스파이크(spike)나 프리즘(prism)을 든 심판원은 빨간색 깃발이 들려도 (투척 종목에서 용구가 분명하게 섹터 밖에 착지한 경우만 제외하고) 항상 (낙하) 지점을 마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선수가 즉각적인 구두 항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외에도 깃발을 드는 심판원이 실수로 또는 부정확하게 다른 깃발을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항의된 선수의 기록과 선수가 ‘항의 중’ 상태로 수립한 기타 기록은 오직 심판장이 그에 대한 유효판정을 내리거나 상소심판원단에게 제기된 상소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유효처리를 한다.

146조 6항은 필드 종목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적용된다. 그러나 필드경기에서 항의 중 경기를 하는 선수에 의해 다른 선수가 경기를 지속하게 된 경우, 이 선수의 기록과 최종 결과는 즉각적 구두 항의를 한 선수에 대한 최종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7. 상소심판원단에게 의뢰하는 상소신청은:
 - (a) 심판장의 결정에 따라 수정된 경기결과의 공식 발표 후 30분 이내 또는,
 - (b) 경기결과의 수정이 없을 경우, 항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조언이 주어진 후 30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소는 선수나 선수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선수가 속한 팀의 대표임원이 미화 1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예탁금과 함께 신청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탁금은 몰수된다. 선수나 팀은 오직 상소를 신청하는 종목의 해당 라운드(또는 팀 또는 단체경기 점수가 적용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IAAF] 항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해당 심판장은 즉시 판결시각을 TIC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심판장이 판결사항을 관련 팀/선수(들)에게 구두로 전달할 수 없었다면, TIC에서 수정된 결과 또는 그러한 판결을 게시하는 시간이 곧 공식발표 시간이 된다.

[주] 국내경기대회에서의 상소는 소속팀의 책임자가 미화 100달러에

상응하는 한화를 첨부하여 대회본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상소는 즉결되며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8. 상소심판원단은 심판장의 판정을 온전히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심판장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만약 상소심판단원이 의심이 든다면 활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참고한다. 그러나 참고할만한 비디오 증거물을 포함한 모든 증거물도 확증적이지 못할 경우, 심판장 또는 경보경기심판원주임의 판결을 인정한다.

[주1] 상소신청서는 대회총무 또는 상소의 절차에 관한 임무를 지닌 총무원에게 제출하고 심판장을 경유하여 상소심판원단에게 회부한다. 그러기 위하여 주최자는 사전에 이와 같은 절차와 제출 장소를 참가팀 또는 선수에게 주지시켜 놓도록 한다.

[주2] 상소신청서 양식은 별표(別表)와 같다.

9.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소심판원단은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결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관련 단체에서 정당하다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결정에 대한 재고는 오직 해당 종목의 시상식 이전까지 실행되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심판원 (126조 2항), 심판장 (125조 6항), 그리고 상소심판원단 (146조 9항)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아직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재고할 수 있다.

10. 만약 판정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점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상소심판위원장을 통해 IAAF의 CEO(국내경기는 경기 본부장)에게 다시 보고하여야한다.
11. 상소심판원단(또는 상소심판원단이 없거나 상소심판원단에게 상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판장의 결정)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 이후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포함한 기타 기관에게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은 없게 된다.

상소신청서

상소심판위원장 귀하

신청단체명 :

성명 : (인)

본인은 육상경기규칙 제146조에 의하여 미화 100달러에 상응하는 한화(및 환율증빙서)를 예탁하고 아래와 같이 상소를 신청합니다.

경기대회명 : _____
 연월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종 목 : _____(예선, 준결승, 결승) _____조
 선수번호 : _____
 선수성명 : _____

상소이유 : 경기규칙 제 _____ 조 항에 저촉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임원만이 기입한다.

경기결과발표시각 : _____시 _____분
 구두항의수리시각 : _____시 _____분, 수리자성명 : _____
 심판장의판정시각 : _____시 _____분
 상소신청서수리시각 : _____시 _____분, 수리자성명 : _____

판정서

판정자성명(상소심판위원장) : _____

판정결과 : _____반려 _____몰수

판정사유 : _____

예탁금영수증

미화 100달러에 상응하는 한화(및 환율증빙서)를 상소예탁금으로 예탁
 받았습니니다.

년 월 일 시 분

수탁자 (인)

제147조

남녀 혼합경기 (Mixed Competition)

1. 남녀가 함께 경기하는 릴레이나 기타 팀 종목, 또는 동일한 분류(등급)에서 남녀가 함께 참가하는 종목 등의 일반(Universal)경기대회는 관련 단체의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2. 상기 제147조 1항을 제외하고 육상경기장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남녀 선수간의 혼합종목 경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칙 제1조 1항 (a)~(h)에 준하는 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의 필드 종목과 5,000m 또는 그 이상의 레이스는 혼합(경기장 내)경기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규칙 제1조 1항 (i) 및 (j)에 준하는 대회에서는 해당 대륙 연맹이 특정적으로 승인한다면 혼합경기가 허용된다.

[주1-IAAF] 필드 종목의 남녀 혼합경기의 경우, 각 성별대로 별개의 경기결과 기록표를 사용할 것이며, 경기결과는 각 성별대로 발표될 것이다. 레이스의 경우, 각 선수의 성별이 결과기록표에 기재되어야 한다.

[주2-IAAF] 본 규칙이 허용하는 트랙 종목의 남녀 혼합경기는 오직 성별을 분리하여 진행하기에는 남녀 어느 한쪽의 성별 또는 양쪽 성별 모두의 참가 선수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주3-IAAF] 본 규칙이 허용하는 트랙 종목의 남녀 혼합경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쪽 성별의 선수가 다른 성별의 선수로부터 페이스 조력이나 기타 조력을 받기위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147조 2항은 필드 종목과, 한쪽 성별 또는 양쪽 성별 선수들이 소수만 참가한 5000m 이상의 장거리 레이스, 그리고 경기일정의 시간적 제한에 따라 성별을 분리하여 레이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장거리 종목 (예 :

트랙 경보 10,000m 및 그 이상 거리의 종목) 등에서 경기운영을 수월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규칙의 목적은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과 같은 레이스에 참가하여 잠재적으로 더 좋은 경기력을 달성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자면, 필드 종목이나 5000m 이상의 남녀혼합경기는

- (a) 해당 국가연맹의 규칙이 허용한다면, 모든 국내 경기대회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륙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b) 소속 대륙연맹에서 특정적으로 허용한다면 제1조 1항 (i)와 (j)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적용될 수 있다.;
- (c) 규칙 제1조 1항 (a)-(h)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수평도약경기의 혼합경기의 경우에는 181조-183조에 명시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당 경기대회에서 사전 협의된 크로스바 높이 간격에 따라서 크로스바를 계속 올려야 한다.

또한, 남녀혼합경기의 세계기록에는 제한사항들이 있다. 5000m 이상의 트랙 레이스는 260조 1항, 여자 로드레이스 기록 관련은 261조를 참고 261조 [주2-IAAF]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경기에 참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 단일 레이스(여자 기록 달성이 유효하도록)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32조 2항 및 3항 또한 참고]

제148조

점검 및 계측(Surveying and Measurements)

- 1. 규칙 제140조와 149조 2항에 준하는 육상시설의 포설과 마킹의 정확도는 적절한 자격이 있는 계측원에 의해 점검받아야 하며, 계측원은 관련 단체, 시설 소유주 또는 회사에 계측된 내용이 포함된 적절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위해 계측원에게는 경기장 설계도 및 도면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과 최신의 계측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2.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트랙과 필드경기 및 국내 전국규모대회의 트랙과 필드경기에서 모든 계측은 강철제 줄자, 고도계(高度計) 또는 과학 계측장치로 계측하여야 한다. 강철제 줄자, 고도계, 또는 과학 계측장치는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되고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해야 한다. 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계측장치의 정확성은 국가의 측량담당 관련기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되지 않는 다른 경기대회에서는 파이버글라스제 줄자를 사용할 수 있다.

[주-IAAF] 신기록의 공인에 관해서는 규칙 제260조 17항(a)를 참조 한다.

[주] 특수장치는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9조

기록의 유효성(Validity of Performances)

1. 선수가 수립한 기록은 IAAF 규칙 및 KAAF 규칙에 따라 개최된 공식대회에서 수립된 기록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경기장에서 수립된 기록, 전통적인 육상경기시설 외(예 : 도심, 기타 체육시설 또는 해안가)의 장소에서 수립된 기록, 또는 경기장 내 임시 시설에서 수립된 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공인한다 :

- (a) 규칙 제1~3조에서 명시하는 관련 단체(예 : IAAF, 대륙연맹)가 종목에 대한 승인을 발급한 경우
- (b) 자격이 있는 국가기술임원(NTO) 임원들이 경기종목에 임명되어 운영한 경우
- (c) 기술규칙에 준하는 장비와 용구가 사용된 경우
- (d) 기술규칙에 준하고 규칙 제148조에 따라 경기 당일에 점검이 실시된 경기장소 또는 시설에서 경기종목이 진행되는 경우.

[주-IAAF] 경기장소 또는 시설의 규칙 준수사항을 보고하는 데에

사용되는 필요한 현행 표준양식은 IAAF 사무국에서
입수 또는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49조 2항에 준하여 실시되는 경기대회가 2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
시설 점검은 첫 번째 경기 종목이 시행되는 날 실시되어야 한다.
계측원이 점검하는 시설에 이동이나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계측)보고서가 첫 번째 경기가 시행되는 날 이를
전까지 완성되어도 무방하다.

3. 일반적으로 본 규칙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된 경기결과(기록)는
통계, 기록, 랭킹, 엔트리 기준기록 수립 등의 목적을 위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자격라운드에서 수립된 기록
-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 동순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수립된 기록
- 규칙 125조 7항, 146조 4항 (b), 163조 2항 또는 180조 20항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는 경기대회나 그 일부에서 수립된 기록
- 혼성경기 선수가 모든 종목에 참가하여 전체를 마치는 여부와
관계없이 혼성경기의 개인종목에서 수립된 기록

혼성경기에서 선수가 엔트리 기준기록을 달성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IAAF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

“각 개인종목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들이 이행되었어야 한다. 단,
풍속이 측정되는 종목에서는 다음 조건 중 최소 하나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a) 어느 개인 종목이든지 풍속이 +4m/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b) 평균 풍속 (각 개인종목에서 측정된 풍속의 대수합을 종목의 수로
나눈 환산 값)이 +2m/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50조

비디오 기록(Video Recording)

국내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및 (c)에 명시된 경기대회 및 가능한 기타 경기대회)에서는 기술대표가 만족할 만한 모든 종목의 공식 비디오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비디오 기록은 비디오판정심판장이 임명된 경우에는 그 역할을 지원하고, 기타 상황에서는 경기기록과 규칙위반 사항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에 충분해야 한다. IAAF 비디오기록 및 비디오판정심판장 지침서에 더욱 세부적인 정보가 나와있으며,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경기대회의 비디오판정 심판장 임명은 충분한 비디오 수집과 다시 보기(replay) 장치가 준비된 경기대회에서 경기의 다양한 측면의 실질적 감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디오판정 심판장은 트랙 경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 스타트, 곡선주로에서 안쪽 레인을 달리는 상황, 선수들이 밀거나 방해하는 상황, 브레이크라인 전에 너무 일찍 레인을 이탈하는 경우, 릴레이 테이크오버 등). 필드 종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카메라와 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트랙경기에서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비디오판정 심판장이 유사하게 행동할 수 있으나, 보통은 현장의 심판장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나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반응적인 태도로 응하는 것이 좋다.

트랙 종목의 경우, 비디오판정심판장은 비디오관독실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크린을 통해 레이스를 관찰하고, 자신의 관찰이나 경기장 내에 있는 심판장 또는 감찰원 주임의 의뢰를 근거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가용한 다시보기 기능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만약 규칙 위반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는 그에 적합한 결정을 하고 트랙 심판장과 사진판정심판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유사하게 만약 감찰원이나 트랙 근처에 위치한(trackside) 심판장이 잠재적인 규칙 위반을 보고한 경우, 비디오판정심판장이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식 비디오 화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항의와 상소 건의 해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된다.

오늘날에는 대회주최측에서 직접 비디오판독 장치를 세팅하기 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추세이나,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

제151조

채점(Scoring)

점수제로 경기결과(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대회(친선, 대항경기 등)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경기 개시 전에 모든 참가팀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참가국이 채점방법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트랙경기(Track Events)

규칙 제163조 2항과 제163조 6항(제230조 12항, 제240조 9항 제외), 제163조 14항, 제164조 2항, 제165조 및 제167조 1항은 제7장, 제8장 및 제9장에도 적용된다.

제160조

트랙 계측(Track Measur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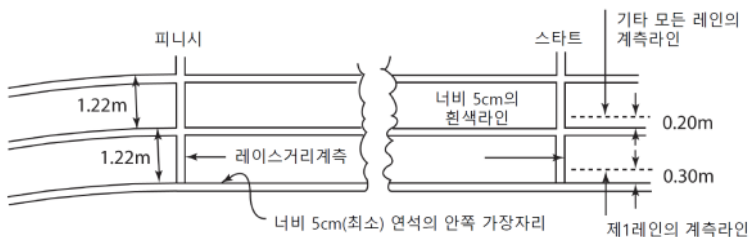
- 표준 트랙의 길이는 400m이다. 트랙은 두 개의 평행 직선주로와 반지름이 동일한 두 개의 곡선주로로 구성된다. 트랙의 안쪽에 높이 5cm - 6.5cm 사이, 너비 5cm - 25cm 사이의 적절한 재료로 만든 연석으로 경계선을 만들고 흰색으로 칠한다. 두 개 직선주로의 연석은 생략될 수 있으며, 연석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필드경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곡선부 연석의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제거해야할 경우에는 그 표면에 너비 5cm의 흰색라인을 표시하고 높이 최소 15cm의 원뿔이나 깃대를 흰색라인에 세워 표시하며, 원뿔이나 깃대의 밑바닥 가장자리가 트랙에 가장 가까운 흰색라인의 가장자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간격은 4m 이내로 띄워서 세운다. (깃발(旗)은 지면과 60°의 각도를 이루도록 트랙에서 필드쪽으로 누워서 세워야 한다). 이 사항은 (임시 연석의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3,000m 장애물 트랙에서 물웅덩이를 뛰어 넘기 위하여 메인트랙(main track)을 떠나는 구간과 규칙 제163조 5항(b)에 해당하는 스타트의 경우에는 트랙절반의 바깥코스에도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10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 범위에서 직선주로에도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주-IAAF] 트랙의 곡선주로에서 직선주로로 바뀌는 지점과 직선주로에서 곡선주로로 바뀌는 지점에는 계측원이 흰색라인 위에

구분되는 분명한 색으로 50mm x 50mm의 마킹을 하고 (경기 동안) 콘을 설치한다.

- 계측은 연석의 바깥쪽으로 30cm 떨어진 지점을, 또는 곡선부에 연석이 없을 경우에는 (또는 장애물 경기에서 물웅덩이 점프를 위해 메인트랙(main track)을 벗어난 구간은) 트랙 안쪽을 표시한 라인으로부터 20cm 떨어진 지점을 계측한다.



트랙 계측(필드내에서 본 도안)

- 레이스거리는 피니시라인에서 먼 쪽 스타트라인의 가장자리에서, 스타트라인에서 가까운 쪽 피니시라인의 가장자리까지 계측한다.
- 400m까지(400m 포함)의 모든 레이스에서는, 각 선수는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구분된, 너비 $1.22\text{m} \pm 0.01\text{m}$ 의 오른쪽 레인라인을 포함한 개별레인을 달려야 한다. 모든 레인의 너비는 명목상 동일하여야 한다. 안쪽 레인은 규칙 제160조 2항에 따라 계측하나, 나머지 레인은 흰색라인(白線)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20cm 떨어진 지점에서 계측한다.

[주-IAAF]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트랙에서는, 모든 레이스에서 최대너비 1.25m 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트랙도 완전하게 재포설할 (전체를 다시 깔 때에는) 시에는 본 규칙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5. 국내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트랙의 레인 수가 최소 8개이어야 한다.
6. 트랙의 안쪽 레인 방향으로의 측면 경사는 100분의 1(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달리는 방향으로의 전체적인 내리막 경사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트랙의 건설, 설계, 마킹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정보는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본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트랙의 마킹에 사용될 색상은 IAAF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 마킹 도면에 명시되어 있다.

제161조 스타팅 블록(Starting Blocks)

1. 400m까지의 모든 레이스(4×200m, 메들리 릴레이 및 4×400m의 제1구간 포함)에서는 스타팅 블록을 사용하여야 하나, 그 외의 레이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트랙에 스타팅 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스타팅 블록의 어떠한 부분도 스타트라인과 겹치거나 다른 레인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단,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스타팅 블록 틀(frame)의 뒷부분이 바깥쪽 레인의 라인을 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2. 스타팅 블록은 다음에 명시된 일반 규격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a) 스타팅블록은 선수가 스타트 자세에서 발을 얹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두 개의 발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발판은 한 개의 틀 위에 장착되어야 한다. 스타팅 블록은 전체적으로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며 선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스타팅 블록의 틀(frame)은 선수의 두 발이 블록을 밀면서 떠날 때 두 발에 아무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 (b) 발판은 선수의 스타트자세에 알맞도록 경사져 있어야 하고, 경사면이 편편하거나 약간 오목해도 무방하다. 발판의 표면은 경기화의 스파이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흠을 내거나 오목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스파이크가 달린 경기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질(材質)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 (c) 견고한 틀에 장치하는 발판은 조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스타트를 할 때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 모든 경우에서, 발판은 언제나 상호 앞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절이 끝나면 단단한 조임틀이나 잠금(locking) 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조임틀이나 잠금 장치는 선수가 손쉽게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d) 스타팅 블록은 여러 개의 핀이나 스파이크로 트랙에 고정시키되, 핀이나 스파이크가 트랙에 미치는 손상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하며, 스타팅 블록을 신속하게, 또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핀이나 스파이크의 개수, 두께 및 길이는 트랙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고정된 스타팅 블록은 실제 스타트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 (e) 선수가 개인용 스타팅 블록을 사용할 때는 본 규칙을 준수한 것이어야 하되,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디자인이나 구조는 무방하다.
3. 국내경기대회(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와 규칙 제261조 및 263조에 준하여 세계기록 공인을 위해 신청된 기록에 대해서는)에서 스타팅 블록은 KAAF (IAAF)가 공인한 스타트정보장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장치를 기타 경기대회에서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된다.
- [주-IAAF] 추가적으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동리콜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국내경기대회(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주최측이 준비한 스타팅 블록만을 사용해야 한다. 합성포장재트랙에서 개최하는 그 외의 경기 대회에서는 대회주최측이 제공하는 스타팅 블록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규칙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

- (a) 스타팅 블록의 틀(frame)이나 발판(footplates)은 스타트 선과 겹칠 수 없다.
- (b)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발판을 제외한 틀만이 바깥쪽 레인을 넘어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곡선주로에서 스타트하는 선수들이 스타트 이후 최대한 직선으로 달리기 위해 자신의 스타팅블록을 그에 적합한 각도로 두는 오래된 관습을 반영한 것이다.

레이스 스타트에 빛을 사용하는 것은 청각장애 선수들에 국한하여 허용되며 조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빛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비용이나 준비는 그 선수나 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대회에 임명된 기술 담당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에 사용되고 있는 스타트장치와 빛을 내는 장비와의 연동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제162조 스타트(The Start)

1. 레이스의 스타트라인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레이스에서는 모든 선수가 동일한 거리를 스타트라인에서 피니시라인까지 달릴 수 있도록 곡선으로 스타트라인을 그린다. 트랙경기에서 선수의 스타트 위치는 달리는 방향을 향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긴다.

[주1-IAAF]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는 종목의 스타트라인은 최대 너비 30cm로 선을 사용하며, 선의 색깔은 스타트 구역의

지면과 확연히 대조되는 색을 사용해서 그려야한다.

[주2-IAAF] 1,500m 스타트라인 또는 기타 곡선 스타트라인은 바깥쪽 곡선레인라인부터 바깥으로 동일한 합성 표면으로 된 범위까지 확장 할 수도 있다.

스타트 절차를 효율적으로 완료하고, 규모가 큰 대회에서는 경기 참가선수를 적절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경기구역에 집합한 선수들은 레이스(달리는) 방향을 바라보고 서도록 한다.

2.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서 스타터는 영어, 불어 또는 자신의 모국어로 구령을 내린다.

(a) 400m까지의 레이스(4×200m, 제170조 1항의 메들리 릴레이 및 4×400m 릴레이 포함)에서는 “제자리에(On your marks)”와 “차렷(Set)”이라는 구령을 사용한다.

(b)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4×200m, 메들리 릴레이 및 4×400m 릴레이 제외)에서는 “제자리에(On your marks)”의 구령만 사용한다.

(c) 규칙 제162조 5항에 따른 모든 레이스에서 스타터가 선수들이 제자리에 위치하였으나 모든 선수들이 스타트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스타트를 중단할 시에는 “일어서(Stand up)”라는 구령을 사용한다.

모든 레이스는 일반적으로 위로 향해서 발사된 스타터의 신호총의 신호음에 의해 스타트한다.

[주-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e) 및 (i)에 명시한 경기대회에서 스타터의 구령은 오직 영어만 사용한다.

스타터는 관계된 계시(timing) 담당 팀과 피니시에 있는 심판원들이 (그리고 200m까지의 종목에서는 풍속측정원까지)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스타트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스타트 구역, 피니시 구역, 그리고 계시팀과의 통신절차는 대회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제1조 1항(a)-(f)에 속하는 경기대회와 기타 높은 수준의 경기대회에서는 항상 전자계시와 스타트정보장치를 담당하는 서비스 업체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을 담당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있다.

기타 다른 대회에서는 무전기, 전화, 깃발이나 섬광등 등 다양한 통신장비나 수단이 사용된다.

3. 400m까지의 레이스 (4x200m, 메들리 릴레이, 및 4x400m의 첫 구간(제1주자)포함)에서는, 스타트 시 반드시 스타팅 블록을 사용하고 크라우치 스타트를 한다. “제자리에(On your marks)” 구령에 따라 선수는 스타트라인 뒤 배정받은 레인 안에서 완전하게 자세를 취하여야한다. “제자리에” 자세를 취할 때 선수의 손이나 발이 스타트라인 또는 그 전방의 지면에 닿아서는 안 된다. 양손과 최소 한쪽 무릎은 지면에 닿아야 하며, 양발은 스타팅 블록의 발판에 닿은 상태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차렷” 구령에 따라 선수의 양손은 지면에, 양발은 스타팅블록의 발판에 닿은 상태로 곧바로 최종 스타트자세를 취해야한다.

스타터는 “차렷” 자세에서 모든 선수들의 자세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신호총을 발사하여야한다.

크라우치 스타트를 하는 모든 레이스에서는 선수들이 스타팅블록에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즉시 스타터가 신호총을 손에 든 팔을 들어올리고 “차렷” 구령을 한다. 그런 후 선수들이 다시 안정된 차렷 자세를 취할 때까지 기다린 후, 신호총을 발사한다.

스타터는 너무 일찍 팔을 들어서는 안 되며, 특히 수동계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스타터는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차렷” 구령을 하기 직전에 팔을 들도록 권장된다.

“제자리에”와 “차렷” 사이의 경과시간이나 “차렷”과 신호총 발사 간의 경과시간에 대한 규칙은 없다. 스타터는 모든 선수들이 올바른 스타트 자세로 정지된 것을 확인하면 스타트 하도록 해준다. 이는 즉 특정한 스타트의 경우 신호총을 매우 일찍 발사할 수도 있고, 다른 경우

스타트자세가 정지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더 경과된 후 신호총을 발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4.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4x200m, 메들리 릴레이, 및 4x400m 제외)에서 모든 스타트는 스탠딩 자세로 한다. “제자리에 (On your marks)” 구령에 따라 선수들은 스타트라인에 접근해야하고 스타트 라인 뒤에서 (레인에서 스타트 하는 레이스에서는 완전히 배정된 레인 안에 위치하여) 스타트 자세를 취한다. “제자리에 (On your marks)” 구령 후, 선수들의 한 손 또는 양손은 스타트라인이나 그 전방의 지면에 닿으면 안 된다. 스타터는 모든 선수들의 자세가 안정되고 올바른 스타트 자세를 취한 것을 확인한 후 신호총을 발사한다.

5. “제자리에” 또는 “차렷”의 구령에 따라 모든 선수는 지체 없이 완전한 최종 스타트 자세(final starting position)를 취해야한다. 스타터는 만약 어떤 이유로 선수들이 “제자리에” 자세를 취한 후 스타트 진행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모든 선수들에게 제자리에서 물러서게 하며, 스타터 보조원이 다시 선수들을 집합시킨다(규칙 제130조 참조).

스타터가 판단하기에 선수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스타트를 중지시킨다,

- (a) “제자리에” 또는 “차렷” 구령이 내려진 후에 신호 총소리가 나기 전에 손을 들거나 그리고/또는 크라우치 스타트의 경우 일어나거나 상체를 일으키는 등 정당한 이유(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심판장이 평가함) 없이 스타트를 중지시키는 경우, 또는
- (b) “제자리에” 또는 “차렷” 구령에 적절히 따르지 않거나, 최종 스타트 자세를 지연하거나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 (c) “제자리에” 또는 “차렷” 구령 후에 경기에 참여하는 경쟁

||

선수들을 음성이나 동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심판장은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에 따라 선수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고를 줄 수 있다(같은 경기에서 두 번의

위반을 한 선수의 경우에는 실격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초록색카드를 선수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단,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스타트가 중지되었거나 심판장이 스타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부정스타트가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표시로 초록색카드를 모든 선수에게 보여준다.

스타트 규칙을 징계대상의 행위(162조 5항)와 부정스타트 행위(162조 7항-8항)로 분리하는 것은 한 선수의 행동에 의해 모든 선수가 처벌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규칙 분리의 의도를 지키기 위해서 스타터와 심판장은 부정스타트의 감지 뿐만 아니라 제162조 5항을 성실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의적이었던 (긴장을 해서) 무심코 했던 선수의 그러한 행위는 162조 5항의 적용을 촉발시킨다. 만약 스타터가 선수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직 162조 5항 (c)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역으로 선수들이 적법한 사유로 스타트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스타트 심판장은 스타트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스타터가 스타트 준비에 집중하느라 또는 헤드폰을 착용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요소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스타터와 심판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명확하게 자신들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레이스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이러한 결정의 사유를 알려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가능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아나운서와 TV 팀 등에게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노란색 카드나 붉은색 카드가 보여진 경우에는 녹색 카드는 보여줄 수 없다.

부정스타트(False Start)

6. IAAF가 승인한 공인 스타트정보장치를 사용할 때, 스타터 밋/또는 임명된 리콜러는 부정 스타트(예: 반응시간이 0.100초 미만일 때)가 감지될 때 나는 음향소리를 분명히 청취할 수 있도록 헤드폰을 착용하여야 한다.

스타터 밋/또는 임명된 리콜러가 신호총이 발사된 후 음향신호를 듣게 되면 (선수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콜을 하고 즉각적으로 어느 선수(들)가 부정스타트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타트정보장치의 반응시간을 검사해야 한다.

[주-IAAF] IAAF가 승인한 공인 스타트정보장치가 사용될 경우, 이 장치에서 제시된 증거자료는 관계된 경기임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7. 선수가 최종적으로 스타트 자세를 완전히 취한 후에는 신호총에서 발사된 신호음이 들리기 전까지는 스타트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스타터가 선수가 (규칙 제129조 6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스타트 동작을 시작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부정스타트로 간주한다.

[주1-IAAF] 선수의 발이 스타팅블록의 발판에서 또는 선수의 손이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움직임은 스타트의 시작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적용된다면 징계성 경고 또는 실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스타터가 판단하기에 선수가 신호총의 신호음이 들리기 전에 움직임을 시작했고 그 동작이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스타트의 시작 동작과 연결되었다면, 이는 부정스타트로 간주한다.

[주2-IAAF] 선(스탠딩) 자세로 레이스를 스타트하는 선수들은 균형을 잃기 쉬움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고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스타트는 “불안장”으로 여겨져야 한다. 선수가 스타트 전에 밀리거나 떠밀려서 스타트 라인을 넘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혼선을 유발한 선수는 징계성 경고 또는

실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수가 지면이나 발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부정스타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선수가 hips를 들었으나, 손이나 발이 지면이나 발판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내리면, 부정스타트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162조 5항에 따라 선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경고를 줄 수도 있는 경우(이미 받은 경고가 있다면 실격처리)이다.

그러나 “롤링 스타트(rolling start)”의 경우, 스타터(또는 리콜러)는 선수가 연결되는 동작을 하면서 스타트를 실질적으로 예측했다고 판단되면, 총소리 전에 선수의 손과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레이스를 리콜해야 한다. 이는 스타터 또는 리콜러가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선수가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 오직 스타터만이 신호총의 방아쇠에 있던 자신의 손가락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있는 사람은 스타터이다. 스타터가 신호총을 발사하기 전에 선수가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부정스타트를 선언해야 한다.

[주2-IAAF]에서 설명되는 상황과 같이 스탠딩 스타트로 시작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스타터와 심판장이 과도하게 162조 7항을 적용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스탠딩 스타트로 시작하는 종목에서 스타터 신호총이 발사되기 전에 선수가 움직임을 시작하는) 경우들은 드물며, 보통 두 개의 스타트 지점에서 균형이 무너져서 고의 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치 스타트를 사용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엄격한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선수의 (먼저 움직이는) 동작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스타터와 심판장은 우선은 스타터가 “불안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162조 2항 (c)에 준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 같은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스타터나 심판장은 상황에 맞게 부정스타트나 징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8. 혼성경기를 제외하고, 스타터는 1회의 부정스타트를 한 책임이 있는 선수를 실격시킨다.

혼성경기는 규칙 제200조 8항(c)를 참조한다.

[주-IAAF] 실제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이 부정 스타트를 하면 다른 선수도 그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이를 따라 나간 선수도 부정 스타트를 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스타터는 부정스타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에게만 경고나 실격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고나 실격을 받는 선수가 1명 이상일 수도 있다. 만약 부정스타트가 어느 특정 선수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고를 주지 않고, 모든 선수에게 초록색카드를 보여준다.

9. 부정스타트가 발생한 경우, 스타터 보조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혼성경기를 제외하고, 부정스타트를 행한 책임이 있는 선수(들)는 실격되고 해당 선수 앞에 빨간색과 검정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를 들어 보여준다.

혼성경기에서 첫 번째 부정스타트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부정스타트를 행한 책임이 있는 선수(들) 앞에 노란색과 검정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를 들어 보여서 경고를 준다.

이와 동시에, 1명 또는 여러 명의 스타터 보조원들은 같은 레이스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 앞에 노란색과 검정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를 들어 보여서 경고를 주고, 추후에 부정스타트를 행한 책임이 있는 선수는 모두 실격당할 것임을 알린다. 이 후, 추가적인 부정스타트가 행해질 경우, 부정스타트를 한 책임이 있는 선수 앞에 빨간색과 검정색이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를 들어 보여서 실격을 통보한다.

레인 마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정스타트를 행한 선수에게 카드를 들어 보여줄 때마다 해당 레인의 마커에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한다.

대각선으로 구분된 카드의 면적은 A5를 사용하고, (카드의 구분된 색상은) 양면으로 칠할 것을 권장한다. 레인의 마커에 표시하는 색상은 기존 장비를 교체함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노란색과 붉은색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10. 스타터나 리콜러가 판단하기에 스타트가 정당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호총을 발사해서 선수들을 리콜(되돌아오게) 해야 한다.

정당한 스타트라는 개념은 부정스타트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규칙에 대한 해석은 스타팅블록이 미끄러지거나 스타트 동안 외부의 물체가 (예 : 외부에서 던져진 물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

제163조

레이스(The Race)

1. 최소 1개의 곡선주로를 포함하는 레이스의 경우, 걸거나 달리는 방향은 왼손이 트랙 안쪽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레인은 달리는 방향에 대하여 왼쪽(안쪽)에서부터 제 1레인으로 하고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여건이 허용하고 트랙이 적절히 검사를 받은 상태이면, 직선 종목은 반대 방향(예 : 오른손이 트랙 안쪽을 향하는 달리기 방향)으로 행해져도 된다.

트랙에서의 방해(Obstruction)

2. 선수가 경기하는 동안 떠밀리거나 가로막혀서 진로가 방해되었다면 :
 - (a) 떠밀리거나 막는 행위가 고의가 아니거나 또는 선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심판장은 선수(또는 그의 팀)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제125조 7항 또는 146조 4항에 따라 (해당 경기에 참가한 한 명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선수에 대해서) 재경기를 지시하거나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팀)가 그 다음 라운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

- (b) 심판장이 타 선수가 떠밀거나 가로막는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선수(또는 그의 팀)는 그 경기에서 실격의 대상이 된다. 심판장은, 선수(또는 그의 팀)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실격된 선수(또는 팀)를 제외하고 제125조 7항 또는 146조 4항에 따라 (해당 경기에 참가한 한 명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선수에 대해서) 재경기를 지시하거나,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팀)가 (실격 선수 또는 팀을 제외하고) 다음 라운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주-IAAF]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도 적용할 수 있다.

규칙 제163조 2항 (a)와 (b) 둘 다의 경우에, 해당 선수(또는 팀)는 성실히 그 종목의 경기를 끝마쳐야 한다.

레인 위반 (Lane Infringement)

3. (a) 레인에서 진행되는 모든 레이스에서 각 선수는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자신에게 배정된 레인 안에서 달려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레이스의 일부를 레인에서 달리는 경기에도 모두 적용된다.
- (b) 레인에서 진행되지 않는 모든 레이스(또는 레이스의 일부분)에서 선수가 곡선주로 혹은 트랙절반의 바깥코스에서 달리는 경우 (제163조 5항 (b)), 또는 장애물 경기에서 선수가 물웅덩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트랙의 곡선부분을 우회하는 경우에 선수는 연석 또는 적절한 경계를 표시한 라인 또는 연석 위 혹은 안쪽을 밟거나 달려서는 안된다(트랙의 안쪽, 절반의 바깥쪽, 또는 3,000m 장애물 웅덩이 통과를 위해 트랙의 곡선부분을 이탈할 때).
- 규칙 제163조 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심판장이 선수가 본 규칙을 위반했다는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대해 인정할 경우에 그 선수는 실격된다.
4.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격되지 않는다.

- (a) 다른 선수에게 밀리거나 방해를 받아서 자기의 레인 바깥으로, 또는 연석이나 적절한 경계를 표시한 라인마킹 위 또는 안쪽을 밟거나 달렸을 경우, 또는
- (b) 직선주로에서 자기 레인과 장애물 경기에서 선수가 물웅덩이를 통과하는 트랙의 직선부분의 바깥쪽, 또는 곡선주로에서 자기 레인의 바깥쪽 레인 라인의 바깥을 밟는 경우

이러한 이탈로 인해 아무런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하고, 다른 어떤 선수와 부딪히거나 진로를 막아서 그 선수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격되지 않는다. 실질적 이득을 얻는 선수는 실격 조치한다.

[주-IAAF] 실질적 이득에는 선수들 사이에 『간헐(boxed)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랙 안쪽 경계의 안쪽을 밟거나 달리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상기 [주-IAAF]는 선수들이 『간헐(boxed)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이든 다른 선수에게 밀리거나 밀쳐졌든) 트랙 안쪽으로 움직임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개선하고 진로를 확보할 때까지 안쪽에서 달리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곡선주로에서 달리는 경우와는 다르게) 직선주로 제1 레인의 안쪽에서 달리는 행위가 반드시 실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장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 애초에 선수가 밀리거나 밀쳐져서 안쪽 레인을 달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경기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판단한다면 자신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실격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수는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트랙 위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5. 규칙 제1조 1항의 경기대회 및 기타 경기대회(국내경기대회)에서 :

- (a) 800m 레이스는 선수가 자기의 레인을 벗어나는 브레이크라인(breakline)의 가까운 가장자리를 지날 때까지 자기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브레이크라인은 제1레인 이외의 모든 레인을 가로지르는 너비 5cm의 첫 곡선주로의 끝에 표시된 원호형 라인(arcued line)이다. 선수들이 브레이크라인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각 레인 라인과 브레이크라인의 교차점 바로 전 레인라인 위에 가급적 브레이크라인이나 레인라인과는 다른 색의, 높이 15cm이하의 5cm×5cm 작은 콘(cones)이나 각주(角柱, prisms)를 세워 놓는다. 만약 선수가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는 (릴레이의 경우는 그의 팀이) 실격된다.

[주-IAAF] 규칙 제1조 1항(d) 및 제1조 1항(h)에 해당되는 국제친선대항경기대회(matches)에서는 참가국들의 합의로 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b) 1000m, 2000m, 3000m, 5000m and 10,000m 종목에서 한 레이스에 12명을 초과하는 선수가 참가했을 경우, 참가선수 중 2/3으로 구성된 한 그룹(제1그룹)은 정상적인 원호형 스타트라인에서, 나머지 선수들로 구성된 다른 그룹(제2그룹)은 트랙절반의 바깥코스에 있는 별도의 원호형 스타트라인에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나눈다. 제2그룹은 최초의 곡선주로가 끝날 때까지 콘이나 기 또는 임시 연석으로 표시한 트랙절반의 바깥코스를 달려야 한다(규칙 제160조 1항).

별도의 아크형스타트라인(제2그룹의 스타트라인)은 모든 선수가 동일한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규칙 800m레이스의 브레이크라인은 2,000m와 10,000m레이스의 바깥그룹의 선수들이(제2그룹) 정상적인 스타트를 한 선수(제1그룹)와 합류하는 지점을 표시해준다.

1,000m, 3,000m, 및 5,000m에서의 그룹스타트를 할 경우, 바깥그룹에서 스타트한 선수(제2그룹)가 정상적인 스타트를 한 선수(제1그룹)와 합류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라인을 피니시라인이 위치하는 직선주로의 시작 지점에 표시한다. 이 표시는 2개의 그룹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설치된 콘이나 기의 바로 앞, 제4레인과 5레인 (6레인 트랙에서는 제3레인과 4레인) 사이의 라인 위에 5cm × 5cm의 마크로 표시한다.

- (c) 선수가 (또는 릴레이 팀의 선수가)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선수(릴레이 팀은)는 실격 당한다.

트랙이탈(Leaving the Track)

6. 선수가 자의적으로 트랙에서 이탈하면 경기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선수는 경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선수가 경기에 다시 입장하고자 시도하면 심판장에 의해 실격된다.

체크마크(Check-Marks)

7. 규칙 제170조 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또는 첫 부분이 레인에서 실시되는 릴레이레이스에서는,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트랙 위나 트랙 옆에 체크마크를 표시하거나 표시물을 둘 수 없다. 심판원들은 본 규칙을 따르지 않는 마크나 표시물을 둔 선수들이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선수들이 이를 치우지 않으면, 심판원들이 제거해야 한다.
[주-IAAF] 심각한 상황들은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에 따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풍속측정(Wind Measurement)

8. 모든 풍속측정계는 국제표준에 준하여 제조되고 칼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거쳐야 한다. 사용되는 풍속측정계의 정확성은 국내 측량담당 관련기관이 인정한 해당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9. 비기계적(non-mechanical) 풍속측정계는 규칙 제1조 1항 (a)~(h)에 명시된 모든 국제경기대회와 국내경기대회에서 사용되며 또한, 세계기록 / 한국기록 등 제출된 각종 기록을 공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계적 풍속측정계에는 옆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튜브를 사용할 경우 측정장치의 양쪽 측면 길이는 적어도 튜브지름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10. 트랙경기심판장은 트랙종목을 위한 풍속측정계가 제1레인

인접한 직선주로 옆에 피니시 라인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 확실히 설치되도록 한다. 높이는 1.22m(± 5 cm)로 하며 트랙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11. 풍속측정계는 자동 및/또는 원격조정으로 작동을 시작 또는 정지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대회 전산장비(컴퓨터)로 직접 입력되도록 한다.
12. 풍속을 측정하는 시간은 스타터 신호총의 섬광이 번쩍이거나 연기가 난 순간부터 다음 시간에 걸쳐 측정한다.

80m 10초간 (초등학교)

100m 10초간

100mH 13초간

110mH 13초간

200m레이스의 풍속은 선두선수가 직선주로에 들어선 순간부터 10초간 측정한다.

[주] 직선주로에 들어가는 위치에 깃발을 세워서 표시한다.

13. 풍속측정계는 초속 몇 m인가를 기록하는데, 1/100초의 풍속이 “0”이 아닐 경우에는 양수(+) 방향으로 초속 1m의 1/10로 올림하여 기록한다 (즉, 초속 +2.03m는 +2.1로 기록되며; 초속 -2.03m는 -2.0으로 기록된다). 초속 1/10m로 나타나는 디지털 표시 측정계는 본 규칙에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구간통과기록의 표시(Indication of Intermediate Times)

14. 구간통과기록과 우승예상시간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해당 심판장의 사전승인이 없이 경기장 내에 있는 관계자가 선수에게 시간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특정지점에 있는 선수들이 볼 수 있는 시간표시판이 없거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구간통과기록과 우승예상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심판장의 사전승인이 가능하다.

본 규칙을 위배하여 구간통과기록을 전달받은 선수들은 조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본 규칙 제144조 2항 적용의 대상이 된다.

[주-IAAF]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경계가 있는 경기장소는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인가/승인된 인원들만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정의된다.

음료수/스펀지(Drinking / Sponging)

15. (a) 5000m 또는 그 이상 거리의 트랙경기에서 대회주최측은 기후조건에 따라 선수들에게 물과 스펀지를 공급할 수 있다.
- (b) 10,000m를 초과하는 트랙경기에서는 음식물, 물, 스펀지 공급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음식물은 대회주최측 또는 선수가 준비 할 수 있으며, 선수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배치하거나 공인된 사람에 의해 선수의 손으로 전달 할 수도 있다.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은 선수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제출되는 시점부터 대회주최측이 지정한 임원들의 감독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임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음식물이 변형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c) (의료적인 이유에 의하거나 레이스 임원의 감독 하에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공식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하거나, 또는 다른 선수의 음식물을 가져가면, 첫 번째 경우에 심판장은 노란색 카드를 보여서 경고를 주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붉은색 카드를 보이며 해당 선수를 실격시킨다. 이렇게 실격 당한 선수는 즉각 트랙에서 퇴장해야 한다.

[주-IAAF] 선수가 스타트에서부터 들고 뛰거나 또는 공식 공급소에서 받거나 선택한 음식물, 물 또는 스펀지는 다른 선수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한 선수가 다른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평한 조력으로 간주하여 위에 명시한 바와 동일한 방식의 경고나 실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4조 피니시(The Finish)

1.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주-IAAF] 경기장 밖에서 피니시하는 종목의 경우 피니시 라인의 폭은 최대 30cm까지 될 수 있으며, 색깔은 피니시 지점의 지면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이어야 한다.
2. 선수의 순위는 신체의 어느 부위(즉 머리, 목, 팔, 다리, 손, 발과 구별한 “동체(胴體)”)가 전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니시 라인의 스타트라인에 가까운 가장자리의 수직면에 닿는 것으로 결정된다.
3.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측정되는 레이스(예 : 1시간 달리기)에서는 선수와 심판원에게 레이스의 종료시간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기 위해 스타터가 종료시간의 정확히 1분전에 신호총을 발사한다. 스타터는 계시원주임의 지시에 따라 스타트 후 정확히 해당되는 시간에 다시 신호총을 발사하여 레이스가 끝났음을 알려야 한다. 경기종료를 알리는 신호총이 발사됨과 동시에, 담당심판원은 신호총이 발사되기 직전이나 발사됨과 동시에 각 선수가 마지막으로 트랙에 발을 터치시킨 정확한 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록이 되는 거리는 이 표시의 뒤쪽 끝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되, m단위 미만은 버린다. 경기가 스타트하기 전에 각 선수에게 최소 1명의 심판원을 배정하여 마지막 도착지점 표시를 위하여 배치시켜야 한다.

“한 시간 레이스”에 대한 지침서는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165조

계시 및 사진판독(Timing and Photo Finish)

- 공식 계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승인된다.
 - 수동계시(H.T.);
 - 사진판독장치에 의한 완전자동계시(F.A.T.);
 - 규칙 제230조(경기장 내에서 완전히 실시되지 않는 레이스), 제240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사용된 자동무선계시장치(transponder system)에 의한 계시
- 규칙 제165조 1항 (a)와 (b)에 준하는 계시는 선수의 신체 부분이(즉 머리, 목, 팔, 다리, 손, 발과 구별한 동체) 스타트라인과 가까운 쪽 피니시 라인 가장자리의 수직면에 닿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계측한다.
- 피니시한 모든 선수의 시간을 기록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800m 이상의 레이스에서는 매 주회기록(lap times)과 3,000m 이상의 레이스에서는 1,000m 마다 구간통과기록(intermediate times)을 기록한다.

수동계시(Hand Timing)

- 계시원은 피니시라인 연장선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트랙의 바깥쪽 레인에서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모든 계시원이 피니시 라인을 잘 볼 수 있도록 위치하기 위하여 계단식 스탠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시원은 디지털 판독이 가능한 수동전자계시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시장치를 KAAF와 IAAF 규칙에서는 ‘시계(watches)’라고 정의한다.
- 규칙 제165조 3항에 해당하는 주회기록과 구간통과기록은 2개 이상의 시간을 계시할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하는 임명된 수동 계시팀 요원, 또는 예비 계시원들, 또는 자동무선계시장치에 의해 기록된다.
- 계시는 스타터의 신호총의 섬광 또는 연기가 난 순간부터 시간을 계측한다.

8. 3명의 공식계시원 (이중 1명은 계시원주임)과 1~2명의 예비 계시원이 모든 종목의 1위 및 기록을 위한 모든 결과를 계시한다. (혼성경기의 경우 규칙 제200조 8항(b) 참조). 예비 계시원이 기록한 시간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공식계시원의 시계가 정확하게 계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고려되며, 그러한 경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비 계시원에게 지시하도록 하여 모든 레이스에서는 3개의 시계가 공식 1위의 시간을 계시할 수 있도록 한다.
9. 각 계시원은 자기의 시계 또는 기록한 시간을 타 계시원에게 보여주거나 협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공식 기록카드에 자신이 측정한 시간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 계시원 주임에게 제출한다. 계시원 주임은 (필요한 경우) 보고된 시간(기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시원의) 시계(에 표시된 시간)를 확인할 수 있다.
10. 수동 계시로 기록되는 모든 레이스의 경기시간은 다음과 같이 판독하고 기록한다.
 - (a) 트랙 레이스에서는 시간이 정확하게 1/10초가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늦은 1/10초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한다(예, 10.11의 기록은 10.2초로 기록).
 - (b) 일부 또는 전부가 경기장 외에서 실시되는 레이스의 기록은 시간이 정확히 완전 초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의 늦은 완전 초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한다(예, 2:09:44.3은 2:09:45초로 기록).
11. 위 10항과 같이 전환한 후, 만약 3개의 시계 중 2개가 일치하고 1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의 일치된 시계의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3개의 시계가 모두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만약 2개의 시계만이 시간을 기록했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2개의 시계 중 늦은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채택한다.
12. 상기 규칙에 따라, 계시원주임은 각 선수의 공식기록을 결정하고 결과 배부를 위해 기록정보처리원에게 전달한다.

완전자동 계시 및 사진판독장치

(Fully Automatic Timing and Photo Finish System)

13.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IAAF 규칙에 준하는 완전자동계시 및 사진판독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1] 전부 또는 일부가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는 경기에서는 사진판독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주2] 모든 국내경기대회에서는 KAAF가 승인한 완전자동계시 및 사진판독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고] 모든 국내경기대회에서는 규칙 제165조 8항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장치(The System)

14. 장치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회 4년 이내 발급된 정확도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a) 이 장치는 피니시라인의 연장선상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피니시 상황을 복합적인 영상으로 기록해야한다.
 - (i) IAAF 규칙 제1조 1항에 정의된 대회의 경우, 이 복합적인 영상은 최소 1초당 1,000개의 이미지를 구성해야만 한다.
 - (ii) 다른 경기대회의 경우, 이 복합적인 영상은 최소 1초당 100개의 이미지를 구성해야만 한다.

각각의 경우에, 이 사진은 1/100초 단위로 일정하게 그려진 계시 눈금과 일치해야 한다.

 - (b) 신호총 발사 순간과 계시 장치가 작동할 때까지의 종합 시간차가 일정하고 1/1000초 또는 1/1000초 미만이라도, 이 장치는 스타트의 신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5. 카메라의 정확한 정렬을 확인하고 사진판독이미지의 용이한 판독을 위하여, 레인 라인들과 피니시라인의 교차지점은 적절한 모양으로 검은색을 칠해야 한다. 이 디자인은 교차지점에만 국한되어야 하는데, 피니시라인의 앞쪽 가장자리보다 앞으로 나와서도 안 되며 2cm를 초과해서 넘어서도 안 된다. 판독의 용이성을 위해 유사한 검은색 마크가 레인라인과 피니시라인의 교차지점 각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다.

16. 선수의 순위는 시간눈금과 판독선(reading line)이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로 화상을 판독한다.
17. 장치는 선수의 피니시 시간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하며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나타내는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장치는 각 선수의 기록 또는 기타 결과를 표로 제공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기록된 값 그리고 수동적으로 입력된 값(예 : 스타트시간, 피니시시간)의 차후 변경은 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과표와 인쇄된 사진의 시간비율로 표기되어야 한다.
18. 스타트나 피니시 양쪽 모두가 아닌 어느 한쪽에서만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는 수동계시기록으로도, 완전자동계시기록으로도 간주할 수 없으므로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사진판독기록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식기록으로는 간주되지 않지만 순위 결정과 선수들간의 시간차를 조정하기 위한 유효한 자료로 이용할 수는 있다.
[주-IAAF] 만약 계시 장치의 기전이 스타터의 신호에 의하여 작동되지 않았다면 사진의 계시눈금(time-scale)은 이 사실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작동(Operation)

19.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사진판독장치의 작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경기 시작 전에 관련 기술진과 만나서 모든 설정 사항들을 확인하고 사진 판독장치를 숙달한다.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트랙경기심판장과 스타터의 협력 하에 매 레이스의 시작 전에 사진판독장치가 규칙 제165조 14항(b)의 범위 내에서(예: 1/1,000초와 같거나 또는 미만) 스타터의 신호충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점조절(zero control)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사진판독장치의 테스트를 감독하여야 하고 카메라가 올바르게 조정(정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0. 최소 2대의 사진판독 카메라를 트랙 양쪽에 1대씩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진판독장치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되는 것이 좋다. 즉, 별도의 전력공급을 받고, 별도의 장치와 케이블에 의한 스타터의 신호총의 신호를 기록하고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IAAF] 2대 이상의 사진판독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기술대표 (또는 임명된 국제사진판정심판원)는 경기대회 시작 전에 그 중 1대를 공식카메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카메라의 사진에 나타난 기록 및 순위는 공식카메라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피니시 순서에 대한 불명확성 (예 : 공식 카메라의 사진에 선수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가려져서 찍혔을 경우)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사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하지 않는다.

21.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적절한 수의 보조요원들과 협의하여 각 선수의 순위 그리고 그 결과로 공식기록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과가 정확하게 입력 또는 경기대회 결과시스템으로 전송되어서 기록정보처리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테크놀로지가 구비된 주요대회에서는 보통 사진판독이미지가 즉각적으로 비디오보드에 송출되거나 인터넷에 게재된다. 불필요한 항의나 상소에 따른 시간소모를 피하기 위해 항의나 상소를 고려 중인 선수나 선수를 대리하는 인원에게 사진판독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22. 사진판독장치의 시간은 해당 임원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기록이 명백히 부정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공식기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가능하다면 사진판독이미지에 나타난 시간차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조정한 예비 계시원의 시간이 공식기록으로 인정된다. 계시 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대비하여 예비 계시원 (back-up timekeepers)을 임명하여야 한다.
23. 사진판독이미지에 의한 시간은 다음과 같이 판독하고 기록한다.

- (a) 10,000m이하의 모든 레이스에서의 기록은 정확히 1/100초로 계시되지 않은 이상 그 다음으로 낮은 1/100초로 전환하여 기록된다. (예 : 26:17.533은 26:17.54로 기록한다.)
- (b) 10,000m를 초과하는 모든 트랙 레이스에서는 마지막 두 숫자가 “0”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기록은 그 다음으로 낮은 1/10초로 전환하여 기록한다. (예 : 59:26.322는 59:26.4로 기록한다.)
- (c) 전부 또는 일부가 경기장 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레이스에서는 마지막 세 숫자가 “0”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기록은 그 다음으로 낮은 완전 초 단위로 전환하여 기록한다. (예 : 2:09:44.322는 2:09:45로 기록한다.)

자동무선계시장치(Transponder System)

24. 규칙 제230조(완전히 경기장에서만 실시되지 않는 레이스), 제240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에 명시된 종목에서 IAAF 규칙에 부합되는 자동무선계시장치의 사용은 다음 사항이 갖추어진 경우 허용된다.

- (a) 스타트, 코스, 또는 피니시라인에서 사용되는 장치가 선수의 경기진행에 중대한 장애물 또는 장벽이 되지 않을 경우.
- (b) 선수가 들거나 착용한 자동무선계시장치와 케이스의 중량이 크지 않을 경우.
- (c) 장치는 스타터의 총소리에 의해서 또는 스타트 신호에 맞추어 작동을 시작할 경우.
- (d) 장치가 경기 도중, 피니시, 또는 경기결과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선수의 동작으로 인한 작동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 (e) 모든 레이스에서 “0”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기록은 다음으로 낮은 완전 초 단위로 전환하여 기록한다. (예 : 2:09:44.3은 2:09:45로 기록한다.)

[주:IAAF] 공식기록은 스타트 총소리(또는 동시화된 스타트 신호)부터 선수가 피니시라인에 도달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이다. 그러나 선수가 스타트라인을 지나서 피니시라인을 통과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선수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공식 기록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f) 피니시 순서와 기록의 결정은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필요한 경우 규칙 제164조 2항과 제165조 2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

[주-IAAF] 피니시 순서와 선수의 신분 결정을 돕기 위해 심판원의 판정 및/또는 비디오 기록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자동무선계시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대회주최측에서 적절한 예비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특히 165조 24항 (f)의 준수를 위해) 중요하다.

(여러명이 동시에 피니시하여 칩 계시로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근접” 피니시의 경우를 위해 예비계시원과 특히 피니시 담당 심판원이 판결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25. 자동무선계시심판원주임은 자동무선계시장치의 작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동무선계시심판원주임은 경기대회 시작 전에 관련 기술진과 만나서 모든 설정 사항들을 확인하고 숙달해야 한다. 장비 테스트를 감독하고, 자동무선계시장치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시에 선수의 피니시 시간을 기록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는 심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제165조 24항(f)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66조

트랙경기에서의 조편성, 추첨 및 자격경기

(Seedings, Draws and Qualification in Track Events)

라운드와 조(Rounds and Heats)

1. 트랙경기에서 참가 선수 인원이 너무 많아 단일라운드(결승)로는 만족스러운 경기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자격라운드를 실시한다. 자격라운드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수가 자격라운드에 참가하여 ||

다음 라운드 진출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단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목에 참가시킬 일부 또는 전체 선수들과 이 선수들을 어떤 라운드에 참가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경기대회나 이전 경기대회에서 추가적인 사전자격라운드를 실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수의 대회참가자격과 참가할 라운드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타 방법(예 : 특정 기간 안에 엔트리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나, 지정된 대회에서의 순위 또는 랭킹에 따라 엔트리 기준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각 경기대회의 참가요강에 명시되어야 한다.

[주-IAAF] 제146조 4항 (c) 참조

2. 임명된 기술대표는 다음과 같이 트랙경기의 자격라운드 편성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임명된 기술대표가 없다면, 대회주최측에서 작성한다.

- (a) 각 경기대회의 규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라운드 수와 각 라운드의 조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와 자격진출절차(예 : 트랙경기의 각 라운드에서 순위(P)와 기록(I)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자격라운드(preliminary qualifications)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회주최측에서 별도로 결정하거나 관련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IAAF 웹사이트에 공표된 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 (b) 동일 국가나 팀에 소속한 선수들 및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은 가능한 모든 자격라운드에서 다른 조에 편성한다. 제1라운드 이후 이 원칙을 적용하여 조별로 편성된 선수들을 교환 편성할 때는 가능한 한 규칙 제166조 4항 (b)에 따라 동일한 “레인 그룹”에 편성된 선수들에 한하여 실시한다.

- (c) 가능하면 모든 선수의 기록을 자세히 파악하고 조편성을 조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결승경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편성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 국내의 경기대회에서는 중·장거리경기의 1조의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00m, 3000mSC	17명 이내
3000m, 5000m (그룹 스타트를 할 때)	34명 이내
10,000m (그룹 스타트를 할 때)	38명 이내

자격라운드는 반드시 다음라운드와 궁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할 선수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에선 같은 회원연맹이나 팀 소속 선수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고 기록(일반적으로 기준기록 달성기간 동안 수립된 기록을 근거로 하나, 기타 선수의 최근 우수 기록도 참고할 수 있음)을 가진 선수들이 같은 조에서 경쟁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요 경기대회에서는 최소한 사전에 정한 기간에 유효한 조건에서 선수가 달성한 최고 기록(공식 풍속을 포함)을 근거로 조편성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은 보통 해당 경기대회의 기술규정이나 엔트리 조건 및 기준이 포함된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세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술대표나 대회주최측에서 조편성 원칙을 결정해야 한다.

트레이닝이나 테스트를 통해 달성된 기록 등 “외향적으로” 경기대회 같은 환경에서 달성되거나 선수들이 그러한 기록을 실제로 경기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식 경기에서 달성된 기록이 아니면 조편성 시 고려사항일 수 없다.

“선수의 최고 기록”과 관련된 규칙의 요구사항은 상기에 명시된 엄격한 절차와는 실제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편성에서 높은 순위의 위치에 배정받을 수 있었을 만한 선수가 실제로는 (부상, 질병, 참가자격 정지 또는 실내경기대회에 참가하는데 실외경기 기록 밖에 없는 등의 사유로) 사전 기록 달성기간 동안에 달성한 유효한 기록이 없거나 낮은 기록 밖에 없을 수가 있다.

따라서 선수가 조편성 명단에서 하위에 있을 수 있게 되겠지만,

기술대표들은 이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전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동일한 조에 편성될 수 있는 선수들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높은 순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이라면 이러한 선수들이 자격라운드에서 같은 조에 편성되어 경쟁하지 않도록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가능한 같은 국가나 팀 소속의 선수들이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최초 조편성을 하고 나서 레인 추첨을 하기 전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수들 간의 교환 편성이 일어나야 한다:

- (a) 제1라운드에서는, 사전 기록달성 기간 동안 유효한 최고기록으로 나열한 선수명단에서 랭킹이 비슷한 선수들 간 교환 편성 ; 그리고
- (b) 이후 라운드에서는 규칙 제166조 4항 (b)에 따라 같은 레인그룹에 편성된 선수들 간 교환 편성.

특정 종목에서 라운드 수가 감소된 경기대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히 더 중요하다. 정확하고 심도있게 진행된 조편성은 공정하고 매력있는 육상경기를 창출해내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더 낮은 수준의 경기대회에서는 기술대표나 대회주최측은 이와 유사한 최종 결과물(예:공정하고 매력있는 육상경기)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른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랭킹 및 조 편성(Ranking and Composition of Heats)

- 3. (a) 제1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립된 해당 종목의 유효한 기록리스트에 따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각 조에 배정한다.
- (b) 제1라운드 후에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라운드의 조에 배정된다.
 - (i) 100m~400m까지 종목과 4×400m까지의 릴레이레이스의 조편성은 이전 라운드의 순위와 기록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목적을 위해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각조 1위중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 각조 1위중 두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 각조 1위중 세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등
 - 각조 2위중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 각조 2위중 두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 각조 2위중 세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 등
(아래의 기록으로 통과된 선수를 포함하여)
 - 위 선수 이외의 나머지 중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
 - 위 선수 이외의 나머지 중 기록이 두 번째로 좋은 선수
 - 위 선수 이외의 나머지 중 기록이 세 번째로 좋은 선수 등
- (ii) 기타 종목의 경우에는 기존 경기결과 리스트를 토대로 시드배정을 하되, 이전 라운드에서 더 좋은 기록이 수립될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 (c) 이 절차를 마친 후, 선수들의 각 조 편성 순서에 있어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배정된다. 예를 들면, 3개조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 편성을 한다.

A	1	6	7	12	13	18	19	24
B	2	5	8	11	14	17	20	23
C	3	4	9	10	15	16	21	22

모든 경우에, 각 조별 경기순서는 각 조의 구성이 결정된 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제1라운드에서 진행되는 조의 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400m까지의 종목에서는 추가 레인 (예 : 곡선주로나 직선주로의 9번째 레인)을 사용하거나, 800m 레이스 스타트 시에는 한 레인에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용된다.

각 조별 경기순서를 위한 무작위 추첨은 공정성을 근거로 한다. 중장거리 종목을 마지막 조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이 달성해야 하는 (시간)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더 짧은 거리의 레이스에서도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풍속이나 풍향이 바뀌는 등) 날씨 여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별 경기순서는 확률에 의존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한다.

레인추첨(Draw for Lanes)

4. 100m~800m까지의 경기와 4×400m까지의 릴레이레이스에서 몇 차례의 연속 라운드가 계속 진행될 때는 레인 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첨된다.

(a) 제 1라운드 및 규칙 제166조 1항에 따른 모든 추가적인 사전자격 라운드의 레인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b)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규칙 제166조 3항(b)(i), 800m 경우에는 제166조 3항(b)(ii)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각 라운드 후 선수 랭킹(순서)이 정해진다.

이후, 다음과 같이 세 번의 추첨이 실시된다 :

(i) 3, 4, 5, 6의 레인에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 4명 또는 4팀을 배정하는 추첨

(ii) 7, 8레인에 5위와 6위의 선수 또는 팀을 배정하는 추첨

(iii) 1, 2레인에 최하위 순위의 선수 2명 또는 2팀을 배정하는 추첨

[주1-IAAF] 레인이 8개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상기 방식에 준해서 필요한 수정을 하여 결정한다.

[주2-IAAF] 규칙 제1조 1항 (d)~(j)에 해당되는 대회에서 800m 경기는 각 레인에 선수가 1명 또는 2명이 레이스를 하여도 좋으며, 또는 원호형스타트라인 뒤에서 그룹 스타트를 해도 좋다. 이 사항은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해당되는 경기대회에서 제1라운드에서만 적용하지만, 동순위 또는 심판장이나 상소심판위원단의 진출 허락으로 인하여 다음 라운드의 한조에 진출하는 선수

수가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3-IAAF] 800m 레이스에서는(결승경기 포함), 레인 수보다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경우 어느 레인에 1명 이상의 선수를 배정할 것인지를 기술대표가 결정한다.

[주4IAAF] 선수들보다 레인이 더 많을 때, 안쪽 레인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주3-IAAF]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대표가 따라야 하는 정확한 세칙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사항은 레이스의 첫 번째 곡선주로를 달리는 선수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더 짧은 거리의 레이스의 레인 배정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기술대표는 더블업(double-up 한 레인에 두 명 이상의 선수를 배정하는 것)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레인에 추가 선수(들)를 배정하도록 한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들이 곡선주로를 너무 좁게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깥쪽 레인에 배정하도록 한다.

[주4-IAAF]는 8개 이상의 레인이 있는 경기장에서 기술대표(없다면 대회주최측)가 사전에 어떠한 레인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9개의 레인이 타원형 트랙의 경우, 레이스에 참가하는 선수가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1레인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166조 4항에 따라 제2레인이 1레인으로 간주된다.

5.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800m를 초과하는 종목, 4×400m를 초과하는 릴레이레이스 그리고 단일라운드(결승)만 실시하는 종목에서는 레인 순과 스타트 위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6. 경기대회에서 라운드와 결승경기 대신 연속적인 레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기대회의 규정에 조편성 및 추첨 그리고 결승 경기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고려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

7. 선수는 자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조 또는 레인 이외의 조 또는 레인에서 경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기술대표나 심판장의 판단으로 변경이 정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 라운드 진출 (Progression)

8. 모든 자격라운드에서 사용되는 조편성 표는 적어도 각 조의 1, 2위 선수들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가능하면 각 조의 3위까지를 다음 라운드에 진출 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규칙 제16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수들은 규칙 제166조 2항, 특정 기술규정, 또는 기술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순위 또는 기록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기록으로 자격이 주어질 경우, 동일한 계시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 기록에 의하여 다음 라운드의 진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사진판독장치를 사용한 대회에 한한다.

대회의 규정에 사용될 표를 명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규칙 제166조 8항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술대표나 대회주최측은 다음라운드 진출 표를 작성할 때 동일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순위로 다음라운드 진출자를 결정할 때 최종 진출자가 동순위일 경우에는, 제167조에 따라 변경해서 적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록에 따라 선수들을 진출시키며 결과적으로 한 명은 다음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레인이 충분하게 있거나 (스타트 시 한 레인에 2명 이상의 선수들을 배정할 수 있는) 800m 종목, 또는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레이스의 경우에는, 기술대표는 추가적인 선수들을 다음라운드에 진출시키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제166조 8항의 조항에 따라 시간(기록)으로 다음라운드진출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동일한 계시장지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라운드에서는 주장치(예 : 사진관독장치)가 오작동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계시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조의 결과/기록이 서로 다른 계시장치에서 계시된 경우에는, 기술대표가 트랙 심판장과 함께 특정 대회의 상황에 맞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들을 결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 추가적인 레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1일 경기대회 (One Day Meetings)

- 규칙 제1조 1항 (e), (i), (j)에 준하여 실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해당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대회주최측에서 별도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수의 조편성, 랭킹(순위) 부여 및 레인 편성을 진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가능하면 선수와 선수를 대리하는 인원에게 사전 통지되어야 한다.

1일 경기대회에서 오직 “결승”라운드만 있지만 결승라운드가 2개 이상의 레이스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회나 그 대회가 속한 시리즈 대회의 규정에 따라 레이스를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대회주최측이나 기술대표가 요청하는 대로 선수를 레이스(들)에 배정해야 한다.

이러한 대회에서는 선수의 랭킹에 있어서도 상기와 유사한 고려사항들을 적용한다. 일부 대회에서는 주요 레이스 이외의 레이스는 별도 레이스로 간주하고 (그 결과가) 전체 랭킹에 반영되지 않지만, 다른 대회에서는 2개 이상의 레이스 결과를 합하여 전체 랭킹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대회에 어떠한 방식이 적용되든, 시상이나 기타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라운드 간 최소 시간 간격 (Minimum Times Between Rounds)

- 각 라운드의 마지막 조와 다음 라운드의 최초의 조 또는 결승경기 간에는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간격을 두어야 한다.

200m까지	45분
200m 초과 - 1,000m까지	90분
1,000m 초과	같은 날 실시하지 않음

제167조 동순위의 해결(Ties)

1. 만약 심판원이나 사진판정심판원이 규칙 제164조 2항, 165조 18항, 165조 21항 또는 165조 24항에 따라서도 동순위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랭킹(순위부여)에서의 동순위 (166조 3항 (b))

(Tie for ranking position (according to Rule 166.3(b)))

2. 제166조 3항(b)에 준하여 랭킹(순위부여)을 정할 때 동순위가 있을 경우,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동순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수의 실제기록을 1/1000초까지 참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동순위가 발생한다면, 동순위가 유지되며, 추첨을 통해 더 높은 순위를 결정한다.

순위로 다음라운드 진출자격을 결정할 시의 동순위

(Tie for last qualifying position based on place)

3. 순위로 다음라운드 진출자격을 결정할 때 제167조 1항을 적용한 후에도 최종 진출자격 순위에서 동순위가 있다면, (800m에서 레인을 공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용한 레인이나 배정할 수 있는 위치(position)가 있다면 동순위 선수들을 다음라운드에 배정하도록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동순위 선수 모두가 진출할 수 없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다음 라운드 진출 자격이 순위와 기록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고(예, 각 두 조에서의 3위까지와 그 다음으로 기록이 좋은 2명) 순위에 근거한 최종 진출자 자격의 순위에서 동순위가 발생할 경우, 다음 라운드에 동순위 선수들을 배치하면 기록에 근거한 진출자격 선수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기록(시간)으로 다음라운드 진출자격을 결정할 시의 동순위

(Tie for last qualifying position based on time)

5. 기록으로 다음 라운드의 최종 진출자를 결정할 시에 동순위가 있을 때에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동순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수의 실제기록을 1/1000초까지 참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동순위가 발생한다면, 동순위가 유지된다. 가용한 인이나 배정할 수 있는 위치(position)가 있다면 동순위 선수들을 다음라운드에 배정하도록 하나, 이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동순위 선수 모두가 진출할 수 없다면)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68조

허들 레이스(Hurdle Races)

1. 허들의 표준 거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거 리
남자 : 일반, U20, 남고, U18	110m, 400m
여자 : 일반, U20, 여고, U18	100m, 400m
남중	110m
여중	100m

허들 레이스에서는 각 레인에 다음 표와 같이 10대의 허들을 설치한다.

남자 : 일반, U20, 남고, U18 및 남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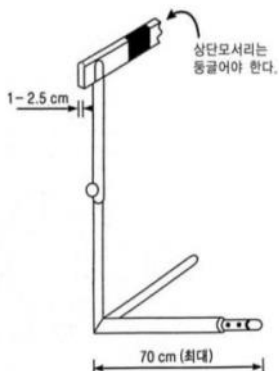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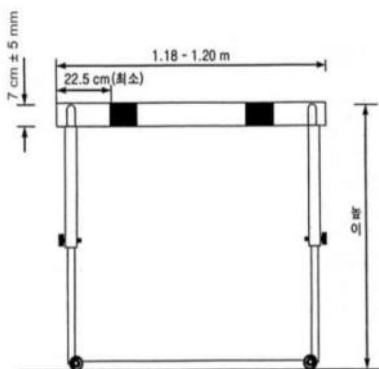
레이스거리	스타트라인 ~ 제1허들까지의 거리	허들간 거리	마지막 허들 ~ 피니시라인까지의 거리
110m	13.72m	9.14m	14.02m
400m	45.00m	35.00m	40.00m

- 남중은 400m 허들을 실시하지 않는다.

여자 : 일반, U20, 여고, U18 및 여중

레이스거리	스타트라인 ~ 제1허들까지의 거리	허들간 거리	마지막 허들 ~ 피니시라인까지의 거리
100m	13.00m	8.50m	10.50m
400m	45.00m	35.00m	40.00m

○ 여중은 400m 허들을 실시하지 않는다.



허들 (예)

각 허들은 선수들이 허들에 접근하는 쪽에 받침대가 위치하도록 트랙에 설치하여야 한다. 각 허들은 접근하는 허들선수에게 가장 가까운 바의 옆 쪽 수직면이 선수에게 가장 가까운 트랙 마킹과 일치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허들은 금속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만들고 상단 바는 목재나 기타의 적당한 비금속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허들은 1개 이상의 허들바로 보강되는, 직사각형의 틀을 떠받치는 2개의 받침대와 2개의 지주(支柱)로 구성되고 지주는 각기 기저부의 양쪽 끝에 고정시킨다. 허들은 바의 상단(上端) 중심부에 최소한 3.6kg에 상당하는 힘이 수평으로 가해지면 기울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허들은 종목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또한 높이에 따라 3.6kg이상과 4kg이하에 상당하는 힘이 가해질 때 기울어지도록, 평형추(平衡錘)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1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허들 상단 바의 중심부에 가했을 때 (지주편차를 포함하여) 허들 상단 바의 수평편차 최대값은 35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허들의 표준 높이는 다음과 같다.

종목	남자				여자		
	일반/납고	U20	U18	납 중	일반/U20/여고	U18	여 중
110mH/100mH	1.067m	0.991m	0.914m	0.914m	0.838m	0.762m	0.762m
400mH	0.914m	0.914m	0.838m		0.762m	0.762m	

[주 IAAF] 제조상 변수 때문에, U20 110mH 레이스에는 1.000m까지의 허들도 사용할 수 있다.

각 높이의 허용오차는 제조상의 변수를 감안해서 표준높이에서 $\pm 3\text{mm}$ 의 오차는 인정한다.

허들 너비는 1.18m ~ 1.20m이다.

기저부의 최대길이는 70cm이다.

허들의 총 중량은 10kg이상으로 한다.

4. 바 상단의 높이는 $7\text{cm} \pm 5\text{mm}$, 두께는 1cm~2.5cm, 상단 모서리는 둥글어야 한다. 바는 양끝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바의 상단은 흰색과 검정색 또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주위환경과 또한 대조를 이루는) 다른 색체를 칠하되, 양끝에는 연한색을 칠하며, 그 너비는 최소한 22.5cm가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선수들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색이 칠해져야 된다.
6. 모든 레이스는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규칙 제163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레인에서만 허들을 넘으며 달려야 한다. 다른 선수에게 방해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제168조 7항(a)를 위반한 경우 외에도, 선수가 다른 레인에 있는 허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넘어뜨린다거나 뚜렷하게 이동시킨다면 실격될 것이다.

규칙 163조 3항과 4항의 의도가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선수가 각자의 허들을 넘어야한다는 조항은 자신의 레인에 있는 허들만 넘어야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선수가 다른 레인에 있는 허들을 넘어뜨리거나 이동시킴으로써 다른 선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격 당한다.

선수가 다른 레인의 허들을 넘어뜨리거나 이동시키는 상황에 대한 해석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선수가 이미 다른 레인의 선수가 넘은 허들을 넘어뜨리거나 이동시킨다면, 이는 다른 규칙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예 : 곡선주로에서 안쪽 레인으로 이동하는 등) 실격의 대상일 필요가 없다. 본 규칙의 목적은 그러한 행위를 한 선수가 결과적으로 다른 선수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실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장이나 감찰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고 모든 선수가 각자의 레인에서 달리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허들 종목에서는 선수가 허들을 넘을 때 자신의 팔동작을 넓게 하여 다른 레인에 있는 선수를 치거나 방해를 하게 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이는 달리는 선수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감찰원이나 카메라에서 가장 확실하게 감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63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다.

7. 선수는 각(모든) 허들을 넘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도 실격이 된다 :

- (a) 발 또는 다리가 허들을 넘는 순간에 어느 허들 상단의 수평면보다 낮게 허들의 측면(어느 측면이라도)을 통과한 경우; 또는
- (b) 고의로 허들을 넘어뜨렸다고 심판장이 판단할 경우

[주-IAAF] 본 규칙이 준수되고, 허들이 (선수의 동작에 의해) 이동되거나 넘어야 될 허들의 높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여지는 현상을 포함하여) 낮아지지 않는다면, 선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허들을 넘어갈 수 있다.

168조 7항 (a)는 선수의 차는(lead) 다리와 따라오는(trail) 다리 모두에 적용된다. 단순히 허들을 넘어뜨리는 행위가 실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수들이 따라오는 다리는 당기는 동작을 할 때 허들의 바의 상단을 치면서 허들을 넘어뜨리게 된다. (예 : 선수가 허들 너무 가까이 스태프하게 됨으로써) 고의로 허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실격이다. 심판장은 (모든 선수가 각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168조 7항의 핵심요구사항이 만족되지 않고 선수가 고의로 허들을 넘어뜨렸다고 판단될 때 실격을 주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경우는 선수가 손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선수가 발이나 대퇴의 뒤쪽을 의도적으로 (허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면, 심판장은 그러한 행위가 의도적이었으며 규칙의 목적에 위배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수가 허들을 넘기 위해 리드다리를 충분히 높이 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허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주-IAAF]의 내용은 낮은 수준의 경기대회에 주로 연관된 것이기는 하나 모든 대회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근본적으로 이는 넘어졌거나 주법의 패턴이 깨진 선수가 예를 들면 손을 허들에 대고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8. 규칙 제168조 6항과 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들을 넘어뜨려도 실격되지 않으며 그 신기록도 인정된다.

제169조

장애물 레이스(Steeplechase R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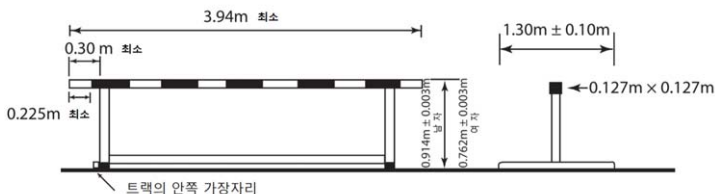
1. 표준거리는 2,000m와 3,000m이다.
2. 3,000m 장애물레이스에는 28개의 허들과 7개의 물웅덩이를 뛰어넘어야 하고, 2,000m 장애물레이스에는 18개의 허들과 5개의 물웅덩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3. 장애물레이스에는 피니시라인을 처음으로 통과한 후, 매 주회마다 5개의 장애물을 뛰어 넘어야한다. 이중 4번째 장애물이 물웅덩이다. 장애물 간의 거리는 트랙 한 바퀴의 약 1/5의 길이가 되도록 균일하게 배치할 수 있다.

[주1-IAAF] IAAF 육상경기시설매뉴얼에 명시되었듯이, 허들/스타트라인과 그 다음 허들 간의 안전거리가 피니시라인 전후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허들 간의 간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주2-IAAF] 2,000m 장애물레이스에서 물웅덩이가 트랙의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5개의 장애물을 넘는 첫 번째 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스타트 후 피니시라인을 2회 통과하여야 한다.

4. 3,000m 장애물레이스에서는 스타트로부터 첫 번째 주회의 시작까지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하지 않는다. 선수가 첫 번째 주회에 들어서기 전까지 허들은 트랙바깥에 놓아둔다. 2,000m장애물레이스에서는 첫 번째 장애물은 정상 주회의 세 번째의 허들이 되며, 그 보다 앞에 있는 허들은 선수들이 처음 통과할 때까지 트랙 바깥에 놓아둔다.
5. 남자 종목의 허들높이는 0.914m(± 3 mm)이고, 여자 종목의 허들높이는 0.762m(± 3 mm)이며, 너비는 최소 3.94m로 한다. 트랙의 허들과 물웅덩이에 접한 허들의 상단 바 부분은 가로 세로 12.7cm의 정방형(正方形) 모양으로 한다.

각 허들의 무게는 80kg~100kg사이로 한다. 각 허들에는 양쪽에 길이 1.2m~1.4m의 기저부를 붙인다(그림 참조).



장애물 허들(예)

물웅덩이에 접한 허들은 너비 $3.66\text{m} \pm 0.02\text{m}$ 이어야 하며, 물웅덩이의 콘크리트 벽이나 그 안쪽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최소한의 수평이동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바의 상단은 흰색과 검정색 또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다른 색채 (주변환경도 대조를 이루는)를 칠하되, 양끝에는 연한색을 칠하여 모든 선수들이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너비는 최소한 22.5cm가 되어야 한다.

허들은 바 상단의 30cm가 트랙의 안쪽 가장자리에서 트랙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트랙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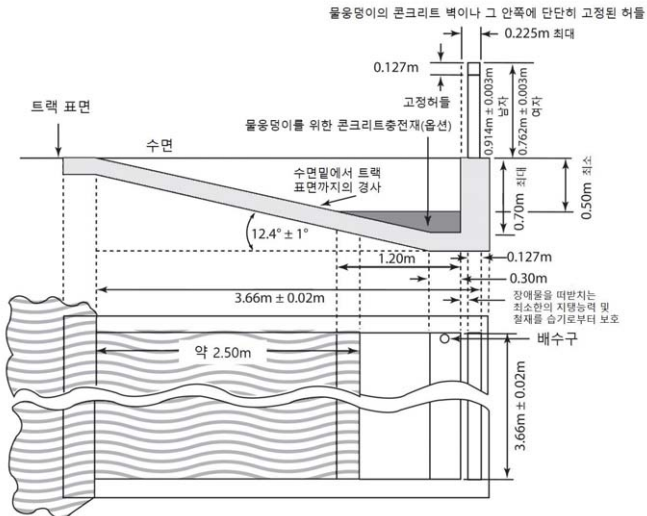
[주 IAAF] 레이스에 설치한 첫 번째 허들은 너비가 최소 5m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허들을 포함한 물웅덩이의 길이는 $3.66\text{m} \pm 0.02\text{m}$ 이고, 물웅덩이의 너비는 $3.66\text{m} \pm 0.02\text{m}$ 이다.

물웅덩이의 바닥재질은 합성포장재나 매트로 하며, 두께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고 스파이크가 확실하게 찍힐 수 있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한다. 허들과 가장 가까운 물웅덩이의 수심은 대략 30cm 길이까지는 70cm가 되어야 한다. 바닥은 이 지점으로부터 물웅덩이의 먼 쪽 끝의 트랙의 표면까지 균일하게 경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레이스 스타트 시, 물웅덩이의 수면과 트랙표면의 차이는 2cm이내의 차이로 트랙표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주 IAAF] 물웅덩이의 수심은 트랙표면 수평으로부터 (물웅덩이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약 1.20m의 구간 동안) 최대 70cm에서

최소 50cm까지 감소해도 좋다. 물웅덩이 바닥의 균일한 경사는($12.4^{\circ} \pm 1^{\circ}$) 그림에 예시되어있는 것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새롭게 시공되는 물웅덩이는 얇은 수심의 물웅덩이가 권장된다.



물웅덩이 (Water jump)

7. 각 선수는 물웅덩이를 뛰어넘거나 통과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각 허들을 넘어야 한다. 이를 실패할 경우 실격처리가 된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격처리가 된다 :
- (a) 물웅덩이의 (측면) 바깥에 착지하는 경우, 또는
 - (b) 발이나 다리가 허들을 넘는 순간 허들 상단의 수평면보다 낮게 허들의 측면(어느 쪽이든)을 통과하는 경우.
- 이 규칙이 준수되는 한, 선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들을 넘을 수 있다.

제170조 릴레이레이스(Relay Races)

1. 릴레이레이스의 표준 거리는 다음과 같다 : 4x100m, 4x200m, 100m-200m-300m-400m 메들리 릴레이 (Medley Relay), 4x400m, 4x800m, 1200m-400m-800m-1600m 디스틴스 메들리 릴레이 (Distance Medley Relay), 4x1500m.

[주-IAAF] 메들리 릴레이는 규칙 제170조 14항, 18항, 19항, 20항이 적용되도록 적절히 수정된 경우 각 구간을 다른 순서로 달릴 수 있다.

2. 각 구간의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scratch line)을 표시하기 위해 너비 5cm의 흰색라인을 트랙에 가로질러 표시한다.
3. 4x100릴레이와 4x200m릴레이, 그리고 메들리 릴레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테이크오버에서는, 각 테이크오버 존의 길이는 30m이고 스크래치 라인은 테이크오버 존의 스타트지점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메들리릴레이의 세 번째 테이크오버와 4x400m 이상의 릴레이에서는 각 테이크오버존은 스크래치 라인을 중심으로 하여 길이가 20m이어야 한다. 테이크오버존은 달리는 방향으로 스타트라인과 가장 가까운 존라인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레인에서 실시되는 각 테이크오버는 임명된 임원이 선수들이 그들의 테이크오버존에 맞게 배치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명된 임원은 또한 규칙 제170조 4항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감찰원은 각 팀의 선수들이 올바른 레인과 위치해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타터 보조원들은 제1주자의 위치와 각 선수가 바톤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스타터 보조원들은) 이후 스타트 라인에서 일어나는 테이크오버존에서도 보조하는 역할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각 테이크오버존의 감찰원주임과 그들이 통제하는 감찰원들은 다음 주자들이 올바른 위치에 서도록 한다. 모든 선수가 존에 올바르게 위치하게 되면 감찰원 주임은 통신장치(큰 대회의 경우 보통 무전기)로

기타 관련된 경기임원들에게 이를 알려준다.

또한 모든 후발주자가 배턴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 할 때 그들의 발이 완전히 존 안에 위치하도록 (존 안에서 스타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동작은 존 밖에서 시작할 수 없다.

4. 릴레이레이스의 전부 또는 첫 부분이 레인에서 달릴 경우, 선수는 다른 영구적인 마킹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이 분명한 색상의 최대 5cmx40cm의 크기의 접착테이프로 자기 레인 내의 트랙 위에 1개의 체크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체크마크를 해서는 안 된다. 심판원들은 본 규칙을 따르지 않는 마크를 표시한 선수들이 이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선수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원들이 제거해야 한다.

[주-IAAF] 심각한 상황들은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에 따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주] 국내의 경기대회에서는 각 소속팀에서 체크마크를 준비한다.

5. 릴레이 배턴은 목재나 금속 또는 다른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단면이 둥글고, 표면이 고르며, 속이 빈 관형(管型)이어야 한다. 길이는 28cm~30cm이고, 바깥 지름은 40mm(± 2 mm), 무게는 50g이상이어야 한다. 배턴은 레이스 중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으로 칠하여야한다.

[주] 초등학생용 배턴

길이 : 26cm~28cm, 둘레 : 9.5cm~10.5cm

무게 : 50 g 이상

6. (a) 배턴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릴레이레이스에서 사용되며 선수가 레이스 동안 계속 손에 쥐고 운반하여야 한다. 적어도 규칙 제1조 1항(a), (b), (c) 그리고 (f)에 해당되는 경기대회에서는, 각 배턴에 숫자를 표기하여야 하고, 각각 색깔이 다르도록 한다. 배턴에 자동무선계시장치가 포함될 수도 있다.

[주-IAAF] 가능하다면, 각 레인 또는 스타트 순서의 위치에 따라 배턴의 색깔을 배정하고 이를 스타트리스트에 표기하여야 한다.

(b) 선수가 배턴을 잘 잡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거나 (규칙 제144조 4항(c)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 손에 재료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c) 배턴을 떨어뜨렸을 경우, 배턴을 떨어뜨린 선수가 주워야 한다. 선수는 떨어뜨린 배턴을 줍기 위해 자기 레인을 벗어날 수는 있으나 자기가 달려야 할 거리를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배턴이 달리는 방향의 측면이나 정면(피니시라인의 앞쪽 포함하여)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회수한 선수는 반드시 배턴을 자신의 손에서 떨어뜨린 지점으로 되돌아 온 후 레이스를 재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적용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가 방해받지 않은 경우에만 배턴을 떨어뜨려도 실격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선수가 본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해당 팀은 실격이 된다.

7. 배턴은 테이크오버존 내에서만 전달되어야 한다. 배턴패스는 배턴을 받는 선수의 손에 처음 배턴이 닿는 순간에 시작해서 받는 선수의 손 안에 완전히 넘겨진 순간에 끝난다. 테이크오버존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턴의 위치이다. 테이크오버존 외에서 배턴을 패스하는 경우는 실격이다.

배턴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배턴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감찰원은 특히 4x400m 이상의 릴레이에서 배턴이 테이크오버존에 들어서기 전에 후발주자와 접촉이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배턴이 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후발주자가 배턴에 접촉하게 되면 (닿기라도 하면) 해당 팀은 실격의 대상이 된다. 감찰원은 또한 배턴이 테이크오버존을 떠나기 전에 후발주자의 손에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8. 배턴이 완전히 후발주자의 손에만 있기 전까지는 제163조 3항은 오직 선발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이후에는 163조 3항은 오직 후발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배턴을 받기 전과 그리고/또는 넘겨준 후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코스가 비워질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레인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제163조 3항 및 4항은 이 선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수가 (자신의 위치나 레인을 이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팀의 선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규칙 제163조 2항이 적용된다.

9. 만약 레이스 중 선수가 상대 팀의 배턴을 가지고 가거나 줍는다면, 그의 팀은 실격된다. 다른 팀은 이득을 얻지 않는 이상 실격되지 않는다.
10. 릴레이 팀의 각 선수는 한 구간만 달려야한다. 릴레이레이스 혹은 기타 종목에 대한 참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대회에 참가 신청한 선수들 중에서 4명의 선수가 릴레이 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릴레이 팀이 첫 경기를 치른 후에는 2명의 추가 선수만이 예비 선수로 활용될 수 있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11. 릴레이레이스에서 팀의 편성 및 주자 순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해당 경기 각 라운드 제1조의 첫 번째 소집시각 (선수가 소집실 내에 위치해야 하는 시간) 1시간 전까지 공식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후의 변경을 하려면 대회주최측에서 임명한 의무담당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해당 팀의 경기가 있는 조의 최종 소집시각 (선수가 소집실을 떠나는 시간) 전까지만이 변경이 가능하다. 팀은 신고한 주자 순서대로만 경기할 수 있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12. 4×100mR 레이스는 완전히 레인 내에서만 진행된다.
13. 4×200mR 레이스는 다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
 - (a) 가능하면, 완전히 레인에서 달린다 (레인에서 4개의 곡선주로를 달린다),
 - (b) 처음 2명의 주자는(제1주자와 제2주자) 레인에서 달리고, 제3주자는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브레이크라인 앞쪽 가장자리까지는 레인에서 달리고 그 후 선수들은 자신의 레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레인에서 3개의 곡선주로를 달린다)

- (c)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한 브레이크라인의 앞쪽 끝까지 제 1주자가 레인에서 달리며, 그 후 레인을 벗어날 수 있다 (즉 레인에서 1개의 곡선주로를 달린다.)

[주-IAAF] 4개 이하의 팀이 참가하고 상기 (a)가 불가능한 레이스에서는 상기 (c)의 적용을 권장한다.

14. 메들리 릴레이 레이스는 첫 두 주자는 레인에서 달리고 제3주자는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브레이크라인 앞쪽 가장자리까지는 레인에서 달리며, 그 후 선수들은 자신의 레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2개의 곡선주로를 레인에서 달린다.)

15. 4×400m 레이스는 다음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진행할 수 있다 :

- (a) 제1주자는 레인에서 달리고 제2주자는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브레이크라인 앞쪽 가장자리까지는 레인에서 달리며, 그 후 선수들은 자신의 레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레인에서 3개의 곡선주로를 달린다),

- (b) 제1주자는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브레이크라인에 보다 가까운 가장자리까지만 레인에서 달린다. 그 후 레인을 벗어날 수 있다(즉 레인에서 1개의 곡선주로를 달린다.)

[주-IAAF] 4개 이하의 팀이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상기 (b)의 적용을 권장한다.

16. 4×800m 레이스는 다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

- (a) 제1주자는 규칙 제163조 5항에서 명시하는 브레이크라인 앞쪽 가장자리까지는 레인에서 달리며, 그 후 레인을 벗어날 수 있다(즉 레인에서 1개의 곡선주로를 달린다.)

- (b)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17. 선수가 규칙 제170조 13항, 14항, 15항 또는 제170조 16항(a)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팀은 실격당한다.

18. 디스턴스 메들리 릴레이 레이스 및 4x1500m 레이스에서는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19. 모든 테이크오버에 있어서 선수들은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스타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존 안에서 스타트해야 한다.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수의 팀은 실격당한다. ||

20. 메들리레이스의 마지막 주자와 4x400m 레이스의 제3주자 및 제4주자는 (또는 제170조 15항(b)의 제2주자는) 마지막(제2) 곡선주로를 진입한 팀 순서에 따라(동일한 순서로) 해당 임원의 지시 하에 대기 순서대로(안쪽에서 바깥 순으로) 대기 위치에 선다. 앞 주자가 이 지점(마지막 곡선주로 진입)을 통과하게 되면 대기선수는 지정된 순서를 유지해야 하며, 테이크오버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 ||

[주-IAAF] 4x200m 레이스가 완전히 레인에서만 달리지는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때에는, 앞 주자가 레인에서 달리지 않았다면 선수들은 스타트리스트에 등록된 순서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맞추어 선다.

21.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레이스 (4x200m, 메들리 릴레이, 4x400m의 레인을 달리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트랙의 대기 주자는 앞 주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트랙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서는) 순서를 안쪽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이는 다른 선수를 밀거나 가로막아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4x200m, 메들리 릴레이, 4x400m에서 대기 선수는 제170조 20항에 따라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선수의 팀은 실격당한다.

감찰원 주임과 감찰원들은 자신들이 배정받은 존에서 위치를 지켜야 한다. 선수들이 자신들의 레인에 올바르게 위치하고 레이스가 시작되면 존을 담당하는 감찰원 주임과 감찰원들은 본 규칙의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163조의 위반사항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필드경기(Field Events)

제180조

총칙(General Conditions) - 필드경기

경기장소에서의 연습시기(Practice Trials at the Competition Area)

1. 경기장소에서 경기시작전에 각 선수는 연습시기를 할 수 있다.
투척경기에서는, 연습시기는 주첨된 순서로 항상 심판원의 감독하에 실시한다.

과거 규칙에는 투척경기에서 각 선수당 2번의 연습시기를 주어야 한다는 세칙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세칙이 없다. 180조 1항은 워업 시간에 허용될 수 있는 연습시기의 수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요대회의 경우에는 2번의 연습시기가 표준이나 이는 최소 허용되는 연습시기 수로 간주해야 하며 시간적으로 가능하거나 또는 일부 선수 또는 선수 전체가 추가적인 연습시기를 요청할 시에 이를 허용해 줄 수도 있다.

2.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선수들은 연습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사용할 수 없다.
 - (a) 도움닫기주로 또는 발구름 장소
 - (b) 장대높이뛰기 폴(장대)
 - (c) 용구
 - (d) 서클 또는 투척 낙하구역 내의 지면 (용구를 지참하거나 지참하지 않아도)

상기 규칙의 적용에 따라 선수가 자신의 시기에 대비하여 폴(장대)이나 자신이 선택한 용구를 만지거나 준비하거나 테이핑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는 선수가 다른 선수나 기타 인원을 위협하게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심판원들은

본 규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경기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하고 선수가 원한다면 자신의 시기 허용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시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커(Markers)

3. (a) 도움단기주로를 사용하는 모든 필드경기에서는 도움단기 주로의 바깥에 마커를 두어야 한다. 단, 높이뛰기는 도움단기 주로 위에 마커를 둘 수 있다. 선수는 자신의 도움단기와 발구름을 돕기 위해 (대회주최측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1-2개의 마커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마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분필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 또는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그 외의 어떤 물질도 사용할 수 없다.

- (b) 서클에서 실시되는 투척경기에서 선수는 한 개의 마커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마커는 서클 바로 후방 또는 서클에서 인접한 경기장 내의 지면에만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마커는 선수 각 개인의 투척 시기 중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심판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낙하장소 내 또는 옆에 개인의 마커를 설치할 수 없다.

[주-IAAF] 각 마커는 오직 단일 제품(Single-Piece)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c) 장대높이뛰기의 경우, 대회주최측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거리 마커를 도움단기주로 옆에 설치하는데, 이는 다음의 간격을 따른다. “0선”을 기준으로 :

- 2.5m지점부터 5m 지점까지는 0.5m 간격으로,
- 5m지점부터 18m 지점까지는 1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d) 심판원들은 본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마크를 표시한 선수들이 이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선수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원들이 제거해야 한다.

[주-IAAF] 심각한 상황들은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에

|| 따라 추가 조치할 수 있다.

지면이 젖어있을 경우에는 접착테이프를 다양한 색상의 핀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심판장은 마커가 단일제품(Single-Piece)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분별 있게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두 개의 부분을 연결해서 한 개의 구조로 제작했고 그렇게 쓰여질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선수가 자신의 마커 두 개를 같은 장소에 두거나 높이뛰기에서 선수가 자신의 마커를 더욱 분명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테이프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각으로 찢어서 다른 모양의 하나의 마커로 만들어서 쓸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마커로 간주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180조 3항 (c)는 선수와 코치가 발구름 지점을 어디에 잡고 도움닫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된 규칙이다. 이러한 마커에 대한 구성이나 외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개념이 없으며, 대회주최측이나 심판장의 재량 하에 각 경기대회 환경의 상황 내에서 규칙의 의도에 맞게 수용 가능하고 공정한 형태로 하면 된다.

기록마커 및 풍향계 (Performance Markers and Wind Socks)

4. (a) 현 세계기록 및 (필요할 시에는) 현 대륙기록 또는 한국기록 또는 대회기록을 표시하기 위해 뚜렷하게 구별되는 기나 마커를 설치할 수 있다.
- (b) 모든 도약종목과 원반 및 창던지기 경기에서는 선수에게 대략적인 풍향과 풍속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1개 이상의 풍향계를 설치한다.

시기순서 및 시기(Competing Order and Trials)

- || 5. 규칙 제180조 6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선수들은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대로 경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선수가 사전 결정된 순서와 다르게 자의로 자신의 시기 순서를

정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이 적용되며 시기의 결과(무효 또는 유효)는 경고가 주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자격라운드¹⁾가 있을 경우에는 결승경기에서 새로운 추첨으로 시기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6.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종목에서 선수는 경기시기의 각 라운드에서 1회의 시기만 실시할 수 있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모든 필드경기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이상, 8명을 초과하는 선수가 경기를 할 경우에는 각 선수에게 3회의 시기를 허용하고, 이 중에서 유효한 기록이 가장 좋은 8위까지의 선수들에게 3회의 추가시기를 허용한다.

최종 통과 순위(8위)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최고기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칙 제180조 2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도 동순위가 될 경우에는 동순위의 선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서 허용하는 선까지 추가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선수가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각 선수에게 6회의 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2명 이상의 선수들이 처음 3라운드의 시기에서 유효시기가 1회도 없는 경우에는, 이 선수들은 다음 라운드에서 유효시기가 있는 선수들보다 먼저, 최초 추첨되었던 시기 순서대로 차후 시기 라운드를 이행한다.

위의 두 가지 경우에 :

- (a) 차후 시기 라운드의 경기(시기) 순서는 적용되는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전반 3라운드 후의 기록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 (b) 시기순서가 바뀌어야 하고 어느 순위에 동순위가 있을 경우, 해당 동순위선수들은 최초의 추첨에 의한 시기순서대로 경기를 하여야 한다.

[주1-IAAF] 수직도약경기에 대해서는 규칙 제181조 2항을 참조.

[주2-IAAF] 만약 1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규칙 제146조 5항에 따라 “항의 중” 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심판장이

허용한다면, 이 선수는 모든 다음 시기 라운드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경기에 임한다. 항의를 제기한 선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추천에서 정해진 시기 순서대로 실시한다.

[주3-IAAF] 관련 단체의 규정에 시기의 수(6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와 3번째 시기 라운드 후에 다음 시기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명시할 수 있다.

시기의 기록(Recording of Trials)

7.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유효시기는 계측결과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서 사용되는 표준 약어와 기호는 제132조 4항을 참고한다.

시기의 종료(Completion of Trials)

8. 심판원은 해당 시기가 종료될 때까지, 흰색 깃발을 들어서 유효 시기임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심판원 자신이 깃발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유효시기의 결정은 다음을 따른다 :

- (a) 수직도약경기의 경우, 심판원이 규칙 제182조 2항, 183조 2항, 또는 183조 4항에 준하여 무효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때 유효가 결정된다.
- (b) 수평도약경기의 경우, 규칙 제185조 2항에 따라 선수가 착지장소를 떠난 후 유효가 결정된다.
- (c) 투척경기의 경우, 규칙 제187조 17항에 따라 선수가 서클이나 도움닫기주로를 떠난 후 유효가 결정된다.

자격 라운드 (Qualification Round)

9. 필드 종목에서 참가선수가 너무 많아서 단일 라운드(결승)에서 만족스럽게 경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 자격라운드를 실시한다.

자격라운드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수가 자격라운드에 참가하여 다음 라운드 진출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단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목에 참가시킬 일부 또는 전체 선수들과 이 선수들을 어떤 라운드에 참가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경기대회나 이전 경기대회에서 추가적인 사전자격라운드를 실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수의 대회참가자격과 참가 라운드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타 방법(예 : 특정 기간 안에 엔트리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나, 지정된 대회에서의 순위 또는 랭킹에 따라 엔트리 기준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각 경기대회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자격라운드나 추가적인 사전자격라운드에서 수립된 기록은 결승경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참가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예선경기를 한다.

10. 선수는 무작위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되, 가능하면 각 국가 혹은 팀의 대표선수들이 각각 다른 그룹에 편성되도록 한다. 여러 그룹들이 동일한 조건 아래 동시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처음 실시한 그룹이 경기를 마친 후 즉시 다음 그룹이 연습시기를 시작하도록 한다.

[주] 도약 경기와 포환던지기 경기는 예선 경기에 한해서 병렬 또는 떨어진 2개의 장소에서 실시하여도 좋다. 단, 이들 장소의 조건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11. 4일 이상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 수직도약 종목은 자격라운드와 결승경기 사이에 1일 휴식일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자격달성조건, 자격달성기준기록 및 결승 진출 선수의 수는 기술대표가 결정한다. 기술대표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대회주최측에서 이 조건들을 결정한다. 해당 경기대회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규칙 제 1조 1항 (a), (b), (c) 및 (f)에 해당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최소 12명의 선수가 결승경기에 진출하도록 한다.
13.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한 기타 필드경기의 자격라운드에서는 각 선수에게 3회의 시기를 허용한다. 자격 기준기록에 도달한 선수는 그 이후의 시기는 하지 않는다.

- || 14.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 자격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이 제180조 12항에 정의된 결승경기의 인원 수만큼 자격기준을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회 연속 무효시기를 하지 않은 선수에 한해서 규칙 제181조 2항에 따라(시기 패스를 포함하여) 자격기준으로 정해진 높이의 최종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경기를 하여야 한다. 선수의 결승경기 진출이 확정되면, 그는 더 이상 자격라운드에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 || 15. 만약 사전에 결정된 자격라운드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거나 필요한 인원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승경기 진출자 그룹에 자격라운드 기록에 따라 추가 보충하여 충족시킨다. 최종 자격라운드 통과 순위에 경기종합 결과기록에서 동기록의 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규칙 제180조 22항 또는 제181조 8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그래도 동순위로 결정될 경우에는, 동순위 선수들은 결승경기에 진출한다.
- || 16.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의 자격라운드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실시될 경우, 두 그룹이 동시에 각 높이로 크로스바를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두 그룹은 거의 같은 경기수준의 선수들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의 자격 그룹의 조편성을 진행할 때에는 180조 10항과 180조 16항의 요구사항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대표와 ITO/심판장은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 자격라운드의 진행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이 지켜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1. 181조 2항에 따라 선수가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선수들이 자격기준기록이 달성되기 전까지 경기에 참가해야 한다. (180조 1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결승경기에 참가할 선수 수를 도달한 경우에는 예외)
2. 두 그룹에서 경기한 선수들의 전체 랭킹에서의 동순위는 181조 8항에 따라 해결한다. 또한 180조 14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자격라운드에서 경기를 지속하는 선수들과는 관계없이 결승진출이 확정된 선수들이 불필요하게 경기지속을 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기 허용 시간 (Time Allowed for Trials)

17. 경기종목의 담당심판원은 선수에게 시기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그 시기에 허용되는 시간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선수가 경기 전에 요청한 크로스바의 위치를 조정한 후부터 시기시간이 시작되며, 그 이후의 조정을 위한 추가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시기를 시작한 후에 허용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허용한다.

시기 허용시간이 시작된 이후 선수가 그 시기를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기 허용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해당 시기는 무효시기로 기록한다.

다음의 시기 허용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허용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규칙 제180조 18항에 준하여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해당 시기는 무효시기로 기록한다.

개별종목

남은 선수 수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기타종목
4명 이상 (또는 각 선수의 제일 첫 번째 시기)	30초	1분	30초
2명 ~ 3명	1분 30초	2분	1분
1명	3분	5분	-
동일선수연속시기	2분	3분	2분

혼성경기

남은 선수 수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기타종목
4명 이상 (또는 각 선수의 제일 첫 번째 시기)	30초	1분	30초
2명 ~ 3명	1분 30초	2분	1분
1명	2분	3분	-
동일선수연속시기	2분	3분	2분

[주1-IAAF] 시기 허용시간의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선수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또한, 선수에게 시기 허용시간이

15초가 남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심판원은 노란색 깃발을 올려 계속 들고 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주2-IAAF]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동일선수의 연속 시기를 위하여 허용된 시간을 제외하고, 1회 시기에 허용된 시간은 크로스바를 새로운 높이로 올릴 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기타 필드종목에서는, 동일선수의 연속 시기를 위하여 허용된 시간을 제외하고, 시기 허용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3-IAAF] 경기에 남아있는 선수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1위 결정경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도 포함한다.

[주4-IAAF] 높이뛰기경기나 장대높이뛰기경기에서 우승이 확정된 선수 한 명만이 남아있고 그 선수가 세계기록이나 기타 해당 대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 : 대회기록) 기록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명시한 시기 허용시간에 1분을 추가한다.

심판원들은 다음 시기를 할 선수와 그 다음 시기를 할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항상 사용해야하며, 이는 선수의 시기 허용시간이 30초 또는 1분인 경우에는 특히 필수적인 부분이다. 심판원들은 반드시 경기장소가 다음 시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된 후에야 다음 선수에게 시기 시작을 알리고 (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작동시켜야 한다. 심판원들과 특히 심판장은 (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시작시키거나 허용시간 종료(time out)와 무효시기 선언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현장의 경기환경에 대해서 완전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경기환경)이라 함은 예를 들면, (트랙경기가 같은 경기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때) 높이뛰기와 창던지기 경기의 도움단기 주로가 확보되었는가 여부와, 원반던지기나 해머던지기 선수들이 자신의 시기를 이행하기 위해 케이지(cage)를 향해서 걷고 케이지를 통해 서클에 도착하는 거리 등을 들 수 있다.

명확히 하자면, 모든 수평도약필드경기에서는 2명 또는 3명의 선수들만이 남아있는 경우에 마지막 라운드에서의 시기허용시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1분이라는 시기허용시간은 오직 최초 스타트리스트에 2-3명의 선수만이 있을 경우에만 (각 선수의 최초 시기만 제외하고) 적용된다.

재시기 (Substitute Trials)

18.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선수가 시기 중에 방해를 받게 되어 시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못할 경우, 심판장은 그 선수에게 재시기를 부여하거나 (시기 허용)시간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리셋(re-set)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시기 순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각의 특정 상황에 맞추어 재시기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허용될 것이다. 재시기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경기가 진행된 경우, 재시기는 다음 시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선수에게 대체시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이에 는 시기의 절차상이나 기술적인 오류로 시기를 계속하지 못하였고 재계측이 정확하게 이행되기 힘든 상황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우수한 경기운영 체제와 예비 대책을 통해 기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더 많은 기술적인 장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오류가 생길 때를 대비해 따를 수 있는 규칙 조항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경기시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사항 또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견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진행되어 버린 상황을 제외하고), 심판장은 문제가 생긴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고려하여 대체시기 허용시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중 이탈(Absence during Competition)

19. 선수는 심판원의 허가를 받고 심판원이 동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 진행 중에 경기장소를 떠날 수 없다. (위와 같은 조건 없이 선수가 경기 진행 중에 경기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 경고를, 그리고 이후에도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 심각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경기장소 또는 경기시간 변경(Change of Competition Area or Time)

20. 기술대표 또는 해당 심판장은 상황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장소 또는 시간을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 이러한 변경은 시기의 한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주-IAAF] 풍속이나 풍향의 변화가 경기장소 또는 시간을 변경시키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라운드”와 대조되는 “시기의 라운드”라는 용어는 필드 경기의 “시기 라운드”와 기타 “경기 라운드”(예 : 자격라운드 또는 결승)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만약 경기장소나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기의 한 라운드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술대표(심판장을 통해)나 심판장은 일반적으로 그 해당 시기라운드에서 이미 완료된 시기들을 무효처리하고 (새로운 경기장소나 경기시간에) 해당 시기라운드를 재시작 하도록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시기의 라운드를 종료하기 전까지의 시기 결과와 상황들을 판단하여 평가하여 하도록 한다. 제149조 3항 참조.

경기 결과(Result)

21. 각 선수의 기록은 모든 시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으로 인정한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동순위 해결을 위한) 1위 결정경기에서 수립된 기록도 이에 포함된다.

동기록의 순위결정(Ties)

22.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최고기록이 동일한 선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두 번째 좋은 기록을 대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두 번째 기록으로 결정이 안 될 경우는 세 번째, 네 번째 등의 기록을 대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만약, 본 규칙(제180조 22항)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순위일 경우에는, 동순위로 결정된다.

수직도약 경기를 제외하고, 어느 순위가 동기록일 경우에는, 1위를 포함하여 동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주-IAAF] 수직 도약경기에 대해서는 규칙 제181조 8항 및 9항을 참조

A. 수직도약 경기(Vertical Jumps)

제181조

총칙 - 수직도약경기(General Conditions - Vertical Jumps)

- || 1.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장이나 심판원주임은 최초의 크로스바 높이와, 우승이 결정되어 선수 1명만이 남거나 동기록이 있어 1위 결정경기를 하기 전까지 각 시기 라운드 종료 후에 올리는 크로스바의 높이를 선수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혼성경기의 경우 제200조8항(d) 참조)

시기(Trials)

- || 2. 선수는 심판장이나 심판원주임이 사전에 발표한 높이 중 어느 높이에서든 시기를 시작해도 되며, 이 후의 높이도 선수가 선택하여 경기할 수 있다. 1위 결정경기를 제외하고, 높이에 관계없이 3회 연속 무효시기가 되면 더 이상 시기(경기)를 할 수 없다.
- 이 규칙의 효과로 선수는 특정 높이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시기를 패스하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시기를 실패한 후에도) 다음 높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약 선수가 어느 높이에서 시기를 패스하였을 때에는 1위 결정경기를 실시할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높이에서 차후의 시기를 시도할 수 없다.
-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의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선수가 경기를 완료하였을 때 어느 선수가 경기장 내에 없다면, 심판장은 해당 선수의 다음 시기의 허용시간이 경과한 후 그 선수가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다른 모든 선수가 실패한 후라도, 선수는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 도약 시기를 시도할 수 있다.
4. 우승한 선수 1명만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a) 시기의 각 라운드가 끝난 후, 높이뛰기는 2cm,
장대높이뛰기는 5cm미만으로 크로스바를 올릴 수 없다.

(b) 크로스바 높이 인상의 폭을 증가해서는 안 된다.

본 규칙 제 181조 4항 (a)와 (b)는 세계신기록, 한국신기록 및 각종 부별 신기록의 높이로 크로스바를 바로 올리는 것에 선수들이 동의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1위로 결정된 후에 올리는 크로스바의 높이 또는 인상의 폭은 해당 심판원 또는 심판장과의 협의를 통해 선수가 결정한다.

[주-IAAF] 혼성경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높이 계측(Hight Measurement)

5. 모든 수직도약종목의 계측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크로스바 상부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완전한 cm 단위로 계측한다.
6. 크로스바를 새로운 높이로 올린 경우에는 선수가 그 높이를 시기하기 전에 크로스바의 높이를 계측한다. 모든 신기록 시도의 경우, 마지막 계측 이후로 시기 중 크로스바를 건드렸다면 심판원들은 신기록 높이에 대한 각 차후의 시도 전에 그 높이를 재계측 하여야 한다.

크로스바(Cross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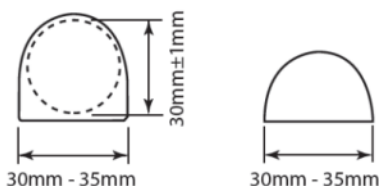
7. 크로스바는 유리섬유(fibre-glass), 또는 금속이 아닌 기타 적절한 재질로 만든 것으로, 크로스바의 양끝을 제외하고 횡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크로스바는 모든 선수가 명확히 볼 수 있는 색으로 칠해져야 한다. 크로스바의 전체 길이는 : 높이뛰기 $4.00\text{m} \pm 2\text{cm}$ 이고, 장대높이뛰기 $4.50\text{m} \pm 2\text{cm}$ 이다. 크로스바의 최대 무게는 : 높이뛰기 2kg이고, 장대높이뛰기 2.25kg이다. 크로스바의 원형부분의 직경은 $30\text{mm} \pm 1\text{mm}$ 가 되어야 한다.

크로스바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형막대기와 지주의 바결이에 엮기 위한 너비 30~35mm, 길이 15~20cm의 양쪽 끝부분 2개. 양쪽 끝부분은 원형이거나 반원형으로 크로스바를 바결이에 거는 부분의 표면이 편평해야 한다. 이 편평한 표면은 크로스바의 수직 횡단면의 중심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양쪽 끝부분은 단단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양쪽 끝부분은 크로스바와 바걸이와의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무나 기타 재질로 덮여있되서는 안 된다.

크로스바는 무게중심이 편중되어서는 아니 되며, 바걸이에 바르게 걸었을 때 높이뛰기 크로스바는 2cm이내, 장대높이뛰기 크로스바는 3cm이내로 휘어야 한다.

- 탄력성의 조절 : 바걸이에 바르게 걸고 크로스바 중간에 3kg의 무게를 달았을 때 높이뛰기 크로스바는 최대 7cm이내, 장대높이뛰기 크로스바는 11cm이내로 휘어질 수 있다.



크로스바 끝부분의 대체 형태

순위 결정 방법(Placings)

- 만약 2명 이상의 선수들이 동일한 최종 높이를 성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 마지막 성공한 높이에서 시기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상위로 결정된다.
 - 만약 규칙 제181조 8항(a)의 적용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성공한 높이까지 포함하여 경기 중 총 무효시기의 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상위로 결정된다.
 - 만약 규칙 제181조 8항(b)의 적용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1위 결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선수들에게는 동순위가 부여된다.
 - 1위 결정의 경우에는, 만약 사전에 해당 경기의 기술 규정에

의해서 또는 경기 시작 전에 기술대표에 의해서, 또는 임명된 기술대표가 없는 경우 심판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이상, 규칙 제181조 9항에 준하여 해당 선수들 간에 1위 결정경기(jump-off)를 실시한다. 만약 해당 선수들이 어느 단계에서 계속해서 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위 결정경기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1위 동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IAAF] 본 규칙의 제181조 8항(d)조항은 혼성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위 결정경기(Jump-off)가 실시되지 않거나 종료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

- (a) 사전에 해당 경기대회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b) 경기대회 동안 기술대표(없는 경우 심판장)가 정한 경우;
- (c) 1위 결정경기가 실시되기 전이나 실시되는 동안 선수들이 더 이상 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1위 결정경기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은 기술대표나 심판장이 해당 종목의 시작 전에 내려야 하지만, (1위 결정경기를 하려고 해도) 경기장소의 환경이나 기타 여건이 1위 결정경기를 시작하거나 지속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심판장은 규칙 제125조나 제180조에 준하여 부여되는 심판장의 권한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다.

1위 결정경기(Jump-off)

9. (a) 해당 선수들은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또는 모든 해당 선수들이 더 이상 시기를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모든 높이에서 반드시 도약을 시도하여야 한다.
- (b) 각 선수는 각 높이에서 1회의 도약시기를 실시한다.
- (c) 1위 결정경기는 규칙 제181조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들이 모두 성공한 최종 높이의 다음 높이에서 시작한다.

- (d) 만약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선수 2명 이상이 성공한 경우는 크로스바를 높이고, 모두 실패한 경우는 바를 낮춘다. 높이뛰기는 2cm씩, 장대높이뛰기는 5cm씩 크로스바의 높이를 증가시키거나 낮춘다.
- (e) 만약 선수가 특정 높이에서 시기를 시도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자동적으로 상위에 대한 자격이 상실된다. 이로 인해, 단 1명의 선수만 남게 된다면, 그 선수는 해당 높이를 시기하지 않아도 우승자로 결정된다.

[높이뛰기 예]

경기가 시작될 때 심판원주임이 발표한 높이 :

1.75m, 1.80m, 1.84m, 1.88m, 1.91m, 1.94m, 1.97m, 1.99m....

선수	높이							무효 시기수	1위 결정경기			순위
	1.75m	1.80m	1.84m	1.88m	1.91m	1.94m	1.97m		1.91m	1.89m	1.91m	
A	O	XO	O	XO	X-	XX		2	X	O	X	2
B	-	XO	-	XO	-	-	XXX	2	X	O	O	1
C	-	O	XO	XO	-	XXX		2	X	X		3
D	-	XO	XO	XO	XXX			3				4

O : 유효시기, X : 무효시기, — : 패스

A, B, C, D 선수 모두 1.88m 높이에 성공했다.

동순위에 대한 규칙적용 방법 :

규칙 제181조 8항과 9항이 적용된다 ; 심판원은 마지막에 성공한 높이(1.88m 포함)까지의 시기 중 총 무효시기 수를 계산한다.

D선수는 “A”, “B”, “C” 선수보다 무효시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4위가 된다.

“A”, “B”, “C” 선수는 여전히 동순위이고 이것은 1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순위의 선수들은 마지막에 성공한 높이의 다음 높이인 1.91m에서 1회의 추가시기를 한다.

모든 선수들이 실패하였으므로, 1위 결정경기를 다시 실시하기 위하여 크로스바 높이를 1.89m로 낮춘다. “C” 선수만 1.89m에서 실패함으로써, 아직 동순위인 다른 두 선수, 즉 “A”와 “B” 선수는 1.91m에서 3번째 1위

결정경기를 실행하고, 여기에서 “B” 선수만이 성공함으로써 우승자가 된다.

한 선수가 독단적으로 1위 결정경기 참여를 포기하게 되면, 제181조 9항 (e)에 따라 다른 선수가 (1명 만이 남게 되면) 우승자가 되며, 해당 높이를 시도해도 되지 않게 된다. 만약 (선수 1명이 1위 결정경기를 포기하더라도) 2명 이상의 선수가 남게 되면, 1위 결정경기는 계속 진행되게 되며, 포기한 선수는 1위를 포함한 상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이 참가를 중단한 시점에서의 순위가 부여되게 된다.

외부의 영향(Extraneous Forces)

10. 선수가 크로스바를 넘을 때 선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향(예 : 돌풍)에 의해 크로스바가 떨어진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a) 선수가 크로스바를 건드리지 않고 넘은 후에 바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시기는 성공(유효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 (b)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크로스바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선수에게 새로운 시기 기회를 준다.

제182조

높이뛰기(High Jump)

경기(Competition)

1. 선수는 한 쪽 발로 발구름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도약 후, 선수의 도약 중의 동작으로 인해 크로스바가 바걸이에서 떨어진 경우, 또는
 - (b) 선수가 크로스바를 클리어하지 않고 신체 어느 부분이 두 지주 사이 또는 그 바깥쪽으로 크로스바의 도움단기주로 측과 가까운 가장자리의 수직면 너머의 (착지장소를 포함한) 지면에 닿은 경우.

하지만, 선수가 도약할 때 발이 착지장소에 닿았고, 심판원이 선수가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 무효시기가 되지 않는다.

[주:IAAF] 본 규칙의 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양 지주의 바깥쪽으로 3m 떨어진 두 지점의 사이로 (일반적으로 접착테이프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너비 50mm의 흰색선을 지면에 긋는다. 흰색선의 도움닫기주로 쪽 가장자리는 크로스바의 도움닫기주로 쪽 가장자리 수직면을 따라 긋는다.

- (c) 선수가 도움닫기를 하면서 도약하지 않았을 때 지주의 수직면 또는 크로스바와 접촉이 있을 경우.

도움닫기주로와 발구름 장소(Runway and Take-off Area)

3. 도움닫기주로의 최소 폭은 16m, 최소 길이는 15m로 하며, 규칙 제1조 1항(a), (b), (c), (e) 및 (f)에 준하여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최소 길이가 25m가 되어야 한다.
4. 도움닫기주로의 마지막 15m와 발구름 장소의 전체적인 최대 내리막 경사 허용한도는 두 지주 사이의 중간을 중심으로 하는 반원형의 반경을 따라서 250분의 1(0.4%)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규칙 제182조 3항에 명시된 최소 반지름을 갖는다. 착지장소는 선수의 도움닫기가 경사를 올라가는 방향이 되도록 위치해야 한다.
5. 발구름 장소는 수평면이거나 경사가 있다면 규칙 제182조 4항과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경기 기구(Appar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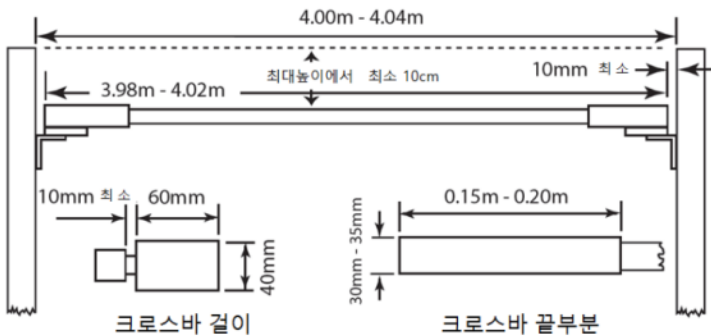
6. 지주는 어떠한 형태라도 무방하나 견고하여야 한다. 지주에는 크로스바를 올려놓는 바결이가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지주의 높이는 크로스바를 올렸을 때 실제의 높이가 크로스바의 상단보다 적어도 10cm 이상 더 높아야 한다. 두 지주 사이의 간격은 4.00m이상, 4.04m이하로 한다.

7. 경기 중에는 지주를 이동할 수 없으나, 심판장이 발구름이나 착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동해도 좋다. 지주를 이동할 경우에는 한 시기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만 이동하여야 한다.
8. 크로스바 걸이는 너비는 4cm, 길이는 6cm의 편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바걸이는 도약 중에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반대편 지주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크로스바의 양쪽 끝부분은 선수가 도약 중에 건드렸을 때 앞쪽이나 뒤쪽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바걸이 위에 얹어놓아야 한다.

바걸이의 표면은 매끈해야 한다.

바걸이는 바걸이와 크로스바의 표면 사이에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무나 기타 재질로 덮어씌워서는 안 되며, 어떤 종류의 스프링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

바걸이는 크로스바의 양쪽 끝 바로 아래의 발구를 장소에서 위로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높이뛰기 지주와 크로스바

9. 크로스바의 양끝과 지주 사이에는 최소한 1cm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착지장소(Landing Area)

10. 규칙 제1조 1항 (a), (b), (c), (e) 및 (f)의 경기대회에서, 착지장소는 크로스바의 수직면 뒤로 길이 6m x 너비 4m x 높이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IAAF] 지주와 착지장소의 간격은 착지장소가 지주에 닿아서 크로스바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10cm이상 떼어놓도록 한다.

기타 대회에서 착지장소는 길이 5m x 너비 3m x 높이 0.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기임원(Team of Officials)

높이뛰기 종목에서 권장되는 경기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종목 전체를 감독하고 계측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심판원 주임.
심판원 주임은 2개의 깃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흰색 깃발 하나는 유효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붉은색 깃발은 무효시기를 알리기 위함이다. 심판원 주임은 특히 2가지 사안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a) 선수들이 건드린 크로스바가 크로스바 길이 위에서 흔들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심판원 주임은 이 때 크로스바의 위치에 따라 크로스바의 흔들림을 언제 멈출지를 판단하며 해당 시기에 적절한 깃발을 들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특히 181조 10항에 명시된 특수한 상황에서 중요하다.
- (b) 선수가 크로스바에 닿거나 두 지주 사이 또는 크로스의 도움닫기주로측과 가까운 가장자리를 기점으로 한 두 지주 사이의 수직면이나 그 수직면 너머의 지면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기를 완료하지 않고 측면으로 달려나가거나 크로스바 밑을 통과할 때 선수의 발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상기 규칙에 따른 심판원 주임의 역할을 돕는 심판원 2명. 이들은

착지장소 측면에서 살짝 뒤로 물러서서 (도움닫기 주로와 반대방향으로) 위치하여 크로스바가 떨어졌을 때 다시 올리는 임무를 담당하며 상기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심판원 주임을 보조한다.

- (3) 심판원 - 결과를 기록하고 시기를 할 선수와 그 다음 시기 선수에게 순서를 알리는 역할.
- (4) 스코어보드(시기-번호-결과)를 담당하는 심판원
- (5) 선수의 시기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 (6) 선수들을 담당하는 심판원

[주1-IAAF] 이는 전통적인 경기임원 구성이다. 데이터장치와 전자스코어보드가 있는 주요대회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필드종목의 진행과 기록은 기록원과 데이터 장치 모두의 병행 운영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주2-IAAF] 경기임원과 종목 관련 장비는 선수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거나 관중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주3-IAAF] 풍향과 풍속을 알리는 풍속계를 위한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제183조

장대높이뛰기(Pole Vault)

경기(Competition)

1. 선수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크로스바의 가장자리가 박스의 뒷끝 바로 위에서부터 착지장소쪽으로 80cm 지점까지의 어느 지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착지장소 방향으로만 크로스바를 이동시킬 수 있다.

선수는 경기 시작 전 자신의 1차 시기에서 희망하는 크로스바의 위치를 담당임원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임원은 그 선수의 크로스바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가 크로스바의 위치를 재변경하고자 한다면, 처음 신청한 위치에 크로스바가 설치되기 전에 담당임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크로스바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시간도 그의 시기 허용시간에 포함된다.

[주-IAAF] 장대높이뛰기 박스의 뒷끝과 수평이 되고 도움단기주로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너비 1cm의 선을 착지장소와 구별할 수 있는 색깔로 그려야 한다. (“0”선, zero line). 너비 5cm까지의 이와 유사한 선은 착지장소 표면에도 나타나며, 지주의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선의 가장자리(도움단기를 하는 선수와 가까운 쪽)는 박스의 후방 가장자리와 일치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도약 후, 선수의 도약 중 동작에 의하여 크로스바가 양쪽 바걸이(pegs)에 얹혀있지 않을 경우;
- (b) 크로스바를 넘기 전에, 신체의 어느 부분이나 또는 폴(장대)이 박스 뒷끝의 수직면 너머의 지면(착지장소포함)에 닿는 경우; 또는
- (c) 지면을 떠난 후, 아래쪽 손을 위쪽 손보다 위로 이동시키거나, 위쪽 손을 폴(장대) 위쪽으로 더 높게 이동시킨 경우;
- (d) 도약 중에 선수가 크로스바를 손으로 안정시키거나 다시 올려놓는 경우.

[주1-IAAF] 선수가 흰색선으로 표시한 도움단기주로의 바깥쪽 어느 지점에서 달려도 무효시기가 아니다.

[주2-IAAF] 시기 중에 폴(장대)이 박스에 올바르게 꽂아진 후에 착지장소에 닿았을 경우에는 무효시기가 아니다.

183조 2항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a) 크로스바는 선수가 장대높이뛰기를 하는 “동안의” 선수의 동작에 의해 떨어져야 한다. 즉 선수가 자신의 폴(장대)을 올바르게 회수한 후 (따라서 183조 4항을 위반하지 않게 되고), 크로스바가 아직 움직이고(흔들리고) 있어서 심판원이 흰 깃발을 들기 직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폴(장대)로 크로스바나 지주를 쳐서 크로스바가 떨어지게 되어도 이는 선수의 장대높이뛰기 동작이 원인이 된 것이

- 아니기 때문에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 (b) 폴이 휘어지면서 “0”선 너머의 착지장소에 닿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를 감안한 [주2-IAAF]를 고려해야 한다;
 - (c) 선수가 발구름을 한 후 그의 신체나 폴(장대)이 “0”선의 수직면을 통과했다가 (크로스바를 넘으려는 시도 없이) 도움닫기 주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의 시기 허용시간이 남아있고, 선수가 “0”선 너머의 지면에 닿지 않았다면 자신의 시기를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다;
 - (d) 심판원들은 선수가 183조 2항 (d)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즉 관계된 심판원이 선수를 도약 동작 동안 주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수가 크로스바를 넘는 행위 동안 우연히 크로스바를 건드리게 되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한다. 183조 2항 (d)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크로스바를 안정시키거나 다시 올려놓기 위한 선수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선수는 경기 중에 폴(장대)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두 손이나 폴(장대)에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장갑의 사용은 허용된다.

장갑을 착용하거나 장갑에 허용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조건이 없지만, 심판장은 (장갑이나 장갑에 사용하는 물질이 선수에게) 불공평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4. 폴(장대)을 놓고 크로스바를 넘은 후, 폴(장대)이 크로스바나 지주로부터 떨어져 넘어질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폴(장대)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누군가 폴(장대)을 만진 경우, 그리고 심판장이 보기에 폴(장대)가 만져지지 않았다면 크로스바를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무효시기로 기록된다.

이는 경기임원의 행위가 무효시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규칙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주 심판원들은 폴(장대)이 명백하게 크로스바나 지주로부터 떨어져 넘어지는 경우가 아니고는 폴(장대)을 만지거나 붙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기 중에 선수가 사용하는 폴(장대)이 부러진 경우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재시기가 주어진다.

도움닫기주로(Runway)

6. “U” 라인부터 측측된 도움닫기주로의 길이는 최소 40m로 하나, 가능하다면 45m로 한다. 너비는 $1.22 \pm 0.01\text{m}$ 이고, 너비 5cm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IAAF]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트랙에서는 도움닫기주로의 최대 너비가 1.25m이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해당 트랙도 완전하게 재포설(전체를 다시 깔 때에는) 할 시에는 레인의 폭(너비)은 본 규칙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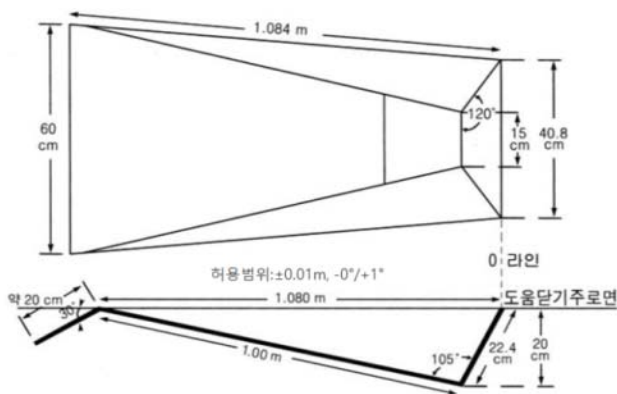
7. 도움닫기주로의 측면 최대경사는 (이에 대해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1%)이어야 하며 마지막 40m 구간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도움닫기를 하는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기 기구(Apparatus)

8. 장대높이뛰기의 발구름(take-off)은 박스에서 실시된다. 장대높이뛰기 박스는 적합한 재질로 만들며, 위쪽 가장자리는 둥글거나 부드럽으며, 도움닫기주로면보다 땅속으로 낮게 설치한다. 박스의 밑면 안쪽의 길이는 1m, 앞끝의 너비는 60cm, 스톱보드의 밑면의 너비가 15cm가 되도록 점차 좁아진다. 도움닫기주로와 같은 높이에서의 박스의 길이와 스톱보드의 깊이는 밑바닥과 스톱보드가 이루는 각도인 105° 에 의해 결정된다. (치수와 각도의 허용범위는 $\pm 0.01\text{m}$ 이고 $-0^\circ / +1^\circ$ 이다).

박스의 밑바닥은 도움닫기주로면과 같은 높이의 앞끝으로부터 스톱보드와 맞닿는 곳까지 경사를 이루는데 스톱보드와 만나는 부분의 수직깊이는 20cm가 된다. 박스는 양측면이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스톱보드와 맞닿는 측면이 밑바닥과 약 120° 의 각도를 이루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주-IAAF] 선수는 자신의 어느 시기 중에 추가적인 보호를 위하여 박스 주위에 패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의 설치선수의 시기 허용시간 내에 이뤄져야하며, 해당 시기가 완료되면 선수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e) 및 (f)의 대회에서는 이 장비를 대회주최측에서 제공한다.



장대높이뛰기 박스(상단 및 측면에서 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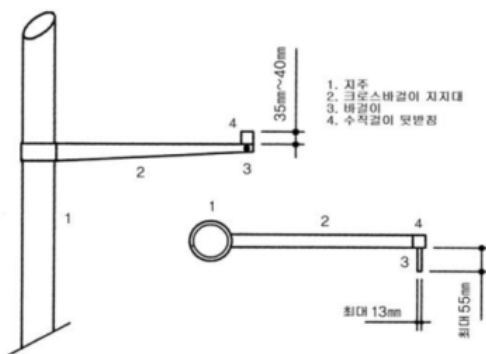
9. 지주는 어떠한 형태라도 무방하나 견고하여야 한다. 지주밑면의 금속 구조 및 착지장소 위의 지주 하단 부분은 선수와 폴(장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로 만든 보호용 덮개를 덮어야 한다.
10. 크로스바는 선수 또는 폴(장대)이 닿았을 때 착지장소 방향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수평바걸이에 얹어놓아야 한다. 크로스바걸이는 마디나 움푹 들어간 곳이 없이, 굵기가 직경 13mm이하로 일정하여야

한다.

크로스바걸이의 길이는 매끄러운 크로스바걸이 지지대에서 5.5cm 이내로 연장되어야 한다. 매끈하고 크로스바가 걸이의 맨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수직 걸이 뒷받침은, 걸이 위로 35~40mm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 || 크로스바 걸이 사이의 거리는 4.28m~4.37m이어야 한다. 크로스바 걸이는 크로스바 걸이와 크로스바의 표면에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는 고무나 기타 물질로 덮어 씌워서는 안 되며, 어떤 종류의 스프링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

[주-IAAF] 선수가 지주의 받침대에 떨어져 부상을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주에 고정적으로 부착시켜 이어낸 연장 부분(크로스바걸이 지지대)에 크로스바걸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하면 크로스바의 길이를 늘이지 않고도 지주의 간격을 넓힐 수 있다 (그림 참조).



장대높이뛰기 크로스바걸이 지지대 - (착지장소 및 위에서 본 그림)

장대높이뛰기 폴(Vaulting Poles)

11. 선수는 자신의 개인 폴(장대)을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소유자의 동의를 없는 한 다른 선수의 폴(장대)을 사용할 수 없다.

폴(장대)의 재질 또는 혼합재료, 길이 또는 굵기는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기본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폴(장대)은 손잡이 끝에 (손의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여러 겹으로 감거나, 하단 끝부분에 (폴의 보호를 위해) 테이프와 그리고/또는 기타 적절한 물질로 감아도 좋다. 손잡이 끝에 감는 테이프는 부분적으로 겹쳐 감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지름의 큰 변화가 (표면에 “랑” 모양이 생기는 등) 없도록 균등하게 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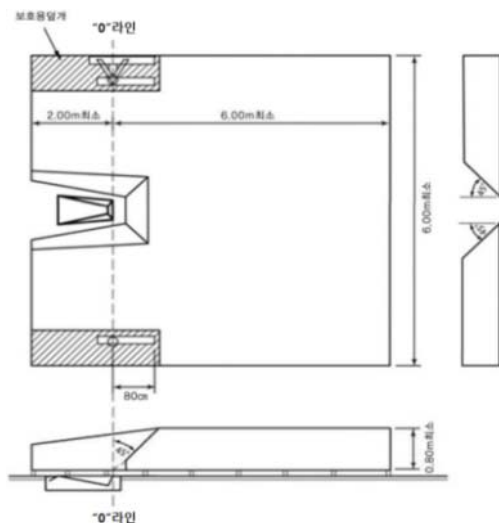
폴(장대)의 손잡이 끝부분에는 오직 “일반” 테이프의 사용만 허용된다. 링이나 고리(loop) 모양 물체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테이핑을 폴(장대)의 위아래로 어느 지점까지만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손을 보호하는 목적을 위한 선에서 해야 한다. 선수에게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폴(장대) 끝부분에 테이핑이나 손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

착지장소(Landing Area)

12.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e) 및 (f)에 명시된 대회에서 착지장소는 길이 6m (앞쪽 부분을 제외하고, “0” 라인의 뒤쪽에) × 너비 6m × 높이 0.8m 이상 되어야 한다.

앞쪽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길이 2m이어야 한다.

박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착지장소의 측면은 박스에서 10cm~15cm 떨어진 위치에 있어야 하며, 약 45°의 각도로 박스로부터 경사지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그림참조).



장대높이뛰기 착지장소(상단 및 측면에서 본 그림)

기타 경기대회의 경우, 착지장소는 길이 5m (앞쪽 부분 제외) × 너비 5m x 높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임원(Team of Officials)

장대높이뛰기 종목에서 권장되는 경기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종목 전체를 감독하고 계측을 확인하는 심판원 주임 1명. 심판원 주임은 2개의 깃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흰색 깃발 하나는 유효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붉은색 깃발은 무효시기를 알리기 위함이다. 심판원 주임은 특히 2가지 사안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a) 선수들이 건드린 크로스바가 크로스바 걸이 위에서 흔들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심판원 주임은 이 때 크로스바의

위치에 따라 크로스바의 흔들림이 언제 멈추고 해당 시기에 대한 깃발을 들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특히 제181조 10항과 183조 4항에 명시된 특수한 상황에서 중요하다.

- (b) 발구를 전에는 선수가 박스 뒤쪽 끝 수직면 상 너머의 지면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2) 박스 뒤쪽의 수평선상의 양측에 위치하는 심판원 2명. 이들은 심판원 주임을 도와 상기 규칙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떨어진 크로스바를 다시 올려놓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또한 선수가 요청한 크로스바 위치를 기록원을 통해 전달받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 (3) 선수가 요청한 지주의 위치를 기록하고 경기결과표를 작성하며 크로스바의 위치를 (해당 심판원들에게) 알려준 후 시기를 할 선수를 호명하고(그 다음 시기 선수에게도 순서를 알려주는) 심판원.
- (4) 스코어보드(시기-번호-결과)를 담당하는 심판원.
- (5) 선수의 시기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 (6) 선수들을 담당하는 심판원

[주1-IAAF] 이는 전통적인 경기임원 구성이다. 데이터장치와 전자스코어보드가 있는 주요대회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필드종목의 진행과 기록은 기록원과 데이터 장치 모두의 병행 운영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주2-IAAF] 경기임원과 종목 관련 장비는 선수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거나 관중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주3-IAAF] 풍향과 풍속을 알리는 풍속계를 위한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B. 수평도약경기(Horizontal Jumps)

제184조

총칙(General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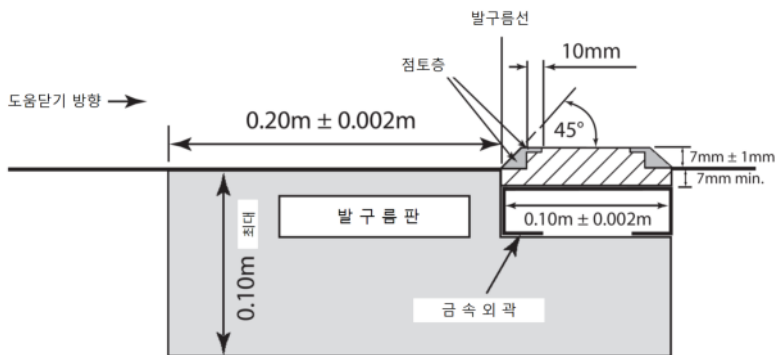
도움닫기주로(Runway)

1. 도움닫기주로의 최소 길이는 해당 발구름선에서 도움닫기주로 끝까지 계측하여 40m 이상이며, 조건이 가능하다면 45m 이상으로 한다.
너비는 1.22m (± 0.01 m)이고, 너비 5cm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IAAF]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트랙에서는
도움닫기주로의 최대너비가 1.25m이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해당 트랙도 완전하게 재포설(전체를 다시 깔 때에는)
할 시에는 레인의 폭(너비)은 본 규칙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2. 도움닫기주로의 측면 최대경사는 (이에 대해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1%)이어야 하며, 도움닫기주로의 마지막 40m 구간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도움닫기를 하는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발구름판(Take-off Board)

3. 발구름은 도움닫기주로 및 착지장소의 표면과 같은 높이로 매설된 발구름판으로 표시된다. 착지장소와 제일 가까운 발구름판의 가장자리선을 발구름선이라 한다. 심판원의 판정을 돕기 위해 발구름선을 바로 지나 점토표시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4. 발구름판은 선수 경기화의 스파이크가 찍히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목재 또는 기타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길이는 1.22m(± 0.01 m), 너비는 20cm(± 2 mm), 두께(깊이)는 10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구름판은 흰색으로 칠한다.
5. 점토표시판은 너비 10cm(± 2 mm), 길이 1.22m(± 0.01 m)의 목재나 기타 재질로 만든 견고한 판으로 만들고 구름판과 대조적인 색으로

칠한다. 가능하다면 점토표시판은 대비되는 제3의 색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점토표시판은 발구름판의 착지장소와 가까운 방향으로 도움닫기주로 상 오목한 곳이나 단(槽)에 설치한다. 표면은 높이 $7\text{mm}(\pm 1\text{mm})$ 로 발구름판 수평면보다 높게 만들어야 한다. 점토판 가장자리는 45° 로 경사가 지거나, 도움닫기주로 방향의 가장자리 부분에 두께 1mm 의 점토층으로 길이에 따라 덮어씌우거나 점토로 채울 시 45° 의 경사가 지도록 가장자리를 깎아서 만들어야 한다(그림 참조).



발구름판과 점토판

점토판의 상단부분의 대략 첫 10mm 부분과 전체 길이를 점토로 덮어씌운다.

오목한 곳에 점토를 덮은 이 구조의 전체는 선수의 각력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하여야 한다.

점토층 아래에 있는 표면은 경기화의 스파이크가 잘 찍히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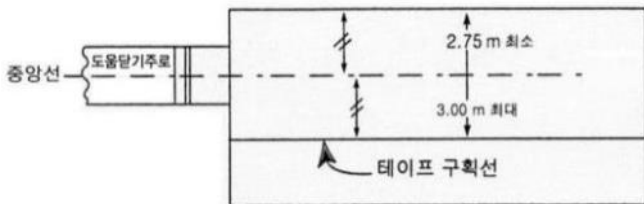
점토층은 선수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롤러나 적당한 형태의 땅고르개(스크레이퍼)로 편편하게 고를 수 있다.

[주-IAAF] 발자국을 지우는 동안 경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분의 교체용 점토판을 갖추어 두면 편리하다.

착지장소(Landing Area)

6. 착지장소의 너비는 최소 2.75m에서 최대 3m이내이어야 한다.
착지장소는 가능한 한 도움닫기주로 중앙선이 연장되었을 때 착지장소의 중앙선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IAAF] 도움닫기주로의 중앙선이 착지장소 중앙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착지장소에 1개의 테이프 또는 필요하다면 2개를 쳐서 상기 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참조).



도움닫기주로 중앙선과 일치하도록 구획한 멀리뛰기/세단뛰기의 착지장소

시각장애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최소한 한 개의 착지장소는 IPC에서 권장하는 대로 확장된 너비 (3.50m)로 만들도록 하다.

7. 착지장소는 부드럽고 습기 있는 모래로 채워야 하며, 표면은 발구름판과 수평이 되어야 한다.

거리계측(Distance Measurement)

8. 모든 수평도약경기에서 계측거리가 완전한 센티미터 단위로 계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측거리보다 낮은 쪽으로 가장 가까운 0.01m(1cm) 단위로 기록하여야 한다.
9. 각 도약의 계측은 각 유효시기 직후에 행한다(또는 규칙 제146조 5항에 따라 즉각적인 구두항의가 제기된 후). 모든 도약의 계측은 선수 신체의 어느 부분 또는 신체에 부착되어있는 어떤 물체가

착지장소에 닿아서 만든 착지 흔적의 발구름판과 제일 가까운 가장자리 지점부터 발구름선 또는 발구름선의 연장선까지를 계측한다. 발구름선 또는 발구름선의 연장선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 계측한다.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른 시기의 계측이 카운트백(예:시기의 역순)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거나 또는 다른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기는 (도약한 거리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계측되어야 한다.

146조 5항이 적용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일어난 시기는 계측하지 않는다. 심판원들은 자신들의 재량으로 관습에 따라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신중히 다른 대안을 적용해야 한다.

비디오계측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효한 시기에 대해서 착지장소에서 발구름선에 가깝게 남은 선수의 착지 흔적에 수직으로 마커(보통 쇠로 된)를 위치시켜야 한다.

강철줄자의 끝에 마커를 꽂아서 줄자의 “영”이 착지 흔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줄자는 수평으로 길게 당겨서 계측하되 지면에 솟아오른 부분에 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풍속측정(Wind Measurement)

10. 풍속측정계는 규칙 제163조 8항 및 9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규칙 제163조 11항과 184조 12항의 작동 방법을 따르며, 규칙 제163조 13항의 측정(판독)법을 따른다.
11. 담당 필드(국내:도약)경기심판장은 풍속측정계가 발구름선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확실히 설치되도록 한다. 풍속측정계의 높이는 1.22m(± 0.05 m)로 하며, 도움닫기주로에서 2m 이내로 떨어져 설치한다.
12. 풍속은 발구름선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거리(멀리뛰기 : 40m, 세단뛰기 : 35m)의 도움닫기주로 옆에 설치된 마커를 선수가 통과한 순간부터 5초 동안 측정한다. 만약 선수가 40m 또는

35m보다 짧은 거리의 도움닫기를 할 경우에는 도움닫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풍속을 측정한다.

제185조 멀리뛰기(Long Jump)

경기(Competition)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수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선수가 발구름을 할 때 도약하지 않고 달려나가거나, 도약 동작 중에 신체 일부분이 발구름선 너머의 지면(점토판 포함)에 닿은 경우; 또는
 - (b) 발구름선의 연장선 전후에서 발구름판의 측면 바깥에서 발구름 할 경우, 또는
 - (c) 도움닫기 중 또는 도약 중에 공중제비 유형의 동작을 행한 경우, 또는
 - (d) 선수가 발구름 이후 그리고 착지장소와의 첫 접촉 전에, 도움닫기주로 또는 도움닫기주로 바깥의 지면 또는 착지장소 바깥의 지면에 닿은 경우, 또는
 - (e) 착지과정에서 (균형을 잃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수가 모래장에 남긴 가장 가까운 착지 흔적보다 발구름선과 가까운 착지장소 경계선 또는 착지장소 바깥의 지면에 닿을 경우; 또는
 - (f) 규칙 제185조 2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착지장소를 퇴장할 때.
2. 착지장소를 퇴장할 때, 선수의 발이 착지장소 경계선 또는 착지장소 바깥의 지면에 최초로 접촉하는 지점은 모래장의 착지 흔적(이는 착지장소내에서 균형을 잃어서 남겨진 또는 최초 착지 흔적보다 발구름선에 가깝게 걸어서 돌아갈 때 남긴 어떠한 흔적일 수 있다)보다 발구름선에서 더 멀어야한다.
[주-IAAF] 이러한 최초의 접촉은 착지장소를 “퇴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수는 무효시기가 되지 않는다.
 - (a) 선수가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한 흰색선 바깥으로 어느 지점에서든지 달릴 경우; 또는
 - (b) 규칙 제185조 1항(b)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선수가 발구름판에 도달하기 전에 발구름을 할 때; 또는
 - (c) 규칙 제185조 1항(b)에 따라 선수 경기화/발의 일부분이 발구름선에 도달하기 전에 발구름판 측면 바깥쪽의 지면을 닿을 때; 또는
 - (d) 착지하는 과정에서 선수의 신체 부분 또는 그 순간 신체에 부착되어있는 어떠한 물체가 착지장소 경계선 또는 착지장소 바깥쪽 지면에 닿았을 때(이러한 접촉이 규칙 제185조 1항(d)나 (e)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 또는
 - (e) 규칙 제185조 2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착지장소를 떠난 이후에 다시 착지장소를 걸어서 통과할 때.

발구름선(Take-off Line)

4.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의 먼쪽 끝 지점까지의 거리는 최소 10m이어야 한다.
5. 발구름선은 착지장소의 가까운 가장자리로부터 1m~3m 사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경기임원(Team of Officials)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종목에서 권장되는 경기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종목 전체를 감독하는 심판원 주임
- (2) 발구름이 올바르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기를 측정하는 심판원.
그는 2개의 깃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흰색 깃발 하나는 유효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붉은색 깃발은 무효시기를 알리기 위함이다. 도약시기가 측정된 후에는 해당 심판원은, 착지장소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나 필요한 경우 점토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구름판 앞에 붉은색 깃발을 들고 서 있을 것을

권장한다. (붉은색 깃발 대신) 콘을 쓰거나 또는 (붉은색 깃발에 더해서) 콘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대회에서는 이 역할이 해당 경기의 심판원 주임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 (3) 선수의 착지장소에 위치하여 발구름선에 가장 가까운 착지흔적을 판단하고 그 위치에 스파이크/프리즘(spike/prism)을 꽂거나 (없는 경우) 줄자를 “0”점에 맞춰 잡는 역할을 하는 심판원. 비디오계측이 실시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목적/역할을 위한 심판원이 현장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광학계측(optic system of measuring)이 사용되고 있다면, 착지 장소에 2명의 심판원이 있어야 하며, 한 명은 마커를 모래에 꽂고 다른 한 명은 광학장치에 계측되는 결과를 읽어야 한다.
- (4) 경기결과표를 기록하고 다음 시기 선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 순서 선수에게도 순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심판원
- (5) 스코어보드(시기-번호-결과)를 담당하는 심판원
- (6) 발구름판으로부터 20m 지점에 위치한 풍속측정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 (7) 각 시기 이후 착지장소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심판원 또는 보조원
- (8) 점토판 교체를 담당하는 심판원 또는 보조원
- (9) 선수의 시기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 (10) 선수들을 담당하는 심판원

[주1-IAAF] 이는 전통적인 경기임원 구성이다. 데이터장치와 전자스코어보드가 있는 주요대회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필드종목의 진행과 기록은 기록원과 데이터 장치 모두의 병행 운영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주2-IAAF] 경기임원과 종목 관련 장비는 선수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거나 관중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주3-IAAF] 풍향과 풍속을 알리는 풍속계를 위한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제186조 세단뛰기(Triple Jump)

규칙 제184조 및 제185조는 다음과 같은 추가조항과 함께 세단뛰기에도 적용한다 :

경기(Competition)

1. 세단뛰기는 홑(hop), 스텝(step), 점프(jump)의 순으로 실시한다.
2. 홑은 선수가 발구름한 발과 동일한 발로 착지를 하여야 하고, 스텝은 반대 발로 착지하고, 이어서 점프를 행한다.
선수가 도약 중에 발구름하지 않는 다리(sleeping leg)가 지면에 닿아도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IAAF] 규칙 제185조 1항(d)는 홑과 스텝 단계로부터의 정상적인 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시기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 (a) 선수가 발구름선과 착지장소 사이에 있는 흰색 선이나 흰색 선 바깥의 지면에 닿은 경우
- (b) 선수의 과실이 아니지만 스텝 단계에서 모래사장 안에 착지하게 된 경우(예 : 심판원이 발구름판을 올바르게 표시하지 못해서).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선수에게 재시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선수가 착지장소 바깥에 착지하게 된 경우에는 무효시기가 된다.

발구름선(Take-off Line)

3. 남자의 경우,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의 먼쪽 끝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21m가 되어야 한다.
4.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발구름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발구름선은 착지장소의 가까운 가장 자리로부터 여자는 11m, 남자는 13m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경기대회의 경우, 이 거리는 경기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정된다.

5. 발구름판과 착지장소 사이에는 스텝과 점프 단계에서 안정되고 균일한 발구름을 할 수 있도록 너비 1.22m(± 0.01 m)의 발구름 장소가 있어야 한다.

[주-IAAF] 2004년 1월1일 이전에 건설된 모든 트랙에서는 발구름 장소의 최대너비가 1.25m이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해당 트랙도 완전하게 재포설(전체를 다시 깔 때에는) 할 시에는 레인의 폭(너비)은 본 규칙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C. 투척경기(Throwing Events)

제187조

총칙(General Conditions)

공식 용구(Official Implements)

1.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 및 국내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용구는 IAAF 또는 KAAF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IAAF 또는 KAAF 공인증을 소지한 용구만을 사용할 수 있다.

[주] 국내경기대회의 공식 용구는 본 연맹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표는 각 연령그룹별로 사용되는 용구의 규격을 나타낸다.

용 구	여 자				남 자				
	여 초	여 중	U18	여고 U20/일반	남 초	남 중	U18	남고/ U20	일 반
포 환	3.000kg	3.000kg	3.000kg	4.000kg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원 반	-	1.000kg	1.000kg	1.000kg	-	1.000kg	1.500kg	1.750kg	2.000kg
해 머	-	-	3.000kg	4.000kg	-	-	5.000kg	6.000kg	7.260kg
창	-	500g	500g	600g	-	600g	700g	800g	800g

[주-IAAF] 현 표준 용구 공인/갱신신청서 및 공인제도절차 양식은 IAAF 사무국 또는 IAAF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주] 여중의 창 규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주최측은 모든 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용구가 경기대회 전에 대회주최측에 의해 검사 및 승인되고 IAAF 공인 용구이며 모든 선수에게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기술대표는 각 경기대회의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선수 개인의 용구 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용구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대회주최측이 제공하는 용구 목록에 이미 같은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용구를 사용할 수 없다.

[주-IAAF] “IAAF 공인용구(목록)”에는 과거에는 공인되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구모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비고]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주최자가 모든 용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용구의 사용은 공식계측원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선수들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회주최측이 제공하는 경기용구의 범위가 (높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즉 기술총무와 보조원들이 모든 개인용구를 더욱 면밀히 검사하여 규칙 준수 여부와 IAAF 공인 용구 목록에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는 (IAAF 공인 용구) 목록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목록에 있었던 용구는 규칙에 준한다는 전제 하에 사용이 승인될 수 있다.

3. 경기 중에는 용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조력(Assistance)

4. 다음은 조력으로 간주되며, 허용되지 않는다.

- (a) 2개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을 함께 테이프를 감는 것. 손이나 손가락에 테이핑 할 때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을 함께 테이핑하지 않아 손가락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된다. 경기 시작 전에, 테이핑 한 것을 심판원주임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b) 시기를 할 때에 몸에 부착하는 추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력을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장치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c) 장갑 사용(해머던지기 제외). 해머던지기에서 장갑을 사용할 경우, 장갑의 손등과 손바닥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엄지 손가락외에는 장갑의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어서 개방되어야 한다.
- (d) 선수가 셔클 안이나 경기화에 어떠한 물질도 뿌리거나 바르고, 셔클 표면을 거칠게 해서는 안 된다.

[주-IAAF] 심판원은 이와 같은 규칙 위반 사항을 목격하게 되면 선수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선수의 시기는 무효시기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위반 사항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시기가 완료되었다면, 심판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한다.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

5. 다음은 조력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허용된다.
 - (a) 손잡이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손에만 또는 (해머던지기의 경우) 장갑에 적당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포환던지기 선수는 목에 이와 같은 적절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 (b)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 선수들은 분필이나 이와 비슷한 물질을 그들의 용구에 사용할 수 있다.

손이나 장갑, 용구에 사용된 모든 물질은 젖은 형질을 사용해 용구에서 쉽게 지울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잔여물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7조 4항의 [주-IAAF]를 적용해야 한다.

- (c) 규칙 제187조 4항(a)에 위반되지 않는 손과 손가락의 테이핑 사용은 허용된다.

투척서클(Throwing Cir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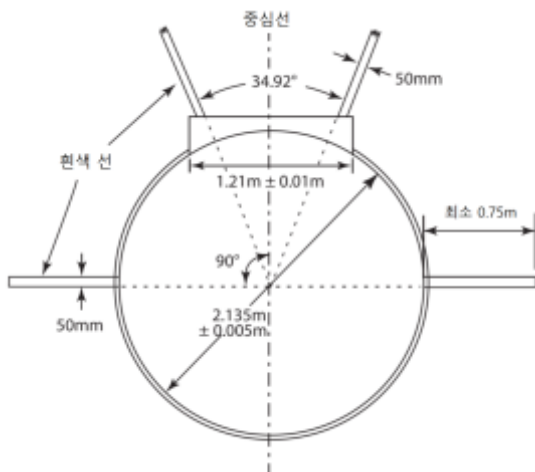
6. 서클의 테는 대상(帶狀)의 철이나 강철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만들고, 상단은 바깥지면과 같은 높이로 한다. 서클테의 두께는 최소 6mm이며 흰색(예 : 흰색 페인트칠)이어야 한다. 서클주위의 지반은 콘크리트, 합성 물질, 아스팔트, 목재 또는 기타 적당한 재질로 만든다.

서클내부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견고하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만든다. 이 내부의 표면은 수평을 이루고 서클 테의 상단 가장자리보다 $2\text{cm} \pm 6\text{mm}$ 낮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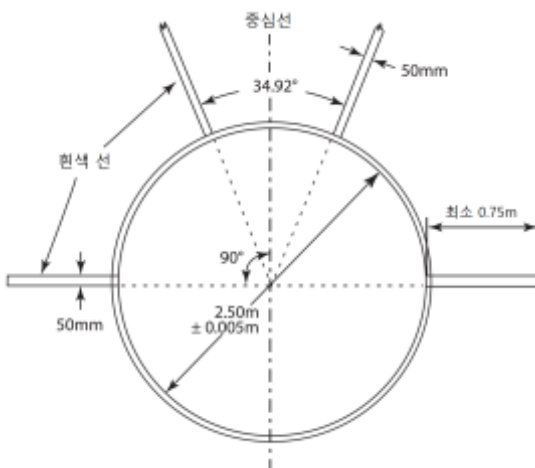
포환던지기에서는 이와 같은 규격에 맞는 이동식 서클을 사용할 수 있다.

7. 서클의 내측 지름은 포환던지기와 해머던지기는 $2135\text{m} \pm 5\text{mm}$, 원반던지기는 $250\text{m} \pm 5\text{mm}$ 이다. 원반던지기 서클 안에 원형고리를 설치하여 서클의 지름을 250m에서 2135m로 축소시키면 원반던지기 서클에서 해머를 던져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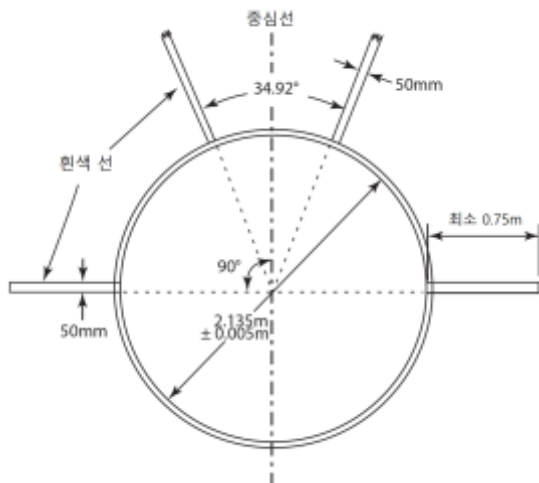
[주-IAAF] 서클 원형고리는 흰색 이외의 색으로 채색하여, 규칙 제187조 8항에서 요구하는 흰색선이 분명히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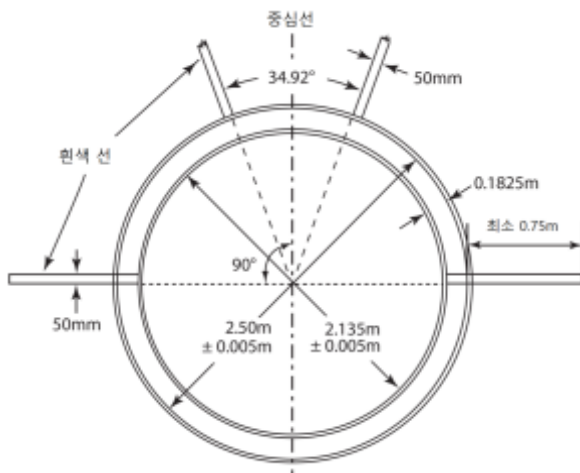
포환던지기서를 설계도



원반던지기서를 설계도



해머던지기서클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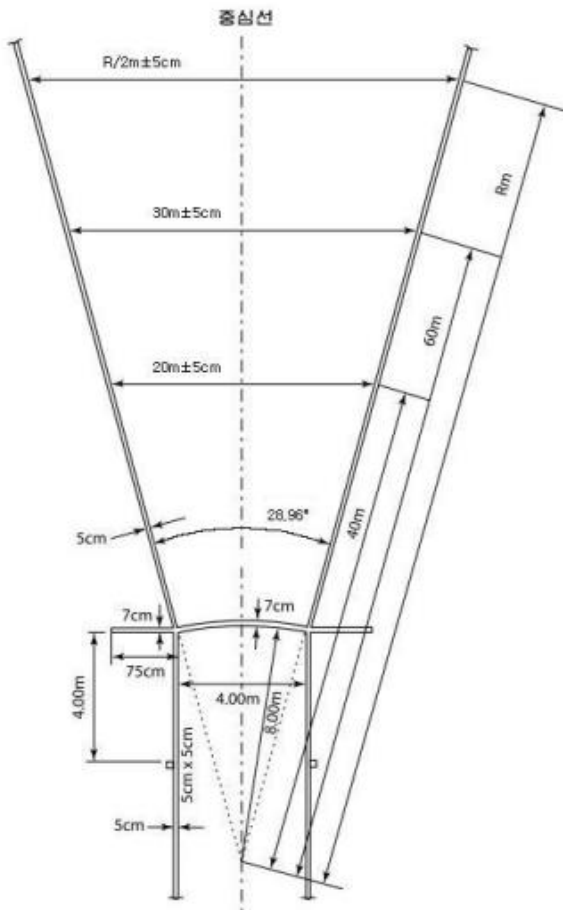
원반과 해머던지기서클의 동심원(同心圓) 서클 설계도

8. 서클 테 상단부분부터 서클 양쪽 측면으로 최소 길이 75cm, 너비 5cm의 흰색선을 연장해서 그린다. 이 흰색선은 페인트로 칠하거나 목재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든다. 이 흰색선의 뒤쪽 가장자리는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며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론적인 선의 연장이다.

창던지기 도움닫기주로(Javelin Throw Runway)

9. 창던지기 도움닫기주로의 최소길이는 30m이며, 제1조 1항 (a), (b), (c), (e), (f)에서 명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최소길이가 33.50m이어야 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소길이는 36.50m이어야 한다.

도움닫기주로는 4m 간격을 두고 평행을 이루는 너비 5cm의 흰색선으로 표시한다. 투척은 반지름 8m 서클의 원호(圓弧) 뒤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호는 너비 최소 7cm의 선으로 페인트로 칠하거나 목재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부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다. 원호는 흰색이어야 하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선은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하는 2개의 평행선과 직각이 되는 원호의 양쪽 끝에서부터 그려진다. 이 선은 흰색이어야 하며, 길이 최소 75cm와 너비 최소 7cm이어야 한다. 도움닫기주로의 최대 측면경사도는 이에 대해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1%), 그리고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반 20m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창던지기 도움닫기주로와 낙하구역

낙하구역(Landing Sector)

10. 낙하구역은 투척용구의 흔적이 남도록 신더(석탄재)나 잔디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11. 낙하구역의 최대 내리막 경사도는 투척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2. (a) 창던지기를 제외하고, 낙하구역은 두 개의 선의 안쪽 가장자리가 연장된다면 서클의 중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34.92° 의 각도로 5cm 너비의 흰색선으로 표시한다.

[주:IAAF] 34.92° 의 낙하구역은 낙하구역 경계선(sector lines)이 서클 중심점으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에서 경계선 간 간격이 $12m \pm 0.05m$ ($20 \times 0.60m$)가 되도록 그리면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서클 중심으로부터 매 1m마다 경계선 사이의 간격이 60cm씩 증가하게 된다.

- (b) 창던지기의 낙하구역은 너비 5cm의 2개의 흰색선으로 표시하고, 이 흰색선의 안쪽 가장자리를 연장하면 원호의 안쪽 가장자리와 2개의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하는 평행선과 교차하는 2개의 교차점을 통과하여 서클의 중심에서 교차되도록 한다(그림참조). 낙하구역의 각도는 28.96° 이다.

심판원들이 낙하한 경기용구의 최초흔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낙하구역은 평평하고 부드러운 지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낙하구역의 지면은 경기용구가 지면에 떨어진 후 뒤로 튕겨져서 최초 착지흔적(계측 위치)을 없애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시기(Trials)

13. 포환, 원반, 해머던지기는 용구를 서클 안에서 투척되며, 창던지기는 용구를 도움닫기주로서 투척된다. 서클에서 행하는 시기의 경우, 선수는 서클 안에서 정지 자세로 시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선수가 서클 테의 안쪽 면에 닿는 것은 허용된다. 포환던지기의 경우, 선수가 규칙 제188조 2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스톱보드의 안쪽 면에 닿는 것은

허용된다.

선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향에서 서클에 입장하느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단, 서클에 들어와서 선수는 반드시 안정된 자세를 취한 후 자신의 시기를 시작해야 한다.

14. 시기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규칙 제188조 1항 및 제193조 1항이 허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포환이나 창을 투척한 경우,
- (b) 선수가 서클 안으로 들어와 투척동작을 시작한 후, 선수의 신체의 어느 부분이 서클 테의 상단(또는 상단 안쪽 가장자리) 또는 서클 바깥의 지면에 닿은 경우,

[주1-IAAF] 그러나 이러한 접촉이 어떠한 추진력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선수가 첫 번째 회전을 하는 동안 이러한 신체 접촉이 (가상으로) 서클의 중심을 이론적으로 통과하여 서클 양쪽 측면 바깥으로 그어진 흰색선 뒤쪽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 (c) 포환던지기의 경우, 선수의 신체 어느 부분이 스톱보드의 안쪽 면(상단 부분으로 간주되는 상단 가장자리는 제외) 외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닿은 경우,
- (d) 창던지기의 경우, 선수의 신체 어느 부분이 도움닫기주로 표시한 선이나 도움닫기주로 바깥의 지면에 닿은 경우.

[주IAAF] 다른 규칙이 위반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원반 또는 해머의 부분이 투척 후 그물장을 쳤다면 이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서클 테와 스톱보드의 상단 안쪽 가장자리는 서클 테와 스톱보드 상단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는 즉 선수가 서클 테나 스톱보드의 상단 안쪽 가장자리에 닿은 경우에 무효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187조 14항 (b)에 추가되어 있는 [주-IAAF]는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또는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회전식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는 선수가 첫 번째 회전(rotation)에서 서클의 뒤쪽 반 - 즉 가상으로 서클의 중심을 지나는 흰색 선 뒤쪽 - 에서 우연하게 서클테의 상단이나 그 밖의 지면에 닿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무효시기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로 인해 지렛대 효과나 추진력을 얻어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시기가 된다.

15. 각 투척경기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기 중에 선수는 시작한 시기를 중단하고 용구를 서클 또는 도움닫기주로의 안이나 바깥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주-IAAF] 본 항에서 허용한 모든 동작들은 규칙 제180조 17항에 명시된 시기 최대 허용 시간에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서클이나 도움닫기 주로를 퇴장하느냐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단, 다른 규칙을 위반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16. 포환, 원반, 해머두부 또는 창두부가 지면에 처음 닿을 때에 낙하구역 경계선 또는 낙하구역 경계선 바깥에 지면 혹은 물체(규칙 제187조 14항 [주-IAAF]에 제시된 조항에 나온 그물장을 제외함)를 접촉하면 무효시기가 된다.

본 규칙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해머의 와이어나 핸들의 위치는 관계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머의 와이어가 낙하구역 경계선 위나 바깥에 떨어지거나 놓여지게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머두부가 올바르게 떨어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87조 20항 (a)에 따라 계측위치를 판단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17. 용구가 지면에 낙하하기 전에 선수가 서클 또는 도움닫기주로 밖으로

나가거나 다음의 경우일 때에는 무효시기가 된다.

- (a) 서클에서 실시하는 투척은, 선수가 서클을 퇴장할 때에 서클테의 상단이나 서클 바깥 지면에 최초로 닿는 장소가 서클의 중심을 이론적으로 통과하여 서클 양쪽 측면 바깥으로 그어진 흰색선 보다 완전히 뒤쪽이 아니면 무효가 된다.

[주-IAAF] 서클 테의 상단이나 서클 바깥의 지면에 최초로 닿는 것은 서클을 떠난 것으로 간주한다.

- (b) 창던지기의 경우, 선수가 도움닫기주로를 퇴장할 때에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하는 평행선이나 도움닫기주로 바깥의 지면에 최초로 닿는 장소가 원호의 흰색선 또는 평행선에 직각으로 원호의 양쪽 끝에 그은 흰색선 보다 완전히 뒤쪽이 아니면 무효가 된다. 창이 지면에 낙하한 후, 선수가 투척 원호의 양쪽 끝으로부터 4m 도움닫기 후방에 주로를 가로질러 그어진 선(페인트로 표시하거나, 또는, 주로 옆의 마커로 표시한 가상의 선일 수도 있음)에 닿거나 선 뒤로 가는 순간, 주로를 올바르게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 선수가 창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이 선보다 뒤쪽 그리고 주로 안에 있다면, 도움닫기주로를 올바르게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

187조 17항 (b)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무효시기를 선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심판원의 판정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4m 마크/선”의 목적은 오직 선수들이 올바르게 도움닫기 주로를 이탈하는 시점에 심판원들이 흰색 깃발을 들고 시기에 대한 계측을 시작하는 시점(선수가 4m 마크/선 뒤로 가는 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흰색 깃발을 들기 전 경기용구가 낙하구역에 떨어졌고 무효시기를 선언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선수가 투척을 할 때 4m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투척용구가 낙하구역에 떨어진 후 즉시 깃발을 들어도 된다.

18. 투척 후, 용구는 서클이나 도움닫기주로 옆의 용구 거치대 구역까지

들고 운반하여야 하며, 절대로 던져서 돌려보내면 안 된다.

Ⅱ 거리 제측(Distance Measurement)

19. 모든 투척경기에서의 제측거리가 완전한 cm가 아닐 경우에는 제측된 거리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0.01m(1cm) 단위로 기록한다.
20. 각 투척의 제측은 각 유효시기 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또는 규칙 제146조 5항에 따라 즉각적인 구두항의가 제기된 후).
 - (a) 포환, 원반 또는 해머두부 낙하흔적의 가장 가까분 지점에서부터 서클 중심에 이르는 선을 따라 서클 원주의 안쪽까지 제측한다.
 - (b) 창던지기의 제측은 창이 두부가 지면에 최초로 낙하한 흔적에서 원호의 일부인 서클의 중심점을 잇는 선을 따라 원호의 안쪽 가장자리까지 제측한다.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른 시기의 제측이 카운트백(예:시기의 역순)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거나 또는 다른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기는 (투척 거리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제측되어야 한다.

146조 5항이 적용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규칙위반이 일어난 시기는 제측하지 않는다. 심판원들은 자신들의 재량으로 관습에 따라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신중히 다른 대안을 적용해야 한다.

비디오제측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효한 시기에 대해서 낙하구역에서 서클에 가깝게 남은 선수의 낙하흔적에 수직으로 마커(보통 쇠로 된)를 위치시켜야 한다.

강철줄자의 끝에 마커를 꽂아서 줄자의 “영”이 착지 흔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줄자는 수평으로 길게 당겨서 제측하되 지면에 솟아오른 부분에 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88조 포환던지기(Shot Put)

경기(Competition)

1. 포환은 어깨에서부터 한 손으로만 던져져야 한다. 선수가 서클 안에서 투척을 시작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는 포환이 목 또는 턱에 닿거나 가까이 근접하여야 하고, 투척동작 중에는 손이 이 위치보다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포환을 어깨선의 후방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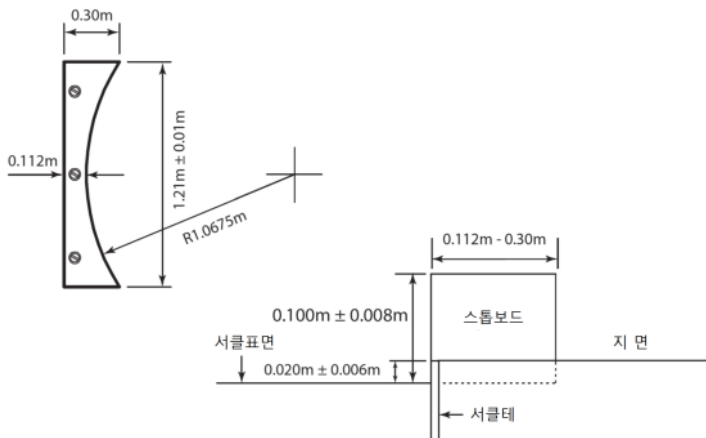
[주-IAAF] 옆으로 전방도립회전 식으로 던지는 기술(cartwheeling techniques)은 허용하지 않는다.

스톱보드(Stop Board)

2. 스톱보드는 흰색으로 칠해진 원호모양으로 목재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들어서 안쪽 표면이 서클 테의 안쪽 가장자리와 합치되고 서클 표면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스톱보드는 스톱보드의 중심점이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일치되도록 설치하며, 지면이나 서클을 둘러싸는 콘크리트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주-IAAF] 1983~1984년 IAAF 시방서(示方書)에 의거한 스톱보드는 인정한다.

3. 스톱보드의 너비는 11.2cm~30cm이고, 서클과 동일한 반지름의 호(弧arc)의 현(弦chord)은 길이가 $1.21\text{m} \pm 0.01\text{m}$ 이며, 높이는 스톱보드 옆 서클 안의 수평면과 비교하여 $10\text{cm} \pm 0.8\text{cm}$ 가 높다.



포환던지기 스톱보드(상단 및 측면에서 본 모습)

포환(Shot)

4. 포환은 견고한 철(鐵), 황동(黃銅), 황동보다 더 부드럽지 않은 금속구(金屬球), 또는 속에 납이나 기타 재질을 채운 상기와 같은 금속외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포환은 구형(球形)이고 표면은 끝마무리가 매끈하여야 한다. 제조업체를 위한 정보 :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균 표면높이는 $1.6\mu\text{m}$ ($1.6/1000\text{mm}$)미만이어야 한다. 즉, 미가공도 번호가 N7이하가 되어야 한다.

5. 포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포 환	여 자			남 자				
	여초/여중	U18	여고 U20/일반	남 초	남 중	U18	남고/ U20	일 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중량	3.000kg	3.000kg	4.000kg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직 경	최소	85mm	85mm	95mm	85mm	95mm	100mm	105mm
	최대	110mm	110mm	110mm	110mm	120mm	125mm	130mm

경기임원(Team of Officials)

포환던지기 종목에서 권장되는 경기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종목 전체를 감독하는 심판원 주임
- (2) 투척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계측이 올바르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심판원 2명.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흰 깃발 하나는 유효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붉은색 깃발은 무효시기를 알리기 위함이다. 시기의 계측이 완료되면 심판원은 붉은색 깃발을 손에 들고 서클 안에 서서 경기용구가 회수되고 낙하구역이 정리될 때까지 대기한다. 심판원 대신 콘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각종 대회에서는 심판원 주임이 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전자거리계측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2번째 심판원은 계측줄자를 서클 중심부를 지나도록 잡아 당기고 있어야 한다.
- (3) 투척 시기 직후 측정해야 하는 위치에 마커를 표시하는 심판원
- (4) 마커가 표시된 지점에 스파이크/프리즘을 꽂고 줄자가 “0”점에 있도록 확인하는 심판원
- (5) 경기용구를 회수하고 용구 거치대에 반납하거나 용구 회수장비에 올려주는 것을 담당하는 심판원
- (6) 경기결과표를 기록하고 다음 시기 선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 시기 선수에게도 순서를 알리는 심판원.
- (7) 스코어보드(시기-번호-결과)를 담당하는 심판원
- (8) 선수의 시기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 (9) 선수들을 담당하는 심판원
- (10) 경기용구 거치대를 담당하는 심판원

[주1-IAAF] 이는 전통적인 경기임원 구성이다. 데이터장치와 전자스코어보드가 있는 주요대회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필드종목의 진행과 기록은 기록원과 데이터 장치의 병행 운영으로 진행해야 한다.

[주2-IAAF] 경기임원과 종목 관련 장비는 선수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거나 관중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제189조 원반던지기(Discus Throw)

원 반(Discus)

1. 원반의 본체는 속이 차거나 비어도 되며, 목재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들고, 테는 금속제로 하고, 가장자리는 둥글어야 한다. 테 가장자리의 횡단면은 반경 약 6mm의 완벽한 원호가 되어야 한다. 원반의 상하 양쪽 중심부에는 편평하고 둥근 금속판(金屬板)을 붙일 수도 있다. 원반 중심부분이 평면이고 원반의 치수나 전체무게가 규격에 일치하다면 금속판이 없는 원반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원반의 양면은 동일하여야하고 오목볼록하거나 (요철) 돌기 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테의 커브가 시작되는 부분으로부터 원반의 중심에서 반경 25mm ~ 28.5mm의 원주(圓周)에 이르는 원반의 양면은 직선으로 경사를 만든다.

원반의 단면은 다음과 같이 고안되어야 한다. 원반의 테의 커브에서 시작해서 원반의 두께는 최대 두께 D까지 일정하게 증가한다. 최대로 두꺼운 부분은 원반의 Y축으로부터 25mm~28.5mm거리의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Y축까지의 원반 두께는 일정하다. 원반의 상·하면은 동일하여야 하며, 원반은 Y축 회전에 관해서도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 원반은 테의 표면을 포함해서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매끈하고(규칙 제188조 4항 참조)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위함이다. 시기의 계측이 완료되면 심판원은 붉은색 깃발을 손에 들고 그물장 입구에 서서 경기용구가 회수되고 낙하구역이 정리될 때까지 대기한다. 심판원 대신 콘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각종 대회에서는 심판원 주임이 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전자거리계측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2번째 심판원은 계측줄자를 서클 중심부를 지나도록 잡아 당기고 있어야 한다.

- (3) 투척 시기 직후 측정해야 하는 위치에 마커를 표시하는 심판원. 투척용구가 낙하구역 바깥에 떨어지면 이 심판원 또는 스카이크/프리즘을 들고 있는 심판원 중 낙하구역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심판원이 팔을 밖으로 펴들어 보여서 무효시기임을 알린다. 유효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다.
- (4) 마커가 표시된 지점에 스카이크/프리즘을 꽂고 줄자가 “0”점에 있도록 확인하는 심판원
- (5) 경기용구를 회수하고 용구 거치대에 반납하거나 용구 회수장비에 올려주는 것을 담당하는 심판원 또는 보조원 약한명. 측정을 위해 줄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심판원이나 보조원 중 한 명은 올바른 측정을 위해 줄자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6) 경기결과표를 기록하고 다음 시기 선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 시기 선수에게도 순서를 알리는 심판원
- (7) 스코어보드(시기-번호-결과)를 담당하는 심판원
- (8) 선수의 시기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 (9) 선수들을 담당하는 심판원
- (10) 경기용구 거치대를 담당하는 심판원

[주1-IAAF] 이는 전통적인 경기임원 구성이다. 데이터장치와 전자스코어보드가 있는 주요대회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필드종목의 진행과 기록은 기록원과 데이터 장치의 병행 운영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주2-IAAF] 경기임원과 종목 관련 장비는 선수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거나 관중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주3-IAAF] 풍향과 풍속을 알리는 풍속계를 위한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제190조 원반던지기 그물장(Discus Cage)

1. 모든 원반던지기는 관중과 임원 및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그물장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본 규칙에서 명시한 그물장은 경기장 외에서의 경기에서 관중이 있거나 타종목과 동시에 경기장 내에서 실행될 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특히 연습장에서는 훨씬 간단한 구조로도 충분하다. 본 연맹 또는 IAAF 사무국에 요청하면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주-IAAF] 규칙 제192조에 규정된 해머던지기용 그물장에 안쪽 지름이 2.135/ 2.50m인 동심원 서클을 설치하거나, 해머서클 앞에 원반던지기 서클을 별도로 만들고 해머용 그물장 문구를 연장하여 원반던지기용 그물장으로 사용해도 된다.

2. 그물장은 초속 25m의 속도로 움직이는 2kg의 원반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원반이 그물장에 맞고 튕겨 나와서 선수에게 되돌아오거나, 그물장 너머로 날아가는 위험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본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한은 어떠한 형태의 설계나 구조라도 무방하다.
3. 그물장은 그림의 평면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U자형을 갖춰야 한다. 문구(門口)의 너비는 6m이어야 하고, 투척서클의 중심부에서 전방으로 7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6m 너비 문구의 끝부분은 그물장의 안쪽 가장자리이다. 가장 낮은 부분의 그물틀 또는 매단 그물망의 높이는 최소 4m이어야 하며, 그물장의 전방부에 가장 가까운 3m(양쪽)의 그물망 높이는 최소한 6m까지 올라가야 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

원반이 그물장이나 그물망의 이음부분이나 그물틀 또는 매단 그물망의 밑으로도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장의 설계와 구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1-IAAF] 서클 뒷쪽의 그물틀/매단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그물망이 서클의 중심에서 최소 3.00m이상 떨어져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2-IAAF] 종래의 그물장 설계와 비교하여 동일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면서 위험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게 만든 개선된 설계는 IAAF와 KAAF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주3-IAAF] 원반던지기 경기가 진행되는 중 인접 트랙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트랙 쪽 그물장 측면을 연장하거나 그리고/또는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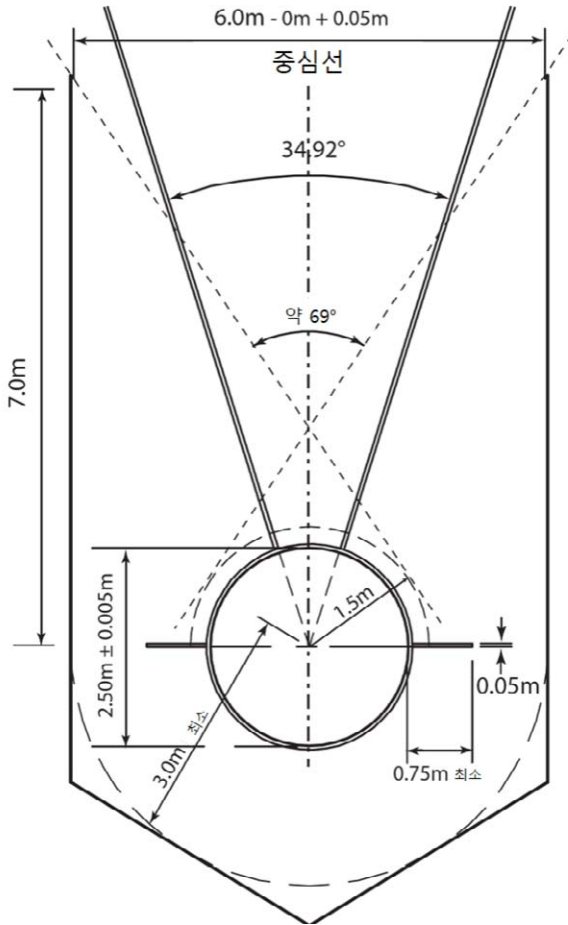
그물망의 각 높이에 있어서 문구(門口)의 폭이 동일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이는 192조 4항 [주2-IAAF]에 따라 설치하는 그물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그물장의 그물망은 적합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줄 또는 대안으로 부드럽거나 장력도(張力度)가 높은 강철제 철사로 만들도록 한다. 그물망 눈의 최대크기는 철사의 경우 50mm, 섬유줄인 경우 44mm이어야 한다.

[주IAAF] 그물망의 규격과 안전점검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 설명되어있다.

5. 이 그물장에서 실행되는 원반던지기의 최대 위험 낙하구역 각도는, 동일 경기대회에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선수 모두 사용할 경우 (원반이 반지름 1.5m의 서클에서 투척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을 때) 약 69°이다. 따라서, 경기장 내의 그물장 설치 위치와 배열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다.

[주IAAF] 위험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원반던지기 전용 그물장의 설계도
(그물망에 대한 그물장의 치수)

||

제191조 해머던지기(Hammer Th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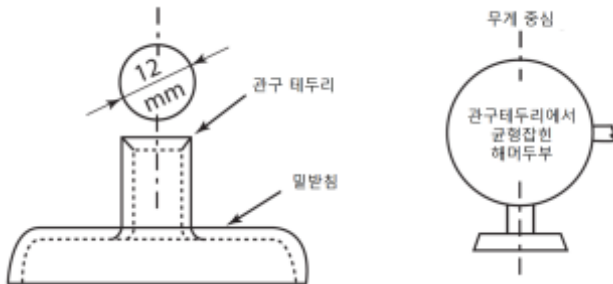
경기(Competition)

1. 예비스윙이나 회전하기 전에 투척동작 시작 위치에 있는 선수는 해머의 두부(頭部)를 서클 안 또는 바깥 지면에 놓아도 된다.
2. 해머 두부가 서클의 안이나 바깥지면 또는 서클 테 상단에 닿아도 무효시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른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선수는 멈췄다가 다시 던질 수 있다.
3. 해머가 투척 중 혹은 공중에서 파손된다면, 시기가 본 규칙을 준수했을 경우 무효시기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선수가 몸의 중심을 잃어서 본 규칙의 어느 부분을 위반하더라도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고 선수에게 새로운 시기를 부여한다.

해머(Hammer)

4. 해머는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금속제 두부, 접속선(wire) 및 핸들).
5. 두부는 견고한 철(鐵), 황동(黃銅), 황동보다 부드럽지 않은 금속구(金屬球), 또는 속에 납이나 기타 재질을 채운 상기와 같은 금속외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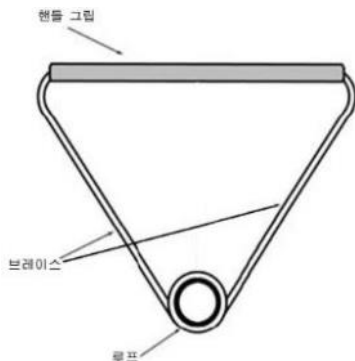
두부의 무게중심은 구체의 중심에서 6mm이하이어야 한다. 즉, 지름이 12mm인 둥근 관구(管口)의 뾰족한 수평모서리에 두부(핸들과 접속선은 부분만)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두부 속에 내용물을 채운다면 내용물이 움직이지 않고 무게중심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해머두부 무게중심 검사기구

6. 접속선은 지름이 3mm 이상이며, 이은 곳이나 매듭이 없고 탄력성이 있는 강철줄이어야 하고, 투척 중에 눈에 띄 정도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 접속선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을 고리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접속선은 보통의 베어링 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인 회전고리를 이용하여 두부에 연결시킨다.
7. 핸들은 단단하고 어떤 종류의 경첩으로도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3.8kN (380kgf)의 신장 부하 시, 핸들의 전체 변형범위는 3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핸들을 접속선에 연결시킬 때 접속선의 고리 안에서 회전하여 해머의 전체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핸들은 루프형태로 접속선에 연결시킨다. 회전고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핸들은 대칭적 구조로서 곡선 또는 직선 손잡이(grip) 및/또는 버팀대(브레이스)가 있을 수 있다. 핸들의 최소 파괴력은 8kN (800kgf)가 되어야 한다.

[주-IAAF] 규격에 일치하는 다른 유형도 허용된다.



일반적인 해머 핸들

8. 해머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해 머		여 자		남 자		
		U18	여고 U20/일반	U18	남고/ U20	일 반
경기허가 및 기록 공인 최소무게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핸들의 내측에서 해머 전체길이	최대	1195mm	1195mm	1200mm	1215mm	1215mm
		(허용오차 없이 최대 길이에 적용한다)				
두부의 지름		85mm~100mm	95~110mm	100~120mm	105~125mm	110~130mm

[주-IAAF] 용구의 무게는 해머 두부, 접속선 및 손잡이 전체를 포함한다.

경기임원(Team of Officials)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권장되는 경기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전체 경기를 감독할 심판원 주임
- (2) 투척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계측이 올바르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심판원 2명. 이 중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가지고 있으며, 흰 깃발 하나는 유효시기를 알리고 다른 붉은색 깃발 하나는 무효시기를 알리는데

사용한다. 시기의 계측이 완료되면 심판원은 붉은색 깃발을 손에 들고 케이지 입구에 서서 경기용구가 회수되고 낙하구역이 정리될 때까지 대기한다. 심판원 대신 콘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각종 대회에서는 심판원 주임이 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전자거리계측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2번째 심판원은 계측줄자를 서클 중심부를 지나도록 잡아 당기고 있어야 한다.

- (3) 투척 시기 직후 측정해야 하는 위치에 마커를 표시하는 심판원. 투척용구가 낙하구역 바깥에 떨어지면 이 심판원 또는 스파이크/프리즘을 들고 있는 심판원 중 낙하구역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심판원이 팔을 밖으로 펴서 들어 무효시기임을 알린다. 유효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다.
- (4) 마커가 표시된 지점에 스파이크/프리즘을 꽂고 줄자가 “0”점에 있도록 확인하는 심판원
- (5) 경기용구를 회수하고 용구 거치대에 반납하거나 용구 회수장비에 올려주는 것을 담당하는 심판원 또는 보조원 약간명. 측정을 위해 줄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심판원이나 보조원 중 한 명은 올바른 측정을 위해 줄자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6) 경기결과표를 기록하고 다음 시기 선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 시기 선수에게도 순서를 알리는 심판원
- (7) 스코어보드(시기-번호-결과)를 담당하는 심판원
- (8) 선수의 시기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 (9) 선수들을 담당하는 심판원
- (10) 경기용구 거치대를 담당하는 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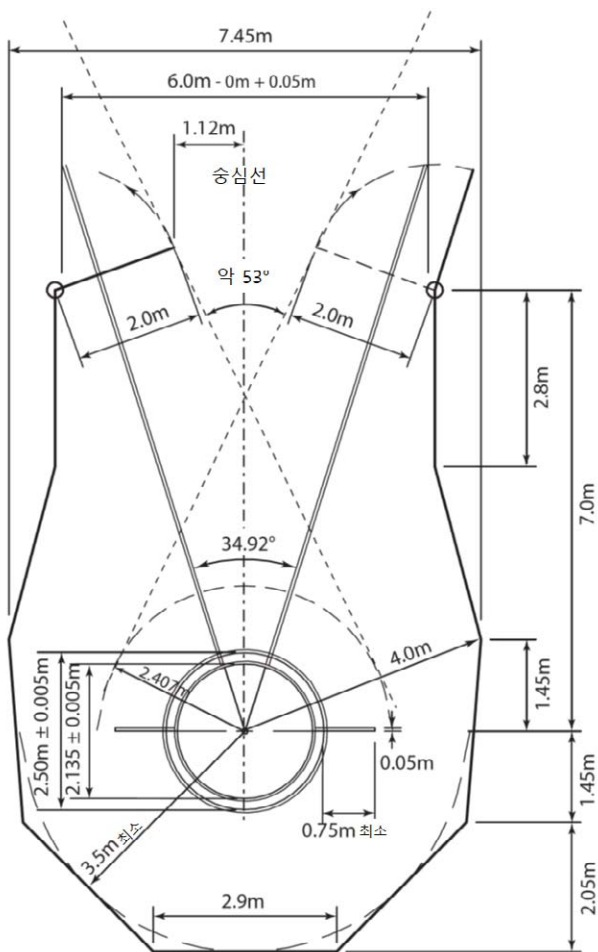
[주1-IAAF] 이는 전통적인 경기임원 구성이다. 데이터장치와 전자스코어보드가 있는 주요대회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필드종목의 진행과 기록은 기록원과 데이터 장치의 병행 운영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주2-IAAF] 경기임원과 종목 관련 장비는 선수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거나 관중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제192조 해머던지기 그물장(Hammer C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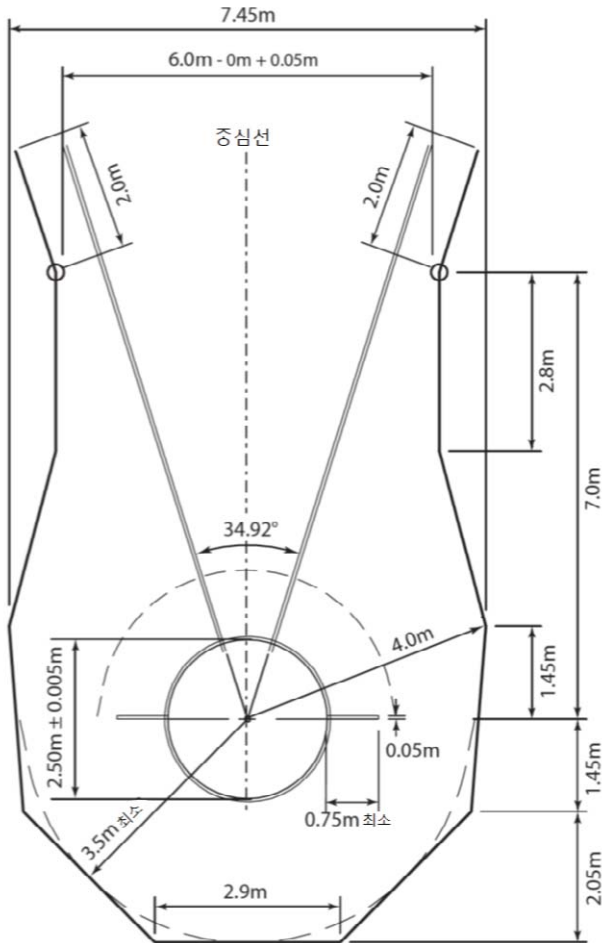
1. 모든 해머던지기는 관중과 임원 및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그물장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본 규칙에서 명기한 그물장은 경기장 외에서의 경기에서 관중이 있거나 타종목과 동시에 경기장 내에서 실행될 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특히 연습장에서는 훨씬 간단한 구조로도 충분하다. 본 연맹 또는 IAAF 사무국에 요청하면 필요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2. 그물장은 초속 32m의 속도로 움직이는 7.260kg의 해머 두부를 막아 낼 수 있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물장은 해머가 그물장에 맞고 튕겨나와서 선수에게 되돌아오거나, 그물장 너머로 날아가는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 규칙의 모든 요건에 합치되는 한 어떠한 형태의 설계나 구조라도 무방하다.
3. 그물장은 그림에서 보이는 평면도와 같이 U자형을 갖추어야 한다. 문구(門口)의 너비는 6m가 되어야 하고 투척서클의 중심부에서 전방으로 7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너비 6m의 문구의 끝부분은 선회축 그물망의 안쪽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한다. 가장 낮은 그물틀 또는 매단 그물망의 높이는 그물장 뒷쪽의 그물틀 또는 매단 그물망은 최소 7m이고, 선회축그물틀에 연결한 마지막 280m의 그물틀은 최소 10m이상이어야 한다.
해머가 그물장이나 그물망의 이음부분이나 그물틀 또는 매단 그물망의 밑으로도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장의 설계와 구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IAAF] 그물망이 서클의 중심에서 최소 3.50m이상 떨어져 있으면 서클 뒷쪽의 그물틀/매단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별로 문제는 안 된다.
4. 너비 2m의 이동식 그물틀 2개가 그물장 전방에 준비되고, 매번 1개만을 작동시킨다. 이동식 그물틀의 최소 높이는 10m이다.

- [주1-IAAF] 왼쪽 그물들은 선수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투척할 때 사용되고, 오른쪽 그물들은 선수가 시계방향으로 투척할 때 사용된다. 오른손 투척선수와 왼손 투척선수가 모두 참가하는 경기에서는 경기 도중 그물들을 좌우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힘을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 내에 그물들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주2-IAAF] 양쪽 그물들의 끝부분의 위치는 설계도에 제시되어 있지만, 경기 중에는 선수의 손잡이(왼손 또는 오른손)에 따라 한 쪽 그물들만 닫아놓는다.
- [주3-IAAF] 이동식 그물들을 작동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예시된 위치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동식 그물들은 작동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면에 그물들의 작동위치를 표시(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주4-IAAF] 이러한 이동식 그물들의 구조와 작동은 그물장의 전반적인 설계에 따라 좌우되는데, 수평이나 수직축을 이용해 밀어 넣거나 접어놓을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떼어낼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러한 이동식 그물들이 해머의 충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해머가 고정식 그물들과 이동식 그물들 사이를 뚫고 나갈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주5-IAAF] 종래의 그물장의 설계와 비교하여 보호기능이 동일하고 위험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게 만든 개선된 설계는 IAAF와 KAAF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동심원서클의 해머 및 원반던지기 그물장
(해머던지기 배치 및 그물망에 대한 그물장 치수)

||



동심원서클의 해머 및 원반던지기 그물장
(원반던지기 배치 및 그물망에 대한 그물장 치수)

||

5. 그물장의 그물망은 적당한 천연 또는 합성섬유줄이나, 또는 부드럽거나 장력도(張力度)가 높은 강철제 철사로 만들어야 한다. 그물망 눈의 최대크기는 철사의 경우 50mm, 섬유줄인 경우 44mm이어야 한다.

[주-IAAF] 그물망의 규격과 안전점검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다.

6. 같은 그물장을 원반던지기에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름 2.135m/2.50m인 동심원의 서클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클의 동일한 표면을 해머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 활용하게 된다. 해머던지기 그물장은 이동식 그물틀을 그물장 문구를 막지 않도록 고정시켜서 원반던지기에도 사용한다.

동일한 그물장 안에 해머던지기과 원반던지기 서클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낙하구역의 중심선상에 두 서클을 설치하되, 원반던지기 서클을 해머던지기 서클 앞에 설치하고, 원반던지기 서클의 중심점으로부터 해머던지기 서클의 중심점이 2.37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원반던지기 경기 시, 이동식 그물틀을 그물장 측면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주-IAAF] 서클 뒤쪽의 그물틀/매단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별도의 서클의 경우 동심원서클 또는 해머던지기서클의 중심에서 최소 3.50m 떨어져 있다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또는 2004년 이전의 규칙으로 제작된 별도의 서클들이 있고 원반던지기 서클이 후방에 있는 그물장이면 3.00m이다.)(규칙 제192조 4항 참조).

7. 이 그물장에서 해머던지기 최대 위험낙하구역 각도는 동일한 경기대회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선수 모두 참가할 경우 (해머가 반지름 2.407m의 서클에서 투척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을 때) 약 53° 이다. 따라서, 그물장의 경기장 내 위치와 배열은 안전을 위한 중대한 사항들이다.

[주-IAAF] 위험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제193조 창던지기(Javelin Throw)

경기(Competition)

- (a) 창은 한손으로만 손잡이를 쥐어야 한다. 창은 어깨 또는 던지는 팔의 상박 위로 던져야 하고 팽개치거나 내던져서는 안 된다. 비정통적인 투척방법(non-orthodox styles)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창던지기는 금속제 두부가 창의 다른 부분보다 먼저 지면에 낙하하였을 경우만이 유효시기가 된다.
- (c) 선수는 창이 공중으로 던져지기 전까지 어느 순간에도 신체를 완전히 돌려서 등이 투척 원호(arc)쪽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존 규칙의 창 “촉 끝”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고 창 두부에 대한 일반적인 명사로 변경되었다. 이는 창 두부의 모양이 각양각색이고 두부로부터 창 끝(촉)을 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는 즉 심판원들이 187조 16항과 본 규칙 193조 1항 (b)에 따라 창이 올바르게 떨어졌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187조 20항 (b)에 따라 측정 위치를 정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원칙은 과거와 동일하게 유효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창이 지면에 착지할 시에 미약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각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평하게 또는 창 뒷부분이 먼저 닿는 착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붉은색 깃발을 든다 (무효시기가 된다).

- 창이 투척 중 또는 공중에서 파손된 경우, 규칙에 합당하게 시기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수가 몸의 균형을 잃어서 본 규칙의 어떠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라도 이를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선수에게 새로운 시기를 허용한다.

창(Javelin)

3. 창은 축과 창자루 및 끈으로 감은 손잡이로 3개 부분이 구성하고 있다.
4. 창자루는 단단하거나 또는 속이 비어야 하고, 고정되고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하여 금속 또는 적절한 기타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창자루 표면은 움푹 들어가거나 볼록해서는 안 되며, 홈이 파이거나 융기져서도 안 되고, 구멍이 있거나 거칠어도 안 된다. 창자루 표면의 끝손질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고(규칙 제188조 4항 참조) 균일하여야 한다.
5. 창자루에는 끝이 뾰족한 금속제 두부를 고정시켜야 한다. 두부는 완전히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완성된 두부의 표면이 매끄럽고(규칙 제188조 4항 참조) 균일하다는 전제하에, 두부 앞쪽 끝에는 기타 금속합금으로 보강된 축끝을 포함할 수 있다. 창축의 각도는 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창 중심(重心)의 둘레를 감은 손잡이의 지름은 창자루의 지름보다 8mm 이상 더 크면 안 된다. 손잡이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표준적인 무늬의 표면이어야 하며, 가죽끈, 새김 눈 또는 오목하게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손잡이는 굽기가 일정하여야 한다.
7. 횡단면은 어느 부분이나 원형이어야 한다([주1-IAAF] 참조). 창자루의 지름이 가장 큰 부분은 손잡이 바로 앞에 있어야 한다. 손잡이의 아래 부분을 포함한 창자루의 중심부분은 원통형이거나 뒤끝 쪽으로 가늘어지는 형태이지만, 손잡이 바로 앞부터 손잡이 바로 뒷 부분까지 지름이 0.25mm보다 더 줄어들면 안 된다. 창은 손잡이로부터 앞끝의 축과 뒤 끝에 이를 때까지 점점 가늘어진다. 손잡이로부터 앞축의 끝과 뒤끝에 이르는 종단면은 일직선이거나 약간 볼록하여야 하며 ([주2-IAAF] 참조), 창길이의 전체에서 두부의 바로 뒤와 손잡이의 앞과 뒤를 제외하고는 지름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두부의 뒷부분 지름의 감소는 2.5mm 이상이면 안 되고, 종단면의 요구사항인 이러한 감소는 축 뒤쪽으로 30cm를 초과할 수 없다.

[주1-IAAF] 횡단면은 전체가 원형이어야 하나 어느 지점의 횡단면에서든

최대와 최소의 지름 차이가 2%인 것은 허용이 된다. 어떤 지명된 횡단면에서든 이 2개의 직경 평균치는 아래 도표의 원형창(圓形窓) 규격과 일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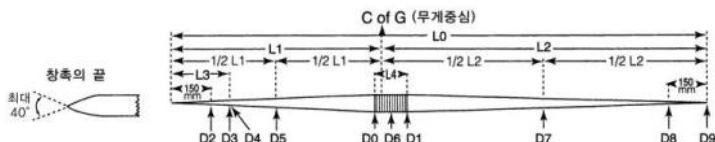
[주2-IAAF] 종단면의 모양은 최소 500mm 길이의 직선 금속날과 두께 0.20mm, 1.25mm인 2개의 간극 게이지(feeler gauge)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약간 볼록한 부분은 직선 날을 창 의 짧은 부분과 견고하게 접촉되었을 때 앞뒤로 흔들어 움직일 수 있다. 직선부분은 직선 날을 창에 단단하게 고정시켰을 때, 창과 접촉한 직선 날 사이에 0.20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두부와 창자루의 연결부분 바로 뒷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는 1.25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8. 창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창		여 자		남 자		
		여중/ U18	여고/U20 일반	남 중	U18	남고 U20/일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무게 (손잡이 끈 포함)		500g	600g	600g	700g	800g
전체길이	최소	2000mm	2200mm	2200mm	2300mm	2600mm
	최대	2100mm	2300mm	2300mm	2400mm	2700mm
금속제촉 끝부터 중심(重心)까지의 길이	최소	780mm	800mm	800mm	860mm	900mm
	최대	880mm	920mm	920mm	1000mm	1060mm
뒷꿈(꼬리)에서부터 중심(重心)까지의 길이	최소	1120mm	1280mm	1280mm	1300mm	1540mm
	최대	1320mm	1500mm	1500mm	1540mm	1800mm
금속제두부 길이	최소	220mm	250mm	250mm	250mm	250mm
	최대	270mm	330mm	330mm	330mm	330mm
손잡이의 너비	최소	135mm	140mm	140mm	150mm	150mm
	최대	145mm	150mm	150mm	160mm	160mm
가장 굵은 부분의 창자루 지름(DO)	최소	20mm	20mm	20mm	23mm	25mm
	최대	24mm	25mm	25mm	28mm	30mm

9. 창에는 투척 중에 중심(重心)이나 투척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동부분(可動部分)이나 기타 장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창의 금속제 두부의 축끝까지 점차 가늘게 함에 있어서, 두부의 축끝의 각도는 40° 를 넘지 못한다. 축끝으로부터 150mm 지점의 지름은 창자루 최대 지름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창의 중심점(重心點)과 금속제 두부 축끝과의 중간지점의 지름은 창자루 최대 지름의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창자루 꼬리까지 점차 창자루가 가늘어짐에 있어, 중심(重心)과 꼬리와의 중간점의 지름은 창자루 최대 지름의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창의 꼬리에서 150mm인 지점은 창자루 최대 지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꼬리 끝의 창자루 지름은 3.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국제 경기용 창

길 이		지 림		최 대	최 소
LO	전 체 길 이	D0	손잡이의 앞	-	-
L1	축끝-무게중심	D1	손잡이의 뒤	D0	D0 - 0.25mm
1/2 L1	L1 의 절반	D2	축끝으로부터 150mm	0.8 D0	-
L2	창 뒤끝-무게중심	D3	창 두부의 뒤쪽	-	-
1/2 L2	L2의 절반	D4	창 두부의 바로 뒤	-	D3 - 2.5mm
L3	창 두부	D5	창끝 중간점-무게중심	0.9 D0	-
L4	손잡이	D6	손잡이 중간	D0 + 8mm	-
		D7	창 뒤끝 중간점-무게중심	-	0.9 D0
		D8	창 뒤끝으로 부터 150mm	-	0.4 D0
CofG	무게중심	D9	창 뒤끝	-	3.5mm
[주-IAAF] 지름의 모든 계측은 최소 0.1mm로 하여야 한다.					

경기임원(Team of Officials)

창단지기 종목에서 권장되는 경기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전체 경기를 감독할 심판원 주임
- (2) 투척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측정이 올바르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심판원 2명. 이 중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가지고 있으며, 흰 깃발 하나는 유효시기를 알리고 다른 붉은색 깃발 하나는 무효시기를 알리는데 사용한다. 시기의 측정이 완료되면 심판원은 붉은색 깃발을 손에 들고 도움단기 주로에 서서 경기용구가 회수되고 낙하구역이 정리될 때까지 대기한다. 심판원 대신 콘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각종 대회에서는 심판원 주임이 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전자거리계측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2번째 심판원은 계측줄자를 도움단기의 8m 지점을 지나도록 잡아당기고 있어야 한다.
- (3) 투척 시기 직후 측정해야 하는 위치에 마커를 표시하는 심판원 1-2명.
투척용구가 낙하구역 바깥에 떨어지면 이 심판원 또는 스파이크/프리즘을 들고 있는 심판원 중 낙하구역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심판원이 팔을 밖으로 펴서 들어 무효시기임을 알린다. 경기용구(창)의 두부가 먼저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깃발이 아닌 다른 신호수단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유효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다.
- (4) 마커가 표시된 지점에 스파이크/프리즘을 꽂고 줄자가 “0”점에 있도록 확인하는 심판원
- (5) 경기용구를 회수하고 용구 거치대에 반납하거나 용구 회수장비에 올려주는 것을 담당하는 심판원 또는 보조원 약간명. 측정을 위해 줄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심판원이나 보조원 중 한 명은 올바른 측정을 위해 줄자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6) 결과를 기록하고 다음 시기 선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 시기 선수에게도 순서를 알리는 심판원
- (7) 스코어보드(시기-번호-결과)를 담당하는 심판원
- (8) 선수의 시기허용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9) 선수들을 담당하는 심판원

(10) 경기용구 거치대를 담당하는 심판원

[주1-IAAF] 이는 전통적인 경기임원 구성이다. 데이터장치와 전자스코어보드가 있는 주요대회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필드종목의 진행과 기록은 기록원과 데이터 장치의 병행 운영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주2-IAAF] 경기임원과 종목 관련 장비는 선수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거나 관중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주3-IAAF] 풍향과 풍속을 알리는 풍속계를 위한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제5장 혼성경기(Combined Events Competitions)

제200조

혼성경기(Combined Events Competitions)

남자 U18, 고교, U20 및 남자 일반

(5종경기 및 10종경기 - Pentathlon and Decathlon)

1. 5종경기는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멀리뛰기, 창던지기, 200m, 원반던지기, 1500m

[비고] 5종경기는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남자 U18, 고교, U20 및 남자 일반의 10종경기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제1일 : 10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400m

제2일 : 110mH,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1500m

여자 U20 및 여자 일반

(7종경기 및 10종경기, Heptathlon and Decathlon)

3. 7종경기는 7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제1일 : 100mH,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200m

제2일 : 멀리뛰기, 창던지기, 800m

4. 여자의 10종경기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규칙 제200조 2항에 명시된 순서 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제1일 : 100m, 원반던지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400m

제2일 : 100mH,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1500m

[비고] 10종경기는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여자 U18 및 여자고교 (7종경기, Heptathlon)

5. 여자 U18 및 고교의 7종경기는 7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제1일 : 100mH,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200m

제2일 : 멀리뛰기, 창던지기, 800m

총 칙(General)

6. 혼성경기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1개 종목이 끝난 후에서부터 다음 종목을 시작할 때까지 개별선수에게 가능한 한 최소 30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첫째 날 마지막 종목의 종료시각과 둘째 날 첫 번째 종목의 시작시각과는 최소 10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소 30분이라는 시간 간격은 이전 종목의 마지막 레이스 또는 시기 후 다음으로 개최되는 종목의 첫 번째 레이스 또는 시기의 시작 시간 간의 실제 시간 차이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경기 종목의 종료 후 (이동 시간도 이 30분 간격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의 워밍업으로 선수가 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혼성경기가 진행되는 개최일수는 특수한 경우(예 : 날씨)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기술대표나 심판장이 특별한 상황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혼성경기가 200조나 223조에 명시하는 기준보다 길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혼성경기에서 수립된 기록(합계점수)은 공인되지 않는다.

7. 혼성경기의 마지막 종목을 제외한 개별 종목에서는, 조 또는 그룹편성은 사전에 결정된 기간 중에 선수 각각이 수립한 개별 종목 기록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같은 조 또는 그룹에 편성되도록 기술대표 또는 혼성경기 심판장이 결정한다. 각 조 또는 그룹에는 되도록 5명 이상의 선수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절대로 3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일정 때문에 이러한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종목의 조 또는 그룹편성은 선수들이 이전 종목을 마치고

참가가 가능한 대로 편성한다.

혼성경기의 최종종목의 조편성은 최종종목의 직전 종목까지의 총점의 상위득점 선수들이 마지막 조에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기술대표 또는 혼성경기 심판장은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편성할 권한이 있다.

[주] 국내경기대회에서는 최종 종목을 제외하고 각 종목의 조 또는 그룹 편성은 주최자가 선수의 각개별 종목에서 비슷한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같은 조 또는 같은 그룹에 편성되도록 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혼성경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제외하고 IAAF 및 KAAF 규칙을 적용한다.
 - (a) 멀리뛰기 및 각 투척 종목에서는 각 선수에게 3회의 시기만을 허용한다.
 - (b) 완전자동계시장치와 사진판독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각 선수의 시간은 3명의 수동계시원이 독립적으로 계시한다.
 - (c) 트랙경기에서는 각 레이스마다 부정스타트에 책임이 있는 선수(들)를 실격시키지 않고 단 1회의 부정스타트를 허용 한다. 같은 레이스에서 첫 번째 부정스타트 이후 추가적인 부정스타트에 책임이 있는 선수는 실격된다(규칙 제162조 8항 참조).
 - (d) 수직도약경기에서는, 크로스바를 높이는 간격이 경기대회 동안 균일해야 한다 - 높이뛰기는 3cm, 장대높이뛰기는 10cm.
9. 각 개별종목 당 오직 1가지의 계시체계만을 적용한다. 그러나 신기록을 공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해당 종목의 다른 선수에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완전자동계시 및 사진판독장치에서 얻은 기록이어야 한다.

본 목적에 맞게 165조 1항 (a)와 (b)에 명시된 두 가지 형태의 계시체계 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진판독장치가 오작동을 하여 모든 조가 아닌 일부 조만 사진판독이 된 경우, 수동계시와 완전자동계시를 통해 얻은 점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게 된다.

200조 9항에 따라 경기대회의 단일 종목에서 오직 하나의 계시체계만 적용/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선수의 점수는 수동계시로 측정된 기록을 특정한 수동계시표에 준하여 환산하게 된다. 명확히 말하자면, 다른 종목들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사진판독 기록이 있다면, 전자계시표를 근거로 (점수를 환산) 할 수 있다.

10. 선수가 혼성경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스타트를 하지 않았거나 1회도 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수를 그 이후의 종목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해당 선수는 경기를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당 선수는 최종순위에서 제외된다.

혼성경기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한 선수는 즉시 그의 결정사항을 혼성경기 심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현행 IAAF 및 KAAF 혼성경기채점표에 의한 점수는 각 종목별 점수와 누적 총점수를 각 종목이 종료된 후에 모든 선수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선수들은 획득한 총점에 따라 선수들의 순위가 결정된다.

더 어린 연령그룹의 허들 및 투척 용구 규격이 성인(일반부) 규격과 다르더라도 각 종목에서 동일한 혼성경기채점표를 사용한다.

트랙이나 필드 종목에서 달성된 경기결과(기록)에 대한 점수는 해당 채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에는 다양한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낮고 가까운 기록에 대한 점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 : 여자 창던지기의 경우 45.82m에 해당되는 점수가 없다. 채점표 상에 이 기록보다 더 낮고 가까운 기록은 45.78m이며 환산 점수는 779점이다.

동순위(Ties)

12. 어느 순위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을 취득했을 경우,
동순위로 결정한다.

중학교

남자 중학교 (5종경기 : Pentathlon)

1. 5종경기는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또는 연속 2일간 다음의 순서로 실시하며, 본 조 6항 이하의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일 : 100m, 포환던지기, 110mH

제2일 : 높이뛰기, 800m

여자 중학교 (5종경기 : Pentathlon)

2. 5종경기는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또는 연속 2일간 다음의 순서로 실시하며, 본 조 6항 이하의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일 : 100m, 포환던지기, 100mH

제2일 : 높이뛰기, 800m

제6장 실내경기(Indoor Competitions)

제210조

실내경기에 적용되는 실외경기 규칙 (Applicability of Outdoor Rules to Indoor Competitions)

제6장의 규칙에 명시된 예외사항 및 규칙 제163조 및 제184조에 명시된 풍속측정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칙 제1장부터 5장까지의 실외경기 규칙은 실내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1조

실내경기장(The Indoor Stadium)

1. 경기장은 완전히 벽으로 둘러싸여지고 지붕이 덮여져야 한다. 경기를 만족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명과 난방, 환기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2. 경기장은 타원형 트랙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거리 및 허들 레이스를 위한 직선트랙, 도약경기용의 도움단기주로와 착지장소). 추가적으로, 포환던지기용 서클과 낙하구역도 영구적 혹은 임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 상의 사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트랙과 도움단기주로, 또는 발구름 장소의 표면은 경기화 스파이크(길이 6mm)를 수용할 수 있는 합성포장재로 덮여져야 한다. 경기장 운영기관에 의하여 대체 두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허용되는 스파이크의 길이를 선수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4항 참조).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실내 육상경기대회는 IAAF 실내육상경기시설인증서(Indoor Athletics Facility Certificate)를

소지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이 이용가능할 경우, 규칙 제1조 1항 (d), (e), (g), (h), (i) 및 (j)에 명시된 경기대회들도 이러한 시설에서 개최할 것을 권장한다.

4. 트랙, 도움닫기주로 및 발구름 장소의 합성포장 표면을 떠받치는 기초는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거나, 아니면 (장선에 부착된 나무판이나 합판 시트처럼) 공중에 뜬 구조물일 경우에는 여하한 탄력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각 도움닫기주로는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도약경기를 위한 발구름 장소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각 경기가 실시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주1-IAAF] “탄력 부분”은 선수에게 부가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되거나 시공된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주2-IAAF] IAAF 사무국이나 웹사이트에서 입수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는 트랙 계측과 마킹을 위한 도표를 포함한 실내 경기장의 설계와 건설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명확한 사항들이 포함하고 있다.

[주3-IAAF] 시설인증신청서(certification application)와 계측보고서(measurement report), 그리고 인증제도절차(Certification System Procedures)의 표준 양식은 IAAF 사무국이나 IAAF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실내경기의 공통적인 문제는 적절한 조명의 부족 현상이다. (덧여긴) 실내경기장은 반드시 충분한 조명이 제공되어 경기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TV 방송도 하는 중이라면 더욱 많은 조명(빛)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자동계시의 올바른 운용을 위해 피니시 라인 구역에는 추가적인 조명이 필요할 수 있다.

제212조

직선트랙(The Straight Track)

1. 트랙의 측면경사도는 이에 대해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달리는 방향으로 일부지점에서 250분의 1(0.4%)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1000분의 1(0.1%) 이하가 되어야 한다.

레인(Lanes)

2. 트랙의 개별 레인 수는 최소 6개, 최대 8개가 되어야 하며, 양쪽에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경계를 표시한다. 오른쪽 레인라인을 포함한 레인의 너비는 $1.22\text{m} \pm 0.01\text{m}$ 가 되어야 한다.

[주-IAAF]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트랙에서는 레인의 너비가 1.25m이어도 된다. 단, 해당 트랙도 완전하게 재포설할 (전체를 다시 깔 때에는) 시에는 본 규칙의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스타트와 피니시(The Start and Finish)

3. 스타트라인의 후방에 최소 3m까지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니시 라인의 전방에 최소 10m까지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되며,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IAAF] 피니시 라인 전방에 최소 15m이상의 거리를 아무런 장애물 없이 확보하기를 강력히 권장한다.

제213조

타원형 트랙 및 레인(The Oval Track and Lanes)

1. 일반적인 트랙의 길이는 200m가 바람직하다. 트랙은 2개의 평행 직선주로와 반경이 동일하고 경사가 있어도 꺾은 2개의 곡선주로로 이루어진다.

트랙안쪽은 높이와 너비가 약 5cm의 적절한 재질로 만든 연석이나 또는 5cm 너비의 흰색라인으로 구분한다. 연석 또는 흰색라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제1레인의 안쪽 가장자리가 된다. 흰색라인 또는 연석의 안쪽 가장자리는 트랙 전체 길이 동안 수평이 되어야 하고 최대경사는 1000분의 1(0.1%)이다. 두 개의 직선주로 옆에는 연석 없이 5cm 너비의 흰색라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 [주-IAAF] 모든 계측은 규칙 제160조 2항에 명시된 방식을 따른다.

레인(Lanes)

- 트랙은 최소 4개, 최대 6개의 레인이 있어야 한다. 레인의 표준 너비는 오른쪽 레인라인을 포함해서 최소 0.90m, 최대 1.10m이어야 한다. 모든 레인은 동일한 표준 너비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된 너비의 $\pm 0.01\text{m}$ 까지 허용오차를 가진다. 레인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구분한다.

경사도(Banking)

- 곡선주로와 직선주로 모든 레인의 경사각도는 트랙의 횡단면에서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직선주로는 평평하거나, 안쪽 레인을 향하여 최대 1/100(1%)의 측면경사를 가질 수 있다. 직선주로에서 경사진 곡선주로까지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주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완만한 수평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수직변화도 있어야 한다.

안쪽가장자리의 마킹(Marking of the Inside Edge)

- 트랙 안쪽가장자리를 흰색라인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곡선부와 직선부에 적당하게 추가로 콘이나 기로 표시해놓는다. 콘의 높이는 최소한 15cm가 되어야 한다. 기의 크기는 약 25cm x 20cm이며, 높이는 최소 45cm, 그리고 각도는 트랙 반대방향으로 지면과 60°가 되도록 비스듬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콘이나 기는 그 아래쪽의 가장자리가 흰색라인의 트랙과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와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콘 또는 기는 곡선주로에서는 1.5m, 직선주로에서는 10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배치한다.

[주-IAAF] IAAF가 직접 주최하는 모든 실내경기대회에서는 안쪽 연석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타원형 트랙이 200m 이상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트랙에서 진행된 200m 또는 그 보다 긴 종목에서 수립된 기록은 공인 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0m미만의 트랙을 시공하는 것보다 200m (표준) 트랙을 시공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 상위 수준의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6개의 레인을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타원형 트랙 레인의 이상적인 너비는 1m이다.

콘은 곡선주로 뿐만 아니라 타원형 트랙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깃발이나 콘을 설치할 때는 제1레인의 안쪽 흰색라인은 그 레인을 달리는 선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그 선수가 달리는 레인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내 경기대회에서는 콘의 사용을 선호하고 권장한다.

제214조

타원형 트랙에서의 스타트와 피니시

(Start and Finish on the Oval Track)

1. 200m의 경사진 실내트랙의 구조와 마킹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중 적용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기본조건(Basic Requirements)

2. 레이스의 스타트와 피니시는 트랙 직선부분의 레인라인에 직각으로, 또 곡선부분의 반경선을 따라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3. 피니시라인의 설정조건은 가능한 한 거리가 다른 모든 종목에서도 한 개의 피니시라인만 직선주로에 두고, 가능하면 직선주로의 대부분이 피니시라인 전에 있어야 한다.
4. 모든 스타트라인(직선, 단계식 또는 곡선)에 필수조건은 최단거리 계측법을 채용하여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거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5. 가능한 한 스타트라인 (릴레이레이스의 테이크오버존 라인 포함)은 곡선주로의 경사도가 가장 큰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레이스 운영(Conduct of the Races)

6. (a) 300m 이하의 레이스는 개별레인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 (b) 300m를 초과하고 800m 미만의 레이스는 스타트에서 두 번째 곡선주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브레이크라인까지 개별레인에서 달려야한다.
- (c) 800m 레이스의 스타트는 각 선수가 개별레인을 사용하거나, 각 레인 당 최대 2명의 선수를 배정하거나, 또는 제163조 5항 (b)의 경우와 같이 가급적이면 1레인과 4레인에서 시작하는 그룹스타트를 행한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 곡선주로 끝에 표시된 브레이크라인 또는 2개의 곡선주로를 레인에서 달리는 경우 두 번째 곡선주로 끝에 표시된 브레이크 라인 이후에서만 선수들은 그들의 레인을 떠나거나 바깥쪽 그룹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안쪽 그룹에 합류 할 수 있다. 하나의 아크형 스타트라인 또한 사용할 수 있다.
- (d) 800m를 초과하는 레이스는 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크형 스타트 라인을 사용하거나 그룹스타트로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그룹스타트로 시작한다면, 브레이크라인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곡선주로 끝에 위치할 것이다.

만약 선수가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는 실격 된다.

브레이크라인은 각 곡선주로 후에 제1레인을 제외한 모든 레인들을 가로지르며 너비 5cm 아크형 선으로 그려진다. 선수들의 브레이크라인 식별을 도와주기 위해 브레이크라인 및 레인과 구별되는 색채를 지닌 규격 50mm x 50mm, 높이 15cm 이하의 작은 콘(cones)이나 각주(角柱, prisms) 또는 기타 표지를 브레이크라인과 레인 교차점 바로 전에 레인 라인 상에 놓아야 한다.

[주1-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가 아닌 대회에서는 회원연맹은 800m 레이스에서 레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주2-IAAF] 6레인 미만의 트랙에서는 6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룹 스타트를 사용할 수 있다.

200m 표준길이 트랙의 스타트라인 및 피니시라인

(Start Line and the Finish Line for a Track of 200m Nominal Length)

7. 제1레인의 스타트라인은 주 직선에 두어야 한다. 스타트라인의 위치는 바깥쪽 레인의 계단식 스타트라인(400m 레이스) 중 가장 멀리 위치한 스타트라인이 경사각도가 12° 가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타원형 트랙에서의 모든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은 제1레인의 스타트라인을 (기준으로) 연장한 선이어야 하며 트랙을 가로질러서 각 레인라인에 직각이 되도록 그린다.

트랙 마킹에 사용될 색상은 IAAF 육상경기시설 매뉴얼의 트랙 마킹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제215조

트랙경기의 레인 추천

(Draw for Lanes in Track Events)

1. 레이스가 여러 라운드로 진행될 경우 곡선주로의 전체 또는 부분을 레인에서 달리는 모든 종목에서는 레인 결정을 위한 3회의 추천을 한다.
 - (a) 첫째, 바깥쪽 두 레인 배정을 위한 기록이 가장 좋은 2명의 선수 또는 두 팀간의 추천.
 - (b) 둘째, 다음 두 레인 배정을 위한 기록이 3위와 4위인 선수 또는 팀간의 추천.
 - (c) 셋째, 남아 있는 안쪽레인 배정을 위한 기타 선수 또는 팀간의 추천.

상기에 명시된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d) 첫 라운드의 조편성은 정해진 사전 기간 중에 수립한 유효한 공인 기록에 근거하여 순위 리스트를 정한다.
 - (e) 첫 라운드 이후에는 규칙 제166조 3항 (b) ④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며, 800m 종목의 경우 제166조 3항 (b) (ii)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다.

2. 모든 기타 레이스에서의 레인순서는 규칙 제166조 4항과 5항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한다.

트랙의 레인 배정이 다른 환경에서는 (추첨을 위해 사용될) 표가 해당 경기대회의 기술규정에 포함되거나, 기술대표 또는 대회주최측에서 정한다.

제216조

의복, 경기화, 선수표(Clothing, Shoes and Athlete Bibs)

경기화의 밑창과 뒷굽에서 돌출한 각 스파이크의 길이는 6mm(또는 대회주최측에서 요구하는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사항은 항상 규칙 제143조 4항에 규정된 최대길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217조

허들 레이스(Hurdle Races)

1. 허들 레이스의 표준거리는 직선트랙에서 50m 또는 60m이어야 한다.
2. 레이스용 허들의 규격과 배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남 자			여 자	
	U18/남중	U20	일반/남고	U18/여중	일반/U20/여고
허들 높이	0.914m	0.991m	1.067m	0.762m	0.838m
레이스 거리	50m / 60m				
허들 수	4 / 5				
스타트라인 ~ 제1허들까지	13.72m			13.00m	
허들간의 거리	9.14m			8.50m	
마지막 허들 ~ 피니시라인까지	8.86m / 9.72m			11.50m / 13.00m	

제218조 릴레이레이스(Relay Races)

레이스 운영(Conduct of the Races)

1. 4×200m 릴레이레이스에서는 제1주자의 모든 구간과 제2주자의 첫 번째 곡선주로에서 규칙 제214조 6항에 명시된 브레이크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까지를 자신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테이크오버존은 20m 길이며, 2번, 3번, 4번 주자는 반드시 이 존(zone) 안에서 스타트하여야 한다. ||
2. 4×400m 릴레이레이스는 규칙 제214조 6항(b)를 따라 진행한다.
3. 4×800m 릴레이레이스는 규칙 제214조 6항(c)를 따라 진행한다.
4. 4×200m 릴레이레이스의 3번과 4번 대기선수, 그리고 4x400m과 4×800m 릴레이레이스의 2번, 3번, 4번 대기선수들은 해당임원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소속팀의 앞 주자가 마지막 곡선주로에 진입하는 순서와 동일한 순서대로(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대기위치를 잡는다. 진입하는 앞 주자가 이 지점을 통과하면 대기 순서(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테이크오버존의 시작 부분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선수가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

[주-IAAF] 레인의 폭이 좁은 관계로, 실내 릴레이레이스는 실외릴레이레이스보다 충돌이나 의도하지 않은 방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능한 경우에는 각 팀 간에 1개의 레인을 비워 두도록 권장한다.

제219조 **높이뛰기(High Jump)**

도움닫기주로와 발구름 장소(The Runway and Take-Off Area)

1. 이동식 매트를 사용할 경우, 발구름 장소 높이에 대한 규칙의 모든 사항은 매트의 상부표면의 높이에 맞춰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2. 도움닫기의 마지막 15m가 규칙 제182조 3항, 4항, 5항이 준수되는 도움닫기주로일 경우, 선수는 타원형 트랙의 경사부분에서부터 도움닫기를 시작할 수 있다.

제220조 **장대높이뛰기(Pole Vault)**

도움닫기주로(Runway)

도움닫기의 마지막 40m가 규칙 제183조 6항 및 7항이 준수되는 도움닫기주로일 경우, 선수는 타원형 트랙의 경사부분에서부터 도움닫기를 시작할 수 있다.

제221조 **수평도약경기(Horizontal Jumps)**

도움닫기주로(Runway)

도움닫기의 마지막 40m가 규칙 제184조 1항 및 2항이 준수되는 도움닫기주로일 경우, 선수는 타원형 트랙의 경사부분에서부터 도움닫기를 시작할 수 있다.

제222조 포환던지기(Shot Put)

낙하구역(Landing Sector)

1. 낙하구역은 포환이 흔적을 남길 수 있고 튀어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당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2. 관중과 임원 및 선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지벽(stop barrier) 그리고/또는 방어그물망(protective netting)을 낙하구역의 양쪽 끝에 설치하고, 서클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시킨다. 방어그물망은 최소 4m 높이로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포환 또는 낙하구역표면에서 튕겨나오는 포환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3. 실내경기장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방지벽으로 둘러쳐진 구역은 34.92° 의 낙하구역 전부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제한상황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 (a) 먼 쪽 끝의 방지벽은 현재 남자 또는 여자 포환던지기 세계기록보다 최소 50cm이상 더 멀리 세워야 한다.
 - (b) 양쪽의 낙하구역 경계선은 34.92° 의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한다.
 - (c) 낙하구역 경계선은 34.92° 의 낙하구역 전체를 포함한 서클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방향으로 연장되거나 또는 서로 평행을 이루며 34.92° 의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평행을 이루게 한다. 낙하구역 경계선이 평행을 이룬다면 양 경계선간의 최소 거리는 9m가 되어야 한다.

양 측면에 있는 방지벽 / 방어그물망은 서클 방향으로 확장되어서 최소한 서클의 8m 거리에서는 시작되어야 하며, 이렇게 확장된 방어그물망의 높이는 최소한 5m이어야 한다.

포환의 구조(Construction of the Shot)

4. 낙하구역의 종류에 따라 (규칙 제222조 1항 참조) 포환은 견고한 금속제 또는 금속물 외곽제로 감싸거나, 또는 속에 적절한 재질로 채우고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감싸야 한다. 이들 두 종류의 포환 모두를 동일한 경기대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견고한 금속제 포환 또는 금속외곽제 포환(Solid Metal or Metal Cased Shot)

5. 이러한 포환은 실외 포환에 해당하는 규칙 제188조 4항과 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또는 고무외곽제 포환(Plastic or Rubber Cased Shot)

6. 이 종류의 포환은 일반체육관 바닥에 낙하해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속에 적절한 재질로 채우고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감싸야 한다. 모양은 구형(球形)이고 표면 끝마무리가 매끈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를 위한 정보 : 포환을 매끈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 평균높이는 1.6 μ m (1.6/1000mm) 미만이어야 한다. 즉, 미가공도 번호 N7 이하가 되어야 한다.

7. 포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포 환		여 자		남 자				
		여초/여중 /U18	여고/ U20/일반	남초	남중	U18	남고/ U20	일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무게		3.000kg	4.000kg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직경	최 소	85mm	95mm	85mm	95mm	100mm	105mm	110mm
	최 대	120mm	130mm	120mm	130mm	135mm	140mm	145mm

제223조

혼성경기(Combined Events Competitions)

남자 U18, U20 및 일반 (5종경기)

1. 5종경기는 5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60mH,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1,000m

남자 U18, U20 및 일반 (7종경기)

2. 7종경기는 7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연속 2일 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제1일 : 6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제2일 : 60mH, 장대높이뛰기, 1,000m

여자 U18, U20 및 일반(5종경기)

3. 5종경기는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일 동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60mH,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800m

조 및 그룹편성(Heats and Groups)

4. 각 조 또는 그룹에 3명 미만으로 조 편성할 수 없으며, 가능하면 4명 이상의 선수들로 편성한다.

제7장 경보경기(Race Walking Events)

제230조

경보경기(Race Walking)

레이스 거리 (Distances)

1. 표준 레이스 거리는 다음과 같다:

- 실내 : 3000m, 5000m
- 실외 : 5000m, 10km, 10,000m, 20km, 20,000m, 50km, 50,000m

경보경기의 정의(Definition of Race Walking)

2. 경보경기란 육안으로 보아서 두 발이 다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느 한 쪽 발이 항상 지면에 닿아 있으면서 발걸음을 전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내딛는 다리는 지면에 처음 닿는 순간으로부터 수직의 위치가 될 때까지 곧게 펴져 있어야 한다(즉 무릎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

심판 판정(Judging)

3. (a) 사전에 심판원주임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임명된 경보경기 심판원들이 심판원주임을 선임 한다.
- (b) 모든 심판원들은 개인적 재량으로 판정하며 그들의 판정은 사람의 육안으로 관찰된 근거로 판정해야 한다.
- (c)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모든 심판원은 국제경보심판원이어야 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 (b), (c), (e), (f), (g) 및 (j)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모든 심판원이 대륙경보경기 심판원 또는 국제경보심판원이어야 한다.

[주] 국내의 전국규모 대회에서의 경보경기심판원은 한국경보경기 심판원(KRWJ) 또는 본 연맹이 지명한 경보경기 심판원이어야 한다.

- (d) 로드경보경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판원 인원은 심판원주임을 포함하여 최소 6명에서 최대 9명이어야 한다.
- (e) 트랙경보경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판원주임을 포함하여 6명의 심판원이 있어야 한다.
- (f)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심판원주임을 제외하고) 동일 국가의 심판원이 1명을 초과해서(2명 이상)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 국내의 전국규모 경기대회에서는 동일 시·도연맹 소속의 심판원을 1명을 초과해서 배정하여서는 안 된다.

심판원주임(Chief Judge)

4. (a)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d)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 및 국내경기대회에서는 마지막 100m 구역에서 선수 보행방법이 규칙 제230조 2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선수가 이전까지 받은 붉은색 카드 수에 상관없이 실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심판원주임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 심판원주임에 의해 실격된 선수는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주임 보조원은 선수가 레이스를 끝낸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선수에게 붉은색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실격을 통보한다.
- (b) 심판원주임은 경기를 감독하는 임원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규칙 제230조 4항(a)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심판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 및 국내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는 2명 이상의 심판원주임보조원을 임명해야 한다. 심판원주임 보조원은 선수에게 실격통보를 할 때에만 심판원주임을 보조하며 경보경기 심판원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 (c)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 및 국내의 전국규모경기대회에서는 계시판운영원과 심판원주임을 보조하는 기록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노란색 표지판(Yellow Paddle)

5. 심판원은 선수가 규칙 제230조 2항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곳에서 양면에 위반사항이 표시된 노란색 표지판을 보여주어야 한다. 동일한 심판원이 한 선수에게 동일한 위반에 대해 노란색 표지판을 두 번 보여줄 수 없다. 경기가 끝난 후, 심판원은 선수에게 노란색 표지판을 보여준 사실을 심판원주임에게 통보한다.

붉은색 카드(Red Cards)

6. 경기 중 언제라도 심판원이 선수의 두 발이 지면에서 동시에 떨어지거나 무릎이 굽혀짐으로써 규칙 제230조 2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목격했을 때, 심판원은 심판원주임에게 붉은색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실격(Disqualification)

7. (a) 규칙 제230조 7항(c)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선수에 대해서 심판원 주임이 3명의 다른 심판으로부터 붉은색 카드를 3번 받으면,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되며,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 주임보조원은 해당 선수에게 붉은색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실격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격된 선수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b) 규칙 제1조 1항 (a), (b), (c) 또는 (e)에서 명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국적의 심판원 2명의 붉은색 카드는 선수를 실격시킬 권한이 없다.

|| [주-IAAF] 각 심판원의 소속 회원연맹은 최신 대륙정보심판 및 국제정보심판 명단에 있는 정보에 준한다.

- (c) 피트레인(Pit Lane)은 경기대회의 적용되는 규정 (피트레인)을 허용하는 레이스에서 사용될 것이며, 관련단체 또는 대회주최측에서 허용한 기타 레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수가 붉은색 카드 3장을 받고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주임이 권한을 위임한 심판원으로부터 피트레인으로

입장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선수는 대기시간 동안 피트레인에 들어가서 대기해야 한다.

피트레인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레이스의 총 거리에 따라 다르다 :

5,000m/5km까지 : 30초

10,000m/10km까지 : 1분

20,000m/20km까지 : 2분

30,000m/30km까지 : 3분

40,000m/40km까지 : 4분

50,000m/50km까지 : 5분

선수가 어떠한 시점에서든, (자신에게) 이전 3장의 붉은색 카드를 부과하지 않은 심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붉은색 카드를 받는다면 실격된다. 심판원주임은 피트레인 입장이 요구되었을 때 이를 불이행 하거나 정해진 대기시간 만큼 피트레인에서 대기하지 않는 선수를 실격시킨다.

- (d) 트랙경보경기의 경우, 실격된 선수는 즉시 트랙을 떠나야 하며, 로드경보경기일 경우, 실격된 선수는 실격된 직후 자신의 선수표를 댄 후 코스를 떠나야 한다. 실격된 선수가 로드코스 또는 트랙을 떠나지 않거나 규칙 제230조 7항(c)에 따라 피트레인에 입장하여 요구되는 대기시간을 지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IAAF 규칙 제125조 5항과 제145조 2항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시판을 경보경기 코스 및 피니시 근처에 설치하여 선수들이 심판원주임에게 보내진 각 선수의 붉은색 카드 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반칙 종류도 기호로 계시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 (f)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심판원이 전송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산장치를 통해 모든 붉은색 카드를 기록원과 계시판 운영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다른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경기

종료 직후, 심판원 주임이 규칙 제230조 4항(a), 7항(a), 또는 7항(c)에 준하여 실격을 당한 선수들의 신원을 선수표, (실격) 통보시간, 위반 내용과 함께 심판장에게 보고한다. 붉은색 카드를 받은 모든 선수들에게도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스타트(Start)

8.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의 발사로 시작한다. 400m를 초과하는 경기에서 사용하는 스타트 구령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규칙 제162조 2항(b)).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에서는 경기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 예고를 한다.
- 스타터의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들은 대회주최측에서 결정한 방식대로 스타트라인에 집결한다. 스타터는 어떤 선수도 발이나 신체 부위가 스타트라인이나 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스를 스타트한다.

안전(Safety)

9. 경보경기의 대회주최측은 선수와 임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대회주최측은 경기에 사용되는 도로의 모든 방향의 차량 통행을 차단시켜야 한다.

로드경기의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

(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in Road Events)

10. (a)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지점과 피니시지점에 물과 기타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b) 5km 이상, 10km 이하의 모든 경기에서는 기후 여건에 따라 물과 스펀지만을 제공하는 공급소를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IAAF] 특정한 운영상황이나 기상여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무 공급소도 설치할 수 있다.

- (c) 10km를 초과하는 모든 경기에서는 음식물 공급소가 매 주회마다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물과 스펀지만을 제공하는 공급소를 음식물 공급소들 간의 중간지점에, 또는 기후여건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d) 대회주최측 또는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을 선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에 놓거나, 또는 사전에 승인된 자가 선수의 손에 직접 건네줄 수 있게 한다.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은 선수나 선수의 대리인이 음식물을 제출한 시기부터 반드시 대회주최측이 지정한 임원들의 감독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임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음식물이 변형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e) 사전 승인된 인원은 코스에 진입하거나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인원은 테이블 뒤나 테이블 옆 1m 이내의 위치에서 음식물을 선수에게 건네줄 수 있으나, 테이블 앞에서 건네줄 수는 없다.
- (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어느 한 경우에 국가별로 최대 2명의 임원까지 음식물 테이블 뒤에 대기할 수 있다. 선수가 음식물 또는 물을 섭취하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들 임원이 해당 선수 앞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주IAAF]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4명 이상인 경기에 대해서는 기술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임원이 음식물테이블에 대기할 수도 있다.
- [주] 국내의 전국규모경기대회에서는 각 팀에서 2명이내의 임원이 음식물테이블 뒤에 대기하여 선수에게 음식물을 손으로 넘겨주어도 좋다. 이때 다른 선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g) 선수는 언제든지 물이나 음식물을 손으로 또는 신체에 부착한 형태로 운반할 수 있으나 이는 스타트 시부터 운반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공급소에서 선택하여 넘겨받은 것이어야 한다.
- (h) 선수가 의료적인 이유나 레이스 임원의 지시 하에 공식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하거나 음식물을 가져가면, 첫 번째 경우에 심판장은 노란색 카드를 보여서 경고를 주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붉은색 카드를 보이며 해당 선수를 실격시킨다. 이러한 실격을 당한 선수는 즉각 코스를 퇴장해야 한다.

[주-IAAF] 선수가 스타트에서부터 들고 달리거나 또는 공식 공급소에서 받거나 선택한 음식물 물 또는 스핀지는 다른 선수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한 선수가 다른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평한 조력으로 간주하여 위에 명시한 비와 동일한 방식의 경고나 실격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행이나 합리성에 따라 경기장 외 경기에 해당하는 규칙 230조, 240조, 250조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경보경기에서는 탐인원이 테이블 앞에 위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기 230조 10항(e)는 240조 8항(e)와는 의도적으로 다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로드코스(Road Courses)

11. (a) 1주회 코스거리는 1km이상에서 2km이하이다. 스타트와 피니시가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주회코스는 경기장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되어야 한다.
- (b) 로드코스는 규칙 제240조 3항에 따라 계측되어야 한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12. 선수는 경기임원의 허가하에 감독 하에 표기된 코스를 벗어날 수 있다. 단, 그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

13.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하여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된다.

제8장 로드레이스(Road Races)

제240조

로드레이스(Road Races)

거 리(Distances)

- || 1. 로드레이스의 표준거리는 5km,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42.195km), 100km 및 로드릴레이레이스이다.
- [주-IAAF] 로드릴레이레이스는 마라톤 거리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5km의 순환코스로 구간거리가 5km, 10km, 5km, 10km, 5km, 7.195km 구간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U20선수를 위한 로드 릴레이레이스의 권장 거리는 하프마라톤이며, 구간은 5km, 5km, 5km, 6.098km 구간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 스(Course)

2. 로드레이스는 포장된 도로(공인 장거리 경주로)에서 실시된다. 교통이나 유사한 상황으로 도로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에 적절히 표시하여 코스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풀밭 가장자리나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지면은 사용할 수 없다. 스타트와 피니시는 육상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주1-IAAF] 표준거리로 개최되는 로드레이스에서,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간의 거리가 이 두 지점간의 이론적인 직선을 따라 계측하여 전체 레이스 거리의 50%가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록 승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260조 21항(b)를 참조한다.
- [주2-IAAF] 레이스의 스타트, 피니시, 그리고 레이스의 일부분을 잔디 또는 기타 비포장 지면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3. 로드레이스의 코스는 경기 중 선수가 사용 가능한 도로 부분을 따라 최단거리코스(shortest possible route)를 계측한다.

IAAF 규칙 제1조 1항(a) 및 가능하면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계측선은 다른 표시선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코스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코스의 길이는 해당경기 종목의 공식거리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계측허용오차는 0.1%(마라톤의 경우 42m)를 초과하지 않으며, 코스의 길이는 대회 전에 IAAF 공인 코스계측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1-IAAF] 코스계측은 자전거회전계측방법(Calibrated Bicycle method)을 사용한다.

[주2-IAAF] 재계측때 코스가 짧게 계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스 설정시 “코스단축 방지인수(short course prevention factor)”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 계측 시 방지인수는 0.1%이며, 이는 코스에서 매 1km를 1001m로 계측함을 뜻한다.

[주3-IAAF] 경기대회 당일 원뿔이나 바리케이드 등 임시 설치물로 코스 일부분을 구분하려면 설치장소가 코스계측보다 늦게 결정해서는 안 되며 계측보고서에 설치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주4-IAAF] 표준거리로 이행하는 로드레이스에서,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 사이의 전체 고도감소는 1,000분의 1(즉 1km마다 1m(0.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신기록 승인에 대해서는 규칙 제260조 21항(c)를 참조한다.

[주5-IAAF] 코스계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기 시에는 코스에 명백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재계측 되어야 한다.

4. 거리는 km로 코스 위에 표시하여 모든 선수가 볼 수 있어야 한다.
5. 로드릴레이레이스에서 각 구간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코스를 가로질러 너비 5cm의 흰색라인을 그린다.

테이크오버존을 표시하기 위하여 스크래치 라인 전후 10m 위치에 유사한 선을 그린다. 모든 테이크오버 절차는 대회주최측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들어오는 주자와 나가는 주자 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구성되며, 이 존(zone)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타트(Start)

6. 레이스 스타트는 신호총, 캐논, 에어 혼 또는 유사한 장치를 발사하여 시작한다.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의 스타트 구령이 사용된다(규칙 제162조 2항(b)).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예고를 한다. 스타터의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들은 대회주최측에서 결정한 방식대로 스타트라인에 집결한다. 스타터는 어떠한 선수도 발(또는 기타 신체 부위)이 스타트라인이나 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스를 스타트한다.

트랙 경기의 중장거리 종목들과 유사하게, 경기장 밖에서 실시되는 중장거리 종목들과 관련해서도 스타터와 심판장들은 부정스타트 규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실제로 로드레이스 및 기타 경기장의 종목들의 스타트를 리콜하는 것은 어려우며, 참가자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명백하고 의도적인 규칙 위반이 있을 시에는 레이스 동안이든 종료 후이든 심판장은 해당 선수 개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요 대회에서 스타트 장치가 오작동하고 그리고 계시장치가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옵션이 취해져야 한다.

안전(Safety)

7. 로드레이스의 대회주최측은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대회주최측은 경기에 사용하는 도로의 모든 방향에 차량통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8. (a)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에는 물과 기타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b) 모든 경기에서 물은 약 5km 간격마다 적절히 공급되도록 한다. 10km 초과하는 경기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물도 각 지점에서 공급될 수 있다.

[주1-IAAF] 경기종목의 특성, 기후 상황, 선수 다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욱 짧은 간격으로 물 또는/그리고 음식물을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주2-IAAF] 어떤 운영상황 및/또는 기상여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이 분무(mist) 공급소도 설치할 수 있다.

- (c) 음식물이라 함은 음료수, 에너지 보충제식품, 물 이외의 기타 식품을 포함된다. 대회주최측은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음식물을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 (d)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대회주최측에서 제공하나, 대회주최측에서 선수가 자신의 음식물을 준비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가 어떤 공급소에서 자신의 음식물이 제공될 것인가를 선정하도록 한다.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은 선수 또는 대리인이 맡겨놓은 때부터 대회조직위원회가 지명한 임원의 감독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지명된 임원들은 음식물이 변형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 대회주최측은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역을 지면에 마킹이나 테이블, 장벽을 활용해 표시해야 한다. 이 구역이 계측된 코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은 선수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거나 공인된 인원이 선수의 손으로 건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원은 지정된 구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코스에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또는 공인된 인원이 선수가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는 동안 그의 옆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 (f) 규칙 제1조 1항 (a), (b), (c)와 (f)에서 명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국가별로 최대 2명까지의 임원이 자기의 국가에게 지정된 구역 뒤에 위치할 수 있다.

[주-IAAF]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4명 이상인 종목에서는 기술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임원이 음식물 테이블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 (g) 선수는 언제든지 물이나 음식물을 손으로 또는 신체에 부착한 형태로 운반할 수 있으나 이는 스타트 시부터 운반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공급소에서 선택하여 넘겨받은 것이어야 한다.
- (h) 선수가 의료적인 이유나 레이스 경기임원의 감독 하에 공식 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음식물 공급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물을 넘겨받거나 선택하거나 타 선수의 음식물이나 물을 가져가면, 첫 번째 경우에 심판장은 노란색 카드를 보여서 경고를 주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붉은색 카드를 보이며 해당 선수를 실격시킨다. 이러한 실격을 당한 선수는 즉각 코스를 퇴장해야 한다.

[주-IAAF] 선수가 스타트에서부터 들고 달리거나 또는 공식 공급소에서 받거나 선택한 음식물, 물 또는 스펀지는 다른 선수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나 한 선수가 다른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평한 조력으로 간주하여 위에 명시한 바와 동일한 방식의 경고나 실격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9. 로드레이스에서는 임원의 허가하에 감독 하에 선수가 표기된 코스를 벗어날 수 있다. 단, 이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
10.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하여서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선수는 실격이 된다.
11. 감찰원은 반드시 규칙적인 구간과 각 핵심지점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른 감찰원들은 레이스가 진행 되는 동안 코스를 따라서 이동해야 한다.

240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144조 2항과 3항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격 통보 전에) 먼저 경고를 주는 것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심판장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경고를 주어야 한다. 하나의 권장되는 옵션은 코스나 음식물 공급소에 배치된 감찰원이 심판장 보조원으로 임명되어 심판장과 감찰원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하여 경고와 실격 처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44조 2항 [주-IAAF]에서와 같이 경고 없이 실격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동무선계시장치가 없거나 추가적인 예비 계시(기록)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50조의 크로스컨트리레이스에서 명시된 통제구역(funnel system)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9장 크로스컨트리, 산악 및 트레일 레이스

(Cross-Country, Mountain and Trail Races)

크로스컨트리러닝, 산악러닝 및 트레일 러닝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렵다. 대회의 성공여부는 흔히 장소의 자연적인 특성과 코스설계자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음 규칙은 크로스컨트리러닝, 산악러닝 및 트레일 러닝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회원연맹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50조

크로스컨트리레이스(Cross-Country Races)

거리(Distances)

1. IAAF 세계크로스컨트리선수권대회에서의 레이스 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남자	10km	여자	10km
U20 남자	8km	U20 여자	6km

U18 경기대회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레이스 거리를 권장한다.

U18 남자	6km	U18 여자	4km
--------	-----	--------	-----

기타 국제 및 국내경기대회에서도 위와 비슷한 거리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스(Course)

2. (a) 코스는 가능하면 잔디로 덮여져 있고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는 야외벌판이나 삼림지대에 만들어져야 한다. 코스 설계자는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도전적이고 흥미 있는 레이스 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 (b) 코스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선수권대회와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그리고 가능한 한 기타 대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야 한다.
 - (a) 1순환의 길이가 1,500m에서 2,000m인 순환코스로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종목의 전체 거리에 요구되는 거리를 조절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의 전반부에서 달려야 할 짧은 1순환을 추가할 수도 있다. 거리가 긴 각 순환에서의 전체적인 오르막 경사도를 최소 10m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 (b) 가능하면 기존의 자연 장애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아주 높은 장애물이나 깊은 도랑, 위험한 오르막이나 내리막, 뾰족한 관목숲, 그리고 레이스의 기본 목적에 어긋나는 난관을 형성하는 모든 기타 장애물은 피하도록 한다. 가급적 인공장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장애물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참가선수가 많은 경기일 경우, 첫 1500m까지는 선수들이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협소한 계곡이나 기타 장애물 지역을 피하여야 한다.
 - (c) 도로 교차로나 자갈길 같은 쇠석포장도로(macadamised surfaces)의 유형은 피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스 중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곳이 한 두 군데라면 풀, 흙 또는 매트로 덮여야 한다.
 - (d) 스타트와 피니시 구역을 제외하고, 코스에는 긴 직선거리가 없어야 한다. 완만한 곡선부와 짧은 직선거리가 있는 “자연적인” 기복이 있는 코스가 가장 이상적이다.
4. (a) 코스 양쪽에 테이프를 쳐서 코스를 명백히 표시한다. 코스의 한

쪽을 전체적으로 1m 너비의 회랑구간을 코스외곽을 따라 빈틈 없이 울타리를 쳐서 조직위원회 임원과 보도원만 사용하도록 설치해 놓아야 한다(선수권대회에서는 필수사항임). 중요한 지역은, 특히 스타트구역(준비운동장 및 소집실 포함)과 피니시 구역 (공동취재구역, mixed zone 포함)은 빈틈없이 울타리를 쳐서 인가된 인원만이 출입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b) 일반 관객은 레이스 초반에만 안내요원의 인도에 정리가 잘 된 교차점에서 코스를 가로질러갈 수 있다.
- (c) 스타트 및 피니시 구역을 제외하고, 코스의 너비는 장애물 구역을 포함해서 5m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5. 크로스컨트리 릴레이가 진행될 시에는, 코스에 20m 간격으로 5cm 폭의 선을 표시하여 테이크오버 존을 그린다. 대회주최측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모든 테이크오버 절차는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며, 테이크오버 존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스타트(Start)

6.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의 발사로 시작한다. 400m를 초과하는 경기에서 사용하는 스타트 구령을 사용한다(규칙 제162조 2항(b)). 참가 선수가 많은 경기에서는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 예고를 한다. 팀 레이스의 경우, 스타트 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며, 각 팀의 선수들은 레이스 스타트 시 팀원들과 줄을 지어 선다. 팀 레이스가 아닌 경우, 선수는 대회주최측에서 정한 방식대로 줄을 선다. 스타터는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어떠한 선수도 발이나 (신체 어느 부분이) 스타트라인이나 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레이스를 스타트한다.

안전(Safety)

7. 크로스컨트리레이스의 대회주최측은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

(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8. 모든 레이스에서는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에 물과 적절한 기타 음식물을 공급한다. 모든 종목에서는 기후조건에 따라 필요할 시에는 음료수와 스펀지 공급소를 각 주회마다 제공하여야 한다.

[주-IAAF] 종목의 특성, 기후 조건 및 참가자 다수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물과 스펀지를 더욱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9. 심판장은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함으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된다.

피니시 구역은 여러 선수들이 나란히 달릴 수 있는 충분한 너비여야 하고, 피니시에서 선수들을 분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피니시 순서 확인을 위해 비디오기록 등의 예비장치와 함께 자동무선계시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폭이 0.70m-0.80m 정도되는 피니시 레인들(통제구역 funnels)을 피니시라인 이후 8-10m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다. 통제구역 안에 들어온 선수는 다른 선수를 추월할 수 없다. 선수들은 피니시 이후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를 받으며, 이 통제구역은 약 35-40m 정도의 길이여야 한다. 경기임원들은 각 통제구역 끝에서 선수의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여 적고 (해당되는 경우) 자동무선계시장치도 회수한다. 통제구역 끝에는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동식 로프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하나의 레인이 팍 찢을 때, 들어오는 마지막 선수 뒤에 가로질러서 다음 로프를 만들어 다음 피니시 통과 선수들이 새로운 피니시 레인에 들어서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심판원과 계시원을 피니시 라인의 양측에 배치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니시 순서와 관련된 장소 건에 대비하여 비디오기록장비를

운영하는 심판원이 임명되어 (가능하면 계시 시계가 보이는 장소에) 피니시 라인 몇 미터 지나서 위치하도록 하고 선수들이 피니시라인을 지나는 순서를 녹화하도록 한다.

제251조

산악레이스(Mountain Races)

산악레이스의 유형(Types of Mountain Races)

1. (a) 대부분의 산악달리기 레이스는 대중스타트(mass start)로 진행된다. 대중스타트를 할 때는 모든 선수가 함께 출발하거나, 성별이나 연령그룹을 구분하여 출발한다.
- (b) 산악러닝 릴레이의 구성, 코스 거리, 코스 유형은 자연환경적인 요건과 대회주최측의 계획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 (c) 각 구간별 개별 스타트 타임으로 진행되는 산악레이스는 시간계시(Time trial) 레이스로 간주한다. 기록은 개별 피니시 타임 순으로 한다.

코스(Course)

2. (a) 산악러닝은 주로 비포장 지형에서 실시한다. 코스에 급격한 경사가 있는 코스에는 쇠책포장을 깔 수 있다.
- (b) 모든 산악러닝 코스는 자연환경적인 조건이 기본적인 코스 구간을 결정짓는 특성이 있다. 기존에 있는 도로와 트레일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회주최측은 환경을 보호할 책임도 지닌다.
- (c)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들에 따라 코스의 거리는 1km에서 마라톤 거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
- (d) 코스는 주로 오르막, 오르막/내리막, 또는 이의 혼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 (e) 평균 오르막 경사는 최소 5%(또는 1km당 고도 50m 상승) 이상, 최대 20% (또는 1km당 고도 200m 상승) 이하여야 한다. 달릴 수 있는 코스라는 전제하에 가장 권장되는 경사는 1km당 100m의 경사이다.
- (f) 코스는 명확히 마킹되어야 하며, 코스 개요를 포함한 자세한 코스

도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

스타트 (Start)

3.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에서 사용되는 구령을 사용한다(규칙 제162조 2항 (b)).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 예고를 한다.

안전 (Safety)

4. 산악레이스의 대회주최측은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기후조건 및 가용한 기반 시설물 관련하여 고지대 등과 같은 특정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Drinking / 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5.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에는 물과 기타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음료수/스펀지 공급소를 코스 상 적절한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

레이스 진행 (Race Conduct)

6.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의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함으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된다.

제252조

트레일레이스(Trail Races)

코스(Course)

1. (a) 트레일레이스는 트인 지대(예 : 산, 사막, 숲 또는 평원)의 자연 환경 내의 주로 비포장인 다양한 지형(비포장 도로, 숲길 그리고 단일트랙 오솔길 포함)에서 실시한다.
(b) 자갈지면 또는 콘크리트 구간은 허용되지만,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레이스 총 거리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거리나 오르막 또는 내리막 고도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 및 한계는 없다.

- (c) 레이스 전, 대회주최측은 사전에 계획한 코스의 거리와 총 내리막 / 오르막 경사도를 공표하고, 코스 도면과 함께 코스에 대한 상세 정보 및 레이스 동안 마주칠 (기술적) 난관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 (d)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선수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코스 내에 표기하도록 한다.

기구(Equipment)

- 2. (a) 트레일러닝은 특정 기술 또는 특정 기구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 (b) 다만, 대회주최측은 레이스 중 예상되거나 대면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안전 기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선수가 위험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사고 시 신호를 보내고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c) 비상용 담요, 호루라기, 물 그리고 예비 식량은 선수가 소지해야할 최소의 요소들이다.
- (d) 대회주최측에서 특별히 허용할 경우 선수는 등산지팡이와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다.

스타트(Start)

- 3.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을 발사하여 시작된다.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에 대한 구령(규칙 제162조 2항(b))을 사용한다. 많은 인원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 예고를 한다.

안 전(Safety)

- 4. 대회주최측은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에 처해있는 선수들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한 의료, 안전 및 구출에 대한 구체적인 레이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원 공급소(Aid Stations)

5. 트레일레이스는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각 선수는 의복, 통신, 음식 그리고 음료와 관련하여 지원 공급소간 구간에서는 자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원공급소들은 대회주최측의 계획에 따라 선수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6.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대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하여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선수는 실격이 된다.
7. 조력은 오직 지원 공급소에서만 제공된다.
8. 각 트레일레이스의 대회주최측은 선수의 처벌과 실격을 초래하는 상황을 명시한 구체적인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제10장 세계기록과 한국기록 (World Records and Korean Records)

제260조

세계기록과 한국기록(World Records and Korean Records)

제출 및 공인(Submission and Ratification)

1. 세계기록은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국가 또는 영토의 IAAF 회원연맹이 대회전에 올바르게 준비, 공표 및 승인하고 IAAF 규칙에 따라 이행된 정식 경기대회에서 수립된 것이어야 한다.
개별종목에서는 3명이상의 선수와, 릴레이레이스 종목에서는 2팀 이상이 해당 경기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진정한 경기를 한 선수들이어야 한다. 규칙 제147조에 따라 진행된 필드종목과 규칙 제230조 및 제240조에 준하여 경기장 밖에서 진행된 경기대회를 제외하고는, 남녀 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주-IAAF] 여성 단일 로드레이스의 기록은 규칙 제261조에 명시된 조건들을 적용한다.
2. IAAF가 공인하는 세계기록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a) 세계 기록
 - (b) 세계 U20 기록
 - (c) 세계 실내 기록
 - (d) 세계 실내 U20 기록

[주1-IAAF] 본 규칙의 적용을 위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세계기록은 본 규칙 하의 모든 범주에 예속된다.

[주2-IAAF] 상기 규칙 260조 2항 (a)와 (b)의 세계기록은 규칙 260조 12항과 13항에 준하는 (경기대회) 시설에서 수립된 모든 공인된 최고 기록을 인정한다.
3. 세계기록을 수립한 선수(및 릴레이 경기 선수들)는 :
 - (a) IAAF 규칙에 준하여 경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하며,

- (b) IAAF 소속 회원연맹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 (c) 규칙 제260조 2항(b) 또는 (d)에 준하여 제출된 기록의 경우, 선수의 생년월일이 IAAF에 의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여권, 출생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공식 문서로 생년월일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의 사본이 기존 신청서(세계기록 공인 신청서)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선수 또는 선수의 회원연맹이 지체 없이 이를 구비하여 IAAF에 제출해야 한다.
- (d) 릴레이 경기의 경우, 릴레이 팀원들은 반드시 규칙 제5조 1항에 준하여 단일한 회원연맹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어야 한다.
- (e) 경기가 끝난 후 현행 IAAF의 기술규칙과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도핑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채취된 선수의 시료는 분석을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인가 시험실로 보내져야 하며, 그 결과는 IAAF에 제출되어 기록공인을 위해 필요한 기타 자료에 취합되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러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IAAF는 이 기록을 공인하지 않는다.

[주1-IAAF] 릴레이레이스의 세계기록인 경우에는 팀의 선수 전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2-IAAF] 선수가 세계기록 수립 이전의 어느 시기에 그 당시 금지된 약물이나 금지된 기술을 사용 또는 복용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AIU(육상청렴부, Athletics Integrity Unit)의 권고에 따라 IAAF에 의한 세계기록 공인이 취소된다. ||

4. 경기기록이 기존 세계기록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경우, 기록 수립이 발생한 국가의 IAAF 회원연맹은 IAAF의 공인에 필요한 모든 해당 기록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수집하여야 한다. IAAF가 공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록도 세계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연맹은 IAAF에게 기록을 제출할 의사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 국내에서 세계신기록 또는 아시아신기록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연맹은 본 연맹에 기록을 빨리 통보하고 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맹은 IAAF 기술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제출된 기록은 IAAF에 의해 공인된 그 종목의 현 세계기록보다 더 좋거나 동일하여야 한다. 만약 세계신기록이 동일하면 기존의 세계기록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6. IAAF의 공식신청서는 작성 완료하여 30일내로 IAAF 사무국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외국선수(또는 외국팀)의 기록을 공인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1부를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선수나 팀이 소속된 회원연맹에게 발송 하여야 한다.

[주-IAAF] 해당 양식은 IAAF 사무국에 요청하여 받거나, IAAF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7. 세계신기록 수립이 발생한 국가의 회원연맹은 공식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
 - (a) 대회프로그램 인쇄물 (또는 전자판으로)
 - (b) 해당 종목의 모든 기록(본 규칙에 준하여 요구되는 모든 정보 포함)
 - (c) 완전자동계시로 운영되었을 때 트랙경기 세계신기록이 수립된 경우, 사진판독용사진(photo finish) 및 “0”점 조절사진(zero control test images)
 - (d) 본 규칙에 준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모든 정보

|| 8. 세계신기록은 자격라운드, 높이뛰기 및 장대높이뛰기의 1회 결정경기, 규칙 제125조 7항과 제146조 4항(b)에 따라 무효로 판결된 경기나 그 일부, 또는 선수의 혼성경기 전 종목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혼성경기의 개별종목에서 수립된 신기록도 공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 9. IAAF 회장과 CEO는 세계기록을 공인할 권한이 있다. 만약, 이들이 세계기록 공인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경우에는 IAAF 집행이사회에게 공인 결정 여부를 회부한다.

10. 세계기록이 공인되었을 경우, IAAF는 :

(a) 선수의 회원연맹과 기록공인을 신청한 회원연맹 및 해당

대륙연맹에 그 사실을 통보 한다.

- (b) 세계기록보유자에게 수여하기 위한 공식 세계기록 공인패 (World Record Plaques)를 제공한다.
- (c) 새로운 세계기록이 공인될 때마다 매년 공식 세계기록 리스트를 새로 갱신한다. 이 목록에는 규칙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및 제264조에 명시된 각 공인종목에서 리스트의 최신화된 날짜까지 개인 선수 또는 팀이 수립한 가장 좋은 IAAF 공인 기록이 기재된다.
- (d) (IAAF는) 매년 1월1일까지 세계기록목록을 (회원연맹에 공고문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11. 만약 기록이 공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IAAF에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세부조건(Specific Conditions)

12. 로드레이스 경기를 제외한 공통사항:

- (a) 기록은 규칙 제140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149조 2항을 준수하는 IAAF 공인육상경기시설이나 기타 경기 장소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b) 2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을 공인받으려면 그 기록이 수립된 트랙의 길이가 402.3m(440야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레이스는 트랙 원주(円周)의 어느 부분(곡선주로)에서 스타트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제한사항은 표준 400m 트랙 밖에 물웅덩이가 설치된 장애물달리기 종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타원형 트랙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은 주행라인의 반지름이 50m를 초과하지 않는 레인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단, 곡선주로가 2개의 다른 반지름을 가진 2개의 원호(arc)중 더 긴 원호가 180°회전에서 6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d) 실외 트랙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은 규칙 제160조에 준하는 트랙에서 수립된 기록에 한한다.

13. 세계실내기록 :

- (a) 기록은 규칙 제211조부터 제213조에 준하는 IAAF 공인 육상경기시설 또는 경기 장소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b) 2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기록을 공인받으려면, 타원형 트랙의 길이가 201.2m(220야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c) 달린 거리가 그 종목의 승인된 허용 오차 내에 있다는 전제하에 표준거리가 200m보다 적은 타원형 트랙에서 수립된 기록은 인정된다.
- (d) 타원형 트랙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은 경사가 있는 곡선주로에서 설계도상 러닝라인의 반지름이 27m를 초과하지 않는 레인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2회 이상의 주회로 진행되는 종목의 경우는 2개의 직선주로가 최소한 30m이어야 한다.
- (e) 모든 트랙의 직선주로는 규칙 제212조에 준해야 한다.

14. 러닝(Running) 및 경보경기의 세계기록 :

- (a) 기록은 공식계시원이나 본 규칙에 준하는 완전자동계시장치 및 사진판독장치 (규칙 제165조 19항에 따라 영점조절검사가 이행된), 또는 자동무선계시장치 (제165조 24항 참조)로 계시하여야 한다.
- (b) 800m까지의 레이스(4×200m 및 4×400m 포함)의 경우, 본 규칙에 준하는 완전자동계시장치 및 사진판독장치로 계시된 기록만이 공인을 받을 수 있다.
- (c) 실외에서 수립된 200m까지의 기록의 경우, 규칙 제163조 8항부터 13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측정한 풍속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달리는 방향으로 측정된 풍속평균이 초속 2m를 초과할 경우 그 세계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 (d) 규칙 제163조 3항을 위반한 선수의 기록이나 규칙 제200조 8항 (c)에서 허용하는 부정스타트를 행한 개별종목에서 수립된 선수의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 (e) 규칙 제261조와 제263조에 명시된 400m까지의(4x200m, 4x400m 릴레이 레이스 포함) 모든 기록은 반응시간을 정확히 계시하기

위해 규칙 제161조 2항에 따라 IAAF에서 승인한 스타트정보장치가 연결된 스타팅블록이 사용되어야 하고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15. 다중거리레이스(multiple distances)의 경우, 동일한 레이스에서 다양한 거리의 세계기록이 수립될 경우 :

- (a) 레이스는 오직 하나의 정해진 거리의 레이스로 명시되어야 한다.
- (b) 일정 시간 내에 주행한 거리를 겨루는 레이스는 일정거리의 레이스와 병합할 수도 있다(예 : 1시간 레이스와 20,000m 레이스 - 규칙 제164조 3항 참조).
- (c) 동일선수가 동일 레이스에서 수립한 복수의 기록들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 (d) 복수의 선수들이 동일 레이스에서 수립한 기록들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 (e) 선수가 레이스의 전거리를 완주하지 않고 그보다 짧은 거리에서 기록을 수립하면 그 수립된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16. 릴레이 경기의 세계기록 :

릴레이 팀의 첫 번째 (1구간) 주자가 수립한 기록은 세계기록으로 공인을 신청할 수 없다.

17. 필드경기의 세계기록 :

- (a) 필드경기 기록은 3명의 필드경기 심판원이 공인된 강철제 줄자 또는 고도계로 측정하거나, 규칙 제148조에 준하여 정확성이 확인된 과학적인 측정장비로 측정되어야 한다.
- (b) 실외에서 실시된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기록은 규칙 제184조 10, 11 및 12항에 제시된 방법으로 측정된 풍속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도약하는 방향으로 측정된 풍속 평균이 초속 2m를 초과할 경우, 그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 (c) 한 경기대회에서 1개 이상의 세계기록이 공인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각각의 수립된 기록이 그 시점이나 직전에 수립된 가장

좋은 기록과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경우에 한한다.

- (d) 투척경기에서 사용되는 용구는 규칙 제123조에 따라 경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경기 중에 세계기록 동(Tie)기록 또는 갱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즉각 사용된 용구에 이를 표시하고 규칙에 부합되는지와 용구의 특징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사하고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용구는 규칙 제123조에 준하여 경기 종료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18. 혼성경기의 세계기록 :

혼성경기 각각의 개별종목들은 규칙 제200조 8항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 풍속계측이 요구되는 종목에서는 (각 개별종목별로 계측한 풍속의 총합계를 해당 종목 수로 나누어 산출한) 풍속평균이 초속 +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9. 정보경기의 세계기록 :

IAAF 등급 또는 대륙 등급의 국제정보경기심판원 중 최소 3명의 심판원이 경기심판을 수행하고 세계 기록 공인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0. 로드정보경기의 세계기록 :

- (a) 코스는 반드시 IAAF/AIMS “A”급 또는 “B”급 공인계측원이 계측하여야 한다. 공인계측원은 IAAF에서 요청할 시에 관련된 계측보고서와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b) 주회코스는 1주회 거리가 1km이상에서 2km이하가 되어야하며 가능하면 스타트와 피니시는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c) 코스를 최초에 계측한 코스계측원 또는 (관련 단체와의 상의를 통해) 계측원이 임명한 공식 계측된 코스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소지하고 적절한 자격이 있는 기타 임원은 선수들이 경기 동안 실제로 사용한 코스가 공식계측원에 의해서 계측되고 문서화된 코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d) 코스는 최초로 코스를 측정한 측측원이 아닌 다른 “A”급 측측원에 의해 가능한 한 레이스 바로 전, 레이스 당일 또는 레이스 종료 후 즉시 확인되어야 한다(즉, 재측측 하여야 한다). [주:IAAF] 만약 최소 2명의 “A”급 측측원이나 “A”급 측측원 1명과 “B”급 측측원 1명이 함께 최초 코스측측을 하였다면, 본 규칙 제260조 20항(d)에서 요구하는 측측원에 의한 확인(재측측)은 필요하지 않다.
- (e) 레이스 중 구간거리에서 세운 로드경보경기 세계기록은 규칙 제260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간거리는 코스 측측 시에 측측의 일부분으로써 측측, 기록 및 추후 마킹되었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0항(d)에 준하여 확인되었어야 한다.

21. 로드러닝 경기의 세계기록 :

- (a) 코스는 반드시 IAAF/AIMS “A”급 또는 “B”급 공인측측원이 측측하여야 한다. 공인측측원은 IAAF에서 요청할 시에 관련된 측측보고서와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b) 코스의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간의 이론적 직선거리를 따라 측정된 거리는 전체 레이스 거리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c)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 사이 고도의 전체 감소는 평균 1000분의 1(0.1‰, 즉 1km 당 1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d) 코스를 최초에 측정한 코스측측원 또는 (관련 단체와의 상의를 통해) 측측원이 임명한 공식 측측된 코스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소지하고 적절한 자격이 있는 기타 임원은 레이스 전에 코스가 공식측측원에 의해 측측되고 상세하게 기록된 문서 내용에 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해당 임원은 경기 동안 선두 차량에 탑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선수들이 실제로 동일한 코스를 달리고 있는지를 인증해야 한다.
- (e) 코스는 최초로 코스를 측정한 측측원이 아닌 다른 “A”급

계측원에 의해 가능한 한 레이스 바로 전, 레이스 당일 또는 레이스 종료 후 즉시 확인되어야 한다(즉, 재계측 하여야 한다).

[주-IAAF] 만약 최소 2명의 “A”급 계측원이나 “A”급 계측원 1명과 “B”급 계측원 1명이 함께 최초 코스계측을 하였다면, 본 규칙 제260조 21항(e)에서 요구하는 계측원에 의한 확인(재계측)은 필요하지 않다.

(f) 레이스 중 구간거리에서 세운 로드러닝경기의 세계기록은 규칙 제260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간거리는 코스 계측 시에 계측의 일부분으로써 계측, 기록 및 추후 마킹되었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1항(e)에 준하여 확인되었어야 한다.

(g) 로드릴레이는 레이스가 5km, 10km, 5km, 10km, 5km, 7.195km 구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각 구간의 거리는 $\pm 1\%$ 의 허용오차로 코스 계측 시에 계측의 일부분으로써 계측, 기록 및 추후 마킹되었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1항(e)에 준하여 확인되었어야 한다.

[주-IAAF] 국가기구(예 : 국가연맹)와 대륙육상연맹은 해당 신기록(국가기록, 대륙기록)을 공인할 때 상기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기록(Korean Records)

1. KAAF는 한국기록(각 부별기록 포함)을 공인한다. 신기록은 그 종목에 공인된 한국기록보다 더 좋거나 또는 동일하여야 한다. 신청한 기록을 공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전국연맹 및 사·도연맹에 문서로 통고하여야 한다. 신기록이 수립되었을 때는 공인된 날로부터 기록을 인정하여 발표하고 한국기록으로 적용한다.

단, 공인된 신기록은 매년 12월 말일에 신기록일람표를 발표하고 그 사본을 각 전국연맹 및 사·도연맹에 발송한다. KAAF는 한국기록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IAAF 사무국에 발송한다.

[주]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었거나 기록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해에 수립된 기록 중 가장 좋은 기록을 한국기록으로 공인한다.

2. 한국기록표는 본 연맹 사무국에 보관한다. IAAF에 제출한 세계기록 공인신청서 사본의 보관도 동일하다. 각 중앙연맹 및 시·도연맹은 소속연맹의 공인기록표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표의 사본을 매년 11월말일까지 본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1] 한국기록으로 공인되는 종목은 규칙 제265조에 규정한다.

[주2] 신기록공인에 대해서는 각 전국연맹 및 시·도연맹은 본 연맹의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한국신기록이 수립되었을 때는 경기대회 주최연맹은 본 연맹에 신기록을 신속히 통보하고, 그 신기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본 연맹에서 공인하는 기록은 한국기록, 한국대학교기록, 한국 U20 기록, 한국고등학교기록, 한국 U18 기록, 한국중학교기록 및 한국초등학교기록 등이다.
4. 경기대회의 개최를 통할하는(주최, 공동주최 또는 주관) 경기단체가 공식신기록 신청서에 그 경기대회의 심판장, 관계 심판원주임 및 기록정보처리원등이 확인한 다음의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신속히 본 연맹에 발송한다.
 - (a) 경기대회명, 개최장소, 개최기간 및 신기록수립일시, 경기장의 조건, 거리 또는 높이의 정확성, 용구의 무게, 규격과 재료, 수립된 신기록 및 본 연맹 기술규칙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의 사실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b) 경기장의 기상상황(일기, 기온, 기압, 습도, 풍향풍속)을 1시간마다 계속하여 기록하고, 특히 뒷바람이 신기록의 공인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에 대하여는 각 경기시기 실시 시 풍향풍속을 반드시 기입한다. (만약 풍향풍속기록이 없을 시에는 그 신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
 - (c) 신기록이 수립된 종목에 참가한 선수의 명단이 인쇄된 대회프로그램 (또는 전자판으로) 1부, 해당종목의 전체 기록, 완전자동계시로 운영되었을 때 트랙경기 기록이 세워진 경우는 사진판독이미지 및 “0”점 조절사진, 필드경기는 전체기록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 (d) 신기록은 예선(트랙 및 필드경기), 준결승, 1위 결정경기

또는 혼성경기에서 수립된 신기록도 공인되므로, 예선기록표, 준결승기록표, 1위 결정경기기록표, 필드경기기록표, 혼성경기기록표 등 신기록공인에 필요한 모든 기록표를 각 1부씩 경기대회 종료 후 3주일 이내에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의 기록표에 보고된 기록이외의 기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기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c) 선수등록규정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선수의 기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되지 않는다.
- 5.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그 경기를 끝낸 후 KAAF 도핑검사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릴레이레이스 기록인 경우에는 팀의 선수 전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가 도핑방지규칙 위반으로 판명되거나 도핑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공인하지 않는다.
- 6. 외국의 경기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이 수립되었을 시는 그 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증명서(또는 전자판으로) 및 도핑검사 확인서 등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기록 공인 신청서 제출).
- 7. 한국 기록공인의 경기장 및 경기대회의 조건은 본 규칙 제260조의 조항들을 적용한다.
- 8. 본 연맹의 회장, 전무이사 및 경기이사는 한국기록을 공인하고 승인할 권리가 있다.
- 9. 전국연맹체가 주최 또는 공동주최하는 경기대회의 신기록을 공인하기 위하여는 국가기술임원(NIO)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10. 한국기록의 공인 시기는 본 연맹이 주최 또는 공동주최하는 경기대회의 기록은 신기록 수립 후 본 연맹의 전무이사와 경기이사가 모든 기록 공인 조건을 확인한 후 한국기록으로 공인하고 발표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에 발표한다. 본 연맹의 전국연맹 및 시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대회에서 수립된 신기록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확인한 후에 공인 발표한다.
- 11. 기타 사항은 본조의 세계기록공인 조건을 적용한다.
- 12. 본 연맹은 한국기록 수립 선수에게 한국기록 공인증 (Korean Record

Certificate)을 수여한다.

13. 한국기록 및 각 부별 한국기록이 공인되는 종목은 제2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신기록 및 타이기록공인신청서

대한육상연맹 회장 귀하

신청단체명 :

성명 : 인

본인은 육상경기규칙 제 260조에 의하여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신기록 및 타이기록 공인을 신청합니다.

경기대회명					
대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회장소					
주최자					
기록 수립 일시					
종목					
현재기록	(년 월 일)				
수립기록					
선수명(소속)	()				
기록공인 참고 자료제출상황 · 각 1부씩 · 경기종료후 3주일 이내 · 제출자료에 o표	1. 선수명단이 인쇄된 대회 프로그램		7. 경기용구확인서		
	2. 당해 종목의 모든 기록표		8. 기상상황 (일기, 기온, 기압, 습도)		
	3. 사진판독용 사진		9. 로드레이스의 코스 공인 확인서		
	4. 풍속자료		10. 선수등록확인서		
	5. 당해 종목의 심판원 명단		11. 종별기록은 출생증명서		
	6. 경기장 상황 (규격, 거리, 재료 등)		12. 도핑검사 확인서 (릴레이레이스는 선수전원)		
기록확인자	심판장 인		심판원주임 인 기록정보처리원 인		
신기록공인여부	공인	보류		공인불가 (이유)	

기록공인 확인

경기위원장 인 전무이사 인

대한육상연맹 회장

인

제261조

세계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계시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 자동무선계시기록(T.T.)

남 자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200mR, 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20,000m, 30,000m, 50,000m.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5km*, 10km, 하프마라톤, 마라톤, ||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50,000m*

||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5km*, 10km, 하프마라톤,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주1-IAAF] 경보경기를 제외하고, IAAF는 여자 로드레이스에 2가지의
세계기록을 인정한다 : 남녀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세계기록(“혼합”), 여자단일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세계기록(“여자단일”)

[주2-IAAF] 여자경기와 남자경기의 스타트타임을 각각 다르게 정해서
여자단일로드레이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동일한
코스의 일부가 2 주회 이상 연결되는 코스의 경우) 조력,
페이스 도움이나 방해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타트타임의 시간차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 * (로드레이스 5km의) 최초 기록 공인은 2018년 1월 1일 예정임.
기록은 남자의 경우 13:10 이내, 여자의 경우 14:45 이내이어야
하며, 2018년 내에 이 기록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8년도의
최고기록을 2019년 1월 1일부로 (세계기록으로) 공인하게 된다.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 일 반 (Universal)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4x400 혼합릴레이

제262조

세계U20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U20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계시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 자동무선계시기록(T.T.)

U20 남자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or T.T. :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U20 여자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 7,300점 초과 기록만 공인.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or T.T. :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제263조

세계실내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Indoor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계시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남 자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50m, 60m, 200m, 400m, 800m,
50mH, 60mH,
4×2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4×800mR.
경보경기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 자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50m, 60m, 200m, 400m, 800m,
50mH, 60mH,
4×200mR, 4×400mR,
5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4×800mR.
경보경기 : 3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제264조

세계실내U20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U20 Indoor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계시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남 자

러닝, 혼성 경기

F.A.T. only : 60m, 200m, 400m, 800m,
60mH, 7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 자

러닝, 혼성 경기

F.A.T. only : 60m, 200m, 400m, 800m,
60mH, 5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3000m,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제265조

한국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Korean Records are Recognised)

- 완전자동계시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 자동무선계시기록(T.T.)

1. 한국기록공인종목

남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10종경기.
-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30,000m, 50,000m.
-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50,000m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주1] 경보경기를 제외하고, 본 연맹에서는 여자 로드 레이스에
2가지의 한국기록을 인정한다. : 남녀 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한국기록(“혼합”), 여자단일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한국기록(“여자 단일”)

[주2] 여자경기와 남자경기의 스타트타임을 각각 다르게
정해서 여자단일로드레이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동일한 코스의 일부가 2 주회 이상 연결되는 코스의
경우) 조력, 페이스 도움이나 방해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타트타임의 시간차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2. 한국대학기록공인종목

남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10종경기.

-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30,000m, 50,000m.
-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50,000m
-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주1] 경보경기를 제외하고, 본 연맹에서는 여자 로드 레이스에 2가지의 한국대학기록을 인정한다. : 남녀 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한국대학기록(“혼합”), 여자 단일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한국대학기록(“여자단일”)

[주2] 여자경기와 남자경기의 스타트타임을 각각 다르게 정해서 여자단일로드레이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동일한 코스의 일부가 2 주회 이상 연결되는 코스의 경우) 조력, 페이스 도움이나 방해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타트타임의 시간차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3. 한국U20기록공인종목

남 자(24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10km.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24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10km.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4. 한국고등학교기록공인종목

남 자(23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10km.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23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10km.
경보경기(로드) : 1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5. 한국U18기록공인종목

남 자(21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3000m, 2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21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F.A.T. or H.T. : 1500m, 3000m, 2000mSC.
경보경기(트랙)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6. 한국중학교기록공인종목**남 자(1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100mR, 4×400mR,
5종경기.F.A.T. or H.T. : 1500m, 3000m.
경보경기(트랙)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1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100mR, 4×400mR,
5종경기.F.A.T. or H.T. : 1500m, 3000m.
경보경기(트랙)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7. 한국초등학교기록공인종목

남 자(7종목)

러닝경기

F.A.T. only : 100m, 200m, 800m, 4×100mR.

도약경기 : 높이뛰기, 멀리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 자(7종목)

러닝경기

F.A.T. only : 100m, 200m, 800m, 4×100mR.

도약경기 : 높이뛰기, 멀리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8. 한국실내기록공인종목

(Events for which Korean Indoor Records are Recognised)

남 자(21종목)

러닝, 혼성, 경보경기

F.A.T. only : 50m, 60m, 200m, 400m, 800m, 50mH, 60mH, 4×2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3000m, 5000m, 4×800mR.
경보경기 :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 자(21종목)

러닝, 혼성, 경보경기

F.A.T. only : 50m, 60m, 200m, 400m, 800m, 50mH, 60mH, 4×200mR,
4×400mR, 5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3000m, 5000m, 4×800mR.
경보경기 : 3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9. 한국U20실내기록공인종목

(Events for which Korean U20 Indoor Records are Recognised)

남 자(15종목)

러닝, 혼성 경기

F.A.T. only : 60m, 200m, 400m, 800m,
60mH, 7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3000m,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여 자(15종목)

러닝, 혼성 경기

F.A.T. only : 60m, 200m, 400m, 800m,
60mH, 5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3000m, 5000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제266조

기타 기록 (Other Records)

1. 경기대회를 주관하는 관련 단체나 대회주최측은 기타 다른 기록 (종합경기대회기록, 선수권대회 기록 등)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경기대회에 적용되는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풍속측정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기록은 해당되는 경기대회의 모든 회차를 통틀어 가장 최고의 기록을 인정해야 한다.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

2018 - 2019

1. 공인 육상경기장 시설과 로드레이스 코스 및 정보경기코스 규칙

2002년 1월 25일 수정
2005년 1월 19일 수정
2010년 3월 19일 수정
2013년 1월 31일 수정
2014년 7월 25일 개수정
2016년 1월 12일 개수정
2018년 1월 24일 개수정

제1조 공인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목적은, 육상경기의 연습과 경기 대회의 운영이 지장 없이 진행되고, 따라서 그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기록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 경기장의 건설·정비·유지를 지도하고, 대한육상연맹규약 제2장 3조(목적)에 있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다.

제2조 공인 육상경기장, 공인 로드레이스 코스, 공인정보경기코스(이하, 공인 경기장·로드레이스 코스·정보경기 코스로 칭한다)는, 대한육상연맹 경기규칙에 따라 공식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밀도가 있는 적절한 시설이 되어 있음을 본 연맹이 인정한 것이다.

1) 종합경기장 종별 규정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1주의거리		400m	400m	400m
거리의 공차		1/10,000 (+4cm) 이내	1/10,000 (+4cm) 이내	+4cm 이내
주 로	직선주로	* 너비 9.76m 8레인이상 (9레인권장) * 길이 140m 이상 * 직선주로 (100m)2개소 시설(140m이상) 〈신설경기장 설계 시 적용〉	좌 동	좌 동
	곡선주로	너비 9.76m (8레인)	좌 동	좌 동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3,000m 장애물 레이스 설비	필 요	좌 동	좌 동
로드레이스 코스 경보경기 코스	필요시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는 필수)	필요시	없어도 무방
전광판	필 요	좌 동	필요시 설치
사진판독실 (경기장 피니시지점 스탠드 상단) 4m x 6m	- 전면 통유리로 설치 - 에어컨 설치 - 영상케이블 설치 (전광판실과 연동) - 광랜 설치(경기장 피니시 지점 잔디 쪽과 연동)		필요시 설치
준비운동장 (Warm-up Area)	필요, 400m트랙 직선 6레인, 곡선 4레인 이상 (필드연습장의 위치는 주경기장과 동일한 위치에 시설하도록 함)	직선 140m 6레인 이상 (준비운동장 시설물 참조)	좌 동
	- 준비운동장에서 주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동선에 합성고무 시설 (폭 3m) - 대형시계 설치(육상경기 대회시 참가자 소집시간 알람 시계로 활용)		
각종 투척장과 각종 도약장	각 2개소	각 2개소	각 1개소 이상
	단, 원반, 해머 서클은 겸용도 可		
원반, 해머던지기 그물장 (포설확인 시 설치)	1개소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로 고정시켜야 하며, 분리하여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제작) 앞 문구 4개 10m, 뒷 그물틀 7개 7m	좌 동	좌 동
멀리뛰기장 발구름판 (포설확인 시 설치)	16개	16개	8개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멀리/세단뛰기 모래사장 및 장애물경기 물웅덩이 덮게 설치 (포설확인 시 설치)	-멀리/세단뛰기 모래사장에 덮게 시설(방수포:고정 식) - 장애물경기 물웅덩이에 덮게시설(스테인 리스 재질에 표면 합성고무 포설)	좌 동	좌 동
본부석 및 관람석	필 요	좌 동	좌 동
목욕장 및 샤워실	남.녀 각 2개소 이상	좌 동	좌 동
화장실	남.녀 각 6개소 이상	좌 동	좌 동
탈의실	200명 이상 수용 할 수 있을 것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	이용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
용기구 창고	300m ² 이상의 용기구 창고를 경기장내에 둔다. 출입문은 높이3m, 너비5m의 자동셔터문을 설치한다.	좌 동	150m ² 이상의 용기구 창고를 경기장 내에 둔다.

(주)주경기장과 준비운동장(Warm-up Area)과의 거리는
직선100m 이내를 권장한다.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웨이트 트레이닝장	제1종, 제2종에는 300m ² 이상의 트레이닝장을 설치할 것 (트레이닝장 품목 내역 참조)		
트랙.필드 포장재	제1종, 제2종, 제3종 모두 합성 포장재가 필요. (주경기장과 준비운동장의 바닥재 재질과 제품은 같아야 한다) 주경기장의 잔디는 천연잔디로 하며, 준비운동장 (1종경기장)의 잔디는 천연잔디로 한다.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전기 기기 및 중계케이블 배관	컴퓨터 단말기 기타 전원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배선을 매설할 것(경기장 결승지점 안쪽(잔디)과 트랙 바깥쪽) 전기 배선은 각 코너 4곳과 원호 2곳, 멀리/세단뛰기 경기장 1곳(중앙)으로 설치한다(중계케이블 필요).		
경기장의 배수시설	강우 직후에도 사용 할 수 있을 것	좌 동	좌 동
경기장의 살수 시설 설치	살수 전 15개소 이상 상설할 것	살수 전 8개소 이상 상설할 것	좌 동
경기장과 경기장외와의 경계	경기장의 황폐와 파손을 막고 경기 대회때의 혼란을 방지할 정도의 견고한 계가 필요	좌 동	좌 동
관람석과 트랙과의 경계	관람자의 경기장 내에 출입을 못하도록 설비할 것	좌 동	좌 동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경기대회 표준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전국규모대회	시.도대회 (도민체육 대회 등)

KAAF 규칙의 레인 너비는 1,22m(± 0.01 m)로 한다.

단, 2004.1.1. 이전에 설립한 경기장은 1,25m(± 0.01 m)도 공인한다.

2) 종목별경기장 규정

구 분	트랙경기장	도약경기장	투척경기장
경기장 규격	400m (거리의 공차 1/10000+4cm)너 비(8레인)길이	각 2개소	각 1개소 이상 단, 원반, 해머 서클은 겸용

구 분	트랙경기장	도약경기장	투척경기장
	140m이상		
화장실 및 탈의실	남.여 각3개소	좌 동	좌 동
합성포장재	전천후 포장재	좌 동	천연잔디 및 마사토경기장
전기 기기 배관	3개소 이상 설치	2개소이상 설치	좌 동
경기장의 배수시설	필 요	필 요	필 요
경기장의 살수시설	살수 전 8개소	2개소	좌 동
경기장에서 개최 할 수 있는 경기	종목별 단일대회(기록회)	좌 동	좌 동

주)종목별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할 시 3개월 이전에 사전점검을 받아야 함.

3) 로드레이스 코스 공인 등급규정

- 1. 목 적** : 경기장 공인 시 1,2,3종으로 공인하고 있는 만큼 로드 레이스 코스도 등급을 구분하여 대회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고자 함.
- 2. 공인절차** : 대회 주최 측에서는 대회장소로 사용할 도로의 지도와 운영계획서를 시·도연맹에 제출하여 시·도연맹에서 대회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합당하다고 사료될 때 대한육상 연맹에 코스 공인을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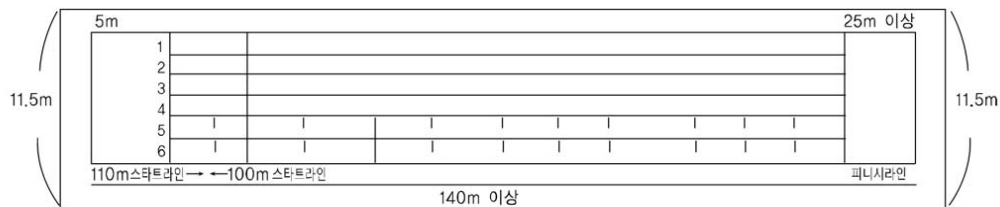
3. 등급규정

구분	A급 코스	B급 코스	C급 코스	비 고
코스 지도	모든 사람이 코스노선을 알 수 있도록 도로의 모든 지점을 표시한 지도	좌 동	좌 동	예:건물명, 호수 도로명칭 등
코스 거리	42,195km, 21,0975km,	좌 동	좌 동	

구분		A급 코스	B급 코스	C급 코스	비 고
		10km			
코스 설계		스타트지점과 파니시 지점간의 직선거리라는 총거리의 50%(21,0975km) 이하로며, 스타트지점과 파니시지점 간의 고도 감소가 1/1,000 (0.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좌 동	좌 동	
코스	왕복코스	도로의 너비는 선수들이 경기에 충분히 임할 수 있는 도로여야 하고 스타트에서 5km까지는 편도 3차선 이상으로 한다.	도로의 너비는 선수들이 경기에 충분히 임할 수 있는 도로여야 하고 스타트에서 5km까지는 편도 2차선 이상으로 한다.		
	순환코스	도로의 너비는 선수들이 경기에 충분히 임할 수 있는 도로여야 하고 스타트에서 5km까지는 편도 2차선 이상으로 한다.	좌 동		
스타트 지점		선수권대회 및 등록 선수만 참가할 시에는 육상경기장에서 스타트할 수 있으나, 마스터즈 참가자와 동시에 병행할 시에는 광장 또는 운동장에서 스타트하는 것으로 한다.	좌 동	참가자가 5000명 이상 될 시에는 광장 또는 운동장에서 스타트하는 것으로 한다.	
공인 공간		검정승인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좌 동	좌 동	도 로 공 사 로 인하여 주로가 변형되었거나 우 회 도 로 가 발생 하였을 때는 재공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A급 코스	B급 코스	C급 코스	비 고
개최 가능 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대회	일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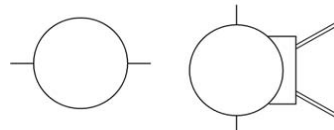
2종, 3종 준비운동장(Warm-up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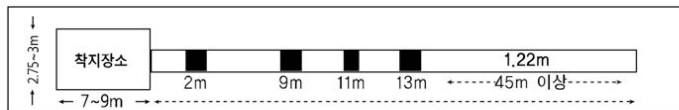
- 5레인, 6레인은 100mH, 110mH Point를 그려넣을 것
- 1레인과 6레인 옆으로 선수가 되돌아 올수 있는 여분을 폭 2m이상 마련한다.
- 준비운동장과 주위에 식수대, 화장실,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할 것
- 준비운동장 주위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 현지 사정에 맞게 반드시
전방으로 이중 그물장을
설치함.

원반던지기 서클 포환던지기 서클



투사각표시 스크린보드



- 도움닫기 및 모래사장 주위에 시기한 선수가 되돌아 갈 수 있는 폭 2m 이상의 여분을 마련한다.

※ 서클은 경기장 규격에 의함

경보경기실격 고지판

	15cm	15cm	15cm	15cm	15cm	15cm	15cm	15cm	15cm	15cm	
10cm	회차 Bib	1	2	3	비 고	회차 Bib	1	2	3	비 고	
10cm											
10cm											
10cm											
10cm											
10cm											
10cm											

웨이트 트레이닝장 기구 설치물 내용

○Squat	2대, 원판은 1대당(300kg 정도 × 2)바 포함 원판 = 25kg×4/ 20kg×4/ 15kg×2×4/ 10kg×4/ 5kg×4 진열대 포함
○역도바닥대	마루 바닥에 300cm×300cm 고무판 시설
○Snatch용기구	227cm 바에 원판 무게 150kg 바 2대
○Power Clean용 기구	25kg×2/ 20kg×2/ 15kg×2/ 10kg×2/ 5kg×2 진열대 포함
○Bench Press용 기구	3대 이상, 1대에 원판 150kg 바 포함 25kg×2/ 20kg×2/ 15kg×2/ 10kg×2/ 5kg×2 진열대 포함
○Incline Bench용 기구	1대 원판 150kg 바 포함 25kg×2/ 20kg×2/ 15kg×2/ 10kg×2/ 5kg×2
○바벨	5kg 7.5kg 10kg 12.5kg 15kg 17.5kg 20kg 25kg 진열대 포함
○덤벨 <중량>	10kg(쌍) 11kg(″) 12kg(″) 13kg(″) 14kg(″) 15kg(″) 16kg(″) 17kg(″) 18kg(″) 19kg(″) 20kg(″)
○덤벨 <경량>	1kg(쌍) 2kg(″) 3kg(″) 4kg(″) 5kg(″) 6kg(″) 7kg(″) 8kg(″) 9kg(″) 2세트 진열대 포함
○Leg Extension 기구	각 1대
○Leg Curl용 기구	각 1대
○Leg Press 기구	1대
○Lat Pull-Down 기구	1대
○Butterflying 기구	1대
○인크라인 벤치	2대
○일반 벤치	3대
○Sit-ups Board	다이 3대
○Leg Lift Board	레그리프트보드(하복근) 2대
○Romans Chair	2대
○턱걸이 대	1대
○매트	20m 정도

○Calf Raise 기구	1대 (카프레이즈)
○Wall Bar(늑목)	2열 1조
○중량봉20kg	4개
○경량봉10kg	4개
○벨트맞사지대	2대
○테이블롤러 맞사지대	1대
○트위스트 머신	2대
○러닝머신	2대
○사이클 머신	2대

제3조 공인경기장은, 위(별표)의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제4조 제1종 육상경기장에 있어서는 육상경기 시설과 용기구 및 장비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코스는 도로라야 한다.
단,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은 경기장내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장 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기대회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장소라야 한다.

제6조 공인경기장과 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코스의 계속 법과 시설에 관한 세칙에 대하여는 별도로(3장,4장) 정한다.

제7조 공인경기장·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코스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경기장의 설계도 또는 안내도 등에 경기장 또는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로드경보경기 코스 인정신청서를 첨부, 그 소재지의 산하단체를 경유하여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본 연맹은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검토위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파견비용은 본연맹 여비규정에 의하여 본 연맹에서 부담한다.

제9조 파견 검토위원의 실측조사에 의해 검토위원회가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연맹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공인증을 교부한다.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중에 개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재공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공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규공인으로 신청한다.

제11조 공인경기장·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코스가 공인 조건에 부적당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합성포장재 경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다.

제13조 ① 공인료는 별표와 같으며, 모든 공인료 납부는 공인신청 시 본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공인료는 유효기간 중에 변동이 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 공인 유효기간 중에 그 종별을 승격시킬 경우에는, 새로 합격된 종별에 해당하는 공인료의 차액을 납부함으로써, 전 공인기간중에 이어 계속 공인된다. 또는 새로 합격된 종별에 해당하는 공인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새로 공인기간을 5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② 덧씌우기와 라인마킹 스포츠캐빈을 보수할 시에는 공사 완료 후 대한육상연맹에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료(제13조)

□ 육상경기장

종 별	공 인 료	재 공 인 료
제1종	15,000,000	9,000,000
제2종	9,000,000	6,000,000
제3종	4,500,000	3,000,000
종목별경기장 공인료	3,000,000	
육상경기장 포설확인	6,000,000	
스포츠캐빈 확인	2,000,000	
라인마킹 보수확인	2,000,000	
운동장 자문(1회)	1,500,000	

※ 상기내용이 미비 되어 재검정할 시에는 파견요원의 출장비용을 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한다.

□ 로드레이스 코스 및 경보경기코스

종 별	공 인 료	재 공 인 료
마라톤 코스 (42.195km)	4,500,000	3,000,000
하프마라톤 코스 (21.0975km)	4,500,000	3,000,000
경보경기 코스 및 하프마라톤코스 미만	1,500,000	1,000,000

주) 마라톤코스과 하프마라톤코스가 동일한 코스가 아닐 시에는 하프마라톤 코스 공인료를 추가 납부토록 한다.

제14조 공인료는 4년마다 개정 할 수 있다.

2. 육상경기장 용기구 및 장비 검정규칙

1962년	11월	일	개	정
1968년	1월	일	개·수정	
1976년	5월	12일	개·수정	
1980년	12월	일	개·수정	
1988년	2월	일	개·수정	
1991년	1월	일	개·수정	
1997년	12월	4일	개·수정	
2002년	1월	25일	개·수정	
2005년	1월	19일	개·수정	
2010년	3월	19일	개·수정	
2013년	1월	31일	수정	
2014년	7월	25일	개·수정	
2016년	1월	12일	수정	
2018년	1월	24일	개·수정	

제1조 본 연맹이 주최·공동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구 및 장비로서 필요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한육상연맹 경기규칙 제161조, 181조~193조 및 제240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제2조 용기구 및 장비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와 수량을 기입한 서류에 검정료 전액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단 접수된 검정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 본 연맹 소정의 장소에서 검정에 응한다. 단, 검정 7일전까지 사무국에 접수하지 않은 것은 검정하지 않는다.

제4조 긴급을 요하는 검정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정의 기일 외라도 검정에 응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검정비용은 검정을 받는 업체에서 제정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검정은 본 연맹 시설위원회 또는 특별히 임명을 받은 자가 시행한다.

제6조 검정에 합격된 용기구 및 장비에는 본 연맹 소정의 검정인을 압인하고 증지를 첨부한다.

제7조 검정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8조 검정료는 2개년마다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공인 및 검정료 징수)

공인 및 검정료는 국제관례와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본 연맹 시설위원회가 결정,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검정단가표

순	품 명	단 위	검정료
1	스타팅 블록	1세트	7,500
2	사진촬영대	1대	100,000
3	배턴	1개	1,500
4	레인번호 표식	1조	40,000
5	허들	1대	8,000
6	SC용 이동허들(남.여)	1조	210,000
7	SC용 이동허들 수레	1조	40,000
8	허들운반차	1대	25,000
9	스타터용 확장장치	1조(8개)	100,000
10	풍속측정계	1대	150,000
11	주회표시기(디지털)	1대	100,000
12	주회표시기(수동)로드용 포함	1대	20,000
13	사진판정장치	1세트	1,000,000
14	스타터대	1개	25,000
15	경기용 신호총	1개	20,000
16	브레이크라인 표식기	1개	10,000
17	경보경기 경고게시판	1개	20,000
18	경보경기 경고원판	1조	15,000
19	발구름판	1개	10,000
20	발구름판 표식	1개	2,000
21	멀리,세단뛰기 거리표시기	1개	30,000
22	높이뛰기 지주	1조	30,000
23	" 매트	1세트	300,000
24	" 크로스바	1개	7,500
25	" 고도계	1개	30,000
26	장대높이뛰기 지주(원통형)	1조	400,000
27	" 매트	1세트	500,000
28	" 크로스바	1개	7,500
29	" 장대(폴)	1개	50,000
30	" 장대(폴) 거치대	1대	25,000
31	" 고도계	1개	35,000
32	" 추거기	1개	10,000
33	매트 운반차	1대	50,000

순	품 명	단 위	검정료
34	필드구역 표식	1조	10,000
35	필드선수용 거리 표시마커	1세트(240개)	60,000
36	필드용 시기허용시간 통고기	1대	150,000
37	필드경기결과 표시기(수동)	1개	75,000
38	필드경기결과 표시기(디지털)	1개	300,000
39	풍향기	1개	4,000
40	포환	1개	10,000
41	원반	1개	10,000
42	해머	1개	12,000
43	창	1개	25,000
44	포환던지기 스톱보드	1개	10,000
45	이동용 해머던지기 서클	1개	60,000
46	투척용 각도표시	1조	3,000
47	원반/해머 그물장	1세트	500,000
48	포환 거치대	1대	12,000
49	원반 거치대	1대	12,000
50	해머 걸이대	1대	12,000
51	창 꽃이대	1대	12,000
52	과학계측기	1대	1,000,000
53	투척용 페그	1조(30개)	13,000
54	투척거리 표식	1개	30,000
55	베스트 8표식	1개	25,000
56	최고기록 표식	1개	25,000
57	차회투척순서 표시기	1개	9,000
58	리본로드	1개	15,000
59	마라톤 거리표식	전체	100,000
60	시상대	1조	80,000
61	배터리카	1대	500,000
62	무인카	1대	150,000
63	포환이동 레일	1대	50,000
64	발구름판 대체용 공구	1세트	10,000
65	무전기	1조(15개)	150,000
66	공식계측장비(투척경기용)	1세트	100,000

3.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

1991년	7월	수정
1991년	12월	4일 수정
2002년	1월	25일 수정
2005년	1월	19일 수정
2010년	3월	19일 수정
2013년	1월	31일 수정
2014년	7월	25일 개수정
2016년	1월	12일 개수정

제1조 육상경기장의 거리계측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행한다.

- 1) 계측기준 : 초석 또는 각석에 조각된 점 또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설치에는 충분한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 2) 계측기구 : 계측에는 적어도 20초 단위의 전자측정기, 레벨, 공진청의 계량검정을 받은 50m강철온도 보존자 및 10kg 용수 철저울을 사용한다.
- 3) 계측방법 : 곡선주로에 있어서는, 초석에서부터 곡선주로의 내측모서리(주로의와 경계선)까지, 줄자를 같은 수준의 상태에 두고, 줄자의 일단에 10kg의 장력을 가하여 적어도 10°마다 mm단위까지 계측한다.
- 4) 실제거리 산출 : 사용한 줄자의 눈금의 편차와 측정 때의 온도에 의한 신축을 보정한다. 거리측정시의 표준온도는 섭씨 20°로 하고 아래의 공식에 의한다.

$$L_{20^{\circ}} = L_t[1 + \alpha (t - 20)]$$

단, $L_{20^{\circ}} = 20^{\circ}$ 에 있어서의 실제의 길이, L_t =줄자의 눈금의 편차를 보정한 길이, t =계측때의 줄자의 온도, α =줄자의 팽창률.

- 5) 곡선주로의 계산법 : 초석과 곡선주로의 선의 거리를 시설규정에 의거 계측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산출한 실제길이의 평균(실측반경)에 30cm를 가산하여(계산반지름), 원주율(3.1416)을 곱해서 계산한다.

단, 제3종에 있어서의 연석의 높이가 주로와 동일한 수준일 경우에는, 계산반지름은 실측반경에 20cm를 가산한 것이다.

- 6) 1주 거리의 허용오차는 공인 육상경기장과 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코스 규칙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단, 마이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조 1) 주로 및 도약·투척의 각 도움닫기주로의 허용 경사도는 너비에서 100분의 1(높이뛰기 250분의1) 달리는 방향에서 1,000분의 1이하로 한다. 필드 및 투척장의 허용경사도도 이에 준한다.

2) 투척경기장과 잔디구장의 근접지점 허용 높이는 0으로 하고 잔디구장 중앙은 20cm가 초과하면 안된다.

제3조 레벨을 측정할 경우에는, 하기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높이뛰기의 도움닫기는, 계측 기준대와 지주대 및 발구름 장소와 동일수준으로 한다.

2)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도움닫기는 발구름판 및 착지장소의 상단 높이와 동일수준으로 한다.

3) 장대높이뛰기의 도움닫기주로는 박스의 상단과 지주대 및 발구름 장소와 동일수준으로 한다.

4) 창던지기 도움닫기주로는 원호 및 전면의 필드의 지표와 동일수준으로 한다.

5) 각 투척서클의 상단 높이는 필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서클의 내부는 서클의 상단 위보다 2cm $\pm$ 6mm 낮게 한다.

제4조 초석은 원의 중심에 설치한다. 초석 상면의 수준은, 설치한 지표의 수준보다 2cm $\pm$ 6mm 낮은 것이 좋다. 각석은 곡선주로와 직선주로와의 경계점 또는 반지름이 다른 원호의 경계점에서 주로의 양측에 설치하되, 트랙의 면과 동일수준으로 한다.

제5조 초석 및 각석은 화강암 또는 이와 동일한 돌 또는 콘크리트 블록에 금속판을 고정시킨 것이며, 최상부는 약 5cm $\times$ 5cm의 평면으로 하여 이에 금속판의 간석은, 초석에 +표, 각석에는 세로로 | 표이다.

제6조 곡선주로에 있는 각종 스타트 라인, 각종 릴레이레이스의 테이크오버존과 각종 허들의 위치 등에는 각도로 계산하여 표시를 한다. 표시는 주로의 양측의 가쪽에 명확하게 내구성 있는 것으로 고정 시킨다.

제7조 트랙의 연석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벽돌 또는 그 밖의 경질의 것으로 하고, 하부는 콘크리트로 기초지반에 고정시켜 표면 배수가 잘 되게 설치한다. 단, 관리인을 상시로 근무케 하는 경기장에서는, 연석의 일부를 빼었다 맞추었다 할 수 있다. 연석의 상면은, 트랙의 지면에서부터 5cm 높게 한다. 단, 제3종 공인경기장에 한하여, 안쪽 연석은 트랙과 동일 수준으로 해도 무방하다.

제8조 각 스타트라인의 후방 및 피니시라인의 전방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필요하다.

	스타트라인의 후방	피니시라인의 전방
제 1 종	5m 이상	25m 이상
제 2 종	5m 이상	25m 이상
제 3 종	4m 이상	15m 이상

[주] 사진판정 장치를 사용할 경우는 경기규칙 제164조 2항 참조.

제9조 주로는 배수 상황이 좋아야 한다. 파진 곳이 없고, 딱딱하지 않으며, 따라서 탄력성을 띠고 적당한 습점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3,000m장애물 레이스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3,000m 장애물의 물웅덩이는, 제3과 제4코너 사이의 일반 주로의 안쪽 또는 바깥쪽의 연석에 근접하여 설치하고, 또 물웅덩이에 접해서 고정시킨 장애물(고정 장애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물웅덩이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 배수가 신속히 되고 경기 중에는 만수상태에 있도록 설비한다.
- 3) 물웅덩이까지의 사이에 주로의 연석을 묻을 수 없는 곳에는 백색라인을 5cm의 너비로 긋고 물웅덩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물웅덩이의 크기는 허들을 포함해서 $3.66\text{m} \pm 0.02\text{m} \times 3.66\text{m} \pm 0.02\text{m}$ 로서, 고정 장애물이 있는 쪽의 깊이는 50cm-70cm 다른 쪽은 필드의 지표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경사시킨다.

- 5) 고정 허들 바 상부의 높이가 물웅덩이의 수면에서
 남자 : 0.914m $\pm$ 3mm, 여자 : 0.762m $\pm$ 3mm,
 너비는 3.66m $\pm$ 0.02mm가 되도록 한다. 상단 바는
 12.7cm $\times$ 12.7cm 정방형의 목재를 사용한다.

제11조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도움닫기주로		착 지 장 소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와의 거리	
	길이 (m)	너비 (m)	길이 (m)	너비 (m)	깊이 (cm)	멀리뛰기 (m)	세단뛰기 (m)
제1종	45 이상	1.22 $\pm$ 0.01	7-9	2.75~ 3이내	50	1~3	13 이상
제2종	45 이상	1.22 $\pm$ 0.01	7-9	2.75~ 3이내	50	1~3	13 이상
제3종	40 이상	1.22 $\pm$ 0.01	7-9	2.75~ 3이내	50	1~3	11 이상

도움닫기 주로의 길이는, 발구름판의 발구름선으로 부터 계속한다.

남자 세단뛰기의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의 거리는 13m이상이다.
 여자 세단뛰기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의 거리는 9m ~ 11m로
 한다. (규칙 제 186조)

제12조 높이뛰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도움닫기주로		착 지 장 소			지 주 대 계측 기준대
	길이	너비	길이	너비	높이	
제1종	25m 이상	최소16m	6m	4m	0.7m	지주의 간격이 허용 범위내로 이동 가능 하도록, 지주대의 위 치를 정한다(제182조 참조). 계측기준대는 지주대간 중앙인착 지의 바깥쪽에 근접 설치 한다.
제2종		최소16m	5m	3m	0.7m	
제3종		최소16m	5m	3m	0.7m	

- 1) 지주대는 적어도 반지름이 30cm라야 한다.
- 2) 도움닫기주로와 지주대는, 계측기준대의 최상부와 동일수준이
 라야 한다.

제13조 장대높이뛰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도움닫기주로		착지장소(매트)			지 주 대
	길이 (m)	너비 (m)	길이 (m) (보호 덮개 포함)	너비 (m)	높이 (m)	
제1종	45 이상	1.22 ± 0.01	8 이상	6 이상	0.8 이상	바결이의 간격이 허용 범위 안에서 이동가능토록 지주대를 정한다 (제183조 참조). 별도로 표시한 규격에 따라 박스의 스톱보드 안쪽 연장선에서 크로스바를 착지장소방향으로 80cm 이동할 수 있도록 설비한다.
제2종	45 이상	1.22 ± 0.01	8 이상	6 이상	0.8 이상	
제3종	40 이상	1.22 ± 0.01	7 이상	5 이상	0.8 이상	

- 1) 도움닫기주로의 길이는 박스의 “0”라인 (zero line)부터 계속한다.
- 2) 제1종, 제2종의 착지장소의 매트는 규칙 제183조의 12항의 착지장소의 설계도를 참조.
- 3) 박스는 대한육상연맹 규칙 제183조 8항에 의한다.

제14조 창던지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도움닫기주로		원호 및 계측구심점
	길이(m)	너비(m)	
제1·2종	33.5 이상 36.5 이상	4	원호는 정규의 규격대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측 중심점을 표시하는 표식을 도움닫기주로의 양측 구획에 붙여야 한다.
제3종	30.0 이상 36.5 이상	4	

부득이한 경우 경기장에서 도움닫기주로가 트랙의 연석을 넘을 경우에는, 연석을 이동할 수 있도록 장치할 수 있다.

제15조 각종 경기장에 있어서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또는 원반 던지기와 해머던지기의 서클 설비는 각기 겸용하여도 좋다.

※ (포환, 원반, 해머던지기장 서클 합성고무 덮개 설치)
제3종 경기장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본 연맹이 인정 하면 그 설비의 일부를 겸할 수 있다.

제16조 포환던지기와 원반던지기 및 해머던지기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원반던지기와 해머던지기의 그물장의 규격은, 경기규칙 제190조와 192조 참조
- 2) 포환던지기·원반던지기/해머던지기의 겸용 서클의 규격은, 경기규칙 제187조 참조
- 3) 서클측면 좌·우측에 배수관을 묻는다.
 - 20mm 이물질 제거 덮개 설치.
 - 우천 시 배수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서 클			내측의 재질	낙하 구역 각도	계 측 기준점
	재 질	테의 두께	내측의 지름			
포환	강철재 또는 강철 앵글	6mm 이상	2,135m ±5mm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4.92°	서클 내의 중심에 핀 또는 관 (4mm)을 묻는다.
원반	강철대 또는 강철 앵글	상동	2,50m ±5mm	상동	상동	
해머	상동	상동	2,135m ±5mm	상동	상동	

제17조 경기장에 비치할 용구 및 기구는 별표와 같다.

이밖에 장비, 공구류, 소모품 등을 필요에 따라 비치한다.

육상경기장 시설 및 경기장 구비 용구 및 기구 현황(제17조 별표)

□ 각종전국대회 개최 시에는 필수구입/필요시구입 품목을 일체 이행 하여야 함.

□ 공인육상경기장에는 대회 및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용구 및 기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트 랙	* 경기용품				
스타팅블럭	견고하고 단단한 재질로 제작 : 블록2개1조	32조	24	16	필수품목
사진촬영대	높이조절식으로 적재판하중 60kg이상 : 높이 4m이상	1대	1	0	"
배턴(일반용)	28~30cm×바깥지름 4cm, 50g이상 가볍고 단단한 것 * 8가지의 색상(빨, 주, 노, 초, 파, 남, 보, 백)과 1번 ~ 8번까지 번호를 표기하여 제작(8개 1조)	3조	3	2	"
배턴(초등학교용)	26~28cm×9.5~10.5cm, 50g이상 가볍고 단단한 것 * 8가지의 색상(빨, 주, 노, 초, 파, 남, 보, 백)과 1번 ~ 8번까지 번호를 표기하여 제작(8개 1조)	3조	3	2	"
레인번호표식	FRP재질로 1번~9번 번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5cm×7cm의 부정스타트 및 경고내용 표식 부착(적, 황, 녹)	3조	2	0	"
허들	(5단 높이 조절식(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제작) 육상경기규칙 제168조 참조)	150대	130	80	"
SC. 이동허들 (남자, 여자)	남녀공용 높이 조절식 허들 : 육상경기규칙 제169조 참조. 4대 1조(허들 밑 부분에 금속재질의 받침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함)	1조	1	0	"
SC. 이동허들 수레		8개	8	0	"
허들운반차	허들 10대 운반용 회전바퀴부착	12대	12	5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스타터용 화성장비	이동식 회전바퀴 핀마이크, 핸드마이크 포함.	3조	3	1	필수품목
풍속측정계	초음파형 (국제육상경기연맹 규칙에 일치하는 제품)	2대	2	1	"
주회표시기	- 디지털 : 고휘도 LED램프 표시창 1-99 중 부착(3면) - 수동식 : 이동식 표시창 1-99 중 부착	각/대	각/대	1	"
로트레이스(경보경기) 용 주회 표시기	- 수동식 : 이동식 표시창 1-99 중 부착	2대	2		"
사진판정 장치	국제육상경기연맹 규칙에 위배됨이 없는 제품1/1000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는 필수 구입)	1조	1	0	필요시 구입
실탄	공포탄 9mm	2000발	2000	0	필수품목
경기용 신호총	9mm 장전식	4정	3	2	"
스타터 대	스탠드식으로 제작, 신호총 및 실탄 수납공간이 있어야 하며, 발판2단 이동식 : 앞부분 2군데 바퀴부착)	3대	3	3	"
브레이크라인 라버콘	높이 15cm 미만, 너비 5cm×5cm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사각뿔, 원뿔 5cm×10cm)	24개	16	8	"
스톱워치 램 주회용	1/100초 국제육상경기연맹 규칙에 위배됨이 없는 제품(LAP)	24개	18	14	"
감찰원용 수기	적, 황, 백색 기 30cm×40cm 3개1조	50조	50	30	"
감찰원용 마커	40Ø×1.6mm 황색 플라스틱 원판	100 개	50	30	"
브레이크라인 표시기	녹색기 30×40×150cm 지지내부	2조	2	1	"
경보경고 원판	아크릴 150Ø손잡이 150mm 회전수 붉은색 4개 백색 16개(20개 1조)	1조	1	1	"

II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경보 실격 표지판	이동용 (별첨참조)	4개	4	4	필수품목
지름 계측자	30cm이상 1개, 15cm이상 1개	각1개	각1개	1	"
스타트 경고/실격 카드	아크릴 녹색, 노란색, 붉은색 3개 1조(15cm×10cm) - 붉은색과 노란색의 경우 대각선으로 한쪽을 검정색으로 제작	6조	3	3	"
도 약	* 경기용품				
발구름판	발구름판 및 점토판 규격 : 경기규칙 184조 4항과 5항 참조	12조	12	4	"
발구름판 표식	30cm×20cm×15cm	6조	4	2	"
멀리,세단뛰기 거리표 식	길이4m 높이50cm 눈금표시(5cm단위), 거리표시판 12매 (5-8, 11-18) : FRP로 제작	2개	2	1	"
고무래	튼튼하고 가볍게(알루미늄으로 제작)	6개	6	3	"
높이뛰기 지주	높이조절식 최대2.5m이상 스테인리스재질의 2개 1조	2조	2	1	"
높이뛰기 매트	7.2m×4m×0.7m 덮개 및 우천커버 포함	2조	2	1	"
높이뛰기 크로스바	3.98 - 4.02m 글라스파이버 (크로스바의 끝은 단단하고 매끄러운재질 : 무게 최대 2.0kg)	10개	10	3	"
높이뛰기 고도계	최저 1m~최고3m의 계측용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음각이나 줄자로 눈금표시	2개	2	1	"
장대높이뛰기 지주	600cm이상 바 걸이포함 원통형 (높이조절:기어방식 또는 전동식)	2조	1	1	"
장대높이뛰기 매트	8m×6m×0.8m 보조매트 및 우천카바포함 (보호용 덮개 : 2.0m와 지주안전매트 포함)	2조	1	1	필수품목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장대높이뛰기 크로스바	4.50m(± 2 cm) 글라스 파이버 (바 끝은 단단하고 매끄러운재질 예:플라스틱)	10개	8	3	"
높이/장대높이뛰기 연습용 크로스바	고무 재질로 된 줄(규격은 경기규칙에 준한다.)	5개	5		"
장대높이뛰기용 장대	(남자) 4.60~5.00/60~80kg 글라스 파이버 (여자) 4.20~4.40/55~65kg 글라스 파이버	각 5개	각 5	각 2	필요시 구입
장대높이뛰기 장대 거치대	보관용, 길이 2.5m $\times$ 0.8 $\times$ 0.5 (10개 보관용 이동식(회전바퀴))	2개	1	1	필수품목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600cm이상의 계측용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음각이나 줄자로 눈금표시	2개	1	1	"
장대높이뛰기 바 올리기 기구	스테인리스 2단2개1조	2조	2	1	"
장대높이뛰기 지주거리 표시	숫자판 0-9 2개 부착 높이 120cm	2개	2	1	"
매트운반차	3m $\times$ 2m 베어링 바퀴 부착(용구 운반차량과 호환이 되어야 함.	2대	2	1	"
필드구역표시	A, B 2개 1조(FRP)	2조	2	0	"
도움닫기주로 거리 표시마커	각종색상 2mm (8색 1-30) 7 $\times$ 10 $\times$ 9cm(알루미늄)	240개	240	100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필드용 시기허용 시간 통고기	5분, 3분, 2분, 1분 30초, 1분, 30초 조작기능 디지털:고휘도LED램프(4,500cd 이상 : 칸텔라)를 사용, 표 시부는 지면에서 1m 높이 이상 위치, 각 글자크기는 320모 듈 이상, 화면크기는 320*960 이상의 양면 표출방식 비닐덮 개포함(우천 시 사용), 경광등과 부저 부착	6대	6	4	필수품목
장대높이뛰기 장대 거치대	경기장용, 스탠드타입, 장대(폴) 20개 이상 거치용	2대	2	1	"
시기정지 표시	50cm×30cm 합성수지(견고 가볍게 오렌지바탕 황색광명색)	8개	8	8	"
필드경기 결과표시기	- 디지털방식 : 고휘도LED램프(4,500cd 이상 : 칸텔라)를 사용, 표시부는 지면에서 1m 높이 이상 위치, 각 글자크 기는 320모듈 이상, 화면크기는 640*1920 이상의 회전 식으로 양면 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기선이 지지대 안쪽으로 연결되도록 제작, 비닐덮개(우천 시 사용) : 3 개 포함 * 납품 시 경기장 내 과학계측기(광파)와 연동(유, 무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동식(회전용) : 3개	6개	6	0	"
풍향기	풍향 리본(3cmx5cm) 부착 : 높이 120cm	6개	6	4	"
풍속속보 표시기	표시창:+,-, 풍속(2자리) 이동식(회전바퀴 고정핀) :높이 120cm	3대	2	0	"
투 칩	* 경기용품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포환 남자 일반용	7,260kg 110mm-130mm (선수선호 제품으로 2개국(국제육상경기연맹 승인품)의 3개 는 필히 구입, (지름은 3가지 125mm, 120mm, 115mm이하) 3종경기장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9개	9	4	"
포환 남자 U20 및 고 등부용	6,000kg 105mm-125mm (선수선호 제품으로 2개국(국제육상경기연맹 승인품)의 3개 는 필히 구입, 지름은 3가지 120mm, 115mm, 105mm이하) 3종경기장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9개	9	4	필수품목
포환 남자 U18용	5,000kg 100mm-120mm	9개	9	4	"
포환 여자용 및 남자중 학교용 (일반, U20, 여고, 남중)	4,000kg 95mm-110mm (선수선호 제품으로 2개국(국제육상경기연맹 승인품)의 3개 는 필히 구입, 지름은 3가지 120mm, 115mm, 105mm이하) 3종경기장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9개	9	4	"
포환 여중 및 U18용, 초 등학교용(남, 여)	3,000kg 85mm-95mm	9개	9	4	"
원반 남자 일반용	2,000kg 견고한 플라스틱 또는 목재(테두리 : 금속재료)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경기규칙 제189조 2항 참조.	12개	12	4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원반 남자 U20 및 고등부용	1,750kg 견고한 플라스틱 또는 목재(테두리 : 금속재료)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경기규칙 제189조 2항 참조.	12개	12	4	"
원반 남자 U18용	1,500kg 견고한 플라스틱 또는 목재(테두리 : 금속재료)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경기규칙 제189조 2항 참조.	12개	12	4	필수품목
원반 여자 및 남중용 (일반, U20, 여고, 여중, U18, 남중)	1,000kg 견고한 플라스틱 또는 목재(테두리 : 금속재료)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경기규칙 제189조 2항 참조.	12개	12	4	"
해머 남자일반용	7,260kg 110mm-130mm 총길이 1,215m이하 (두부의 회전이 용이하여야 함. 베어링 방식 등)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115mm이하)	12개	12	4	"
해머 남자 U20 및 고등부용	6,000kg 105mm-125mm 총길이 1,215m이하 (두부의 회전이 용이하여야 함. 베어링 방식 등)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105mm이하)	12개	12	4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해머 남자 U18용	5,000kg 100mm-120mm 총길이 1,200m이하 (두부의 회전이 용이하여야 함. 베어링 방식 등)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105mm이하)	12개	12	4	"
해머 여자용 (일반, U20, 여고)	4,000kg 95mm-110mm 총길이 1,195m이하 (두부의 회전이 용이하여야 함. 베어링 방식 등)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105mm이하)	12개	12	4	필수품목
해머 여자 U18용	3,000kg 85mm-100mm 총길이 1,195m이하 (두부의 회전이 용이하여야 함. 베어링 방식 등)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된 제품으로 3개국의 6개는 필히 구입, 3종경기장은 국내제작품으로 구입가능 (105mm이하)	12개	12	4	"
해머 그립 및 줄	그립 및 줄	각 10개	각 10개	4	"
창 남자용 (일반, U20, 고등부)	800g : 70m, 80m, 90m 3개국(국내선수들이 선호하는 제품)	12개	12	4	"
창 남자 U18용	700g : 60m, 70m, 80m 3개국(국내선수들이 선호하는 제품)	12개	12	4	"
창 여자 및 남중용 (일반, U20, 고등부, 남중)	600g : 50m, 60m, 70m 3개국(국내선수들이 선호하는 제품)	12개	12	4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창 여자 U18/ 여중	500g : 50m, 60m, 70m 3개국(국내선수들이 선호하는 제품) - 여중의 창 규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규격인 600g으로 시행함.	12개	12	4	"
포환 스톱 보드	11,2cm×30cm, 1,21m(±0.01) 보드높이 8cm	3개	3	1	"
용구이동용 카트	적재 : 20kg 이상 리모콘 작동용(원반, 창, 해머)	2대	2	0	"
포환이동 레일	길이 20m, 포환이 굴러갈 수 있는 견고한 재질	1개	1	0	필수품목
해머던지기 이동용 서클	2,135m±5mm	2개	2	1	"
투척용 각도표시기	20cm×40cm×20cm 백, 적(뿔면동일) 2개 1조	4개	3	1	"
원반, 해머그물장	포설확인시 점검(종합경기장 종별규정에 추가) : 용기구품목에서 삭제하고 시설물에 추가				
포환 거치대	이동식 (회전바퀴부착)	2개	2	1	"
원반 거치대	이동식 (회전바퀴부착)	2개	2	1	"
해머 걸이대	이동식 (회전바퀴부착)	2개	2	1	"
창 꽃이대	이동식 (회전바퀴부착)	2개	2	1	"
과학적계측기(광파)	국제육상경기연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제품 * 납품 시 경기장내 경기결과표시기와 연동(유,무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대	1	0	"
공식계측장비	용구 및 기구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	1대	1		"
투척용 패그	포환용 10cm×10cm×10cm, 30개 1조	2조	2	1	"
투척용 패그	원반, 해머, 창용 20cm×20cm×10cm 30개 1조	2조	1	1	"
투척거리 표식	포환용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m 1조 30cmx30cmx40cm (FRP 고정이 가능토록 제작)	2조	1	1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투척저리 표식	원반, 해머, 창용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m 1조 40cmx40cmx50cm (FRP 고정인 가능토록 제작)	2조	1	1	"
신기록 표식	한국신, 부별신 대회신 (40cm×40cm×50cm) 각 1개 1조 (FRP 고정인 가능토록 제작)	2조	1	0	"
비닐테이프 회수기	100cm 용	5개	2	0	필수품목
리본로드 멈춤쇠	강한 쇠 5.5cm×7cm(두께3mm)	1000개	1000	400	"
차회투척 순서 표시기	40cm x 55cm	2개	2	1	"
리본 로드	30m 2개 1조	2조	2	1	"
리본 로드	70m 2개 1조	2조	2	1	"
리본 로드	100m 2개 1조	2조	2	1	"
필드용 비닐테이프(소 모품)	백색 폭 5cm 1mm 두께이상	500m	500	300	"
필드용 비닐테이프(소 모품)	적, 황색 폭 5cm 각 100m	200m	200	100	"
베스트 8표식	숫자 1-8 (8개 1조)	2조	2조	0	"
일반물자					
우천 시 선수대피소	조립이동식 알루미늄제품 3m×6m : 15개, 3m×3m : 5개, 3종 : 3m×6m : 10개	20대	20	10	"
무전기	휴대 고성능 충전용(생활무전기 제외) (이어 마이크포함)	15대	15	0	"
접긴 테이블	60cm x 180cm	40각	30	10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접의자		100각	100	20	"
시상대	- 높 이 : 60cmx40cmx30cm, 너비: 120cmx90cm(3개1조) - 재 질 : FRP(타원형으로 제작한다)색깔 : 금 은 동	1조	1	1	"
선수용 옷 바구니	손잡이 있는 것	150개	150	120	"
소집실용 앰프	작동과 이동이 용이한 제품	1개	1		"
합성수지 줄자	100m, 50m 각1개, 1조	3조	3조	1	필수품목
전자저울	10kg 이하 투척용 기구 계측용(단위1g)	1대	1	1	"
비(소모품)		6개	6	3	"
삽	토사용 3평	5개	3	2	"
강철제줄자	30m	8개	8	2	"
강철제줄자	50m	4개	4	2	"
강철제줄자	100m	5개	5	1	"
메가폰	핸드마이크	7개	7	3	"
선수용 벤치	긴의자 4-5인용 (가볍고 견고한 재질)	40개	40	10	"
경기결과 게시판	90cm×180cm (이동용 바퀴부착)	1대	1대	0	"
선수용도 안내판	30cm×40cm 화이트보드, 손잡이부착	10대	10대	5	"
임원완장	* 천 재질 대회총무 2, 기술총무 2, 장내통제 7, 심판장 3, 트랙경기심판장 3, 도약경기심판장 3, 투척경기심판장 3, 경보경기심판장 3, 로드레이스심판장 3, 주입 20	49개	49	0	"
비치파라솔	원형 탁자 부	40조	30	10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장비운반차량 (골프용카)	견인능력 4,000kg이상(트레일러 2m×3m포함)	2대	2	1	"
비옷	(판초 100, 상하의 100)	200벌	200	200	"
우천 시 기록용 상자	40cm×15cm×25cm×30cm 투명한 아크릴판	10개	10	0	"
탄산마그네슘(소모품)	가루 1포, 고체 20개	1포 /20개	1/20	0	필수품목
탄산마그네슘 통	우천 시(강풍 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제작시 사전협의)	5개	5		"
전기연결선(릴선, 멀티탭)	* 릴선 100m : 5개, 50m : 15개 * 멀티탭 : 10m(5구) 20개	20 /20	20 /20		"
우천 시 빗물제거기	빗물제거 용량 60리터, 폭 65cm	2대	2	1	"
감찰원용 의자	접의자(플라스틱), 낚시용의자 제외	50개	40	20	"
물뿌리개	10ℓ	3개	1	1	"
발구름판 대체용 공구	12벤치, 멍키스패너, 파이프렌치, 복스스패너, 자, 깎기, 톱, +자, 드라이버, 커터칼(大), 전동식 대패 각 1개씩	1조	1	1	"
투척용 발담게 매트	50cm×100cm	6장	6	4	"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라버콘A	높이 60cm 이상(연질)	300개	300	100	"
라버콘B	높이 30cm 이상(연질)	200개	200	100	"

품 목	규 격	1종	2종	3종	비 고
마 라 톤	* 경기용품				
마라톤 거리표식	관문용 5, 10, 15, 20, 25, 30, 35, 40km 1.5m 지지대부 8개 1조(앞뒤표시)	필요시 구입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는 필수품목)			
마라톤 거리표식	중간점 1.5m 지지대부 앞뒤표시				
마라톤 거리표식	반환점 높이 1.2m 정도 오투기풍선 앞뒤표시				
음료수/스펀지 공급소, 위치 표식	7.5, 12.5, 17.5, 22.5, 27.5, 32.5, 37.5km 300cm×350cm×1.2m 지지대부 7개조 1조 앞뒤표시				
마라톤용 기구	접긴 테이블 60cm×180cm				
마라톤용 기구	비닐테이블보 70cm×190cm 백, 적, 황 각10매 1조				
마라톤용 기구	철 접의자 : 100개				
마라톤용 기구	대형 주전자 : 10개				
마라톤용 기구	대형 플라스틱 물통 : 30개				
마라톤용 기구	스펀지 5cm×7cm×10cm : 1,000개				
마라톤용 기구	종이컵 : 1,000개				

4. 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정보경기 코스공인에 관한 세칙

1991년	1월	4일	수정
2002년	1월	25일	수정
2005년	1월	19일	수정
2010년	3월	19일	수정
2013년	1월	31일	수정
2014년	7월	25일	수정
2016년	1월	12일	수정

제1조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로드정보경기 코스는 교통량과 기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도로(중앙선에서 반을 기준) 또는 적당한 폭의 도로로 한다. 스타트라인과 피니시라인은 경기장 내에 설정할 수 있다. 스타트라인과 피니시라인을 도로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교통 및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를 택하여 도로의 중앙을 기점으로 한다. 단, 이 방법은 신설하는 주로에서 적용한다. 또, 피니시라인과 피니시라인은 다른 장소에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주] 길이라 함은 통상의 도로가 아닌 공원 등의 포장 또는 자전거 코스, 제방 등 이에 유사한 곳을 칭함.

제2조 1) 계측은 강철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줄자는 10kg에 힘을 가하여, 그 향차와 온도의 보존을 시행하여 실제의 길이를 산출한다. 계측에 있어서는, 가급적 트란 싯 및 고저계를 사용하여, 코스 노면의 고저에 따라 최단거리를 계측한다.

2) 존슨카운터(자전거계측) 계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계측한다.

제3조 코스의 계측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1) 경기장 안에 스타트지점과 피니시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트랙의 내측연석의 외측 30cm지점을 계측한다. 원주를 벗어나거나 들어올 때도 모두 30cm지점을 분기점으로 한다.
- 2) 도로가 인도 및 차도로 구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경계선부터 차도안의 30cm의 지점.

- 3) 도로에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측단부터 30cm내측의 지점.
- 4) 인도 및 차도의 경계에 도랑이 있을 경우에는, 도랑의 차도측 끝에서부터 차도내의 30cm지점.
- 5) 급곡선 도로 또는 꺾인 도로에 있어서는 그 급곡선 부분 또는 꺾인 부분의 내측 정점에서부터 30cm지점을 각 향에 준하여 계측한다.
- 6) 로터리 또는 도로에 화단 등이 있는 곳에서는, 측단부터 61cm내측의 지점
- 7) 길은 로드레이스 코스로 할 경우는, 수목이나 그밖의 돌기물의 끝부터 61cm 떨어진 장소(지점)로 하며, 본 조 5항과 같은 급곡선 또는 꺾인 부분을 그 정상으로부터 30cm 떨어진 지점을 계측한다.
- 8) 기타 어떠한 경우이건, 선수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계측한다.

제4조 스타트지점 · 반환점 · 피니시지점 및 중요한 도중지점에는, 1km 또는 5km마다 고정표식을 설치한다. 거리 표시가 있는 지점의 포인트 도면의 작성에 있어서, 그 근처의 고정물과 포인트 간의 거리는 적어도 2개소 이상 계측하여 도로 위에 표시한다.

제5조 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코스의 거리에 대한 허용 오차는 (+)1,000분의 1(0.1%)이내로 하고 (-)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로드경보경기 코스의 공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 1)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로드경보경기 코스의 공인 신청서.
- 2) 로드레이스 코스 또는 로드경보경기 코스의 소재를 표시하는 50,000분의 1 안내도(주로를 표시한), 및 5,000분의 1~30,000의 1 실측평면도(주요지점의 거리를 표시한다).
- 3) 주요지점의 포인트 도면

- 4) 전 로드레이스 코스의 고저측량도면
- 5) 거리실측보고서(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이)
 - 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코스의 현황 설명
 - 계측의 년/월/일
 - 주요 계측자의 성명 및 계측에 종사한 인원수
 - 계측에 사용한 기구의 종류
 - 실측에 표시된 거리 및 줄자의 변화 및 온도를 보존한 거리
 - 줄자의 변화 및 온도의 보존을 실시한 지점
(1km, 2km 및 5km마다 또는 반환점에서 등).
 - 재조사의 여부
- 6) 검정원 파견 의뢰서

5. 합성포장재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

1997년	12월	4일	수정
2002년	1월	25일	수정
2005년	1월	19일	수정
2010년	3월	19일	수정
2013년	1월	31일	수정
2014년	7월	25일	수정
2016년	1월	12일	개수정

제1조 합성포장재로 설치된 육상경기장을 합성포장재 경기장이라고 칭한다.

제2조 거리계측의 요령은, 경기장 공인세칙의 3장을 적용한다.

제3조 주로 및 도약·투척·도움닫기주로의 배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1) 트랙주로의 최대 허용경사도는, 너비쪽으로 1/100(1%),
 달리는 방향으로 1/1000(0.1%)이하로 한다.
 2) 필드경기(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창던지기)의
 도움닫기주로의 허용 경사도는, 너비쪽으로 1/100(1%)
 이하, 도움닫기 방향으로 1/1000(0.1%)이하로 한다.

제4조 트랙주로 및 필드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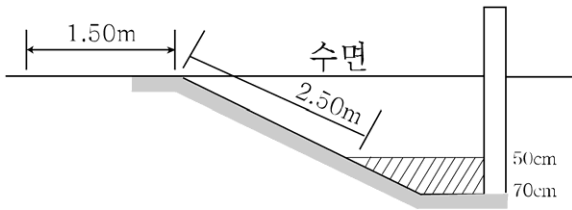
- 1) 노면은 표면마무리(Topping),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입경(粒徑)은 5mm 전후를 인정한다.
- 2) 경도는 KS규격 40이상으로 한다.
- 3) 격렬한 사용에 견디어낼 수 있는 마모되거나 균열되지 않은 견고한 재질로 한다.
- 4) 하층의 하지재(아스팔트혼합물)에 밀착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트랙주로의 연석은, 철제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재료로서 하부의 배수가 잘 되는 것으로 한다. 각석은, 낫쇠 또는 구리에
 ㉠ 표시를 새겨 설치한다.

제6조 합성포장재의 규격과 두께는 다음과 같다.

- 1) 합성포장재의 규격은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제품 또는 국내 KS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2) 트랙 주로의 두께는 1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트랙의 외과부분 또한 경기지역의 일부분으로 9mm이상으로 경기 구역과 동일한 제품을 포설 하여야 하며, 합성포장재 두께 포설은 전체기준에 미달되는 두께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3,000mSC의 물웅덩이 바닥은 25mm 두께의 합성포장재를 설치한다. 주로면은 1.50m까지, 수면밑 경사면은 2.50m까지로 한다.



제7조 트랙주로의 표식(각종 스타트라인, 테이크오버존, 허들의 위치 등)은 타일을 매설하고 표면에 도포하여 명시한다. 색상은 별첨의 표준표에 의한다.

[주] 주로의 연석 부분에서도 모두 너비 5cm, 길이 10cm로 지정 색을 칠한다.

제8조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의 도움닫기주로는,

- 1) 너비는 1.22m $\pm$ 0.01m로 한다. (경기규칙 제184조 1항)
- 2) 착지장소로부터 13m이내는 두께 최대20mm로 한다.

제9조 높이뛰기의 도움닫기주로는,

- 1) 선(扇)형(3심원)으로 하며, 바로부터 최소 15m이상 필요하다.
- 2) 1·2종은 전면포장으로 하며, 길이는 최소 25m이상을 권장한다.
- 3) 계측기준대는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마킹(marking)으로 지주대의 위치와 크기를 명시한다.
(지름은 30cm ~ 60cm). 색은 백색으로 한다.
- 4) 도움닫기방향은 바의 방향으로 한다.
- 5) 발구름 장소의 지면 두께는 최대 20mm로 한다.
단, 계측 기준점으로부터 3m×4m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 장대높이뛰기의 도움닫기주로는

- 1) 너비는 1.22m $\pm$ 0.01m로 한다.
- 2) 박스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경기규칙 제183조 8항)
- 3) 박스로부터 8m이내는 두께 최대 20mm로 한다.

제11조 창던지기의 도움닫기주로는,

- 1) 너비는 4m로 하고 길이는 최대 36.50m 이상으로 한다.
- 2) 트랙 주로에서의 도움닫기주로의 레벨 허용경사도는, 너비쪽으로 1/100(1%)이하, 던지는 방향으로 20m 내리막 경사도는 1/1000(0.1%)로 한다.(제187조 9항)
- 3) 원호는 규정대로 포장(백색)하여 명시한다.(반지름은 8m).
- 4) 원호로부터 8m이내의 두께는 최대 20mm로 한다.

제12조 용구 및 기구는 “육상경기장 공인에 관한 세칙” 제17조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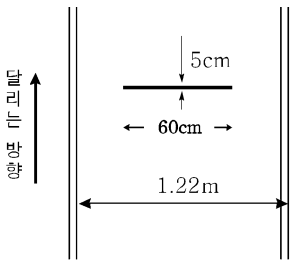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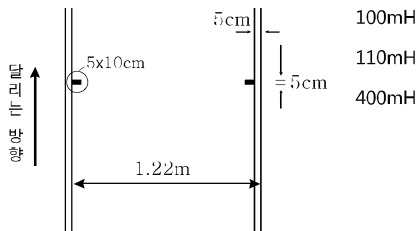
제13조 경기대회의 주최자는 합성 포장재의 두께를 개최요강 또는 프로그램(운영매뉴얼)등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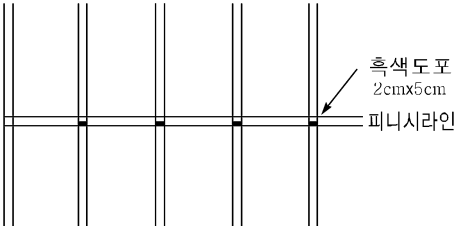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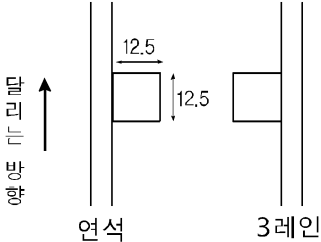
제14조 평탄성 및 배수의 표면은 경기지역의 한정된 수준에서 4m 수평자 아래에 6mm를 초과하는 높은 지점이나 함몰 지점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m 아래에서 함몰은 3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계단 모양의 불규칙적인 현상은 1mm 높이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주로 표면의 결 무늬 높이를 초과하는 물은 육상경기의 경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물로 완전히 덮어 있을 때 20분 동안 완전히 방수했을 때 남은 물의 깊이가 표면 결의 깊이를 초과하는 곳이 합성 포장재 바닥 표면의 어느 부분에도 없어야 한다.

제15조 합성포장재 공인육상경기장 보수(덧씌우기)는 합성포장재를 3-4mm를 갈거나 깎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함몰 또는 돌출된 부분이 전체면적에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최종 덧씌우기(4mm이상)한 두께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또는 국내 KS로 승인받은 제품으로 13mm이상을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사항에 대한 보수도 이루어 질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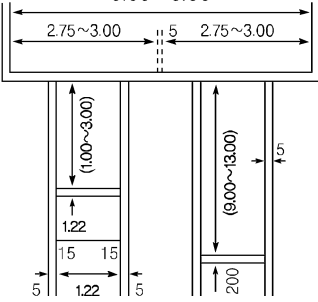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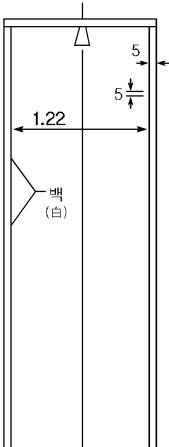
- 덧씌우기 시공 전·후 본 연맹에 자문(확인)을 받는다.
(신설경기장과 완전보수시에는 아스팔트포장 후 레벨 확인을 받는다.)
- 손상된 합성포장재 바닥을 새로운 자재로 바꾸는 완전 개축작업
- 부분적으로 해진 지역을 교체하는 부분 수리작업
- 동일한 합성포장재 지재로 덧대거나 봉합하는 보수작업
- 특별히 손상된지역을 부분적으로 덧대는 작업
- 합성포장장 시트제품(롤)은 덧씌우기가 불가능 하므로 전체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종합국제대회(국제육상경기연맹 주최대회 포함) 개최 시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제품으로 합성포장재를 포설하여야 하며, 클래스 1(물성검사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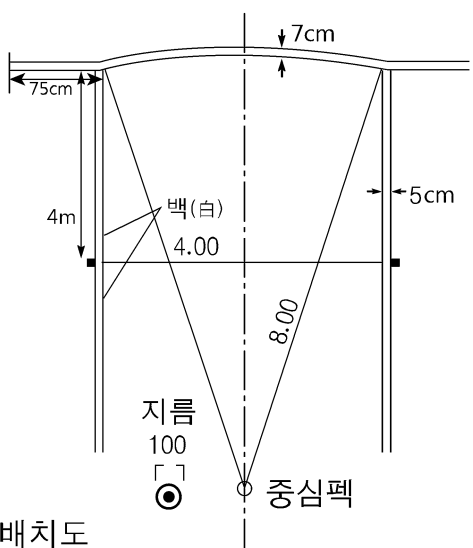
합성포장재 트랙 레인-마킹 색상 표준표

번호	항 목	표시색
1	트랙의 각 레인라인	백 색
2	80m, 100m, 200m, 400m, 1,500m, 100mH, 110mH, 400mH의 각 스타트 라인과 피니시 라인	백 색
3	5,000m, 10,000m, 2,000mSC, 3,000mSC 스타트라인	백 색
4	800m의 브레이크라인	녹 색
5	800m의 각 스타트 라인	녹 색
6	4×400m 릴레이레이스의 스타트 라인	청 색
7	가속 마크 4×100mR 	청색
8	허들의 위치 	황 색 청 색 녹 색

번호	항 목	표시색
9	3,000mSC 구간통과기록용 위치는 정삼각형 마크로 한다. (1변의 길이는 100mm)	백 색
10	피니시 라인 앞쪽에 레인 번호를 도포한다.	백 색
11	피니시라인 사진판정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피니시라인과 라인 이 교차 하는 지점에다 각각 흑색을 도장한다. 교차지점 흑색도포  흑 색	흑 색
12	3,000m SC 이동허들 위치 표시 마크  청 색	청 색

번호	항 목	표시색
13	테이크오버 존 4 X 100 mR 탈리는 방향 ↑ 출입	황 색
14	4 X 400 mR 탈리는 방향 ↑ 레인라인 레인라인	청 색
15	레인 번호 곡선 직선 2x5cm 2.75 100 1.400 500 피니시라인 연석 레인라인 레인라인	백 색

번호	항 목	표시색
16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의 도움닫기주로 5.50~6.00 	백 색
17	장대높이뛰기 도움닫기주로 	백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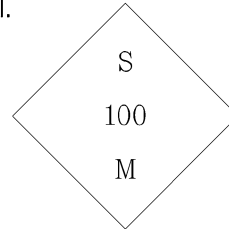
번호	항 목	표시색
18	창던지기 도움닫기 주로(실선)  배치도	백 색

합성 포장재 트랙 경기장 주요 POINT 표식타일

1. 직선 코스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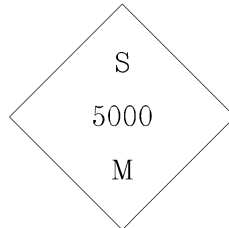
종 목	스타트 포인트	종 목	스타트 포인트
80M	S. 80M	100M	S. 100M
200M	S. 200M		

예.



2. 오픈코스 종목

종 목	스타트 포인트
1,000M	S. 100M
1,500M	S. 1,500M
3,000M	S. 3,000M
5,000M	S. 5,000M
10,000M	S. 10,0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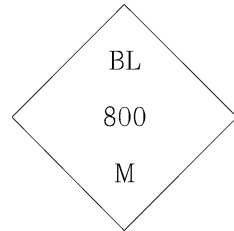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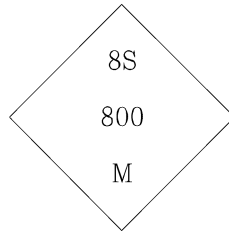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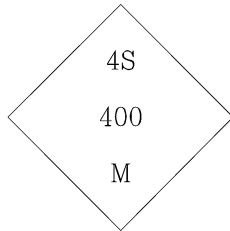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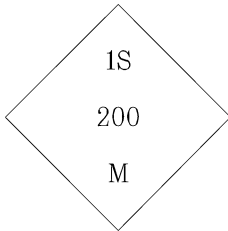
25mm

25mm

t=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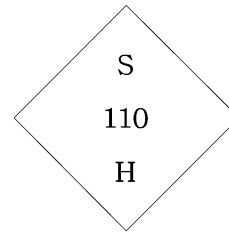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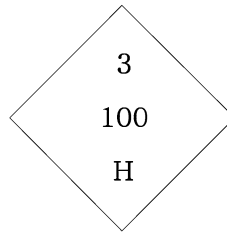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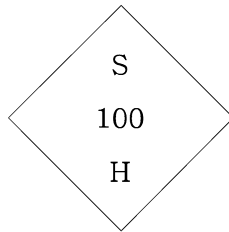
3. 개별 코스 종목

종 목	스타트 포인트(각 레인)								브레이크라인 포인트
	1	2	3	4	5	6	7	8	
200M	1S,200M	2S,200M	3S,200M	4S,200M	5S,200M	6S,200M	7S,200M	8S,200M	
400M	1S,400M	2S,400M	3S,400M	4S,400M	5S,400M	6S,400M	7S,400M	8S,400M	
800M	1S,800M	2S,800M	3S,800M	4S,800M	5S,800M	6S,800M	7S,800M	8S,800M	BL,8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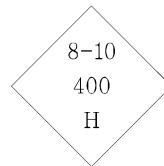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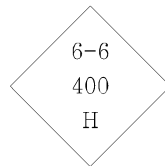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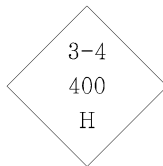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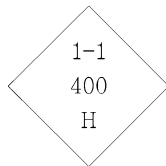
4. 허들레이스(100mH, 110mH)

종 목	S. Point	허들설치 포인트									
		1	2	3	4	5	6	7	8	9	10
100MH	S, 100MH	1-100MH	2-100MH	3-100MH	4-100MH	5-100MH	6-100MH	7-100MH	8-100MH	9-100MH	10-100MH
110MH	S, 110MH	1-110MH	2-110MH	3-110MH	4-110MH	5-110MH	6-110MH	7-110MH	8-110MH	9-110MH	10-110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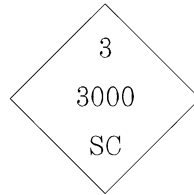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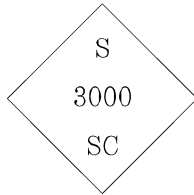
5. 허들레이스(400mH)

허들	각 레인							
	1	2	3	4	5	6	7	8
1허들	1-1, 400MH	2-1, 400MH	3-1, 400MH	4-1, 400MH	5-1, 400MH	6-1, 400MH	7-1, 400MH	8-1, 400MH
2허들	1-2, 400MH	2-2, 400MH	3-2, 400MH	4-2, 400MH	5-2, 400MH	6-2, 400MH	7-2, 400MH	8-2, 400MH
3허들	1-3, 400MH	2-3, 400MH	3-3, 400MH	4-3, 400MH	5-3, 400MH	6-3, 400MH	7-3, 400MH	8-3, 400MH
4허들	1-4, 400MH	2-4, 400MH	3-4, 400MH	4-4, 400MH	5-4, 400MH	6-4, 400MH	7-4, 400MH	8-4, 400MH
5허들	1-5, 400MH	2-5, 400MH	3-5, 400MH	4-5, 400MH	5-5, 400MH	6-5, 400MH	7-5, 400MH	8-5, 400MH
6허들	1-6, 400MH	2-6, 400MH	3-6, 400MH	4-6, 400MH	5-6, 400MH	6-6, 400MH	7-6, 400MH	8-6, 400MH
7허들	1-7, 400MH	2-7, 400MH	3-7, 400MH	4-7, 400MH	5-7, 400MH	6-7, 400MH	7-7, 400MH	8-7, 400MH
8허들	1-8, 400MH	2-8, 400MH	3-8, 400MH	4-8, 400MH	5-8, 400MH	6-8, 400MH	7-8, 400MH	8-8, 400MH
9허들	1-9, 400MH	2-9, 400MH	3-9, 400MH	4-9, 400MH	5-9, 400MH	6-9, 400MH	7-9, 400MH	8-9, 400MH
10허들	1-10, 400MH	2-10, 400MH	3-10, 400MH	4-10, 400MH	5-10, 400MH	6-10, 400MH	7-10, 400MH	8-10, 400MH



6. 3,000mSC

S. Point	1 허들위치	2 허들위치	3 허들위치	5 허들위치
S. 3000mSC	1. 3000mSC	2. 3000mSC	3. 3000mSC	5. 3000mS,C



7. 릴레이 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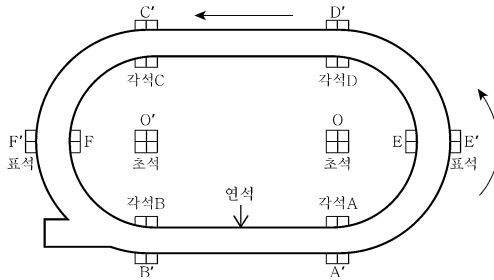
종목	스타트 포인트	각 레인								
		1	2	3	4	5	6	7	8	
4x100mR	1	스타트 포인트	1S, 4×100mR	2S, 4×100mR	3S, 4×100mR	4S, 4×100mR	5S, 4×100mR	6S, 4×100mR	7S, 4×100mR	8S, 4×100mR
	2 구 간	가속마크	1-1AM 4×100mR	2-1AM 4×100mR	3-1AM 4×100mR	4-1AM 4×100mR	5-1AM 4×100mR	6-1AM 4×100mR	7-1AM 4×100mR	8-1AM 4×100mR
		존 입구라인	1-1-1 4×100mR	2-1-1 4×100mR	3-1-1 4×100mR	4-1-1 4×100mR	5-1-1 4×100mR	6-1-1 4×100mR	7-1-1 4×100mR	8-1-1 4×100mR
		스크래치 라인	1-1-C 4×100mR	2-1-C 4×100mR	3-1-C 4×100mR	4-1-C 4×100mR	5-1-C 4×100mR	6-1-C 4×100mR	7-1-C 4×100mR	8-1-C 4×100mR
		존 출구라인	1-1-O 4×100mR	2-1-O 4×100mR	3-1-O 4×100mR	4-1-O 4×100mR	5-1-O 4×100mR	6-1-O 4×100mR	7-1-O 4×100mR	8-1-O 4×100mR
		가속마크	1-2AM 4×100mR	2-2AM 4×100mR	3-2AM 4×100mR	4-2AM 4×100mR	5-2AM 4×100mR	6-2AM 4×100mR	7-2AM 4×100mR	8-2AM 4×100mR
	3 구 간	존 입구라인	1-2-1 4×100mR	2-2-1 4×100mR	3-2-1 4×100mR	4-2-1 4×100mR	5-2-1 4×100mR	6-2-1 4×100mR	7-2-1 4×100mR	8-2-1 4×100mR
		스크래치 라인	1-2-C 4×100mR	2-2-C 4×100mR	3-2-C 4×100mR	4-2-C 4×100mR	5-2-C 4×100mR	6-2-C 4×100mR	7-2-C 4×100mR	8-2-C 4×100mR
		존 출구라인	1-2-O 4×100mR	2-2-O 4×100mR	3-2-O 4×100mR	4-2-O 4×100mR	5-2-O 4×100mR	6-2-O 4×100mR	7-2-O 4×100mR	8-2-O 4×100mR
	4 구 간	가속마크	1-3AM 4×100mR	2-3AM 4×100mR	3-3AM 4×100mR	4-3AM 4×100mR	5-3AM 4×100mR	6-3AM 4×100mR	7-3AM 4×100mR	8-3AM 4×100mR
		존 입구라인	1-3-1 4×100mR	2-3-1 4×100mR	3-3-1 4×100mR	4-3-1 4×100mR	5-3-1 4×100mR	6-3-1 4×100mR	7-3-1 4×100mR	8-3-1 4×100mR

종목	스타트 포인트	각 레인								
		1	2	3	4	5	6	7	8	
	4 구 간	스크래치 라인	1-3-C 4×100mR	2-3-C 4×100mR	3-3-C 4×100mR	4-3-C 4×100mR	5-3-C 4×100mR	6-3-C 4×100mR	7-3-C 4×100mR	8-3-C 4×100mR
			존 출구라인	1-3-O 4×100mR	2-3-O 4×100mR	3-3-O 4×100mR	4-3-O 4×100mR	5-3-O 4×100mR	6-3-O 4×100mR	7-3-O 4×100mR
4x400mR	1	S. Point	1S, 4×400mR	2S, 4×400mR	3S, 4×400mR	4S, 4×400mR	5S, 4×400mR	6S, 4×400mR	7S, 4×400mR	8S, 4×400mR
	2 구 간	존 입구라인	1-1-1 4×400mR	2-1-1 4×400mR	3-1-1 4×400mR	4-1-1 4×400mR	5-1-1 4×400mR	6-1-1 4×400mR	7-1-1 4×400mR	8-1-1 4×400mR
			스크래치 라인	1-1-C 4×400mR	2-1-C 4×400mR	3-1-C 4×400mR	4-1-C 4×400mR	5-1-C 4×400mR	6-1-C 4×400mR	7-1-C 4×400mR
		존 출구라인	1-1-O 4×400mR	2-1-O 4×400mR	3-1-O 4×400mR	4-1-O 4×400mR	5-1-O 4×400mR	6-1-O 4×400mR	7-1-O 4×400mR	8-1-O 4×400mR
	3 구 간	존 입구라인	A1 4×400mR							
		스크래치 라인	AC 4×400mR							
		존 출구라인	AO 4×400mR							

6. 육상경기장에 관한 자료

1) 육상경기장의 구성

공인 경기장은 반드시 초석(礎石), 각석(角石), 표석(標石)이 매설되고 연석으로 트랙과 필드를 나누어서 만들도록 되어 있다.



1주의 거리와 종별

제1종 400m 거리의 허용 공차(公差)+1/10,000이내 각 40mm이내

제2종 400m " "

제3종 400m " "

① 트랙 모양

예상외로 무관심한 것이 트랙의 형(型)이다. 트랙에는 연석을 두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으로 나뉘는데, 주로 단심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단심원(單心圓, 그림 A)

우리나라에는 이 형이 많다. 설계, 시공이 쉽고 선수들도 달리기 쉽다. 유럽지역에도 이 형은 비교적 많다.

② 1주거리의 계산방법(단심원의 경우)

1주의 거리=직선주로거리+곡선주로거리

직선주로거리=초석간(0~0')의 거리×2

[0측 반지름+(30cm 또는 20cm)]×(3.1416)+[0' 측 반지름+(30cm 또는, 20cm)×3.1416]

[주1] 연석이 그라운드 평면보다 5cm 높을 때는 원의 반지름 30cm 가산한다.

[주2] 연석이 그라운드 평면과 같을 때는 원의 반지름 20cm 가산한다.
공인신청이 있으면 본연맹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실측케하여 실측치의
허용공차가 (+)인 경우만 공인하고 (-)인 경우에는 1mm도 공인하지
않는다.

직주로 80m와 반지름 37.898m의 경우 연석이 주로보다 5cm 높을 시
각 레인의 거리계산(반지름을 계산상의 숫자로 계산한 경우)

1레인 (반원의 길이) (직선의 길이) (반주의 길이)
(1주의 길이)
 $(37.898+0.3) \times 3.1416 = 120.00283 + 80.000 =$
 $200.00283 \times 2 = 400.0057$

2레인 $(37.898+1.22+0.2) \times 3.1416 = 123.52142 + 80.000 =$
 $203.52142 \times 2 = 407.0428$

3레인 $(37.898+2.44+0.2) \times 3.1416 = 127.35418 + 80.000 =$
 $207.35418 \times 2 = 414.7083$

4레인 $(37.898+3.66+0.2) \times 3.1416 = 131.18693 + 80.000 =$
 $211.18693 \times 2 = 422.3738$

5레인 $(37.898+4.88+0.2) \times 3.1416 = 135.01968 + 80.000 =$
 $215.01968 \times 2 = 430.039$

6레인 $(37.898+6.10+0.2) \times 3.1416 = 138.85243 + 80.000 =$
 $218.85243 \times 2 = 437.7049$

7레인 $(37.898+7.32+0.2) \times 3.1416 = 142.68518 + 80.000 =$
 $222.68518 \times 2 = 445.3704$

8레인 $(37.898+8.54+0.2) \times 3.1416 = 146.51794 + 80.000 =$
 $226.51794 \times 2 = 453.0359$

각 레인의 너비는 1m22이며 연석이 5cm 높은 경우에는 30cm 바깥 지점을 계측점으로 하여 2레인 이상은 너비 5cm의 백선이므로 백선의 가장자리에서 20cm 떨어진 곳이 계측점이 된다.

그러나 제3종 경기장에서 연석이 주로의 높이와 동일할 경우에는 20cm 바깥지점이 계측점이 된다.

5사 6입하여 수정한 각 레인의 차

1레인 - 2레인	반주	3m518	1주	7m037
2레인 - 3레인	반주	3m833	1주	7m667
3레인 - 4레인	반주	3m833	1주	7m667
4레인 - 5레인	반주	3m833	1주	7m667
5레인 - 6레인	반주	3m833	1주	7m667
6레인 - 7레인	반주	3m833	1주	7m667
7레인 - 8레인	반주	3m833	1주	7m667

(2레인은 3.518m, 3레인 이후는 3.833m를 가산한다.)

③ 각 레인의 부체각 계산

직선의 경우 거리는 줄자로 계측되지만, 원호인 경우에는 부체각으로 계측할 수 밖에 없으므로 반원의 거리를 180°로 나누어 1m의 각도를 구해둔다. 반원이 제1레인이 120m인 경우 제2레인은 1레인과 2레인의 반원의 차가 3m518이며 제3레인부터 반원의 차가 3m833이므로 각각 더해서 180°를 나눈다.

2) 합성포장재 시설

현대적 합성포장재 시설은 육상경기선수의 역학적 특성과 가장 잘 조화되도록 고안되어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단거리 선수에게 필요한 표면과 명확히 다르다. 다른 자재에 비해 어느 표면이 한 종목의 경기보다 더 유리한지, 그 표면의 역학적 특성을 달리하게 하기 위해 기술은 존재한다. 명백히 모든 경기를 치르는 주요한 육상경기 대회에서는 어느 특정 경기의 선수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러한 트랙의 “조절”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표면 처리 시스템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여러 선수들의

다양한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인 방법으로 역학적 특성의 “균형”을 제공해야 한다. IAAF가 명시하고 있는 성능 조건은 모든 육상경기 선수의 필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설들이 주요 국제 경기를 위한 것일 때 모든 “준비운동장” 트랙의 표면은 또한 주경기장 트랙의 표면과 동일한 역학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두 가지의 다른 공사 방법이 있고 육상경기에 이용 가능한 몇 가지 다른 포장재 시설 시스템의 유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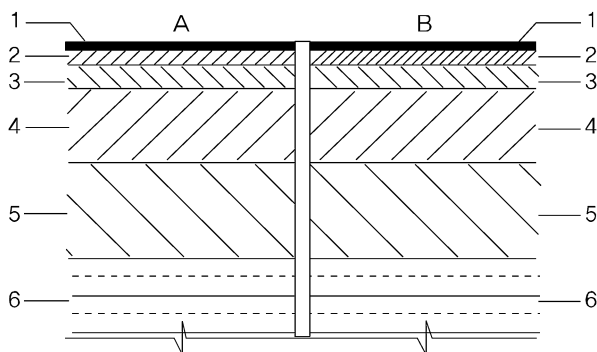
대부분의 이러한 시스템들은 상당수의 다른 제조업체와 시공 업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표면처리 제품의 수도 아주 많다. 모든 합성포장재 표면은 기초 공사에 대한 훌륭한 기준에 의존한다. 이 기초 공사에 대한 기준은 성공적인 트랙의 설치와 트랙의 내구성에 대한 선결조건이다.

포장재질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는데 일부 시스템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져서 두루마리 형태로 현장에 운반하여 기초 위에 접착제로 붙인다.

일부는 원료들을 현장에서 기계로 섞어 까는 형태로 현장에서 제작한다. 다른 것은 이 두 가지 시스템들을 섞어 만든다. 각각의 형태는 몇몇 강점과 약점을 가진다.

라텍스가 결합된 합성포장재는 시장에 나와 있지만 현재 한 제품만이 IAAF 장력 특질 필수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런 포장재는 국제경기가 아닌 대회나 훈련 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모든 다른 IAAF의 필수조건, 특히 두께와 관련된 필수요건이 맞고 IAAF 규칙을 다 준수할 경우에 가능하다.

선수들의 안전과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스포츠 경기장 포장재 표면의 필수요건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표면의 지속적인 관리는 투자액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합성포장 기술적인 자료의 세부사항과 제한을 설치하는 동안 끊임없이 감시 감독하는 일은 표면의 수명과 만족할만한 특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합성포장재 표면의 기준 절단 부분

A 물 투과성(왼쪽), 그리고 B 비투과성(오른쪽)

A 층 표시

1. 합성포장재 표면
2. 개방등급 아스팔트콘크리트 마감 층
3. 밀집등급 아스팔트콘크리트로 보정한 층
4. 기초 - 분쇄한 돌 또는 자갈
5. 하부 기초 - 분쇄한 돌 또는 자갈
6. 선택적 내부 또는 2차적 등급

B 층표시

1. 인조고무
2. 밀집등급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감 층
3. 밀집등급,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감 층
4. 기초 - 분쇄한 돌 또는 자갈
5. 하부 기초 - 분쇄한 돌 또는 자갈
6. 선택적 내부 또는 2차적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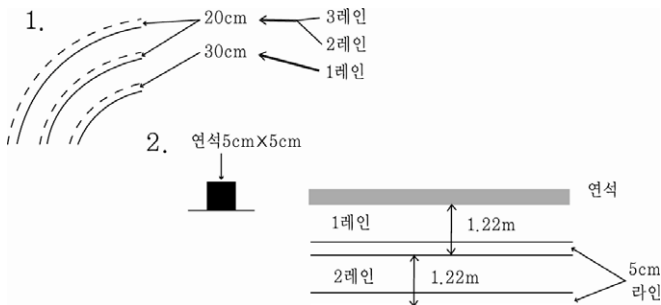
■ 합성 포장재 재료

합성포장후 탄력성 경기장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이런 유형의 화학제품은 재질적으로 다른 탄력성재료와 다르며 아스팔트를 함유하지 않고 특수한 탄성을 보유한다. (합성포장재 포장)이라는 것이 이것인데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에서 채택된 이래 뮌헨-몬트리올에서도 각국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도 1975년 이후부터 선수들이 기록향상을 목적으로 합성포장재 포장(이하 합성 포장재라 함)의 보급개발이 국내 메이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설경비는 매우 비싸지만 일반적인 사용 상황으로는 경기장과 수명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합성 포장재에 관해서는 육상경기연맹이 가장 먼저 공인세칙을 제정하고 그 경기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사항을 지도하고 있다. 합성 포장재는 국내외에서 많이 생산되지만 최근에는 기후풍토에 맞는 국산 포장재료가 많이 개발되었다. 두께등도 세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층재료 등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선수들의 의견에 따르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 필드 부문의 경기장에서도 이것을 쓰는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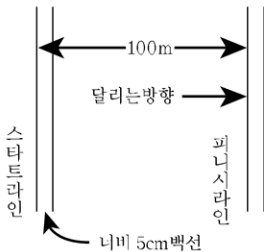
3) 라인을 긋는 방법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주거리의 계측점은 안쪽의 연석 높이가 그라운드보다 5cm 높을 때는 연석의 측면으로부터 바깥쪽 30cm 지점이 측정이 된다. 연석이 없는 제2레인 이후의 계측점은 20cm지점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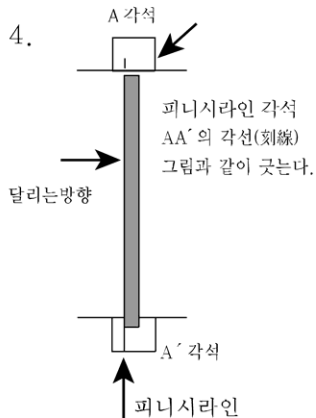


레인 라인을 긋는 방법은 규칙 제160조에 명시되어 있지만[그림2]의 화살표대로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 직선인 경우 스타트라인이나 피니시라인은 그림(3,4)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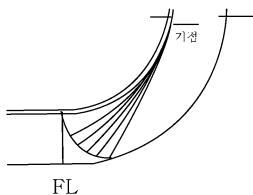


곡선부에서 스타트 라인을 긋는 경우에는 각 선수들은 각 접점을 기준으로 등거리가 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스타트라인은 원호가 된다. 이 경우에 원호의 각점은 트랙의 초석 0~0'의 연장선의 연석 측면으로부터 30c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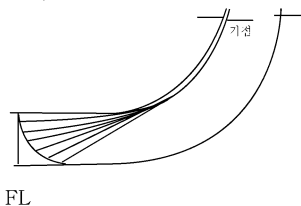
원호형 스타트 라인을 그을 때에는 연석에서 30cm 떨어진 곳에, 되도록이면 간격이 좁게 못이나 핀을 박은 뒤, 줄자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호를 그려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정확하게 계측을 함으로써 정규 경기장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원호형 스타트 라인을 사용하는 경기는 오픈의 경우, 1,500m, 5,000m, 10,000m, 마라톤, 경보 등이 있다(그림5)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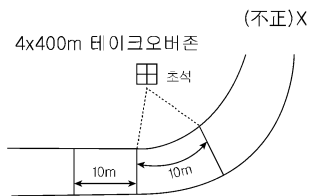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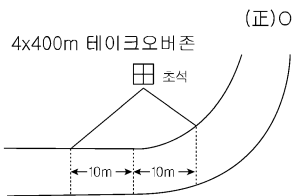


세퍼릿코스를 쓰지 않는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라인은 트랙의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 선수들이 똑같은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원호를 그려야 한다.

스타트 라인이 원호형인 경우는 3,000mSC, 마라톤, 경보레이스 등이 있다.

800m 레이스의 경우 제2곡주로 끝에서부터 세퍼릿 코스를 벗어나 오픈이 되는 경우, 곡주로의 끝을 나타내는 트랙의 양측에 기를 세운 뒤 트랙을 가로질러 브레이크라인을 긋는다.(규칙 제163조5항)

릴레이 레이스의 테이크오버 존을 긋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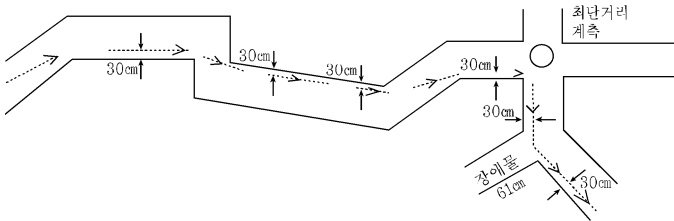
규칙 제170조 2항에 명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스크래치라인과 존라인은 반드시 백색선을 그어야 한다. 존라인의 입구선은 존 내에 포함되나 출구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4×100mR에서는 스크래치라인을 반드시 그어야 한다. 또한 4×400mR의 테이크오버 존라인은 앞의 그림 왼쪽과 같이 긋는다. 오른쪽 그림처럼 긋는 것은 잘못이므로 주의할 것.

스크래치라인은 존의 가운데 10m의 간격의 평행선으로 그어야 한다. ||

4) 로드레이스 코스 측측

여기에 관해서는 규정집의 「로드레이스 코스 및 로드경보경기 공인에 관한 세칙」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측측법으로는 최단거리 측측법을 쓴다.



대한육상연맹은 이 측측법을 채용하고 있다. 유럽도 마라톤 코스를 비롯해 대체로 이 방법을 쓴다.

어떤 경우이든 주자에게 불리하다. 측측은 도로 바깥 끝선에서 30cm (장애물이 있을 때는 61cm)안쪽을 측측한다.

[주] 본 연맹에서는 날로 폭주하는 차량관계로 국제로드레이스 대회 외의 국내 로드레이스대회를 차도 주행 1차선만 사용토록 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선수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의 측측은 물론 1차선 내의 최단거리 측측법(A) 적용.

5) 용기구검정 및 경기장공인, 포설확인 절차

① 용기구 검정 절차

- 가) 용기구 업체에서 물품 제작 후 공문으로 검정 신청
- 나) 시설위원회 파견(출장)비용은 본 연맹에서 지출함

② 경기장 포설확인 신청절차

- 가) 설계도면 자문(경기구역, 전기/통신, 사진판독실 등 제반시설)
- 나) 토목 후 아스팔트 레벨 자문 (아스팔트 덧씌우기의 경우 5cm

포설 후 레벨 자문)

- 합성포장재 전체 교체 시에는 반드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합성포장재 포설 후 확인

- 라인마킹 등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 제1장 제1조 (1) 종합경기장 종별규정 참조
- 덧씌우기 경우 시공 전·후 자문(확인)을 받은 후 포설

라) 상기 내용에 따른 신청은 관계기관에서 시·도육상연맹을 경유(공문으로)해서 본 연맹으로 문서로 신청

마) 시설위원회 파견(출장)비용은 본 연맹에서 지출함

③ 경기장 공인신청 절차

가) 공인(신규 및 재공인)에 따른 자문

나) 공인신청은 관계기관에서 시·도육상연맹을 경유(공문으로)해서 본 연맹으로 문서로 신청

다) 관계기관에서는 본 연맹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에 준하여 사전 준비 후 공인 신청

라) 시설위원회 파견(출장)비용은 본 연맹에서 지출함

마) 신규 경기장에서 대회개최 시 3개월 전에 공인신청

「부 칙」

육상경기장 시설에 있어,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을 국제 육상연맹 시설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KAAF 경기장 공인 시스템 - 측정 보고서양식

2010년 3월 19일 수정
2013년 2월 26일 수정
2014년 7월 25일 수정
2016년 1월 12일 수정

측정보고는 KAAF 트랙 공인증이 필요한 모든 트랙경기장에 필수적인 항목이다.

KAAF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기 위해서 트랙 표면 재질 품목은 현 KAAF 제품 공인을 받아야 하며 KAAF 1종 트랙공인을 받기위해서는 현장 테스트와 KAAF 트랙시설검사세부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트랙

트랙 및 경기장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시도명 : _____

전화번호/팩스번호 : _____

트랙

계측기관 : _____

계측인 성명 : _____

자격증 : _____

주 소 : _____

전화번호/팩스번호 : _____

측정장치 :

경위의(經緯儀): _____

개 수: _____

거리미터기: _____

개 수: _____

측정장치 공인증 첨부 요망

측정일자 : _____

날씨 : _____

대기압 : _____

온도 / 기압 : _____

일반사항 : 필요사항 기입

테스트 방법 자세히 기입

20m 이상의 거리는 Electro optical(전기광학장치) 장치로 계측

각도는 경위의로 측정

A. 경기장 등급

1. 경기장 시설

대	상	점검내용	기 준	종 별
400m 표준트랙				
곡선레인 수			8	I
직선 레인 수			8	I
장애물레이스를 위한 물웅덩이	외측 내측		1	I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 도움닫기주로	양쪽 끝 착지장소 한쪽 착지장소 중앙 착지장소		2	I
높이뛰기 시설			2	I
장대높이뛰기 도움닫기 주로	외측 (박스가 양쪽끝에) 내측 (박스가 가운데에)		2	I
포환던지기 시설			2	I
원반 및 해머던지기 공용 시설			1	I
원반던지기 시설			1	I
창던지기 시설			2	I

2. 준비운동장

대 상	점검내용	기 준	종 별
준비운동장(Warm-up Area)	□ Y □ N		
트랙길이 (size)		400m	I
곡선레인 수		4	I
직선레인 수		6	I
주경기장트랙과 동일한 트랙표면 재질	□ Y □ N		I
포환던지기 시설		2	I
원반던지기 시설		1	I
해머던지기 시설		1	I
창던지기 시설		1	I
보조공간(물리치료실, 선수휴게실 등)에 대한 조항	m ²	예	I
충분한 관중시설		예	I

물리치료 및 경기와 경기사이 선수를 위한 휴식공간을 위한 부대시설은 1종경기장일 경우 최소 250m²가 되어야 한다.

B. 400m 표준 트랙

1. 트랙설계도 (레이아웃)

설계 형태

대 상	설계길이(Design)	KAAF 표준길이
반지름	m	37,898m, 36,500m
중앙지점간 거리 : ($Cp_1 - Cp_2$)	m	80m, 84,390m
안쪽 커브 높이 :	m	0.05m~0.065m
트랙길이(계획안) :	m	400,001m

타원형레인 수개

단거리 레인(본부석쪽) 갯수개 길이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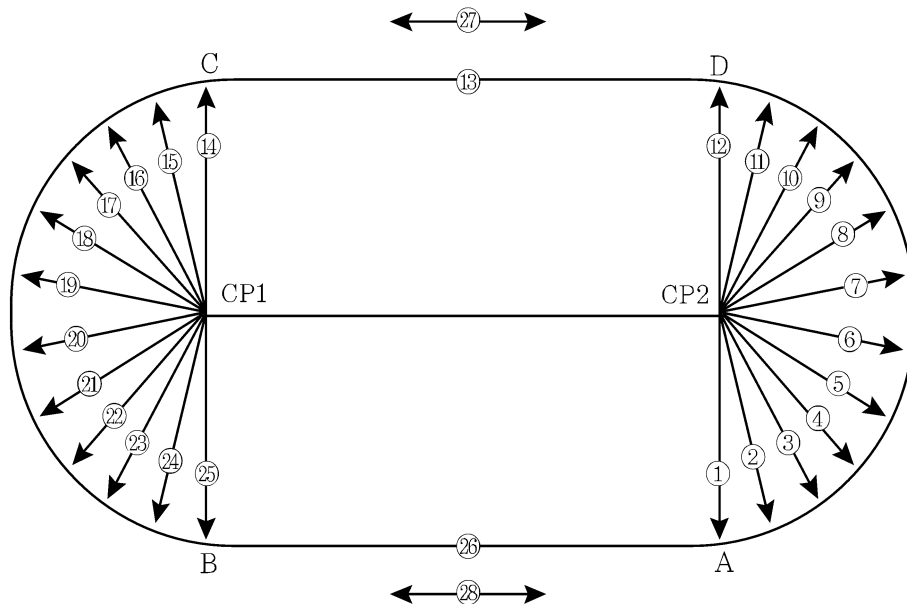
단거리 레인(본부석반대쪽) 갯수개 길이m

레인너비(계획상) : m 1,22m(± 0.01 m)

[주] 달리는 방향으로 각 레인 오른쪽 라인은 각 레인 너비에 포함된다.

트랙너비:(계획상) m (9.76m)

안쪽 가장자리(kerb) 재질 (예 : Alu-plastic)



400m 표준트랙의 28포인트 컨트롤 계획

28 포인트 컨트롤 계측 기록

L = 반지름 1-12와 14-25의 계측거리 ($\pm 0.005\text{m}$ 권장)

R = 각 레인(R1, R2, R3,.....)의 예상 반지름(m)

D = 예상 수치(mm), (L-R), (S-M)로부터의 편차

S = 직선 13과 26의 계측 길이

M = 예상 직선길이(m)

A = 측정 27과 28 : 직선 정렬

1~26에 대한 예상수치로부터 허용편차 : $\pm 0.005\text{m}$

27~28에 대한 일직선으로부터 허용편차 : $\pm 0.01\text{m}$

트랙길이의 허용오차 : 최대 $+0.040\text{m}$

No	Angle	Lane 1		Lane 2		Lane 3		Lane 4		Lane 5		Lane 6		Lane 7		Lane 8		Lane 9	
		R1=.....		R2=.....		R3=.....		R4=.....		R5=.....		R6=.....		R7=.....		R8=.....		R9=.....	
		L	D	L	D	L	D	L	D	L	D	L	D	L	D	L	D	L	D
	gON	m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mm
1	0,000																		
2	18,200																		
3	36,400																		
4	54,500																		
5	72,700																		
6	90,900																		
7	109,100																		
8	127,300																		
9	145,500																		
10	163,600																		
11	181,800																		
12	200,000																		
Averaged 1-12																			
X_ 3,1416																			
14	0,000																		
15	18,200																		
16	36,400																		
17	54,500																		
18	72,700																		
19	90,900																		
20	109,100																		
21	127,300																		
22	145,500																		
23	163,600																		
24	181,800																		
25	200,000																		
Averaged 14-25																			
X_ 3,1416																			
13	S																		
26	S																		
27	A																		
28	A																		

3.2 길이 계산 (안쪽 경계)

	거 리	각 도	길 이
평균 반지름 곡선부 A-D	m	200.000gON	m(+)
평균 반지름 곡선부 C-B	m	200.000gON	m(+)
직선 A-B (26)	N/A		m(+)
직선 C-D (13)			m(+)
안쪽 경계 길이			m(=)

트랙길이로부터의 편차

1레인	거 리	각 도	길 이
예상수치로부터의 평균편차 C-B	m	200.000gON	m(+)
예상수치로부터의 평균편차 A-D	m	200.000gON	m(+)
직선 A-B (26) (S)	N/A		m(+)
직선 C-D (13) (S)			m(+)
안쪽 경계 길이			m(=)

3.3 트랙거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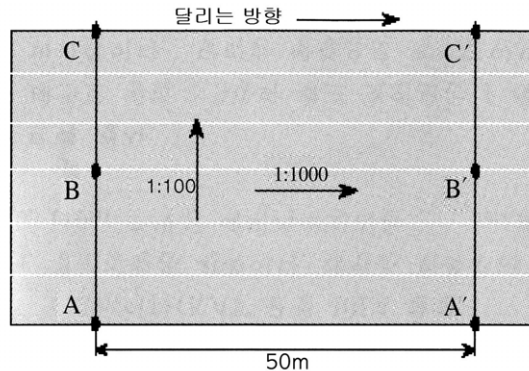
안쪽 경계 길이		m(+)
이론적 레이스선(30cm)	$0.300\pi \times 2$	1.885m(+)
이론적 레이스거리(TRD)		m(=)

3.4 길이 검정

1. 트랙의 안쪽 길이는 400m보다 더 길다.
2.m(TRD-400m)의 계산 오차는 KAAF 트랙/필드시설매뉴얼에 명시된 허용오차 0.040m 이내여야 한다.
3. 1 레인 측정은 커브로부터 바깥쪽 30cm이다. 다른 레인의 길이는 라인의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20cm이다(KAAF 규칙 160조2항 참조).
4. 레이스방향은 왼손이 트랙 안쪽을 향하도록 한다. 레인은 달리는 방향에 대하여 왼쪽에서부터 제1레인으로 하고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KAAF 규칙 163조1항 참조).
5. 110m 스타트라인 전방거리는m(최소 3m)이다. 피니시라인 후방 직선거리는m(최소 17m)이다.

4. 트랙 경사

테스트 방법 : 3개의 체크 포인트는 1 레인 안쪽 선과 트랙 중심선, 그리고 외곽 레인의 바깥쪽이다. 달리는 방향으로 체크포인트간의 거리는 50m이다.



4.1 측면 경사

→ 트랙 측면 경사의 최대 한도는 100분의1(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트랙 측면경사는 레인 안쪽으로 향하게 한다(KAAF 규칙 160.6 참조)

번 호	위 치	경 사 도(%)		
		A-B	B-C	A-C
1	피니시라인			
2	50m			
3	100m			

번 호	위 치	경 사 도(%)		
		A-B	B-C	A-C
4	150m			
5	200m			
6	250m			
7	300m(스타트100m)			
8	350m			

결 론

트랙 측면경사는 레인 안쪽으로 향한다.예 아니오

트랙 측면경사는 KAAF 기준에서 1.0% 미만이다.예 아니오

4.2 전체 경사

→ 달리는 방향으로 트랙의 전체경사는 1,000분의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번 호	위 치	경 사 도(%)		
		A-A'	B-B'	C-C'
1	피니시라인-50m			
2	50m-100m			
3	100m-150m			

번 호	위 치	경 사 도(%)		
		A-A'	B-B'	C-C'
4	150m-200m			
5	200m-250m			
6	250m-300m			
7	300m-350m			
8	350m-400m			
9	110m 스타트-100m 스타트-피니시			
10	110m 스타트 - 피니시			

(KAAF 규칙 160조6항 참조)

결론 : 스타트에서 피니시까지 달리는 방향으로 트랙의 전체경사는 KAAF 기준에서 1/1,000(0.1%) 미만이다.
.....예 야부

5. 트랙 마킹(국제기준)

모든 레인은 백선으로 표시한다.예 야부

모든 스타트라인과 (곡선스타트라인 제외) 피니시라인은 레인라인에 직각으로 표시한다.

.....예 야부

모든 마킹의 너비는 5cm이다.

.....예 아니오

스타트라인 바로 직전 각 레인은 최소 크기 50cm로 번호를 표시하며 레이스방향으로 판독한다.

.....예 아니오

모든 거리는 시계방향으로 측정하되 스타트라인에서 가까운쪽 피니시라인의 가장자리, 피니시라인에서 먼쪽 스타트라인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잰다(KAAF규칙160조3항 참조).....예 아니오

800m 경기에서 사용하는 계단식 스타트는 선수가 첫 번째 곡선에서 개별레인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스타트라인의 위치와 스타트라인 다음 직선레인 초반부에 있는 5cm 원호의 녹색브레이크라인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예 아니오

곡선 스타트라인을 측정할 때는 모든 선수들이 피니시라인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서 스타트할수 있도록 한다.
.....예 아니오

3,000m, 5,000m, 10,000m의 별도 원호형 스타트라인은 모든 선수들이 동일한 거리를 레이스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스타트라인 다음 직선레인 초반부에서 4레인과 5레인사이에 표시한 5cmx5cm의 녹색마크는 바깥쪽에서 스타트하는 선수들이 안쪽에서 스타트하는 선수들과 만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예 아니오

4x400m스타트라인은 KAAF 규칙에 따른다(비고 : 국제릴레이레이스참조).....예 아니오

5.1 국제경기대회 스타트

다음은 트랙에 표시하는 국제경기대회 스타트라인에 관한 내용이다.

개별레인 레이스

100m	흰 색	직 선	개별레인	예 아니오
110m		직 선		예 아니오
200m		곡 선		예 아니오
400m		곡 선		예 아니오
800m	흰색/녹색/흰색	곡 선	개별레인에서 첫 번째 곡주로 끝에서	예 아니오
4 × 400m	흰색/청색/흰색	곡 선	개별레인에서 세 번째 곡주로 끝에서	예 아니오

곡선 스타트

800m	흰 색	1-8레인	2 바퀴		예 아니오
2,000m			5 바퀴		예 아니오
10,000m			25 바퀴		

2,000m	흰 색	바깥쪽 스타트	5바퀴	5레인에서 첫 번째 곡주로	예 아니오
10,000m		5-8레인	25바퀴		예 아니오

1,000m	흰 색	바깥쪽 스타트	2바퀴+200m	5레인에서 첫 번째 곡주로	예 아니오
3,000m			7바퀴+200m		예 아니오
5,000m		5-8 레인	12바퀴+200m		

1,500m	흰색	1-8레인	3 바퀴 + 300m	예 아니오
--------	----	-------	-------------	-------

장애물 레이스

2,000m	흰 색	1-8레인	→ 장애물레이스 트랙	예 아니오
3,000m				예 아니오

5.2 거리계측

레이스거리는 피니시라인에서 먼쪽 스타트라인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스타트라인에서 가까운쪽 피니시라인 가장자리까지 측정한다. (규칙 160조3항)

피니시라인까지 계측거리

스타트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	9레인
100m	m	m	m	m	m	m	m	m	m
110m	m	m	m	m	m	m	m	m	m
200m	m	m	m	m	m	m	m	m	m
300m	m	m	m	m	m	m	m	m	m
400m	m	m	m	m	m	m	m	m	m
800m	m	m	m	m	m	m	m	m	m
4×400m	m	m	m	m	m	m	m	m	m

첫 바퀴 피니시라인(finish line first lap)까지 계측거리

원호스타트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	9레인
1,500m	m	m	m	m	m	m	m	m	m
1000m	m	m	m	m	m	m	m	m	m
3000m									
5000m									
800m	m	m	m	m	m	m	m	m	m
2000m									
10000m									
1000m	m	m	m	m	m	m	m	m	m
3000m									
5000m									
2000m	m	m	m	m	m	m	m	m	m
10000m									

5.3 피니시

레인라인과 피니시라인의 교차지점에서 검은색 마크(Black Marks)(너비 5cm, 길이 2cm)은 사진판정장치와 일직선이 되게 하며 사진판정기 필름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검정색으로 표시한다(KAAF 규칙 165조 15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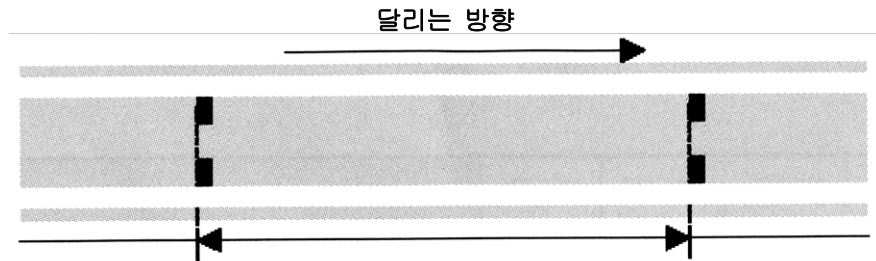
.....예 아니오

왼쪽부터 레인순서를 부여한다.

.....예 아니오

백선은 너비 3cm, 길이 80cm를 피니시라인 전방 1m에 표시한다.

5.4 허들 레이스



허들간 거리는 마커의 앞면에서 앞면까지 계측한다.

허들종목	허들번호 / 피니시라인에서 계측거리									
	10번째	9번째	8번째	7번째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1번째
100m	10.50m	19.00m	27.50m	36.00m	44.50m	53.00m	61.50m	70.00m	78.50m	87.00m
110m	14.02m	23.16m	32.30m	41.44m	50.58m	59.72m	68.86m	78.00m	87.14m	96.28m
400mH	40.00m	75.00m	110.00m	145.00m	180.00m	215.00m	250.00m	285.00m	320.00m	355.00m

다음 허들레이스는 트랙에 표시하며 피니시라인까지의 측정거리는 다음과 같다.

	10	9	8	7	6	5	4	3	2	1
100m	m	m	m	m	m	m	m	m	m	m
110m	m	m	m	m	m	m	m	m	m	m
400mH	m	m	m	m	m	m	m	m	m	m

허들의 위치표시

남자	110mH	파란색	직사각형	10cm x 5cm	예	아니오
여자	100mH	노란색	직사각형	10cm x 5cm	예	아니오
남자/여자	400mH	녹 색	직사각형	10cm x 5cm	예	아니오

각 레인에 배치하는 허들 수는 10대이며 허들간격은 규칙에 명시된대로 따른다(KAAF 규칙 168조 1항)
예 아니오

표시는 각 레인의 왼쪽과 오른쪽에 표시한다. 표시, 크기 색상은 KAAF 표준에 따른다.
예 아니오

5.5 릴레이레이스대회

다음 릴레이레이스대회의 마킹은 트랙에 하며 피니시라인까지의 계측거리는 다음과 같다.

4x100m 릴레이 레이스

테니코오버존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	9레인
제2구간 선수	가속마크: 청색	m	m	m	m	m	m	m	m	m
제2구간 선수	입구선: 황색	m	m	m	m	m	m	m	m	m
제2구간 선수	스크래치라인: 흰색	m	m	m	m	m	m	m	m	m
제2구간 선수	출구선: 황색	m	m	m	m	m	m	m	m	m

테이크오버존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	9레인
제3구간 선수	가속마크: 청색	m	m	m	m	m	m	m	m	m
제3구간 선수	입구선: 황색	m	m	m	m	m	m	m	m	m
제3구간 선수	스크래치라인 :흰색	m	m	m	m	m	m	m	m	m
제3구간 선수	출구선: 황색	m	m	m	m	m	m	m	m	m
제4구간 선수	가속마크: 청색	m	m	m	m	m	m	m	m	m
제4구간 선수	입구선: 황색	m	m	m	m	m	m	m	m	m
제4구간 선수	스크래치라인 :흰색	m	m	m	m	m	m	m	m	m
제4구간 선수	출구선: 황색	m	m	m	m	m	m	m	m	m

테이크오버존의 길이는 20m이다. 마킹 사이즈와 색상은 KAAF 기준에 따른다.

.....예 아니오

4x400m 릴레이 레이스

제1구간 선수의 첫 번째 일주와 제2구간 선수의 첫 곡선주로에서 출구브레이크라인까지는 완전히 개별레인에서 이루어진다.

테이크오버존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
	존입구:청색	m	m	m	m	m	m	m	m
2구간선수	스크래치라인(800m 스타트라인:흰색/녹색)	m	m	m	m	m	m	m	m
	존출구:청색	m	m	m	m	m	m	m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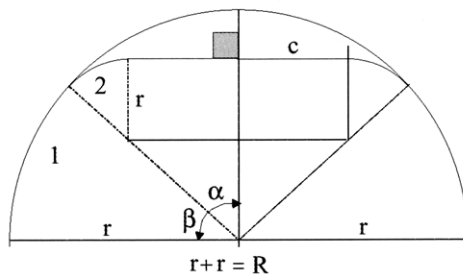
테이크오버존의 길이는 KAAF 규칙에 따른다. 마킹 사이즈와 색상은 KAAF 기준에 따른다

.....예 아니오

C. 장애물레이스 트랙

1. 물웅덩이가 트랙의 내부에 있는 트랙 세부사항

내 용		계측거리	KAAF 기준
안쪽레인 반지름	$R=$	m	37.898m
이론상의 트랙 레이스선	$L=$	0.30m	0.30m
이론상의 장애물 레이스선	$I=$	m	0.20m
중심선	$S=$	m	80.00m
장애물 커브 반지름	$r=$	m	16.00m
트랙 각도 1	β	°	42.55°
장애물 각도 2	α	°	47.45°



a) 장애물레이스 일주 계산(안쪽 물웅덩이)

내 용	계측거리	KAAF 기준	계산공식
커브 1 길이(러닝 트랙) : a	m(+)	27,322m(+)	$\frac{\pi \times \beta \times (R + L)}{180}$
커브 2 길이(장애물레이스) : b	m(+)	13,502m(+)	$\frac{\pi \times \alpha \times (r + 1)}{180}$
C 길이 : c	m(+)	15,105m(+)	
	m(+)	=55,929m	= a+b+c
장애물 레이스 커브 :	m(+)	=111,858m	= z×2
정상 커브 : d	m(+)	115,611m(+)	
장애물 커브 : e	m(+)	111,858m(-)	
단축 계측 : VM	m(+)	=3,753m	= d-e
장애물 일주 :	m(+)	396,247m	= 400-V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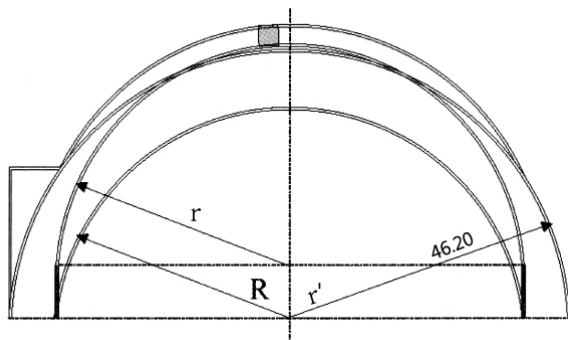
b) 장애물레이스 스타트위치 (안쪽 물웅덩이)

2,000m 장애물레이스와 3,000m 장애물레이스 스타트라인이 있어야 한다(규칙 제169조 1항)

내 용	계측거리	KAAF 기준	위 치	차 이
2,000mSC 5VM	m	18,76m	A전방	m
3,000mSC 7VM	m	26,27m	C전방	m

2. 바깥쪽 물웅덩이 트랙 세부사항

내 용	계측거리	KAAF 기준
안쪽레인 반지름 R=	m	{36.50m}
이론상의 트랙 레이스선 L=	0.30m	0.30m
이론상의 장애물 레이스선 I=	0.20m	0.20m
장애물 커브 양쪽라인 반지름 r^2 =	m	{36.50m}



a) 장애물레이스 일주 계산(바깥쪽 물웅덩이)

내 용	계측거리	KAAF 기준	계산공식
물웅덩이 커브 : a	m(+)	115.297m	$\pi \times (r+1)$
두 개 이동 직선로 : b	m(=)	19.720m	2×9.86
장애물 경기 커브 : z	m(+)	135.017m	$= a+b$
정상 커브 : d	m(=)	115.610m	$\pi \times (R+L)$
측정거리 : VM	m(=)	19.407m	$= z-d$
장애물 일주 :	m(=)	419.407m	$= 400+VM$

b) 장애물 레이스 스타트 위치(바깥쪽 물웅덩이)

2,000m 장애물레이스와 3,000m 장애물레이스 스타트라인이 있어야 한다(규칙 제169조 1항)

내 용	계측거리	IAAF 기준	위 치	차 이
2,000mSC 5VM	m	97.035m	A후방	m
3,000mSC 7VM	m	135.849m	C후방	m

3. 장애물레이스 허들 위치

허들 위치간 표시거리는 대략 장애물레이스 일주 길이의 1/5이다(규칙 169조 3항).

허들	1-2	2-3	3-4	4-5	5-1	IAAF 기준
2,000mSC	m	m	m	m	m	79.217m
3,000mSC	m	m	m	m	m	83.88m

4. 물웅덩이

내용	남자		여자	
	계측거리	기준	계측거리	기준
길이(허들포함) :	m	3.64-3.68m	N/A	N/A
안쪽 너비 :	m	3.64-3.68m	N/A	N/A
깊이 :	m	0.50-0.70m	N/A	N/A
바닥 길이 :	m	1.20-0.30m	N/A	N/A
허들 너비 :	m	3.64-3.68m	m	3.64-3.68m
허들 높이 :	m	0.911-0.917m	m	0.759-0.765m

(IAAF 규칙 제169조 6항)

D. 도약경기 시설

1. 높이뛰기 시설

	KAAF 규칙 필수사항	A구역	B구역
도움닫기 주로	도움닫기 주로의 최소 길이는 25m이상, 너비는 최소 16m이상(KAAF 규칙 182조 3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이 길이는 트랙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아니오	예/아니오
발구름 장소	발구름 장소는 수평이어야 한다(KAAF 규칙 182조 5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경사도	도움닫기 주로의 마지막 15m와 발구름 장소의 전체 최대경사도는 크로스바 중심방향에서 250분의1 (0.4%)을 초과하지 않는다(KAAF 규칙 182조 4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2. 장대높이뛰기 시설

	KAAF 규칙 필수사항	A1구역	B1구역	A2구역	B2구역
도움닫기 주로	도움닫기 주로의 최소 길이는 40m이상 가능하다면 45m 이상으로 한다.	m	m	m	m
	너비는 1.22m ±0.01m이다.	m	m	m	m
	라인 너비 5cm는 백선으로 표시한다. (KAAF 규칙 183조 6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경사도	도움닫기 주로의 최대 측면 경사도는 100분의1(1%)을 초과하지 않는다. (KAAF 규칙 183조 7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도움닫기방향으로 최대 경사도는 1,000분의1(0.1%)을 초과하지 않는다. (KAAF 규칙 183조 7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장대높이 뛰기박스	장대높이뛰기 박스의 규격과 재질 및 구조는 KAAF 규칙에 따른다(KAAF 규칙 183조 8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0” 라인	박스의 뒤끝과 수평이되고 도움닫기주로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너비 1cm의 착지장소(mat)와 구별이되는 색깔로 선을 그어야 한다. 이선은 착지장소 표면까지 이어지고 지주의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KAAF 규칙 183조 1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3. 멀리뛰기 시설

	KAAF 규칙 필수사항	A1구역	B1구역	A2구역	B2구역
도움닫기 주로	도움닫기 주로의 최소 길이는 40m이상 가능하면 45m이상	m	m	m	m
	너비는 1.22m $\pm$ 0.01m이다.	m	m	m	m
	너비에 5cm의 백선으로 표시한다.(KAAF 규칙 184조 1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경사도	도움닫기 주로의 최대 측면 경사한도는 100분의1(1%)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도움닫기방향으로 전체내리막 경사한도는 1000분의1(0.1%)을 초과하지 않는다. (KAAF 규칙 184조 2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발구름판	발구름판을 포함한 조향은 규칙에 따른다. (KAAF 규칙 184조 3, 4, 5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발구름선과 착지장소 끝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10m이다. (KAAF 규칙 185조 4항)	m	m	m	m
	발구름선과 가까운 착지장소간의 거리는 1~3m사이이다(KAAF 규칙 185조 5항).	m	m	m	m
착지장소	착지장소의 너비는 2.75m~ 3m이내이다 (KAAF 규칙 184조 6항).	m	m	m	m
	도움닫기 주로 중앙의 연장선은 착지장소의 중심선과 일직선을 이룬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4. 세단뛰기 시설

	KAAF 규칙 필수사항		A1구역	B1구역	A2구역	B2구역
도움닫기 주로	도움닫기 주로의 최소길이는 40m이상 가능하면 45m이상		m	m	m	m
	너비는 1.22m ± 0.01m이다.		m	m	m	m
	너비 5cm의 백선으로 표시한다(KAAF 규칙 184조 1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경사도	도움닫기 주로의 최대 측면 경사한도는 100분의1(1%)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도움닫기방향으로 전체내리막 경사도는 1,000분의1(0.1%)을 초과하지 않는다(KAAF 규칙 184조 2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발구름판	발구름판을 포함한 조항은 규칙에 따른다. (KAAF 규칙 184조 3, 4, 5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에서 먼쪽 끝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21m가 되어야한다. (KAAF 규칙 186조 3항)	남자				
		여자	m	m	m	m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거리는:(KAAF 규칙 186조 4항)	남자(13m이상)				
		여자(9m이상)	m	m	m	m
착지장소	착지장소의 너비는 2.75m-3m사이다(규칙 184조 6항)		m	m	m	m
	도움닫기 주로 중앙의연장선은 착지장소의 중심선과 일직선을 이룬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E. 투척 경기 시설

1. 포환던지기 시설

	KAAF 규칙 필수사항		A1구역	B1구역	A2구역	B2구역
포환던지기 서클	서클 재질은 규칙에 따른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 상단은 바깥 지면과 같은높이로 한다.(187.6)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백선은 금속제 상단에서부터 그린다. 구조는 KAAF 규칙에 따른다. 길이 최소 75cm, 너비 5cm(KAAF 규칙 187조 8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 내부 구조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표면은 수평이어야 하고 서클 상단 가장자리 테보다 $2\text{cm} \pm 6\text{mm}$ 낮아야 한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테의 두께는 최소 6mm이고 흰색으로 칠한다.(187.7)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의 안쪽 지름은 $2.135\text{m} \pm 5\text{mm}$ 이다. (KAAF규칙 187조 7항)	D1	지름	m	m	m
			서클 깊이	mm	mm	mm
			서클 깊이	mm	mm	mm
	서클의 깊이는 $2\text{cm} \pm 6\text{mm}$ 이다. (KAAF 187조 6항)	D2	지름	m	m	m
			서클 깊이	mm	mm	mm
			서클 깊이	mm	mm	mm

	KAAF 규칙 필수사항		A1구역	B1구역	A2구역	B2구역
	D3	지름	m	m	m	m
		서클 깊이	mm	mm	mm	mm
		서클 깊이	mm	mm	mm	mm
		지름	m	m	m	m
		서클 깊이	mm	mm	mm	mm
		서클 깊이	mm	mm	mm	mm
	중심에서서클깊이		mm	mm	mm	mm

스톱보드는 대회개최 전에 점검해야 한다.

	KAAF 규칙 필수사항		서클 A	서클 B	서클 C
낙하구역	낙하구역(KAAF 규칙 187조 10항~12항)				
	서클 상단은 바깥 지면과 같은 높이로 한다.(187조6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던지는 방향으로 낙하구역의 최대 허용 경사한도는 1000분의1(0.1%)을 초과하지 않는다(KAAF 규칙 187조 11항)	10m	%	%	%
		15m	%	%	%
		20m	%	%	%
		25m	%	%	%

2. 원반던지기 시설

	KAAF 규칙 필수사항		서클 A	서클 B
원반던지기 서클	서클의 재질은 규칙에 따른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상단은 지면과 같은높이로 한다(KAAF 규칙 187조 6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백선은 금속테 상단에서부터 그린다. 구조는 KAAF 규칙에 따른다. 길이 최소 75cm, 너비 5cm(KAAF 규칙 187조 8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 내부 구조			
	표면은 수평이어야 하고 서클 상단 가장자리 테보다 2cm±6mm 낮아야 한다. (KAAF 규칙 187조6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테 두께는 최소 6mm이고 흰색으로 칠한다. (KAAF 규칙 187조7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KAAF 규칙 필수사항		서클 A	서클 B
원반던지기 서클	서클의 내측의 지름은 2.50m±5mm 이다(KAAF 규칙 187조 7항)	D1	지름	m
			서클 깊이	mm
			서클 깊이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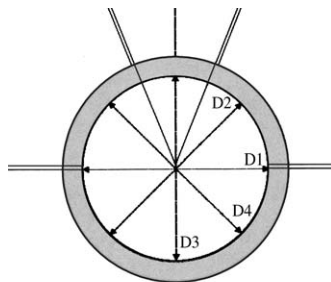
	KAAF 규칙 필수사항			서클 A	서클 B
	서클의 깊이는2cm±6mm이다 (KAAF 187조 6항)	D2	지름	m	m
			서클 깊이	mm	mm
			서클 깊이	mm	mm
		D3	지름	m	m
			서클 깊이	mm	mm
			서클 깊이	mm	mm
		D4	지름	m	m
			서클 깊이	mm	mm
			서클 깊이	mm	mm
		중심에서 서클깊이		mm	mm
낙하구역	낙하구역 구조 (KAAF 규칙 187조 10항~12항)				
	던지는 방향으로 낙하구역의 최대 허용 경사한도는 1000분의1(0.1%)을 초과하지 않는다(KAAF 규칙 187조 11항)	30m	%	%	%
		50m	%	%	%
		70m	%	%	%
		80m	%	%	%

3. 해머던지기 시설

원반던지기 서클에서 하는 해머던지기의 서클 지름은 내부에 원형고리를 설치하여 2.50m에서 2.135m로 축소한다(제187조 7항).

KAAF 규칙 필수사항				서클 A	서클 B
해머던지기 서클	서클재질은 규칙에 따른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상단의 높이는 지면과 같은 높이로 한다 (KAAF 규칙 187조 6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백선은 금속 상단에서부터 그린다. 구조는 KAAF 규칙에 따른다. 길이는 최소 75cm, 너비 5cm (KAAF규칙 제187조 8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 내부 구조 :				
	표면은 수평이어야 하고 서클테의 상단보다 2cm±6mm 낮아야 한다.(KAAF 규칙 187조 6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테의 두께는 최소 6mm이상으로 백색페인트를 칠한다.(KAAF 규칙 187조 7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서클의 내측 지름은 2,135m±5mm 이다 (KAAF 규칙 제187조 7항) 서클의 깊이는 2cm±6mm이다 (KAAF 규칙187조 6항).	D1	지름	m	m
			서클 깊이	mm	mm
			서클 깊이	mm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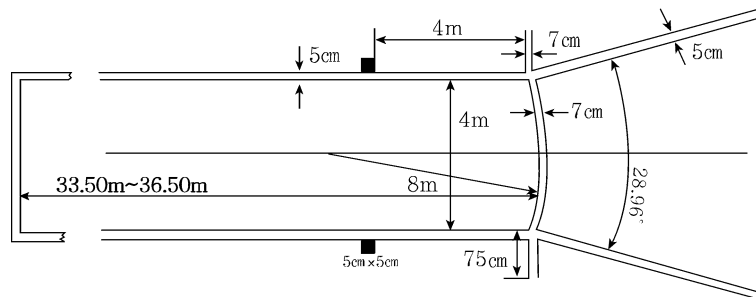
	KAAF 규칙 필수사항			서클 A	서클 B
		D2	지름	m	m
			서클 깊이	mm	mm
			서클 깊이	mm	mm
		D3	지름	m	m
			서클 깊이	mm	mm
			서클 깊이	mm	mm
		D4	지름	m	m
			서클 깊이	mm	mm
			서클 깊이	mm	mm
		중심에서 서클깊이		mm	mm
낙하구역	낙하구역 구조(KAAF 규칙 187조 10~12항)				
	낙하구역의 최대 허용경사 한도는 던지는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하지 않는다(KAAF 규칙 187조 11항)	30m		%	%
		50m		%	%
		70m		%	%
		80m		%	%



4. 창면지기 시설

	KAAF 규칙 필수사항	도움닫기 주로 A	도움닫기 주로 B
도움닫기 주로	도움닫기 주로 길이는 최소 33.50m~36.50m (KAAF 규칙 187조 9항)	m	m
	너비 5cm의 백선을 4m간격으로 평행으로 표시한다(KAAF 규칙 187조 9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원호 크기와 구조는 규칙에 따른다 (KAAF 규칙 187조 9항)	예/아니오	예/아니오
	도움닫기 주로의 경사도는 규칙에 따른다.	예/아니오	예/아니오

KAAF 규칙 필수사항		도움닫기 주로 A	도움닫기 주로 B
도움닫기 주로의 최대 허용측면경사한도는 100분의 1(1%),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반 20m 전체내리막 경사도는 1,000분의 1(0.1%)이하로 한다(KAAF규칙 제187조 9항)	0m	%	%
	10m	%	%
	20m	%	%
	30m	%	%
	36.5m	%	%
	낙하구역 구조(KAAF 규칙 187조 10항~12항)		%
	낙하구역의 최대 내리막 경사도는 투척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KAAF규칙 187조 11항)	30m	%
		50m	%
		70m	%
		80m	%



G. 결 론

경기장에서 레이아웃, 경사도, 규격의 정확성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록된 계측자료는 모두 정확함을 보고합니다.

KAAF 트랙 _____종 시설로 공인합니다. 예 / 아니오 *(규칙에 어긋나는 사유를 적으시오.)

일 자 :

기 록 자 명 :

서 명 :

일반사항

KAAF 규칙 140조에서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j)에 명시된 경기대회를 위한 모든 트랙경기장이 KAAF 규칙에 명시된 정확한 계측 필수사항에 부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공식 자격증을 가진 계측자가 작성한 계측보고서를 통해 트랙이 규정에 부합되었을때만 KAAF _____종 공인증이 발급된다.

_____종 공인증 신청은 트랙경기장 소유자를 대신해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있으며 KAAF가 요구하는 대로 트랙소유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어떠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즉시 KAAF에 통보한다.

이 안에 의해 발급된 공인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트랙을 재마킹할때는 KAAF에 통보해야 하며 새로운 계측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허들, 장애물레이스의 허들, 스톱보드, 투척경기그물장과 같은 이동가능한 시설은 반드시 경기대회전에 점검이 필요하며 이 보고서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경기장 시설명 : _____

주 소 : _____

전 화 번 호 : _____

팩 스 : _____

일 자 : _____

서 명 : _____

육 상 경 기 규 칙

발행일 : 2018년 3월 2일

발행처 : 대 한 육 상 연 맹

Tel. 414-3032/3

Fax. 414-7771
